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039-09

2008년 제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0년부터 2007년간 성범죄추세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제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0년부터 2007년간 성범죄추세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실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12.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정선희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

< 목 차 >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3
제2절 분석방법 및 내용	24
1. 분석대상 및 방법	24
2. 분석내용	25
제2장 2007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현황 및 특성	27
제1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개요	27
1. 성범죄자의 죄명 및 피해청소년의 수	27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8
나. 전과	32
3. 피해청소년의 특성	40
4.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42
가. 전체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42
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48
다. 성매수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52
라. 성매수 알선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57
제2절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58
1.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59
가. 성범죄의 유형	59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60
가. 연령	60
나. 전과	61

3.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62
가. 범행 장소	62
나. 범행시간	64
다.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65
제3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특성	67
1.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67
가. 성범죄의 유형	67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죄자 특성	68
가. 연 령	68
나. 전 과	69
다. 직 업	71
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 특성	72
가. 연 령	72
나. 정신·신체장애 유무	73
4.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74
가. 범행장소	74
나. 강제력 사용의 방법	75
다. 지속성과 2차 피해	76
제4절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78
1. 성범죄의 유형	78
2.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특성	79
제5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양형분석	81
1.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81
가. 전체 성범죄자의 처리현황	81
나.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86
다. 친족관계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87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연도별 추세 89

제1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연도별 추세 89

-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89
 - 가. 발생추세 89
 -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91
 - 다. 처리현황 99
- 2.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04
 - 가. 발생추세 104
 -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6
 - 다.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11
- 3.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115
 -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115

제2절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20

- 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20
 - 가. 발생추세 120
 -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1
 - 다. 처리현황 126
- 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31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31
 - 나.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36
- 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140
 -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140
 - 나. 공범관계 144
 -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45
 - 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146
 - 마. 피해의 정도 및 결과 150

제3절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55

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5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5
나. 처리현황	161
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6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72
나.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75
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175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175
나. 공범관계	178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79
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180
마. 피해의 정도 및 결과	184
제4절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86
1.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8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86
나. 처리현황	193
2.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9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97
나. 피해정황 및 처벌의사	203
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208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208
나. 공범관계	212
다. 범행의 수단 및 방법	213
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216
제5절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221
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22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21
나. 처리현황	226

2.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230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30
나.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235
3.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238
가. 성매수 업소 관련사항	238
제4장 결론 : 연구의 주요 발견점과 정책대안	243
제1절 2007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자료 분석결과 및 시사점	243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청소년의 현황	243
2. 성범죄자의 특성	243
3. 피해청소년의 특성	245
4.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246
5.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247
6.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	248
7.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특성	249
8.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249
9. 시사점	250
제2절 연도별 추세분석 결과 및 정책대안	252
1. 범죄유형별 추세변화와 범죄특성별 접근의 필요성	252
2. 범죄자 연령의 변화와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대응의 필요성	257
3. 범죄자 학력의 상승	260
4. 범죄자에 대한 양형 미약	261
5. 성매매 피해 계층의 확대	262
6. 동거형태와 범죄의 양상 변화	263
7. 범행장소의 다변화	263
8. 범죄유형별 발생시간대의 변화	265
9. 성매매 매개수단에서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피해비율의 급감	266
10. 기타 일반론적인 정책대안의 논의 :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272

가. 아동성폭력 범죄자	272
나.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274
다. 상습 성폭력범죄자	276

<표 목 차>

<표 2-1> 성범죄유형별 분포	7 2
<표 2-2> 피해청소년의 수	8 2
<표 2-3>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성	8 2
<표 2-4>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국적	9 2
<표 2-5>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9 2
<표 2-6>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직업분포	0 3
<표 2-7> 가해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 분포	1 3
<표 2-8> 가해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의 구체적 직업 분포	1 3
<표 2-9>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2 3
<표 2-10>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	3 3
<표 2-11>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이중전과회수	4 3
<표 2-12> 성범죄 유형별 동종전과회수	5 3
<표 2-13> 동종전과 범죄유형	5 3
<표 2-14> 동종전과 중 청소년범죄유형	6 3
<표 2-15>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동종전과의 처분결과	7 3
<표 2-16> 전회 처분 결과와 본건 처분 결과의 차이	8 3
<표 2-17> 본 범죄와 가장 최근 범죄와의 범행간격	9 3
<표 2-18> 최초범행시의 연령	9 3
<표 2-19>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성별	0 4
<표 2-20>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1 4
<표 2-21>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	1 4
<표 2-22>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장애여부	2 4
<표 2-23>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장소	3 4
<표 2-24>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계절	3 4
<표 2-25>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시간	4 4
<표 2-26> 성범죄 유형별 공범여부	5 4
<표 2-27>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수	5 4
<표 2-28>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6 4

<표 2-29> 성범죄 유형별 범행지속여부	7 4
<표 2-30> 강제·강압의 방식	8 4
<표 2-31> 추행의 방식	9 4
<표 2-32> 피해의 정도	0 5
<표 2-33> 범행 이후 2차 피해의 여부 및 형태	1 5
<표 2-34> 강간 강제추행범죄의 지속성에 대한 판별변인	2 5
<표 2-35> 3개의 변인에 의한 분류표	2 5
<표 2-36>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	3 5
<표 2-37> 성교인원	3 5
<표 2-38> 성교유형	4 5
<표 2-39> 성매매 유형	4 5
<표 2-40> 성매수의 대가	5 5
<표 2-41> 성매매이유	5 5
<표 2-42> 성매수금액	6 5
<표 2-43> 다른 피해 사항	6 5
<표 2-44>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지역	7 5
<표 2-45> 성매매 업소유형	7 5
<표 2-46> 업소에서 범죄자의 역할	8 5
<표 2-47> 업소별 고용수 분포	8 5
<표 2-48> 성범죄 유형별 13세 미만 성범죄 현황	9 5
<표 2-49>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연령분포	0 6
<표 2-50>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1 6
<표 2-51>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차이검증	2 6
<표 2-52>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3 6
<표 2-53>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시간	5 6
<표 2-54>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6 6
<표 2-55> 친족관계여부별 성범죄 건수	7 6
<표 2-56>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죄자의 연령	8 6
<표 2-57> 친족 비친족관계 여부별 범죄자 전과	9 6
<표 2-58>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0 7

<표 2-59>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이중전과	0 7
<표 2-60>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동종전과	1 7
<표 2-61>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동종전과 범죄유형	1 7
<표 2-62>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직업유형	2 7
<표 2-63>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피해자연령	3 7
<표 2-64>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장애여부	4 7
<표 2-65> 성범죄유형 및 친족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5 7
<표 2-66>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강압 및 강제방식	6 7
<표 2-67> 성범죄 유형 및 친족 여부에 따른 범행지속기간	7 7
<표 2-68>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행 후 2차폭력	8 7
<표 2-69> 미성년 성범죄자의 죄명	8 7
<표 2-70> 미성년 성범죄자의 구체적 죄명	9 7
<표 2-71> 미성년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9 7
<표 2-72> 미성년 성범죄자의 직업	0 8
<표 2-73> 미성년 성범죄자의 전과유형	0 8
<표 2-74> 미성년 성범죄자의 이중전과횟수	0 8
<표 2-75>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총수	0 8
<표 2-76>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	1 8
<표 2-77>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1 8
<표 2-78> 성범죄판결시 경합범죄의 처리여부 및 유형	2 8
<표 2-79> 성범죄 유형별 일심 선고유형	3 8
<표 2-80>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유형	4 8
<표 2-81>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징역형선고분포	5 8
<표 2-82>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최종심결과	6 8
<표 2-83>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선고유형	7 8
<표 2-84>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형량유형	8 8
<표 3-1>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유형의 연도별 추세	0 9
<표 3-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1 9
<표 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2 9
<표 3-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4 9

<표 3-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59
<표 3-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79
<표 3-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89
<표 3-8>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91
<표 3-9>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11
<표 3-10>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21
<표 3-11>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31
<표 3-12>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별 범죄유형의 연도별 추세	51
<표 3-13>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71
<표 3-14>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81
<표 3-15>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91
<표 3-16>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111
<표 3-17>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121
<표 3-18>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131
<표 3-19>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141
<표 3-20>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141
<표 3-21>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151
<표 3-22>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171
<표 3-23>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181
<표 3-24>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시 공범유무의 연도별 추세	191
<표 3-2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01
<표 3-26>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211
<표 3-2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21
<표 3-28>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231
<표 3-29>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41
<표 3-30>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251
<표 3-3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261
<표 3-3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81
<표 3-3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291
<표 3-34>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301

<표 3-35>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1
<표 3-36>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31
<표 3-37>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41
<표 3-38>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51
<표 3-3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51
<표 3-4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71
<표 3-4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81
<표 3-4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81
<표 3-43> 청소년대상 강간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91
<표 3-44>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91
<표 3-4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21
<표 3-46>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21
<표 3-4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41
<표 3-48>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511
<표 3-4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간여부의 연도별 추세	61
<표 3-5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81
<표 3-5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91
<표 3-52>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91
<표 3-5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11
<표 3-54>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유형의 연도별 추세	21
<표 3-55>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범행이후 2차폭력의 연도별 추세	41
<표 3-5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51
<표 3-5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61
<표 3-5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71
<표 3-5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81
<표 3-6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91
<표 3-6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91
<표 3-6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21
<표 3-6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1
<표 3-6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41

<표 3-6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㉞
<표 3-6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㉞
<표 3-6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㉞
<표 3-6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㉞
<표 3-6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㉟
<표 3-7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㊱
<표 3-7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㊱
<표 3-7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㊲
<표 3-7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㊲
<표 3-7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㊳
<표 3-7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㊳
<표 3-7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㊴
<표 3-7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㊴
<표 3-7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㊴
<표 3-7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㊵
<표 3-8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㊵
<표 3-8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㊶
<표 3-8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연도별 추세	㊶
<표 3-8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㊷
<표 3-8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㊷
<표 3-85>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㊸
<표 3-86>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㊸
<표 3-87>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㊸
<표 3-88>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㊹
<표 3-8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㊹
<표 3-9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㊺
<표 3-91>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㊺
<표 3-92>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㊻
<표 3-9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㊻
<표 3-9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㊼

<표 3-9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91
<표 3-96>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91
<표 3-97>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2
<표 3-98>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22
<표 3-99>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32
<표 3-100>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42
<표 3-101>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52
<표 3-10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52
<표 3-10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성관계경험의 연도별 추세	62
<표 3-10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이전 성매매혐의조사여부의 연도별 추세	207
<표 3-10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성매매 이유의 연도별 추세	82
<표 3-106>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92
<표 3-107>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102
<표 3-108>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112
<표 3-10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32
<표 3-11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와 청소년 만남방법	42
<표 3-111>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인원의 연도별 추세	52
<표 3-11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유형의 연도별 추세	62
<표 3-113>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72
<표 3-11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성매수대가의 연도별 추세	82
<표 3-11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기타 피해사항의 연도별 추세	92
<표 3-116>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
<표 3-117>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2
<표 3-118>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
<표 3-119>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
<표 3-120>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2
<표 3-12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2
<표 3-122>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
<표 3-123>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2

<표 3-12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92
<표 3-125>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3
<표 3-126>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2
<표 3-127>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3
<표 3-128>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4
<표 3-129>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3
<표 3-130>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업소고용경로의 연도별 추세	72
<표 3-13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성매매 이유의 연도별 추세	3
<표 3-132>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위치의 연도별 추세	92
<표 3-133>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유형의 연도별 추세	92
<표 3-134>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가해자역할의 연도별 추세	142
<표 4-1>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가해자 연령대별 피해자와의 관계	9
<표 4-2>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가해자 연령대별 피해자 연령	9
<표 4-3> 2000년-2006년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범죄 다발 장소	462
<표 4-4>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현황(1997-2006)	5·6 2
<표 4-5> 성매매관련 주체별 문제와 대안	8

<그림목차>

<그림 3-1> 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 수의 변화	09
<그림 3-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의 연도별 추세	09
<그림 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형별 비율변화	19
<그림 3-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29
<그림 3-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39
<그림 3-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49
<그림 3-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59
<그림 3-8>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99
<그림 3-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0
<그림 3-10>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11
<그림 3-11>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4
<그림 3-12> 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피해자 수의 변화	4
<그림 3-13>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유형별 비율변화	5
<그림 3-14>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7
<그림 3-15>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0
<그림 3-16>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Ⅲ
<그림 3-17>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
<그림 3-18>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6
<그림 3-19>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7
<그림 3-20>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8
<그림 3-21>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시 공범유무의 연도별 추세	9
<그림 3-22>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0
<그림 3-23>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1
<그림 3-24>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2
<그림 3-2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2
<그림 3-26>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6
<그림 3-2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7
<그림 3-28>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9

<그림 3-2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31
<그림 3-3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21
<그림 3-3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33
<그림 3-3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61
<그림 3-33>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71
<그림 3-34>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11
<그림 3-3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21
<그림 3-36>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21
<그림 3-3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51
<그림 3-38>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611
<그림 3-3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간여부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4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81
<그림 3-4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91
<그림 3-42>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01
<그림 3-4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11
<그림 3-44>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유형의 연도별 추세	31
<그림 3-45>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범행이후 2차폭력의 연도별 추세	41
<그림 3-4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51
<그림 3-4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61
<그림 3-4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71
<그림 3-4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81
<그림 3-5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11
<그림 3-5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경합여부의 비율변화	21
<그림 3-52>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31
<그림 3-5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51
<그림 3-5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61
<그림 3-5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81
<그림 3-5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11
<그림 3-5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1
<그림 3-5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61

<그림 3-5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67>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71
<그림 3-68>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71
<그림 3-6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71
<그림 3-7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71
<그림 3-71>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71
<그림 3-7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71
<그림 3-7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71
<그림 3-7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71
<그림 3-7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71
<그림 3-76>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71
<그림 3-77>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71
<그림 3-78> 청소년대상 강간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71
<그림 3-7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1>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3>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와 청소년 만남방법	71
<그림 3-84>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인원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5>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유형의 연도별추세	71
<그림 3-86>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7>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성매수대가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8>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기타 피해사항의 연도별 추세	71

<그림 3-89>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21
<그림 3-90>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22
<그림 3-9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23
<그림 3-92>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23
<그림 3-93>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23
<그림 3-94>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23
<그림 3-95>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24
<그림 3-96>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24
<그림 3-97>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25
<그림 3-98>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5
<그림 3-99>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위치의 연도별 추세	26
<그림 3-100>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유형의 연도별 추세	26
<그림 3-101>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가해지역할의 연도별 추세	2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정부는 2000년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논의되었던 바, 지난 2007년 7월에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신상공개제도를 대신할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제정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며, 이중 1)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2) 13세 미만의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3)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4)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5년간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 될 수 있다.¹⁾

법원으로부터 열람 명령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상세한 신상을 관할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자신의 거주지역내에서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던 2008년 이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지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열람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고서는 제5차 신상공개 때부터 시작된 방지교육제도의 실시, 청소년 대상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제도 등과 같은 법제도적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대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즉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 성범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 및 범죄 발생의 특성, 피해결과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에 대한 실태와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성보호정책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분석방법 및 내용

1. 분석대상 및 방법

본 보고서의 제2장은 2007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총 1,8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제3장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15,569명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2007년도 즉 전년도 성범죄자 분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전과경력조회표를 분석하였으며,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7년간의 추세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되었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석보고서의 통계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2007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먼저, 그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록조사표에 들어갈 기본적인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 간의 토론 및 자문을 통해, 기존의 보고서에서 간과되었던 항목들을 추가하여 조사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조사표의 기록 항목은 크게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발생의 양상, 법원의 처리결과, 피해 청소년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의 유형 및 결과 등이다. 각각의 항목들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²⁾의 네 가지 범죄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게 구성되었고,

또한 피해자용도 따로 작성되어 기록조사표는 모두 8가지 종류로 만들어졌다. 강간 미수는 강간범죄에 포함되었으며, 한 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의 수만큼 피해자의 인적 특성과 범행 및 피해관련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기록조사표를 작성한 조사원들은 법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경찰행정학 등을 전공하여 법학 관련 지식을 지닌 대학원생들로 이들 동안 조사에 관한 사전교육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투입되었다.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연도별 추세’는 그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에 의뢰, 통계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였다. 각 보고서는 보고서를 담당한 기관에 따라 조사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공통분모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크게 성범죄자의 특성 및 성범죄의 특성, 피해자에 관한 특성의 세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내용

제2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39명을 대상으로 1) 성범죄자 및 피해청소년의 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현황,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3)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4) 13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의 특성, 5)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의 특성, 6)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제3장에서는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반의 연도별 추세, 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연도별 추세, 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의 연도별 추세, 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연도별 추세, 5) 청소년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의 연도별 추세 등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분석결과에 나타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기존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는 청소년대상 음란물 제작 범죄는 한건도 없었다.

제2장 2007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현황 및 특성

제1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개요

1. 성범죄자의 죄명 및 피해청소년의 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사건은 지난 해, 2007년도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성범죄자 1,839건이다. 기존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관한 보고서는 보고서 발간 이전 해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성범죄자들의 판결문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양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보고서는 2007년 한해 동안에 발생한 성범죄사건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성범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간이 385건, 20.9%, 강제추행이 643건으로 35.0%, 성매수가 771건으로 41.9%, 성매수 알선이 40건으로 2.2%를 차지하였다.

<표 2-1> 성범죄유형별 분포

죄명	빈도	%
강간	385	20.9
강제추행	643	35.0
성매수	771	41.9
성매수 알선	40	2.2
계	1,839	100.0

피해청소년들의 수를 살펴보면 강간이 546건, 23.0%, 강제추행이 882건, 37.2%, 성매수가 880건, 37.1%로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은 66건, 2.8%로 가장 적었다.

<표 2-2> 피해청소년의 수

죄 명	빈 도	%
강 간	546	23.0
강제추행	882	37.2
성매수	880	37.1
성매매알선	66	2.8
계	2,374	100.0

* 1명의 성범죄자당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사건수, 성범죄자의 수에 비해 피해자의 수가 월등이 많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사람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99.3%(1,826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가 여성인 경우는 13건(0.7%)에 불과하며, 이 중 9건은 성매수 알선, 3건은 강제추행, 한 건은 강간인 것으로 나타났다³⁾

<표 2-3>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성

(단위:명(%))

성 별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남	384(99.7)	640(99.5)	771(100.0)	31(77.5)	1,826(99.3)
여	1(0.3)	3(0.5)	-	9(22.5)	13(0.7)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성범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국적은 전체의 98.8%(1,817명)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모두 22명, 1.2%인 것으로 결과되었다. 이들 외국인이 저지른 성범죄 유형은 강간이 7명, 강제추행이 12명, 성매수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 강간범죄자의 경우, 남성 강간범죄자와 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다.

<표 2-4>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국적

(단위:명(%))

국 적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내국인	378(98.2)	631(98.1)	768(99.6)	40(100.0)	1,817(98.8)
외국인	7(1.8)	12(1.9)	3(0.4)	-	22(1.2)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성범죄자의 연령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주된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이다. 이중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것은 30대로 34%(626명)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20대가 27.6%(507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 번째가 40대로 22.8%(420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범죄자의 연령분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간의 경우에는 20대(125명, 32.5%), 30대(103명, 26.8%), 40대(108명, 28.1%)의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20대가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의 경우 30대(150명, 23.3%), 40대(198명, 30.8%), 50대(116명, 18.0%)로 강간에 비해 집중된 연령대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20대(273명, 35.4%), 30대(360명, 46.7%)가 가장 주된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의 경우에는 20대가 52.5%(21명), 30대가 32.5%(13명)인 것으로 나타나 성매수 알선범의 경우, 비교적 연령층이 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5>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명(%))

연 령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0대	1(0.3)	-	1(0.1)	1(2.5)	3(0.2)
20대	125(32.5)	88(13.7)	273(35.4)	21(52.5)	507(27.6)
30대	103(26.8)	150(23.3)	360(46.7)	13(32.5)	626(34.0)
40대	108(28.1)	198(30.8)	111(14.4)	3(7.5)	420(22.8)
50대	37(9.6)	116(18.0)	21(2.7)	2(5.0)	176(9.6)
60대	9(2.3)	79(12.3)	5(0.6)	-	93(5.1)
70대 이상	2(0.5)	12(1.9)	-	-	14(0.8)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 성범죄자의 연령은 올해 2008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대가 3명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 유형의 소년보호처분에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가진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와 생산직, 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29.8%(545명), 20.5%(376명), 20.3%(3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서비스직 종업원과 판매직이 14.4%(263명), 6.7%(122명)로 나타났다. 행정관리직이 18명(1.0%)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무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각각 34.7%(133명), 33.6%(215명)), 다음으로 생산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00명(26.1%), 176명(27.5%)). 성매수범의 경우 사무직(24.4%, 188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무직자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188명, 24.4%). 반면 성매수 알선에서는 범죄의 특성상 유흥업소를 포함한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67.5%(27명)로 나타났으며 무직자가 9명(22.5%)으로 나타났다.

<표 2-6>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직업분포

(단위:명(%))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전문기술직	18(4.7)	46(7.2)	33(4.3)	-	97(5.3)
행정관리직	5(1.3)	5(0.8)	7(0.9)	1(2.5)	18(1.0)
사무직	41(10.7)	63(9.9)	266(34.6)	2(5.0)	372(20.3)
판매직	15(3.9)	40(6.3)	66(8.6)	1(2.5)	122(6.7)
서비스직	57(14.9)	77(12.1)	102(13.3)	27(67.5)	263(14.4)
농어업직	14(3.7)	17(2.7)	7(0.9)	-	38(2.1)
생산직	100(26.1)	176(27.5)	100(13.0)	-	376(20.5)
미취업	133(34.7)	215(33.6)	188(24.4)	9(22.5)	545(29.8)
계	383(100.0)	639(100.0)	769(100.0)	40(100.0)	1,831(100.0)

* 미상 8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한편,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학원 강사 및 운전사 등의 청소년 보호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총 49명으로 전체의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가해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 분포

(단위:명(%))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청소년보호직종	12(3.1)	32(5.0)	5(0.7)	-	49(2.7)
청소년보호직종아님	371(96.9)	607(95.0)	764(99.3)	40(100.0)	1,782(97.3)
계	383(100.0)	639(100.0)	769(100.0)	40(100.0)	1,831(100.0)

* 미상 8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성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보호직종에 속하는 직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는 데, 이러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원, 교습소 등의 강사가 19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교사가 9명(18.4%), 태권도장, 종합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종사자가 8명(16.3%), 학원운전기사가 5명(10.2%)으로 나타났다.

<표 2-8> 가해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의 구체적 직업 분포

(단위:명(%))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강사(학원, 교습소)	4(33.3)	13(40.6)	2(40.0)	19(38.8)
교사(학교, 유치원)	1(8.3)	6(18.8)	2(40.0)	9(18.4)
아파트경비원	1(8.3)	2(6.3)	-	3(6.1)
체육시설종사	2(16.7)	6(18.8)	-	8(16.3)
청소년시설종사	1(8.3)	1(3.1)	-	2(4.1)
아동복지시설종사	-	1(3.1)	-	1(2.0)
학원운전기사	2(16.7)	3(9.4)	-	5(10.2)
기타(목사, 경찰 등)	1(8.3)	-	1(20.0)	2(4.1)
계	12(100.0)	32(100.0)	5(100.0)	49(100.0)

범죄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19.7%(361명), 서울 19.5%(359명)의 순으로 나타나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지역 이외에는 인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145명, 7.9%) 인구대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143명, 7.8%), 전남(101명, 5.5%), 광주(91명,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나머지 지역들은 5.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울산은 1.7%(32명)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는 전체범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10%를 넘지 않거나 5% 미만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매수 알선범의 경우에는 광주가 35.0%(14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 경남, 전남이 각각 12.5%(5명)로 동일하게 결과되었다.

<표 2-9>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단위:명(%))

거주지역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서울	53(13.8)	132(20.5)	171(22.2)	3(7.5)	359(19.5)
부산	29(7.6)	39(6.1)	70(9.1)	5(12.5)	143(7.8)
대구	23(6.0)	27(4.2)	36(4.7)	1(2.5)	87(4.7)
인천	30(7.8)	52(8.1)	61(7.9)	2(5.0)	145(7.9)
광주	14(3.7)	25(3.9)	38(4.9)	14(35.0)	91(5.0)
대전	11(2.9)	21(3.3)	21(2.7)	-	53(2.9)
울산	6(1.6)	18(2.8)	7(0.9)	1(2.5)	32(1.7)
경기	66(17.2)	135(21.0)	159(20.6)	1(2.5)	361(19.7)
경북	20(5.2)	32(5.0)	23(3.0)	-	75(4.1)
경남	23(6.0)	34(5.3)	20(2.6)	5(12.5)	82(4.5)
전북	21(5.5)	15(2.3)	8(1.0)	1(2.5)	45(2.4)
전남	28(7.3)	42(6.5)	26(3.4)	5(12.5)	101(5.5)
충북	19(5.0)	25(3.9)	21(2.7)	-	65(3.5)
충남	14(3.7)	21(3.3)	21(2.7)	-	56(3.0)
강원	18(4.7)	16(2.5)	25(3.2)	1(2.5)	60(3.3)
제주	8(2.1)	9(1.4)	64(8.3)	1(2.5)	82(4.5)
계	383(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7(100.0)

* 미상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나. 전 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839명중 62.8%를 차지하는 1,154명이 1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상습화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범죄전력을 성범죄관련 전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동종전과와 이종전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종전과만을 갖고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7.5%(873명)이고, 동종전과만을 갖고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3.5%(65명), 이종과 동종 전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범죄자는 11.7%(2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범죄에서 성범죄자들의 전과율은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비슷하였다. 성매수의 경우에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과 전과가 없는 범죄자들의 비율이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6명, 22.3%). 범죄유형별 동종전과자 비율에서도 성매수를 제외하고 범죄간 동종전과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성매수 범죄는 성매수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문화의 특성 때문에 일반 남성들의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경우는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10>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 (단위:명(%))

전과유무 및 유형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전과없음	109(28.3)	190(29.5)	375(48.6)	11(27.5)	685(37.2)
이종전과	190(49.4)	358(55.7)	304(39.4)	21(52.5)	873(47.5)
동종전과	17(4.4)	16(2.5)	29(3.8)	3(7.5)	65(3.5)
이종+동종전과	69(17.9)	79(12.3)	63(8.2)	5(12.5)	216(11.7)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성범죄자의 이종전과경력만을 회수별로 살펴보면, 전과경력이 1회에 그치는 경우가 29.8%(324명)로 가장 많았지만, 3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를 합한 비율이 51.9%(565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는 3-5회의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31.7%(82명)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의 경우도 3-5회의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28.4%(124명)로 가장 많았다. 성매수의 경우는 1회의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156명(42.5%)으로 가장 많았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는 3회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성매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자들이 성매수 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경우도 3회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57.6%, 15명)들이 1회나 2회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11명, 42.3%)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이종전과회수 (단위:명(%))

이종전과회수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회	58(22.4)	107(24.5)	156(42.5)	3(11.5)	324(29.8)
2회	42(16.2)	76(17.4)	74(20.2)	8(30.8)	200(18.4)
3-5회	82(31.7)	124(28.4)	85(23.2)	7(26.9)	298(27.4)
6-10회	62(23.9)	86(19.7)	40(10.9)	5(19.2)	193(17.7)
10회 이상	15(5.8)	44(10.1)	12(3.3)	3(11.5)	74(6.8)
계	259(100.0)	437(100.0)	367(100.0)	26(100.0)	1,089(100.0)

* 이종전과범죄자를 기준으로 1089명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각 범죄유형별 동종전과 횟수를 살펴 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동종전과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1회의 동종전과 경력이 214명(76.2%)으로 동종전과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종전과와는 달리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1회 내지는 2회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회 이상의 성범죄 전과를 가진 가해자들도 총 22명(7.9%)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 동종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이 성매수에 비해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자들이 성매수범들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관되지 못한 단속의 결과로 성매수범들이 매번 검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표 2-12> 성범죄 유형별 동종전과회수

(단위:명(%))

동종전과회수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회	64(74.4)	65(68.4)	79(85.9)	6(75.0)	214(76.2)
2회	18(20.9)	17(17.9)	9(9.8)	1(12.5)	45(16.0)
3회	3(3.5)	11(11.6)	3(3.3)	1(12.5)	18(6.4)
4회	1(1.2)	2(2.1)	-	-	3(1.1)
5회	-	-	1(1.1)	-	1(0.4)
계	86(100.0)	95(100.0)	92(100.0)	8(100.0)	281(100.0)

* 동종전과범죄자를 기준으로 하여 281명임

다음은 동종전과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구체적인 죄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범죄자들이 저지른 동종전과범죄 중 가장 최근 전과에 대한 구체적인 죄명을 살펴보았다. 범죄경력조회표에 “성폭력특별법위반”이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죄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기타로 처리하였다.

<표 2-13> 동종전과 범죄유형

(단위:명(%))

동종전과범죄유형	범죄유형				총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강간	58(52.7)	65(46.4)	17(14.8)	2(18.2)	142(37.7)
강제추행	20(18.2)	46(32.9)	6(5.2)	-	72(19.1)
성매수	12(10.9)	1(0.7)	33(28.7)	-	46(12.2)
알선	4(3.6)	4(2.9)	34(29.6)	1(9.1)	43(11.4)
기타	16(14.5)	24(17.1)	25(21.7)	8(72.7)	73(19.4)
계	110(100.0)	140(100.0)	115(100.0)	11(100.0)	376(100.0)

* 동종전과범죄자는 총 281명이나 이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376건임

동종전과의 죄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76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강간이 142명(37.7%)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강제추행이 72명(19.1%), 성매수가 46명(12.2%), 알선이 43명(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논외로 하고 범죄유형별로 동종전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동일하게 강간을 저지른 경우가 52.7%(58명)였고, 강제추행의 경우, 동일

하계 강제추행의 전과를 가진 경우가 32.9%(46명), 성매수도 동일하게 성매수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가 28.7%(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는 다시 강간을 저지른 전과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65명, 46.4%)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강간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5명, 46.4%). 성매수의 경우에는 이전의 동종범죄에서 성매수를 저지른 경우와(28.7%, 33명), 알선을 저지른 경우(29.6%, 34명)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동종전과를 가진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범죄는 청소년 성매수(46명, 50.5%)이며 다음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16명, 17.6%),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2명, 13.2%)으로 나타났다. 즉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반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전과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청소년 성매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12명, 54.5%), 다음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이 두 번째로 많았다(5명, 22.7%).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강간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각각 11명(34.4%), 10명(31.3%)). 성매수에서는 동일하게 청소년 성매수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이 33명(8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 3명(8.1%)으로 뒤를 이었다.

<표 2-14> 동종전과 중 청소년범죄유형

(단위:명(%))

청소년범죄유형	범죄유형			총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3(13.6)	5(15.6)	3(8.1)	11(12.1)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5(22.7)	10(31.3)	1(2.7)	16(17.6)
청소년에 대한 강간	-	1(3.1)	-	1(1.1)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1(4.5)	11(34.4)	-	12(13.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1(4.5)	4(12.5)	-	5(5.5)
청소년성매수	12(54.5)	1(3.1)	33(89.2)	46(50.5)
계	22(100.0)	32(100.0)	37(100.0)	91(100.0)

동종전과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이전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⁴⁾를 살펴보면, 벌금이 90명(32.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징역형(99명, 35.2%), 집행유예(83명,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강간에서 6명(7.0%), 성매수, 성매수 알선에서 각각 2명과 1명이 있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전회에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이 각각 37명(43.0%)과 52명(54.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으며, 성매수범의 경우에는 벌금이 61명(6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가 총 19명(20.7%)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알선의 경우는 벌금이 5명(62.5%), 집행유예가 2명(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동종전과의 처분결과(가장 최근 전과 기준)

(단위:명(%))

전회의 동종전과 처분결과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소년보호처분	6(7.0)	-	2(2.2)	1(12.5)	9(3.2)
벌금	8(9.3)	16(16.8)	61(66.3)	5(62.5)	90(32.0)
집행유예	35(40.7)	27(28.4)	19(20.7)	2(25.0)	83(29.5)
징역	37(43.0)	52(54.7)	10(10.9)	-	99(35.2)
계	86(100.0)	95(100.0)	92(100.0)	8(100.0)	281(100.0)

* 본건 직전의 동종범죄에서 받은 처분결과임

전회 처분 결과와 본건 처분 결과의 차이를 보면, 처분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가 155명(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회에서 벌금형을 받고 본건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46명(16.4%), 전회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본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25명(8.9%), 전회에 징역형을 받고 본건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84명(29.9%)이었는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특기할만한 점은 전회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본건에서 징역을 받은 경우가 7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처분결과는 본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를 기준으로해서 산출하였다.

<표 2-16> 전회 처분 결과와 본건 처분 결과의 차이

(단위:명(%))

처분결과의 차이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벌금→징역	7(8.1)	6(6.3)	2(2.2)	1(12.5)	16(5.7)
벌금→집유	1(1.2)	10(10.5)	13(14.1)	4(50.0)	28(10.0)
벌금→벌금	-	-	46(50.0)	-	46(16.4)
집유→징역	28(32.6)	16(16.8)	6(6.5)	00.0)	50(17.8)
집유→집유	7(8.1)	9(9.5)	7(7.6)	2(25.0)	25(8.9)
집유→벌금	-	2(2.1)	6(6.5)	-	8(2.8)
징역→징역	36(41.9)	43(45.3)	5(5.4)	-	84(29.9)
징역→집유	1(1.2)	4(4.2)	-	-	5(1.8)
징역→벌금	-	5(5.3)	5(5.4)	-	10(3.6)
보호사건→징역	6(7.0)	-	1(1.1)	-	7(2.5)
보호사건→집유	-	-	1(1.1)	1(12.5)	2(0.7)
계	86(100.0)	95(100.0)	92(100.0)	8(100.0)	281(100.0)

* 본 건 바로 직전의 성범죄에서 받은 처분결과와 본건의 처분결과를 비교했음

동종 전과자가 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가장 최근 범죄와의 시간적인 간격을 살펴보면, 이전 범행을 저지른 후 1년 이내에 본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5명(5.3%), 이전 범행을 저지른 후 2년 이내에 본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32명(11.4%), 3년 이내가 37명(13.2%), 4년 이내가 39명(13.9%), 5년 이내가 23명(8.2%), 5년 이상이 135명(48.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회의 범죄에서 본건의 범죄까지 5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범죄의 상습성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재범기간이 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과 강제추행은 범행간격이 전회 범행이후 5년이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3, 4년 이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38명, 41.3%) 성매수 범죄의 상습성은 매우 높은 반면, 처벌의 재범억제효과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7> 본 범죄와 가장 최근 범죄와의 범행간격

(단위:명(%))

범행간격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1년 이내	3(3.5)	1(1.1)	9(9.8)	2(25.0)	15(5.3)
2년 이내	11(12.8)	9(9.5)	11(12.0)	1(12.5)	32(11.4)
3년 이내	6(7.0)	13(13.7)	17(18.5)	1(12.5)	37(13.2)
4년 이내	7(8.1)	9(9.5)	21(22.8)	2(25.0)	39(13.9)
5년 이내	5(5.8)	11(11.6)	7(7.6)	-	23(8.2)
5년 이상	54(62.8)	52(54.7)	27(29.3)	2(25.0)	135(48.0)
계	86(100.0)	95(100.0)	92(100.0)	8(100.0)	281(100.0)

* 본 건 바로 직전의 성범죄와 본건간의 범행간격임.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최초 범행시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50% 이상의 범죄자들이 10대와 20대에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150명, 53.4%). 다음으로 30대가 32.4%(91명)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았으며, 40대가 27명(9.6%), 50대 이후가 13명(2.3%)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에서 10대에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1명(1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에서는 4명(4.2%)의 성범죄자들이 10대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도 10대에 성매수를 저지른 경우가 2명 있었다.

<표 2-18> 최초범행시의 연령

(단위:명(%))

최초범행시의 연령대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0대	11(12.8)	4(4.2)	2(2.2)	1(12.5)	18(6.4)
20대	46(53.5)	39(41.1)	44(47.8)	3(37.5)	132(47.0)
30대	26(30.2)	29(30.5)	35(38.0)	1(12.5)	91(32.4)
40대	3(3.5)	12(12.6)	10(10.9)	2(25.0)	27(9.6)
50대 이후	-	11(11.6)	1(1.1)	1(12.5)	13(4.6)
계	86(100.0)	95(100.0)	92(100.0)	8(100.0)	281(100.0)

3. 피해청소년의 특성

피해청소년에 대한 자료에는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최종 집계된 피해청소년은 2,374명이다. 이후의 분석에서 2,374명은 인원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해자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가리키는 수로도 사용될 것이다.

먼저 아래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성, 연령, 장애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피해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96.2%(2,284명)는 여자 청소년이다. 남자 피해청소년은 90명(3.8%)에 불과하다. 범죄유형별로 피해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강간은 범죄의 구성요건상 남자 피해청소년이 있을 수 없으므로 모든 피해자가 여자청소년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남자청소년이 77명(8.7%)으로 다른 성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매수와 성매매알선에서 남자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각각 11명(1.3%)과 2명(3.0%)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양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19>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성별 (단위:명(%))

성 별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남 자	-	77(8.7)	11(1.3)	2(3.0)	90(3.8)
여 자	546(100.0)	805(91.3)	869(98.8)	64(97.0)	2,284(96.2)
계	546(100.0)	882(100.0)	880(100.0)	66(100.0)	2,374(100.0)

피해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 이상이 36.9%(875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30.4%(722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7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이 28.6%(678명)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이상에서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 연령분포를 보면 이러한 결과가 성매수 범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7세 이상 13세 미만, 7세 이하의 범죄 피해자를 합한 비율이 전체 32.7%(776명)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피해자가 37.0%(202명)로 가장 높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32.2%, 176명)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보다 어린 연령층인 7세 이상 13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전체 피해청소년 중 절반이상인 66.7%(588명)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56.6%, 498명). 성매수 알선범죄의 경우에도 16세 이상의 비율이 69.7%(4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단위:명(%))

피해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7세 미만	7(1.3)	91(10.3)	-	-	98(4.1)
7세 이상-13세 미만	161(29.5)	497(56.4)	19(2.2)	1(1.5)	678(28.6)
13세 이상-16세 미만	176(32.2)	164(18.6)	363(41.3)	19(28.8)	722(30.4)
16세 이상	202(37.0)	129(14.6)	498(56.6)	46(69.7)	875(36.9)
계	546(100.0)	881(100.0)	880(100.0)	66(100.0)	2,373(100.0)

* 미상 1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피해청소년의 평균나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4세이고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은 16세로 나타났다.

<표 2-21>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

죄 명	평균 연령
강 간	13.9세
강제추행	11.1세
성매수	15.6세
성매수 알선	16.0세

* 미상 1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피해 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374명의 피해청소년 중 97.3%(2,311명)가 어떠한 장애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의 경우,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5명(0.2%),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44명(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강간범죄에서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장애여부 (단위:명(%))

장애 여부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장애없음	519(95.1)	863(97.8)	863(98.1)	66(100.0)	2,311(97.3)
신체장애	3(0.5)	1(0.1)	1(0.1)	-	5(0.2)
정신장애	23(4.2)	14(1.6)	7(0.8)	-	44(1.9)
미 상	1(0.2)	4(0.5)	9(1.0)	-	14(0.6)
계	546(100.0)	882(100.0)	880(100.0)	66(100.0)	2,374(100.0)

4.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가. 전체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1)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로 34.9%(804건)로 나타났다. 다음이 가해자의 집(15.9%, 367건), 피해자의 집(274건, 11.9%), 자동차안(182건, 7.9%)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범행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강간이 일어난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집이 131건(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가해자집(99건, 18.2%)의 순으로 나타나 집안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69명, 12.7%)과 자동차안(53명, 9.7%)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길(대로, 골목 등)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4명, 17.5%).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135명, 15.3%), 가해자의 집(133명,

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83명, 9.4%)과 놀이터, 학교주변 등(83명, 9.4%)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특성상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가 71.0%(62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해자의 집(135건, 15.4%), 자동차안(84건,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3>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장소

(단위:명(%))

범행발생장소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길(대로, 골목)	20(3.7)	154(17.5)	2(0.2)	176(7.6)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69(12.7)	83(9.4)	4(0.5)	156(6.8)
공원, 야산 등	38(7.0)	66(7.5)	0(0.0)	104(4.5)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75(13.8)	106(12.0)	623(71.0)	804(34.9)
피해자의 집	131(24.1)	135(15.3)	8(0.9)	274(11.9)
가해자의 집	99(18.2)	133(15.1)	135(15.4)	367(15.9)
제3자의 집	31(5.7)	24(2.7)	18(2.1)	73(3.2)
자동차안	53(9.7)	45(5.1)	84(9.6)	182(7.9)
놀이터, 학교, 공원주변	9(1.7)	83(9.4)	1(0.1)	93(4.0)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13(2.4)	46(5.2)	3(0.3)	62(2.7)
기타	6(1.1)	7(0.8)	0(0.0)	13(0.6)
계	544(100.0)	882(100.0)	878(100.0)	2,304(100.0)

* 미상 4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발생 계절을 살펴보면, 여름이 738건(3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봄(562건, 23.7%)과 겨울(550건, 23.2%) 가을(517건, 21.8%)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여름이나 가을 같이 바깥활동이 많은 계절에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매수는 여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절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24>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계절

(단위:명(%))

범행발생계절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봄(3월-5월)	105(19.3)	222(25.3)	218(24.8)	17(26.6)	562(23.7)
여름(6월-8월)	151(27.7)	289(32.9)	276(31.4)	22(34.4)	738(31.2)
가을(9월-11월)	157(28.8)	233(26.5)	116(13.2)	11(17.2)	517(21.8)
겨울(12월-2월)	132(24.2)	135(15.4)	269(30.6)	14(21.9)	550(23.2)
계	545(100.0)	879(100.0)	879(100.0)	64(100.0)	2,367(100.0)

* 미상 7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711건, 34.9%)와 저녁 7시 이후의 밤(662건, 32.5%)에 비슷한 비율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밤(19~24시)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156건, 31.7%), 강제추행범죄는 오후(390건, 48.9%)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성매수는 밤(322건, 44.8%)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2-25>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시간

(단위:건(%))

범행발생시간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새벽(1-6시)	123(25.0)	137(17.2)	157(21.8)	10(31.3)	427(20.9)
오전(7-12시)	69(14.0)	102(12.8)	67(9.3)	2(6.3)	240(11.8)
오후(13-18시)	144(29.3)	390(48.9)	173(24.1)	4(12.5)	711(34.9)
밤(19-24시)	156(31.7)	168(21.1)	322(44.8)	16(50.0)	662(32.5)
계	492(100.0)	797(100.0)	719(100.0)	32(100.0)	2,040(100.0)

* 미상 334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2) 공범여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범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2,374건 중 공범이 없는 경우가 94.9%(2,254건), 공범이 있는 경우가 5.1%(120건)로 공범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공범없이 범행이 저질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10.3%(56건)로 강제추행이나 성매수 범죄에 비해 공범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매수 알선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고용주나 카맨 같은 고용인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건, 47.0%). 강간범죄의 경우에 공범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특수강간이나 특수강도강간과 같이 여러 명의 범죄자가 함께 가세하여 윤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26> 성범죄 유형별 공범여부 (단위:명(%))

공범여부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공범 없음	490(89.7)	874(99.1)	855(97.2)	35(53.0)	2,254(94.9)
공범 있음	56(10.3)	8(0.9)	25(2.8)	31(47.0)	120(5.1)
계	546(100.0)	882(100.0)	880(100.0)	66(100.0)	2,374(100.0)

3) 성범죄자 1인당 피해청소년의 수

성범죄자 1인당 피해 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83.4%(1,533명)가 1명의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1인이 2~3명의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269명(14.6%), 4~9명인 경우는 32명(1.7%), 10명 이상인 경우는 5명(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수 (단위:명(%))

피해자수	죄명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명	307(79.7)	526(81.8)	680(88.2)	20(50.0)	1,533(83.4)
2명~ 3명	61(15.8)	100(15.6)	89(11.5)	19(47.5)	269(14.6)
4명~ 9명	13(3.4)	16(2.5)	2(0.3)	1(2.5)	32(1.7)
10명이상	4(1.0)	1(0.2)	-	-	5(0.3)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 성범죄사건수를 기준한 분석결과임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지속성 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806명(7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네 사람이 137명(5.8%), 교사나 목사, 고용주 등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126명(5.3%)로 나타났다.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합쳐 161명(6.8%)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68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부가 가해자인 경우 45명(1.9%), 모의 동거인 22명(0.9%), 친척에 의한 경우 25명(1.2%), 친오빠인 경우가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인척간의 관계에서 친부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28>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명(%))

관 계	죄 명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모르는 사람	339(62.3)	580(66.4)	869(99.1)	18(28.1)	1,806(76.6)
친 부	31(5.7)	37(4.2)	-	-	68(2.9)
의 부	28(5.1)	17(1.9)	-	-	45(1.9)
모의 동거인	15(2.8)	7(0.8)	-	-	22(0.9)
친 척	15(2.8)	9(1.0)	1(0.1)	-	25(1.1)
친 구	13(2.4)	2(0.2)	-	-	15(0.6)
동네 사람	38(7.0)	97(11.1)	2(0.2)	-	137(5.8)
권력관계	18(3.3)	61(7.0)	3(0.3)	44(68.8)	126(5.3)
친오빠	-	1(0.1)	-	-	1(0.0)
부모의 친구	14(2.6)	21(2.4)	-	-	35(1.5)
친구의 아버지	10(1.8)	17(1.9)	-	-	27(1.1)
기 타	23(4.2)	24(2.7)	2(0.2)	2(3.1)	51(2.2)
계	544(100.0)	873(100.0)	877(100.0)	64(100.0)	2,358(100.0)

* 미상 16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성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네 가지 범죄유형 중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339명(62.3%)으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에 의한 경우가 89명(16.4%)으

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안면이 있는 동네 사람(97명, 11.1%)과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61명, 7.0%)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의 약 40%는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매수 범죄는 99.1%(869명)가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모르는 사이인 경우였다. 성매수 알선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권력관계에 있는 경우가 44명(68.8%)으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성범죄자에게 동일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는지의 여부와 지속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 10건 중 7건 정도는 성범죄가 일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74.7%).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1회 이상 저지른 경우가 총 25.3%(601건)이고, 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10.9%(259건), 1개월 이상~5개월 미만이 7.1%(169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4%(80건), 1년 이상이 3.9%(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성범죄 유형별 범행지속여부

(단위:명(%))

범행지속여부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회에 그침	390(71.4)	721(82.0)	652(74.1)	7(10.6)	1,770(74.7)
1개월 이하	41(7.5)	56(6.4)	128(14.5)	34(51.5)	259(10.9)
1-5개월	38(7.0)	41(4.7)	70(8.0)	20(30.3)	169(7.1)
6-12개월	20(3.7)	27(3.1)	28(3.2)	5(7.6)	80(3.4)
1년 이상	57(10.4)	34(3.9)	2(0.2)	-	93(3.9)
계	546(100.0)	879(100.0)	880(100.0)	66(100.0)	2,371(100.0)

* 미상 3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28.6%가 동일피해자에게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개월 미만의 단기(7.5%)보다는 1개월 이상인 경우(21.1%)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네 가지 범죄유형 중 일회에 그친 비율(82.0%)이 가장 높았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강간범죄에 있어 57건(10.4%)으로 가장 높았다. 성매수

알선범죄의 경우 범행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 비율이 89.4%(59건)로 가장 높았다.

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1) 범행관련 특성

청소년에 대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가하기 위해 강제 및 강압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92명(47.6%)이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151건(10.5%), 말로 협박한 경우가 143건(9.8%), 흉기로 협박한 경우가 130건(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구타(99명, 6.8%), 인신속박(62명, 4.3%), 약물(7명, 0.5%), 감금(13명, 0.9%), 흉기폭행(5명, 0.3%) 등의 심각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성범죄의 흉악성을 알 수 있었다.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범죄 공히 완력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강간(28.7%)보다는 강제추행(61.1%)이 완력을 사용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보다 흉기로 협박하거나 구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0> 강제 · 강압의 방식 (중복응답) (단위:명(%))

강압방식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말로 협박	78(12.8)	65(7.7)	143(9.8)
흉기로 협박	105(17.2)	25(3.0)	130(8.9)
구타	79(13.0)	20(2.4)	99(6.8)
흉기폭행	4(0.7)	1(0.1)	5(0.3)
인신속박	56(9.2)	6(0.7)	62(4.3)
완 력	175(28.7)	517(61.1)	692(47.6)
약 물	5(0.8)	2(0.2)	7(0.5)
감 금	10(1.6)	3(0.4)	13(0.9)
위계/위력	59(9.7)	92(10.9)	151(10.4)
기 타	38(6.2)	115(13.6)	153(10.5)
계	609(100.0)	846(100.0)	1,455(100.0)

*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 중 미상 63건을 제외한 복수응답분석결과임

강제추행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행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행 방식은 성기 이외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전체의 42.4%(569명)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피해자의 성기접촉이 393명(29.3%), 가해자의 성기접촉 132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손가락을 질이나 항문에 삽입한 경우가 56명(4.2%), 구강성교가 37명(2.8%)으로 나타났으며, 항문성교, 이물질 삽입 등의 가학적인 방식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20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추행의 방식

추행유형	빈도	%
성적 키스	106	7.9
성기이외의 신체적 접촉	569	42.4
피해자의 성기접촉	393	29.3
가해자의 성기접촉	132	9.8
구강성교	37	2.8
항문성교	18	1.3
이물질 삽입	2	0.1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에 삽입	56	4.2
기 타	28	2.1
계	1,341	100.0

* 복수응답결과임

2)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다음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의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강간은 음부에의 상처나 감염이, 강제추행은 음부 이외의 외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해석상 주의할 점은 강간범죄의 경우 피해 없음에는 처녀막파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해청소년의 연령이 낮아 강간미수나 강간방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간 범죄로 인해 처녀막 파열이라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녀막파열은 신체적인 피해로 집계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논외로 하고, 신체적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강간범죄가 강제추행보다 2차 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66.7%, 4.8%). 강간범죄의 경우 음부에 상처를 입어 감염이 있는 경우가 123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음부 이외의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로 모두 88명(24.4%)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의 결과로 임신에 이른 경우도 7명이 있었다.

<표 2-32> 피해의 정도

(단위:명(%))

피해의 정도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피해없음	120 (33.3)	797 (95.2)	917 (76.6)
음부에의 상처나 감염	123 (34.2)	12 (1.4)	135 (11.3)
음부이외의 외상	88 (24.4)	13 (1.6)	101 (8.4)
금전적 피해	13 (3.6)	5 (0.6)	18 (1.5)
임 신	7 (1.9)		7 (0.6)
기 타	9 (2.5)	10 (1.2)	19 (1.6)
계	360 (100.0)	837 (100.0)	1,197 (100.0)

* 복수응답결과임

성폭력범죄는 범행 자체만으로도 피해청소년에게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소년은 성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당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 범죄자들의 2차 피해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청소년들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아직 어리고,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속되는 범죄의 2차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7.6%가 성폭력범행이후에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2차 피해는 지속적인 성관계의 요구로 나타났다(56명, 3.9%). 그리고 강제추행(2.7%)보다는 강간범죄의 경우(15.5%) 2차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의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을 당한 경우가 16건(3.0%)이었으며, 강간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한 경우가 50건(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가

다시 강간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10건(1.8%)이 있었다. 강제추행에서도 추행 이후 가해자들이 협박과 공갈을 한 경우가 7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가 6건 있었다.

<표 2-33> 범행 이후 2차 피해의 여부 및 형태 (단위:명(%))

범행 이후 2차 피해의 여부 및 형태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피해없음	458(84.5)	857(97.3)	1,315(92.4)
협박/공갈	16(3.0)	7(0.8)	23(1.6)
지속적성관계요구	50(9.2)	6(0.7)	56(3.9)
강간미수	10(1.8)	5(0.6)	15(1.1)
기 타	8(1.5)	6(0.7)	14(1.0)
계	542(100.0)	881(100.0)	1,423(100.0)

*미상 5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어떤 경우에 강간·강제추행범죄의 지속적인 피해자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예측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개의 예측변인으로는 가해자와 청소년의 친소정도, 청소년의 장애여부, 가출여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 거주지의 근접성이 투입되었다. 관계의 친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 ‘동네 사람이나 친구의 부모 등 평소 알던 사람’, ‘가족이나 친인척’의 세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가해자와 청소년 관계의 친소정도, 청소년의 장애여부, 가출여부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판별력이 큰 것은 관계의 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의 장애여부, 가출여부인 것으로 결과되었다(<표 34> 참조). 청소년의 연령과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의 거주지 근접성 여부는 범죄의 지속성을 예측하는데 무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변인으로 범죄의 지속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은 76.9%로 비교적 양호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표 35> 참조). 판별분석의 결과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청소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청소년이 가출을 한 경우에 성범죄자로부터 일회 이상의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표 2-34> 강간 강제추행범죄의 지속성에 대한 판별변인

변 인	Wilks' λ	자유도(df1, df2)	F	판별함수와 변인간 상관
관계의 친소	0.699	1, 1	678.000	.909
청소년장애여부	0.662	2, 1	677.000	.263
가출의 여부	0.657	3, 1	676.000	.138

<표 2-35> 3개의 변인에 의한 분류표

(단위:명(%))

집 단	지속여부	예언집단		계
		1회에 그침	2회 이상	
실제집단	1회에 그침	202(72.4)	77(27.6)	279(100.0)
	2회 이상	10(11.4)	78(88.6)	88(100.0)

* 판별정확율 76.9%

다. 성매수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1) 범행관련 특성

성범죄자와 대상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은 인터넷이 91.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아는 사람 소개, 업소의 알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익명 내지는 차명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여타 방법에 비해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수의 위험성은 항상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근절책은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에서 성교인원은 90.3%가 일대일의 관계를 가졌으나, 나머지 9.7%는 성인이나 청소년 2인 이상의 집단성교가 이루어졌다. 특히 성인 1명이 청소년 2인 이상과 함께 성교를 한 경우는 전체의 9.1%(80명)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성매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성매수범들의 요구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성매수 시의 두려움과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표 2-36>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

만남방법	빈 도	%
인터넷	769	91.3
전화방	4	0.5
이동통신	2	0.2
거리 헌팅	5	0.6
아는 사람의 소개	36	4.3
업소의 알선	11	1.3
기타	15	1.8
계	842	100.0

* 미상 38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청소년들은 가출 후 생활상의 필요나 소비에 대한 욕구로 인해 성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낯선 성인 남성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제로 다른 범죄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친구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끼리 성매수 장소까지 함께 동행을 하거나, 그 과정에 함께 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도 한다.

<표 2-37> 성교인원

성교인원	빈도	%
일대일	795	90.3
청소년 1인-성인 2인 이상	3	0.3
청소년 2인 이상-성인 1인	80	9.1
청소년 2인 이상-성인 2인 이상	2	0.2
계	880	100.0

성매수 범죄자들의 피해청소년에 대한 착취의 형태는 성교유형에서도 드러난다. 성교유형은 대부분의 경우(91.6%, 820명) 성기성교가 이루어지지만, 청소년 성매수시 범죄자들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또는 기타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8.4%(75명)를 차지한다.

<표 2-38> 성교유형(중복응답)

성교유형	빈도	%
성기	820	91.6
구강	34	3.8
항문	10	1.1
기타	31	3.5
계	895	100.0

* 미상 2건을 제외한 복수응답분석결과임

성매수 범 죄는 청소년이 업소나 보도방을 매개로 한 경우보다는 개인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860건(98.3%)이 개인형이며, 나머지 15건(1.7%)가 전화방이나 보도방을 통한 업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성매매 유형

성매매 유형	빈도	%
개인형	860	98.3
업소형	12	1.4
기타	3	0.3

* 미상 5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피해청소년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수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유형의 대가도 받지 못한 경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경우, 숙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이외의 선물 등의 기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89.8%(821명)가 성매수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은 사건이 8.8%(80명), 기타의 사례를 받은 사건이 0.2%(2명)이었으며, 어떠한 유형의 대가도 받지 못한 경우가 1.2%(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성매수의 대가

대가유형	빈 도	%
대가를 주지 않음	11	1.2
금전적 대가	821	89.8
숙식 제공	80	8.8
기타 사례	2	0.2
계	914	100.0

* 미상 10건을 제외한 복수응답분석결과임

성매수의 이유를 살펴보면 용돈이나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06명(7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66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10명, 2.5%), 남성의 유혹에 넘어가서(9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채무를 위해서, 사고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각각 1명과 3명이 있었다.

<표 2-41> 성매매이유

성매매이유	빈 도	%
용돈이나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306	76.7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1	0.3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3	0.8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10	2.5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66	16.5
남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9	2.3
기 타	4	1.0
계	399	100.0

* 미상 481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성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총 188명(32.3%)의 청소년들이 성매수 대가로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10만원 이상에서 15만원 미만(27.8%), 1만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성매수의 대가로 10만원 미만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42> 성매수금액

성매매금액	빈 도	%
일만원미만	15	2.6
일만원 이상-5만원 미만	136	23.4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88	32.3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162	27.8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51	8.8
20만원 이상	30	5.2
계	582	100.0

* 미상 465건을 제외한 복수응답분석결과임

2) 피해관련특성

청소년들은 성매수 시에 다른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 나타난 성범죄의 경우에 3.6%(32명)가 성매수 이외에 다른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이외에 다른 피해를 당한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 0.8%(7명), 약속한 것보다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와 전혀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각각 0.7%(6명)와 0.8%(7명)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절도로 0.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피해유형으로는 협박/위협(3명), 스토킹(1명)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수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 청소년들은 성매수 이후 협박, 폭력, 절도 등과 같은 다른 범죄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43> 다른 피해 사항

타피해	빈 도	%
다른 피해 없음	847	96.4
폭 행	7	0.8
절 도	5	0.6
협박/위협	3	0.3
성매매이후 스토킹	1	0.1
적은대가	6	0.7
대가 없음	7	0.8
기 타	3	0.3
계	879	100.0

*미상 1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라. 성매수 알선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성매수 알선범죄와 관련하여 업소가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가 47.0%(3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상남도(11.1%, 9건), 부산광역시(6건, 9.1%), 서울(4건,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도수가 적지만, 성매수 알선범죄자의 업소 분포에서 광주 광역시가 서울이나 경남보다 더 높아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지역

업소가 위치한 지역	빈도	%
서울	4	6.1
부산	6	9.1
대구	1	1.5
인천	4	6.1
광주	31	47.0
울산	1	1.5
경기	3	4.5
경남	9	13.6
전남	3	4.5
강원	3	4.5
제주	1	1.5
계	66	100.0

청소년 성매수를 알선한 업소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티켓다방(53.0%, 35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단란주점 10.6%(7건), 여관(7.6%,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수 시장에 진입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주로 티켓다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5> 성매매 업소유형

업소유형	빈도	%
단란주점	7	10.6
티켓다방	35	53.0
여관	5	7.6
기타	19	28.8
계	66	100.0

청소년 성매수를 알선하여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업소에서 역할을 분석하였다. 56.8%(45명)가 업소의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업소의 관리자(6명, 9.1%)와 여관 주인(3명, 4.5%), 카맨이나 오토맨(3명, 4.5%)으로 나타났다.

<표 2-46> 업소에서 범죄자의 역할

역 할	빈 도	%
사 장	45	68.2
관리자	6	9.1
카맨/오토맨	3	4.5
여관주인	3	4.5
기 타	9	13.6
계	66	100.0

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의 수를 보면 2명이 36건(59.0%)으로 가장 많고, 1명이 11건(18.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3명(9건, 14.8%), 5명(5건, 8.2%)이 뒤를 이었다.

<표 2-47> 업소별 고용수 분포

고용수	빈 도	%
1명	11	18.0
2명	36	59.0
3명	9	14.8
5명	5	8.2
계	61	100.0

*미상 5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제2절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이하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우리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간강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2008년 5월에는 동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 법률체계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형사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특성을 준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가해자의 특성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재범억제방안 등의 논의에 있어서도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향과 맞닿을 수 있다.

1.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가. 성범죄의 유형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13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사건은 568건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34.5%(133건), 강제추행은 64.5%(415건), 성매수는 2.5%(19건), 알선은 2.5%(1건)로 강제추행의 경우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성매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8> 성범죄 유형별 13세 미만 성범죄 현황

(단위:명(%))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13세 미만	133(34.5)	415(64.5)	19(2.5)	1(2.5)	568(30.9)
13세 이상	252(65.5)	228(35.5)	752(97.5)	39(97.5)	1,271(69.1)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가. 연령

성범죄 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세 미만인 경우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168명, 29.6%), 13세 이상인 경우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5명, 39.7%). 이는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는 13세 미만에서 30대(23.3%)와 40대(41.4%)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은 40대(113명, 27.2%)와 50대(86명, 20.7%)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13세 이상의 경우 강간에서는 20대(100명, 39.7%), 30대(72명, 28.6%)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에서는 30대(68명, 29.8%)와 40대(85명, 37.3%)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2-49>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연령분포 (단위:명(%))

피해자 연령	범죄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13세 미만	20대	25(18.8)	57(13.7)	10(52.6)	1(100.0)	93(16.4)
	30대	31(23.3)	82(19.8)	8(42.1)	-	121(21.3)
	40대	55(41.4)	113(27.2)	-	-	168(29.6)
	50대	14(10.5)	86(20.7)	-	-	100(17.6)
	60대	7(5.3)	65(15.7)	1(5.3)	-	73(12.9)
	70대 이상	1(0.8)	12(2.9)	-	-	13(2.3)
	계	133(100.0)	415(100.0)	19(100.0)	1(100.0)	568(100.0)
13세 이상	10대	1(0.4)	-	1(0.1)	1(2.6)	3(0.2)
	20대	100(39.7)	31(13.6)	263(35.0)	20(51.3)	414(32.6)
	30대	72(28.6)	68(29.8)	352(46.8)	13(33.3)	505(39.7)
	40대	53(21.0)	85(37.3)	111(14.8)	3(7.7)	252(19.8)
	50대	23(9.1)	30(13.2)	21(2.8)	2(5.1)	76(6.0)
	60대	2(0.8)	14(6.1)	4(0.5)	-	20(1.6)
	70대 이상	1(0.4)	-	-	-	1(0.1)
계	252(100.0)	228(100.0)	752(100.0)	39(100.0)	1,271(100.0)	

즉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반대로 가해자의 연령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2,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13세미만의 경우에는 13세 이상보다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전 과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성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세미만 피해자에서는 동종전과자가 89명(15.6%)으로 나타났고, 13세 이상에서는 동종전과자가 191명(15.0%)으로 나타난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에 동종전과자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13세미만 피해자에서 강간범죄의 동종전과자는 30명(22.6%), 13세미만 피해자에서 강제추행범죄의 동종전과자는 56명(13.5%)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3세 이상 집단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으나(강간 56명, 22.2%, 강제추행 39명, 17.1%),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이상에서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13세 이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수 범죄에서는 13세미만 대상 범죄자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명(15.8%), 13세 이상 대상 범죄자는 88명(11.7%)로 나타났다.

<표 2-50>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단위:명(%))

연령	범죄자 전과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13세 미만	전과 없음	33(24.8)	143(34.5)	9(47.4)	-	185(32.6)
	이종전과	70(52.6)	216(52.0)	7(36.8)	1(100.0)	294(51.8)
	동종전과	9(6.8)	9(2.2)	1(5.3)	-	19(3.3)
	이종+동종전과	21(15.8)	47(11.3)	2(10.5)	-	70(12.3)
	계	133(100.0)	415(100.0)	19(100.0)	1(100.0)	568(100.0)
13세 이상	전과 없음	76(30.2)	47(20.6)	366(48.7)	11(28.2)	500(39.3)
	이종전과	120(47.6)	142(62.3)	297(39.5)	20(51.3)	579(45.6)
	동종전과	8(3.2)	7(3.1)	28(3.7)	3(7.7)	46(3.6)
	이종+동종전과	48(19.0)	32(14.0)	61(8.1)	5(12.8)	146(11.5)
	계	252(100.0)	228(100.0)	752(100.0)	39(100.0)	1,271(100.0)

3.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가. 범행 장소

강간과 강제추행범죄를 합하여 13세 미만 피해자 집단과 13세 이상 피해자 집단간에 범행장소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13세 이상 피해자 집단에서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13세미만 집단에 비해 높았고, 13세 미만 집단에서는 피해자의 집안이나 놀이터, 학교·학원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아동들은 집안이나 놀이터, 학교주변에서 범행의 대상이 되고,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2-51>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차이검증

범행장소	13세 미만 여부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길(대로, 골목 등)	90(11.9)	84(12.5)	174(12.2)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75(9.9)	77(11.5)	152(10.7)
공원, 야산 등	60(8.0)	44(6.6)	104(7.3)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22(2.9)	88(13.1)	110(7.7)
피해자의 집	152(20.2)	114(17.0)	266(18.7)
가해자의 집	122(16.2)	110(16.4)	232(16.3)
제3자의 집	26(3.4)	29(4.3)	55(3.9)
자동차안	53(7.0)	45(6.7)	98(6.9)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 등	75(9.9)	17(2.5)	92(6.5)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72(9.5)	58(8.6)	130(9.1)
기타	7(0.9)	5(0.7)	12(0.8)
계	754(100.0)	671(100.0)	1,425(100.0)

* $\chi^2 = 83.01$ $p < .001$

* 강간·강제추행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연령집단에 따른 범죄유형별 범행장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범죄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강간의 경우는 피해자의 집이, 강제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길(대로, 골목), 놀이터와 학교나 학원 주변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52>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단위:명(%))

연 령	범행장소	죄 명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길(대로, 골목)	8(4.8)	82(13.9)	-	90(11.6)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25(15.1)	50(8.5)	-	75(9.7)
	공원, 야산 등	7(4.2)	53(9.0)	-	60(7.8)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7(4.2)	50(8.5)	10(52.6)	67(8.7)
	피해자의 집	56(33.7)	96(16.3)	-	152(19.7)
	가해자의 집	27(16.3)	95(16.2)	6(31.6)	128(16.6)
	제3자의 집	8(4.8)	18(3.1)	-	26(3.4)
	자동차안	18(10.8)	35(6.0)	3(15.8)	56(7.2)
	놀이터, 학교, 학원주변	2(1.2)	73(12.4)	-	75(9.7)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6(3.6)	31(5.3)	-	37(4.8)
	기타	2(1.2)	5(0.9)	-	7(0.9)
	계	166(100.0)	588(100.0)	19(100.0)	773(100.0)
13세 이상	길(대로, 골목)	12(3.2)	72(24.6)	2(0.2)	86(5.6)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44(11.6)	33(11.3)	4(0.5)	81(5.3)
	공원, 야산	31(8.2)	13(4.4)	-	44(2.9)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68(18.0)	56(19.1)	613(71.4)	737(48.2)
	피해자의 집,	75(19.8)	39(13.3)	8(0.9)	122(8.0)
	가해자의 집	72(19.0)	38(13.0)	129(15.0)	239(15.6)
	제3자의 집	23(6.1)	6(2.0)	18(2.1)	47(3.1)
	자동차안	35(9.3)	10(3.4)	81(9.4)	126(8.2)
	놀이터, 학교, 학원주변	7(1.9)	10(3.4)	1(0.1)	18(1.2)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7(1.9)	15(5.1)	3(0.3)	25(1.6)
	기타	4(1.1)	1(0.3)	-	5(0.3)
	계	378(100.0)	293(100.0)	859(100.0)	1,530(100.0)

* 미상 5건(연령미상 1건, 범행장소미상 4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피해자 집의 경우, 13세 미만 강간에서 33.7%(56명), 13세 이상 강간에서 19.8%(75명),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16.3%(96명), 13세 이상 강제추행에서 13.3%(39명)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강간범죄가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의 범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주거지와 가해자의 집으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13세 미만 강간 65.1%(108명), 13세 이상 강간 50.4%(191명), 13세 미만 강제추행 41.0%(241명), 13세 이상 강제추행 37.6%(110명)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 피해자 혹은 가해자 모두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범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내부에서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13세 미만의 경우가 10.8%(18명)로서 13세 이상의 경우인 9.3%(35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대로 혹은 골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13세 미만 13.9%(82명), 13세 이상 24.6%(72명)), 다음으로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13세 미만 8.5%(50명), 13세 이상 19.1%(56명))에서 강제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놀이터 및 학교, 학원 주변 등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12.4%(73명), 공원, 야산 등이 9.0%(53명)로 나타나 놀이터 및 학교, 학원 주변과 공원, 야산 등의 장소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 범행시간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 범행시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강간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45.6%(67명)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경우는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강간범죄가 64.7%(223명)가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동일한 시간대의 38.1%(56명)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표 2-53> 성범죄 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시간

(단위:명(%))

피해자의 연령	범행시간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새벽(1-6시)	22(15.0)	60(11.5)	6(35.3)	88(12.8)
	오전(7-12시)	24(16.3)	65(12.4)	4(23.5)	93(13.5)
	오후(13-18시)	67(45.6)	323(61.8)	2(11.8)	392(57.1)
	밤(19-24시)	34(23.1)	75(14.3)	5(29.4)	114(16.6)
	계	147(100.0)	523(100.0)	17(100.0)	687(100.0)
13세 이상	새벽(1-6시)	101(29.3)	77(28.2)	151(21.5)	329(24.9)
	오전(7-12시)	45(13.0)	37(13.6)	63(9.0)	145(11.0)
	오후(13-18시)	77(22.3)	67(24.5)	171(24.4)	315(23.9)
	밤(19-24시)	122(35.4)	92(33.7)	317(45.2)	531(40.2)
	계	345(100.0)	273(100.0)	702(100.0)	1,320(100.0)

* 미상 301(연령미상 1건, 범행시간 300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강제추행의 경우도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범죄가 61.8%(323명)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세 이상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저녁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61.9%(169명)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시간대에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25.8%(135명)가 발생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다.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 동거인에 의한 강간범죄 가해비율은 13세 미만 강간 23.3%(31명)로 나타나, 13세 이상 강간의 15.2%(38명)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동네사람에 의한 13세 미만 강간과 강제추행도 각각 10.5%(14명)와 18.1%(74명)를 보여줌으로써 13세 이상 강간과 강제추행이 각각 6.8%(17명), 4.0%(9명)의 비율을 보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일 집단으로써는 청소년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동네 주변의 이웃이 매우 위험한 계층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조사결과는 가정 내 문제가 일정한 한계상황에 다다르기 전에 국가가

개인의 친권과 양육권 등 민사적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존 연구가 지역사회 내 유대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표면적으로만 나타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도 시사해주고 있다.

<표 2-54>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단위: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모르는 사람	61(45.9)	247(60.4)	308(56.8)
	친 부	12(9.0)	17(4.2)	29(5.4)
	의 부	13(9.8)	7(1.7)	20(3.7)
	모의 동거인	6(4.5)	4(1.0)	10(1.8)
	친 척	4(3.0)	5(1.2)	9(1.7)
	친 구	1(0.8)	-	1(0.2)
	동네 사람	14(10.5)	74(18.1)	88(16.2)
	권력관계	2(1.5)	17(4.2)	19(3.5)
	부모의 친구	8(6.0)	16(3.9)	24(4.4)
	친구의 아버지	6(4.5)	6(1.5)	12(2.2)
	기 타	6(4.5)	16(3.9)	22(4.1)
	계	133(100.0)	409(100.0)	542(100.0)
	13세 이상	모르는 사람	139(55.6)	161(71.2)
친 부		18(7.2)	12(5.3)	30(6.3)
의 부		11(4.4)	6(2.7)	17(3.6)
모의 동거인		9(3.6)	1(0.4)	10(2.1)
친 척		11(4.4)	4(1.8)	15(3.2)
친 구		11(4.4)	1(0.4)	12(2.5)
동네 사람		17(6.8)	9(4.0)	26(5.5)
권력관계		11(4.4)	18(8.0)	29(6.1)
친오빠		-	1(0.4)	1(0.2)
부모의 친구		3(1.2)	4(1.8)	7(1.5)
친구의 아버지		2(0.8)	4(1.8)	6(1.3)
기 타		18(7.2)	5(2.2)	23(4.8)
계		250(100.0)	226(100.0)	476(100.0)

* 미상 10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성범죄사건기준)

제3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특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친족관계 등에 의한 강간 등에 있어 형법상의 처벌 보다 가중처벌 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친족관계에는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친척, 친오빠를 포함하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사건은 친족인지, 친족이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미상을 제외하고 범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1건으로 전체 범죄의 7.7%이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1건으로 전체의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과 성범죄자의 특성에서는 범죄자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제시하였고, 성범죄 피해자 특성과 범행 특성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가. 성범죄의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간(84건, 21.8%)과 강제추행(8.7%, 56명)이고 나머지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는 성매수에서 1건(0.1%)만이 있었다(고모부-조카),

<표 2-55> 친족관계여부별 성범죄 건수 (단위:건(%))

관계유형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친 족	84(21.8)	56(8.7)	1(0.1)	-	141(7.7)
비친족	301(78.2)	587(91.3)	770(99.9)	40(100.0)	1,698(92.3)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 친족관계에서는 고모부가 조카에게 성매수를 한 경우가 1건 있었음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죄자 특성

가. 연령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성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의 경우 성범죄자의 연령이 40대가 57.9%(8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로 23.6%(33명)를 차지하고 있다.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40대(25.3%, 225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대(24.8%, 2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가해자가 친족의 경우 범죄자 연령은 40대가 53.6%(46명)였고, 그 다음이 30대(27.4%, 23명) 순이었다. 그러나 비친족의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차지(40.9%, 123명)하였고 그 다음이 30대(26.6%, 80명) 순이었다.

<표 2-56>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죄자의 연령 (단위:명(%))

관계유형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친족	20대	2(2.4)	1(1.8)	3(2.1)
	30대	23(27.4)	10(17.9)	33(23.6)
	40대	45(53.6)	36(64.3)	81(57.9)
	50대	14(16.7)	6(10.7)	20(14.3)
	60대	0(0.0)	3(5.4)	3(2.1)
	계	84(100.0)	56(100.0)	140(100.0)
비친족	10대	1(0.3)	0(0.0)	1(0.1)
	20대	123(40.9)	87(14.8)	210(23.6)
	30대	80(26.6)	140(23.9)	220(24.8)
	40대	63(20.9)	162(27.6)	225(25.3)
	50대	23(7.6)	110(18.7)	133(15.0)
	60대	9(3.0)	76(12.9)	85(9.6)
	70대 이상	2(0.7)	12(2.0)	14(1.6)
	계	301(100.0)	587(100.0)	888(100.0)

강제추행은 친족관계의 경우 성범죄자의 연령이 40대가 64.3%(3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와 50대가 각각 17.9%(10명), 10.7%(6명)를 차지하고

있다.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친족관계의 경우는 연령분포가 30대에서 50대에 걸쳐서 강간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 과

비친족관계의 경우 가해자의 전과가 없는 경우가 38.8%(658명)인 반면, 친족관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전과가 없는 경우가 19.1%(27명)로 나타났다. 친족관계의 경우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가 13.4%(19명)인 반면에,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가 15.4%(262명)로 친족관계에 비해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 동종전과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은폐된 채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족관계에서 가해자들의 동종전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범죄발생 초기에 검거되지 않은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중전과의 경우는 반대로 친족관계의 경우가 78.0%(110명)로 비친족관계(57.6%, 979명)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표 2-57> 친족 비친족관계 여부별 범죄자 전과 (단위:명(%))

범죄자 전과	친족관계분류		계
	친족관계	비친족관계	
전과없음	27(19.1)	658(38.8)	685(37.2)
이중전과	95(67.4)	778(45.8)	873(47.5)
동종전과	4(2.8)	61(3.6)	65(3.5)
이중+동종전과	15(10.6)	201(11.8)	216(11.7)
계	141(100.0)	1,698(100.0)	1,839(100.0)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성범죄자의 동종전과를 보면 강간은 친족관계의 경우(14.3%, 12명)가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24.6%, 74명)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제추행의 경우에서도 친족관계(12.5%, 7명)가 비친족관계(15.0%, 88명)보다 동종전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8>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단위:명(%))

관계유형	범죄자 전과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전과없음	17(20.2)	10(17.9)	27(19.3)
	이종전과	55(65.5)	39(69.6)	94(67.1)
	동종전과	3(3.6)	1(1.8)	4(2.9)
	이종+동종전과	9(10.7)	6(10.7)	15(10.7)
	계	84(100.0)	56(100.0)	140(100.0)
비친족	전과없음	92(30.6)	180(30.7)	272(30.6)
	이종전과	135(44.9)	319(54.3)	454(51.1)
	동종전과	14(4.7)	15(2.6)	29(3.3)
	이종+동종전과	60(19.9)	73(12.4)	133(15.0)
	계	301(100.0)	587(100.0)	888(100.0)

한편 친족관계 성범죄자의 이종전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과 3범 이상 10범 이하인 경우가 62.4%(40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3-5범의 경우 강간이 35.9%(23명)와 강제추행이 40.0%(18명)로 두 범죄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친족관계 성범죄자들 중에 심각한 전과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9>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이종전과

(단위:명(%))

이종전과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1회	9(14.1)	6(13.3)	1(13.8)
2회	15(23.4)	4(8.9)	19(17.4)
3-5회	23(35.9)	18(40.0)	41(37.6)
6-10회	15(23.4)	12(26.7)	27(24.8)
10회 이상	2(3.1)	5(11.1)	7(6.4)
계	64(100.0)	45(100.0)	109(100.0)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동종전과 횟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동종전과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1회의 동종전과경력이 14명(73.7%)으로 동종전과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전체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종전과와는 달리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1회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회 이상의 성범죄 전과를 가진 가해자들도 총 5명(26.4%)으로 나타났다.

<표 2-60>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동종전과 (단위:명(%))

동종전과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1회	9(75.0)	5(71.4)	14(73.7)
2회	3(25.0)	1(14.3)	4(21.1)
3회	-	1(14.3)	1(5.3)
계	12(100.0)	7(100.0)	19(100.0)

동종전과의 죄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이 18명(75.0%)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강제추행이 3명(12.5%), 성매수가 1명(12.2%), 알선이 43명(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동종전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동일하게 강간을 저지른 경우가 78.6%(11명)였고, 강제추행의 경우, 동일하게 강제추행의 전과를 가진 경우가 10.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는 다시 강간을 저지른 전과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7명, 70.0%) 비율을 보였다.

<표 2-61> 친족관계 성범죄자들의 동종전과 범죄유형 (단위:명(%))

죄 명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강 간	11(78.6)	7(70.0)	18(75.0)
강제추행	2(14.3)	1(10.0)	3(12.5)
성매수	1(7.1)	-	1(4.2)
기 타	-	2(20.0)	2(8.3)
계	14(100.0)	10(100.0)	24(100.0)

다. 직 업

친족관계 성범죄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친족에 비해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역시

친족관계중 생산직과 사무직이 비친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강제추행의 경우 생산직과 판매직이 비친족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표 2-62>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직업유형 (단위:명(%))

관계유형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친족	전문기술직	7(8.3)	4(7.3)	11(7.9)
	행정관리직	1(1.2)	1(1.8)	2(1.4)
	사무직	15(17.9)	2(3.6)	17(12.2)
	판매직	3(3.6)	6(10.9)	9(6.5)
	서비스직	4(4.8)	4(7.3)	8(5.8)
	농어업직	5(6.0)	1(1.8)	6(4.3)
	생산직	33(39.3)	19(34.5)	52(37.4)
	미취업	16(19.0)	18(32.7)	34(24.5)
	계	84(100.0)	55(100.0)	139(100.0)
비친족	전문기술직	11(3.7)	42(7.2)	53(6.0)
	행정관리직	4(1.3)	4(0.7)	8(0.9)
	사무직	26(8.7)	61(10.4)	87(9.9)
	판매직	12(4.0)	34(5.8)	46(5.2)
	서비스직	53(17.7)	73(12.5)	126(14.3)
	농어업직	9(3.0)	16(2.7)	25(2.8)
	생산직	67(22.4)	157(26.9)	224(25.4)
	미취업	117(39.1)	197(33.7)	314(35.6)
	계	299(100.0)	584(100.0)	883(100.0)

* 미상 6건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 특성

가. 연령

범죄유형에 따라 연령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7세 이상-13세 미만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친족관계 51.8%(29명), 비친족관계 53.0%(311명)), 다음으로 친족관계에서는 13세 이상-16세 미만이 30.4%(17명)로 나타났

으나, 비친족관계에서는 13세 이상-16세 미만 그리고 16세 이상이 각각 18.1%(106명)와 16.9%(99명)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의 경우 7세 이상-13세미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이 모두 40.5%(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친족관계의 경우 16세 이상이 38.2%(11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체로 친족관계 하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강간에서 두드러진다.

<표 2-63>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피해자연령 (단위:명(%))

관 계	피해자연령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7세 미만	1 (1.2)	4 (7.1)	5 (3.6)
	7세 이상~13세 미만	34 (40.5)	29 (51.8)	63 (45.0)
	13세 이상~16세 미만	34 (40.5)	17 (30.4)	51 (36.4)
	16세 이상	15 (17.9)	6 (10.7)	21 (15.0)
	계	84 (100.0)	56 (100.0)	140 (100.0)
비친족	7세 미만	8 (2.7)	71 (12.2)	79 (8.9)
	7세 이상~13세 미만	90 (29.9)	311 (53.0)	401 (45.2)
	13세 이상~16세 미만	88 (29.2)	106 (18.1)	194 (21.8)
	16세 이상	115 (38.2)	99 (16.9)	214 (24.1)
	계	301 (100.0)	587 (100.0)	888 (100.0)

나. 정신·신체장애 유무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친족관계와 비친족관계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친족관계에서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각각 3명과 1명이었고, 비친족관계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총 34명, 신체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3명임을 알 수 있다.

<표 2-64>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장애여부

(단위:명(%))

관 계	전과횟수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장애없음	87(97.8)	69(97.2)	156(97.5)
	신체장애	1(1.1)	-	1(0.6)
	정신장애	1(1.1)	2(2.8)	3(1.9)
	계	89(100.0)	71(100.0)	160(100.0)
비친족	장애없음	432(94.5)	794(97.9)	1,226(96.7)
	신체장애	2(0.4)	1(0.1)	3(0.2)
	정신장애	22(4.8)	12(1.5)	34(2.7)
	미 상	1(0.2)	4(0.5)	5(0.4)
	계	457(100.0)	811(100.0)	1,268(100.0)

4.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가. 범행장소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행 장소를 살펴보면, 강간은 친족관계의 경우 거의 모든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의 공동주거지(69.3%, 61명)와 같은 곳이나 가해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과 같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반면에(3곳에서 발생한 범죄를 합제한 경우 그 비율은 89.7%(79명)임), 친족이외의 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26.8%, 122명),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이 19.7%(90명)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자동차,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등 친족범죄에 비해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의 공동주거지나 피해자의 집과 같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반면에(3곳에서 발생한 범죄를 합제한 경우 그 비율은 84.5%(60명)임),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줄고, 길(대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친족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65> 성범죄유형 및 친족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단위:명(%))

관 계	범행장소	죄 명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친 족	길(대로, 골목)	-	1(1.4)	-	1(0.6)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61(69.3)	50(70.4)	-	111(69.4)
	공원, 야산 등	2(2.3)	1(1.4)	-	3(1.9)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5(5.7)	2(2.8)	-	7(4.4)
	피해자의 집	9(10.2)	6(8.5)	-	15(9.4)
	가해자의 집	9(10.2)	4(5.6)	1(100.0)	14(8.8)
	제3자의 집	-	1(1.4)	-	1(0.6)
	자동차안	2(2.3)	4(5.6)	-	6(3.8)
	놀이터, 학교, 원주변	-	1(1.4)	-	1(0.6)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	1(1.4)	-	1(0.6)
계	88(100.0)	71(100.0)	1(100.0)	160(100.0)	
비친족	길(대로, 골목)	20(4.4)	153(18.9)	2(0.2)	175(8.2)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8(1.8)	33(4.1)	4(0.5)	45(2.1)
	공원, 야산 등	36(7.9)	65(8.0)	-	101(4.7)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70(15.4)	104(12.8)	623(71.0)	797(37.2)
	피해자의 집	122(26.8)	129(15.9)	8(0.9)	259(12.1)
	가해자의 집	90(19.7)	129(15.9)	134(15.3)	353(16.5)
	제3자의 집	31(6.8)	23(2.8)	18(2.1)	72(3.4)
	자동차안	51(11.2)	41(5.1)	84(9.6)	176(8.2)
	놀이터, 학교, 원주변	9(2.0)	82(10.1)	1(0.1)	92(4.3)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	13(2.9)	45(5.5)	3(0.3)	61(2.8)
	기타	6(1.3)	7(0.9)	-	13(0.6)
계	456(100.0)	811(100.0)	877(100.0)	2,144(100.0)	

* 미상 4건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나. 강제력 사용의 방법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 여부별 강압 및 강제방식을 살펴보면, 강간은 친족관계의 경우 절반이상의 범죄가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9.5%, 45명). 이러한 완력을 사용한 강제방식은 비친족관계(25.1%, 130명)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친족관계이든 친족이외의 관계든 간에 완력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족관계의 경우보다(51.4%, 38명), 친족이외의 관계에서 완력사용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2.0%, 479명).

<표 2-66>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강압 및 강제방식 (단위:명(%))

관계유형	강제방식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말로 협박	14(15.4)	5(6.8)	19(11.5)
	흉기로 협박	4(4.4)	2(2.7)	6(3.6)
	구 타	6(6.6)	4(5.4)	10(6.1)
	흉기로 폭행	-	1(1.4)	1(0.6)
	인신 속박	1(1.1)	2(2.7)	3(1.8)
	완력의 사용	45(49.5)	38(51.4)	83(50.3)
	약물이용	-	1(1.4)	1(0.6)
	위계/위력	13(14.3)	9(12.2)	22(13.3)
	기 타	8(8.8)	12(16.2)	20(12.1)
	계	91(100.0)	74(100.0)	165(100.0)
비친족	말로 협박	64(12.4)	60(7.8)	124(9.6)
	흉기로 협박	101(19.5)	23(3.0)	124(9.6)
	구 타	73(14.1)	16(2.1)	89(6.9)
	흉기로 폭행	4(0.8)	-	4(0.3)
	인신 속박	55(10.6)	4(0.5)	59(4.6)
	완력의 사용	130(25.1)	479(62.0)	609(47.2)
	약물이용	5(1.0)	1(0.1)	6(0.5)
	감 금	10(1.9)	3(0.4)	13(1.0)
	위계/위력	46(8.9)	83(10.8)	129(10.0)
	기 타	30(5.8)	103(13.3)	133(10.3)
	계	518(100.0)	772(100.0)	1,290(100.0)

* 미상 63건을 제외한 복수응답분석결과임

다. 지속성과 2차 피해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죄의 지속여부 및 기간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와 친족이외의 관계에서 그 지속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범위가 1회에 그친 경우가 친족관계에서는 29.6% (47명)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70.4%(112명)에 이르는 범위가 1회 이상 지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친족이외의 관계에서는 범위가 1회에 그친 경우가 84.0%(1,064명)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친족관계의 경우 범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50.6%(45명)로 가장 많았으며,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81.6%(373명)가 1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친족관계의 경우 1회에 그친 경우가 42.9%(30명)로, 나머지 57.1%(40명)이상이 범위가 1회 이상 지속되었으며 1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85.4%(691명)가 범위가 1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족관계에서는 친족이외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그 지속성이 높아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표 2-67> 성범죄 유형 및 친족 여부에 따른 범행지속기간 (단위:명(%))

관계유형	범행지속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1회에 그침	17(19.1)	30(42.9)	47(29.6)
	1개월 이하	6(6.7)	6(8.6)	12(7.5)
	1-5개월	17(19.1)	8(11.4)	25(15.7)
	6-12개월	4(4.5)	8(11.4)	12(7.5)
	1년 이상	45(50.6)	18(25.7)	63(39.6)
	계	89(100.0)	70(100.0)	159(100.0)
비친족	1회에 그침	373(81.6)	691(85.4)	1,064(84.0)
	1개월 이하	35(7.7)	50(6.2)	85(6.7)
	1-5개월	21(4.6)	33(4.1)	54(4.3)
	6-12개월	16(3.5)	19(2.3)	35(2.8)
	1년 이상	12(2.6)	16(2.0)	28(2.2)
	계	457(100.0)	809(100.0)	1,266(100.0)

* 미상 6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지속성은 범행 후 2차 폭력에 있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친족관계에서 강간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비율이 29.9%(26명)에 이르고 있어 비친족관계의 경우인 5.3%(24명)와 대비된다.

<표 2-68>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행 후 2차폭력

(단위:명(%))

관계유형	2차 폭력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2차 폭력없었음	54(62.1)	66(94.3)	120(76.4)
	협박/공갈	3(3.4)	-	3(1.9)
	지속적인성관계요구	26(29.9)	2(2.9)	28(17.8)
	강간미수	3(3.4)	2(2.9)	5(3.2)
	기 타	1(1.1)	-	1(0.6)
	계	87(100.0)	70(100.0)	157(100.0)
비친족	2차 폭력없었음	404(88.8)	791(97.5)	1,195(94.4)
	협박/공갈	13(2.9)	7(0.9)	20(1.6)
	지속적인성관계요구	24(5.3)	4(0.5)	28(2.2)
	강간미수	7(1.5)	3(0.4)	10(0.8)
	기 타	7(1.5)	6(0.7)	13(1.0)
	계	455(100.0)	811(100.0)	1,266(100.0)

* 미상 5건을 제외한 중복응답분석결과임

제4절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성범죄의 유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미성년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죄명, 전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성범죄자 1,839명 중에서 미성년 가해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8명이 그 대상이다. 먼저 죄명을 보면 강간이 7명(87.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제추행이 1명(12.5%)으로 나타났다.

<표 2-69> 미성년 성범죄자의 죄명

죄 명	도	%
강 간	7	87.5
강제추행	1	12.5
계	8	100.0

다음으로 구체적 죄명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강간이 4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강간 및 상해가 3명, 청소년 강제추행이 1명인 것으로 결과되었다.

<표 2-70> 미성년 성범죄자의 구체적 죄명

죄 명	빈 도	%
청소년 강간	4	50.0
청소년 강간 및 상해	3	37.5
청소년 강제추행	1	12.5
계	8	100.0

2.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특성

미성년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각 2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는 미성년 성범죄자들이 각 1명씩이었다.

<표 2-71> 미성년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지역	빈 도	%
서울특별시	1	(12.5)
대구광역시	2	(25.0)
대전광역시	1	(12.5)
경상북도	2	(25.0)
경상남도	2	(25.0)
계	8	(100.0)

미성년 성범죄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2-72> 미성년 성범죄자의 직업

직업	빈도	%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2	25.0
무직(실업)	6	75.0
계	8	100.0

미성년 성범죄자들의 전과유형을 분석하였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전과가 3명으로 나타났다.

<표 2-73> 미성년 성범죄자의 전과유형

전과유형	빈도	%
전과없음	5	62.5
이중전과	3	37.5
계	8	100.0

이중전과횟수를 살펴보면 1회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2명, 3회에서 5회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1명으로 나타났다.

<표 2-74> 미성년 성범죄자의 이중전과횟수

이중전과횟수	빈도	%
1회	2	66.7
3-5회	1	33.3
계	3	100.0

피해자의 수를 살펴보면 미성년 성범죄자 1명당 1명의 피해자를 가진 사람들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명의 피해자를 가진 경우와 3명의 피해자를 가진 경우도 각 1명이 있었다.

<표 2-75>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총수

피해자의 수	빈도	%
1명	6	75.0
2명	1	12.5
3명	1	12.5
계	10	100.0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이 15세인 경우가 2명, 18세인 경우가 2명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은 것에 반해, 13세미만의 아동피해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6>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

피해자 연령	빈 도	%
12세	1	12.5
13세	1	12.5
14세	1	12.5
15세	2	25.0
16세	1	12.5
18세	2	25.0
계	8	100.0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와 친구인 경우가 각각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7>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빈 도	%
모르는 사람	4	50.0
친 구	4	50.0
계	10	100.0

제5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양형분석

1.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가. 전체 성범죄자의 처리현황

성범죄 유형별 경합범죄⁵⁾여부를 살펴보면 78.9%가 경합범이 아니었으며, 8.9%가 이중범죄경합, 8.2%가 동종범죄경합, 4.0%가 이중+동종범죄경합으로

5) 동일대상자에 대해 수회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법률상 경합범죄에 포함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 경우는 제외하여 경합범죄를 집계하였다.

처리되었다.

그러나 경합범죄 처리여부는 범죄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수 범죄는 전체의 6.0%만이 경합범이었으며, 강제추행은 19.8%, 강간은 47.8%였고, 성매수 알선은 경합범으로 처리된 비율이 88.0%로 가장 높았다. 강간의 경우 13.8%가 이중범죄 경합, 21.0%가 동종범죄경합, 11.9%가 이중+동종범죄 경합이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12.1%가 이중범죄경합, 5.8%가 동종범죄경합, 1.9%가 이중+동종범죄경합이었다. 성매수는 3.6%가 이중범죄경합, 1.9%가 동종범죄경합, 0.4%가 이중+동종범죄경합이었다. 성매수 알선은 10.0%가 이중범죄경합, 45.0%가 동종범죄경합, 32.5%가 이중+동종범죄경합이었다. 타 범죄 유형에 비해 성매수 알선과 강간범죄의 경우 경합범죄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8> 성범죄판결시 경합범죄의 처리여부 및 유형

(단위:명(%))

경합유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경합범아님	205(53.2)	516(80.2)	725(94.0)	5(12.5)	1,451(78.9)
이중범죄경합	53(13.8)	78(12.1)	28(3.6)	4(10.0)	163(8.9)
동종범죄경합	81(21.0)	37(5.8)	15(1.9)	18(45.0)	151(8.2)
이중+동종범죄경합	46(11.9)	12(1.9)	3(0.4)	13(32.5)	74(4.0)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성범죄의 일심 선고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벌금이 총 770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546명(29.7%), 집행유예(377명, 20.5%),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사회봉사, 수강명령)(136명,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징역/보호감호, 치료감호는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일심 선고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이 7명(1.8%), 유기징역이 244명(71.9%)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84명(73.7%)으로 나타나 다수의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들이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59명(15.3%)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총 34명(8.8%)으로 나타났다. 강제추

행의 경우는 유기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범죄의 경우, 일심에서 받은 선고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유기징역으로 총 112명(34.7%), 무기징역이 2명(0.3%)으로 총 114명, 35%의 추행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집행유예의 경우 총 201명(31.3%)의 강제추행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은 59명(9.2%)로 총 260명(0.5%)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나, 징역형선고를 받는 경우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벌금도 157명(24.4%)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강제추행범들의 경우, 징역형이 전체의 삼분의 일정도를 차지하고, 약 70%에 이르는 강제추행범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음을 알 수 있었다.

성매수의 경우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벌금형이 총 612명(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94명(12.2%)로 많았다.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는 37명, (4.8%)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는 28명(3.6%)으로 가장 적었다.

성매수 알선에서는 집행유예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명, 57.5%) 다음으로 유기징역이 9명(22.5%),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이 6명(15.0%), 유기징역/보호감호와 벌금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소년보호사건도 8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9> 성범죄 유형별 일심 선고유형

(단위:명(%))

일심 선고유형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무기징역	7(1.8)	2(0.3)	-	-	9(0.5)
유기징역	277(71.9)	223(34.7)	28(3.6)	9(22.5)	537(29.2)
집행유예	59(15.3)	201(31.3)	94(12.2)	23(57.5)	377(20.5)
집행유예/보호관찰등	34(8.8)	59(9.2)	37(4.8)	6(15.0)	136(7.4)
유기징역/보호감호	-	-	-	1(2.5)	1(0.1)
치료감호	1(0.3)	-	-	-	1(0.1)
벌 금	-	157(24.4)	612(79.4)	1(2.5)	770(41.9)
소년보호사건	7(1.8)	1(0.2)	-	-	8(0.4)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2.1%(774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기징역(26.4%, 486명)과 무기징역(0.4%, 8명)을 합한 징역형이 26.9%(494명), 집행유예가 22.6%(416명),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사회봉사, 수강명령포함)이 7.9%(146명), 소년보호사건도 0.4%(8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심의 결과와 비슷하나, 징역형이 약간 감소하고, 집행유예 및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유기징역이 254명(66.0%), 무기징역이 6명(1.6%)으로 징역형이 총 260명(67.6%)인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상의 강간범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78명(20.3%),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39명(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자 중에 치료감호가 1명 있었으며, 소년보호사건도 7명(1.8%)이 있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220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징역이 198명(30.8%), 무기징역이 2명(0.3%)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총 200명(31.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2-80>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유형

(단위:명(%))

최종심 선고유형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무기징역	6(1.6)	2(0.3)	-	-	8(0.4)
유기징역	254(66.0)	198(30.8)	27(3.5)	7(17.5)	486(26.4)
집행유예	78(20.3)	220(34.2)	93(12.1)	25(62.5)	416(22.6)
집행유예/보호관찰등	39(10.1)	63(9.8)	37(4.8)	7(17.5)	146(7.9)
치료감호	1(0.3)	-	-	-	1(0.1)
벌 금	-	159(24.7)	614(79.6)	1(2.5)	774(42.1)
소년보호사건	7(1.8)	1(0.2)	-	-	8(0.4)
계	385(100.0)	643(100.0)	771(100.0)	40(100.0)	1,839(100.0)

다음으로 벌금이 159명(24.7%),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이 63명(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614명(79.6%)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93명, 12.1%), 집행유예/보호관찰 등(37명, 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징역은 27명(3.5%)에 그쳤다. 성매수 알선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2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보호관찰

등과 유기징역이 각각 7명(17.5%)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벌금은 1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종심에서 강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강제추행과 성매수 알선은 집행유예, 성매수는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494명에 대한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14.5%(72명)가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17.2%(85명)가 1년 이상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18.8%(93명)가 2년 이상 3년 미만, 17.6%(87명)가 3년 이상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8%(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26.9%(7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년 이상-3년 미만(18.1%, 47명), 5년 이상 7년 미만이 16.5%(43명)를 차지하였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0%, 70명), 1년 미만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25.0%(50명), 2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20.5%(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1>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징역형선고분포

(단위:명(%))

징역형선고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1년 미만	2(0.8)	50(25.0)	19(70.4)	1(14.3)	72(14.5)
1년 이상-2년 미만	10(3.8)	70(35.0)	4(14.8)	1(14.3)	85(17.2)
2년 이상-3년 미만	47(18.1)	41(20.5)	1(3.7)	4(57.1)	93(18.8)
3년 이상-4년 미만	70(26.9)	15(7.5)	1(3.7)	1(14.3)	87(17.6)
4년 이상-5년 미만	38(14.6)	8(4.0)	2(7.4)	-	48(9.7)
5년 이상-7년 미만	43(16.5)	9(4.5)	-	-	52(10.5)
7년 이상-10년 미만	24(9.2)	4(2.0)	-	-	28(5.7)
10년 이상-15년 미만	9(3.5)	1(0.5)	-	-	10(2.0)
15년 미만	17(6.5)	2(1.0)	-	-	19(3.8)
계	260(100.0)	200(100.0)	27(100.0)	7(100.0)	494(100.0)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3명(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자 모두(100.0%)는 5년 미만의 형을 받았으며 이 중 1년 미만이 70.4%(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매수 알선 범죄의 경우 100%가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년 이상 3년 미만이 57.1%(4명)로 가장 많았다.

나.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13세 미만 피해자와 13세 이상 피해자 집단의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결과를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받은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표 2-82>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최종심결과 (단위:명(%))

연 령	최종심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무기징역	4(3.0)	2(0.5)	-	6(1.1)
	유기징역	96(72.2)	134(32.3)	1(5.3)	231(40.7)
	집행유예	22(16.5)	154(37.1)	8(42.1)	184(32.5)
	집행유예/보호관찰 등	9(6.8)	47(11.3)	3(15.8)	59(10.4)
	치료감호	1(0.8)	-	-	1(0.2)
	벌 금	-	78(18.8)	7(36.8)	85(15.0)
	소년보호사건	1(0.8)	-	-	1(0.2)
	계	133(100.0)	415(100.0)	19(100.0)	567(100.0)
13세 이상	무기징역	2(0.8)	-	-	2(0.2)
	유기징역	158(62.7)	64(28.1)	26(3.5)	248(20.1)
	집행유예	56(22.2)	66(28.9)	85(11.3)	207(16.8)
	집행유예/보호관찰등	30(11.9)	16(7.0)	34(4.5)	80(6.5)
	벌 금	-	81(35.5)	607(80.7)	688(55.8)
	소년보호사건	6(2.4)	1(0.4)	-	7(0.6)
	계	252(100.0)	228(100.0)	752(100.0)	1,232(100.0)

*성매매알선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징역형이 237명(41.8%), 집행유예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이 243명(42.9%)으로 나타났으며, 벌금도 85명

(15.90%)이나 있었다. 13세 이상의 피해집단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688명(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은 250명(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의 집단에서 벌금형이 많은 이유는 성매수 범죄자들이 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경우, 강간은 징역형의 비율이 100명(75.2%)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비율이 136명(32.8%)에 그쳤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집행유예/보호관찰, 벌금형의 비율이 각각 11명(57.9%)과 7명(36.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역형은 단 1명 뿐이었다.

다. 친족관계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최종심 선고 유형을 보면 친족관계의 성범죄에서도 징역형은 75.7%(106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비친족관계에서는 39.9%(354명)만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의 성범죄 양형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집행유예였다(34명, 24.3%).

<표 2-83>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선고유형 (단위:명(%))

관계유형	최종심 선고유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친족	유기징역	75(89.3)	31(55.4)	106(75.7)
	집행유예	6(7.1)	21(37.5)	27(19.3)
	집행유예/보호관찰 등	3(3.6)	4(7.1)	7(5.0)
	계	84(100.0)	56(100.0)	140(100.0)
비친족	무기징역	6(2.0)	2(0.3)	8(0.9)
	유기징역	179(59.5)	167(28.4)	346(39.0)
	집행유예	72(23.9)	199(33.9)	271(30.5)
	집행유예/보호관찰 등	36(12.0)	59(10.1)	95(10.7)
	치료감호	1(0.3)	-	1(0.1)
	벌금	-	159(27.1)	159(17.9)
	소년보호사건	7(2.3)	1(0.2)	8(0.9)
계	301(100.0)	587(100.0)	888(100.0)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로 양형분포를 살펴보면 강간범죄로 친족관계에서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81명(96.4%)이었고, 강제추행에서는 징역형이 31명(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제추행의 경우, 친족관계의 성범죄임에도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심의 양형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친족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165명)로 나타났으며, 친족의 경우에는 70.8%(75명)로 나타나 약 30% 가량의 성범죄자들이 3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족관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각각 1명과 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84>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형량유형 (단위:명(%))

관계유형	최종형량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친 족	1년 미만	1(1.3)	2(6.5)	3(2.8)
	1년 이상-2년 미만	1(1.3)	8(25.8)	9(8.5)
	2년 이상-3년 미만	11(14.7)	8(25.8)	19(17.9)
	3년 이상-4년 미만	17(22.7)	7(22.6)	24(22.6)
	4년 이상-5년 미만	16(21.3)	2(6.5)	18(17.0)
	5년 이상-7년 미만	19(25.3)	2(6.5)	21(19.8)
	7년 이상-10년 미만	10(13.3)	2(6.5)	12(11.3)
	계	75(100.0)	31(100.0)	106(100.0)
비친족	1년 미만	1(0.5)	48(28.4)	49(13.8)
	1년 이상-2년 미만	9(4.9)	62(36.7)	71(20.1)
	2년 이상-3년 미만	36(19.5)	33(19.5)	69(19.5)
	3년 이상-4년 미만	53(28.6)	8(4.7)	61(17.2)
	4년 이상-5년 미만	22(11.9)	6(3.6)	28(7.9)
	5년 이상-7년 미만	24(13.0)	7(4.1)	31(8.8)
	7년 이상-10년 미만	14(7.6)	2(1.2)	16(4.5)
	10년 이상-15년 미만	9(4.9)	1(0.6)	10(2.8)
	15년 이상	17(9.2)	2(1.2)	19(5.4)
계	185(100.0)	169(100.0)	354(100.0)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연도별 추세

제1절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연도별 추세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발생추세

제2장에서는 그간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어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 후반기부터 2006년까지 집계된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1만5,56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매수가 53.5%를 차지했고, 강제추행과 강간이 각각 25.0% 및 16.9%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강간 및 알선·강요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강제추행은 꾸준히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발효 전후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범죄에서 성매수 및 알선·강요의 비율은 다소 낮아진 반면, 강제추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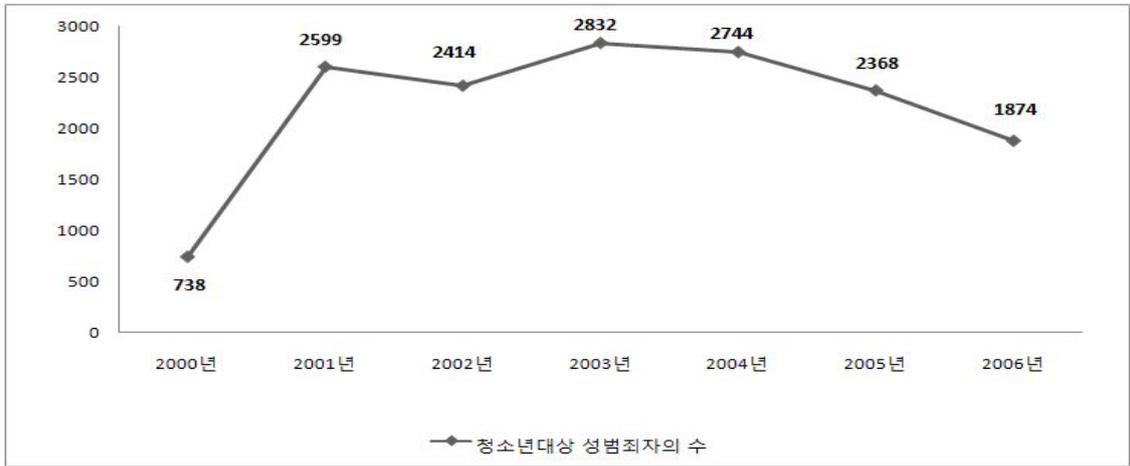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 738명, 2001년 2,599명, 2002년 2,41명, 2003년 2,832명, 2004년 2,744명, 2005년 2,368명, 2006년 1,874명으로서 2003년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범죄유형별 상대적 비율변화추세는 다음과 같다. 강간의 경우, 2000년 26.3%, 2001년 18.5%, 2002년 17.3%, 2003년 17.1%, 2004년 14.6%, 2005년 13.6%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 17.7%로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 역시 2000년 25.3%, 2001년 19.4%, 2002년 18.8%로 감소하다가 2003년 25.1%, 2004년 22.8%, 2005년 31.1%, 2006년 36.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매수의 경우, 2000년 41.2%, 2001년 54.15, 2002년 58.6%로서 증가하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44.5%를 나타내고 있으며, 알선·강요 유형의 범죄는 2000년에 7.2%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9%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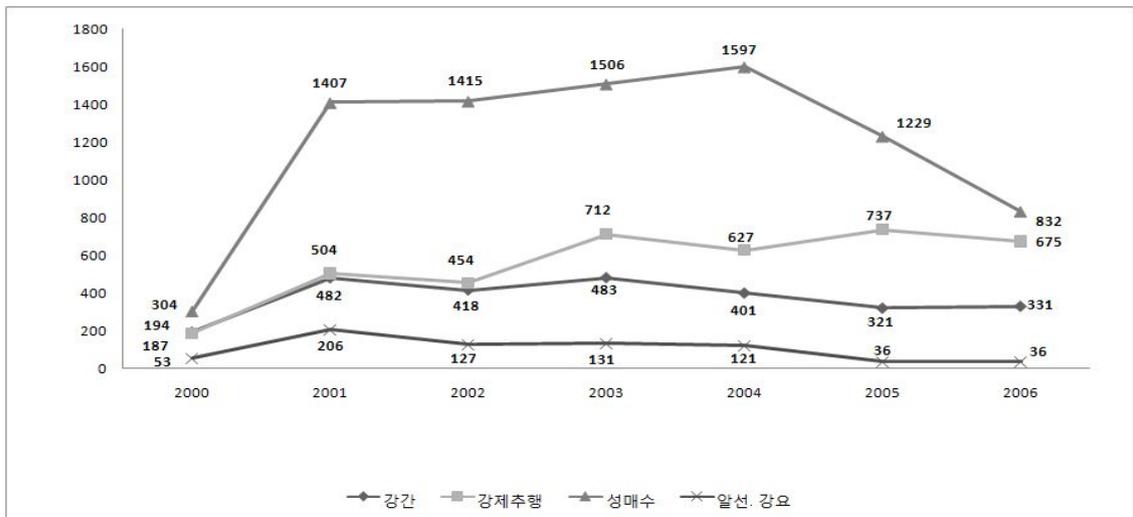
<표 3-1>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유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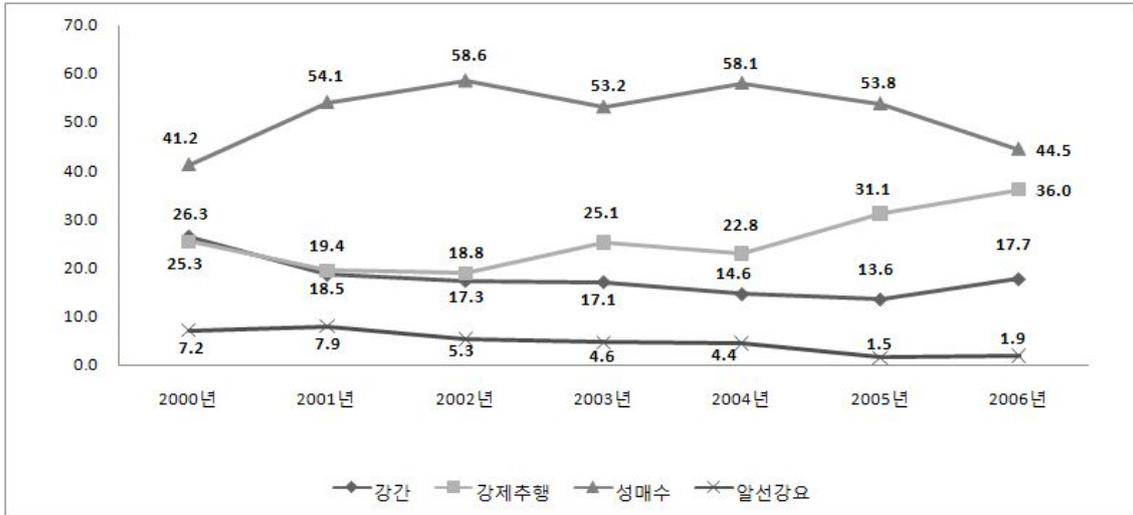
범죄유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강 간	194 (26.3)	482 (18.5)	418 (17.3)	483 (17.1)	401 (14.6)	321 (13.6)	331 (17.7)	2,630 (16.9)
강제추행	187 (25.3)	504 (19.4)	454 (18.8)	712 (25.1)	627 (22.8)	737 (31.1)	675 (36.0)	3,896 (25.0)
성 매 수	304 (41.2)	1,407 (54.1)	1,415 (58.6)	1,506 (53.2)	1,595 (58.1)	1,275 (53.8)	833 (44.5)	8,335 (53.5)
알선·강요	53 (7.2)	206 (7.9)	127 (5.3)	131 (4.6)	121 (4.4)	35 (1.5)	35 (1.9)	708 (4.5)
계	738 (100.0)	2,599 (100.0)	2,414 (100.0)	2,832 (100.0)	2,744 (100.0)	2,368 (100.0)	1,874 (100.0)	15,569 (100.0)



<그림 3-1> 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 수의 변화



<그림 3-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의 연도별 추세



<그림 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형별 비율변화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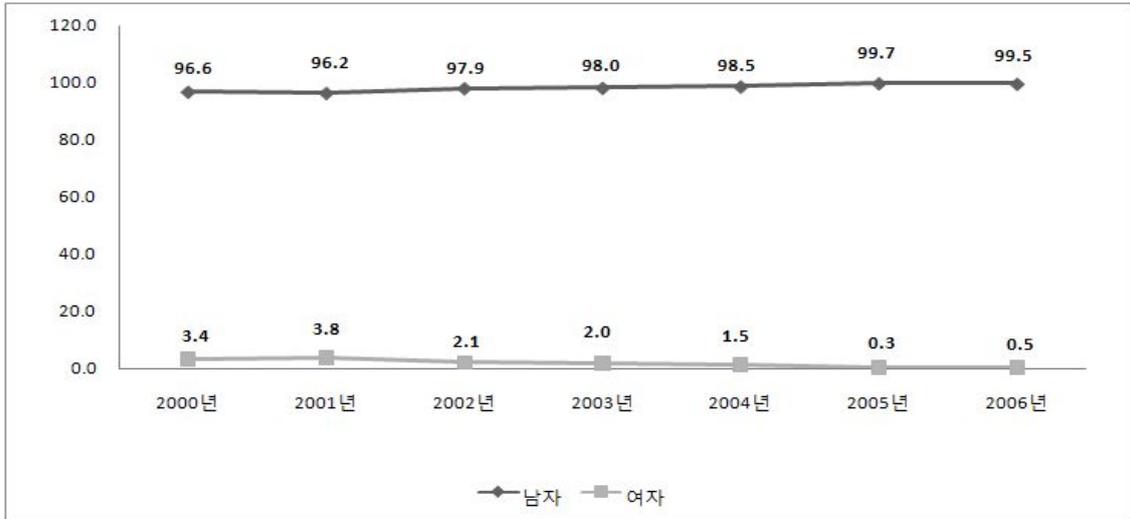
1) 성별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자들은 남성 범죄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남성이 가해자이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절대다수인 성범죄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범죄자 비율의 경우, 2001년 3.8%에 이르던 것이 가장 높았으며, 2006년에는 0.5%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성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 자	713 (96.6)	2,500 (96.2)	2,363 (97.9)	2,776 (98.0)	2,703 (98.5)	2,360 (99.7)	1,864 (99.5)	15,279 (98.1)
여 자	25 (3.4)	99 (3.8)	51 (2.1)	56 (2.0)	41 (1.5)	8 (0.3)	10 (0.5)	290 (1.9)
계	738 (100.0)	2,599 (100.0)	2,414 (100.0)	2,832 (100.0)	2,744 (100.0)	2,368 (100.0)	1,874 (100.0)	15,569 (100.0)



<그림 3-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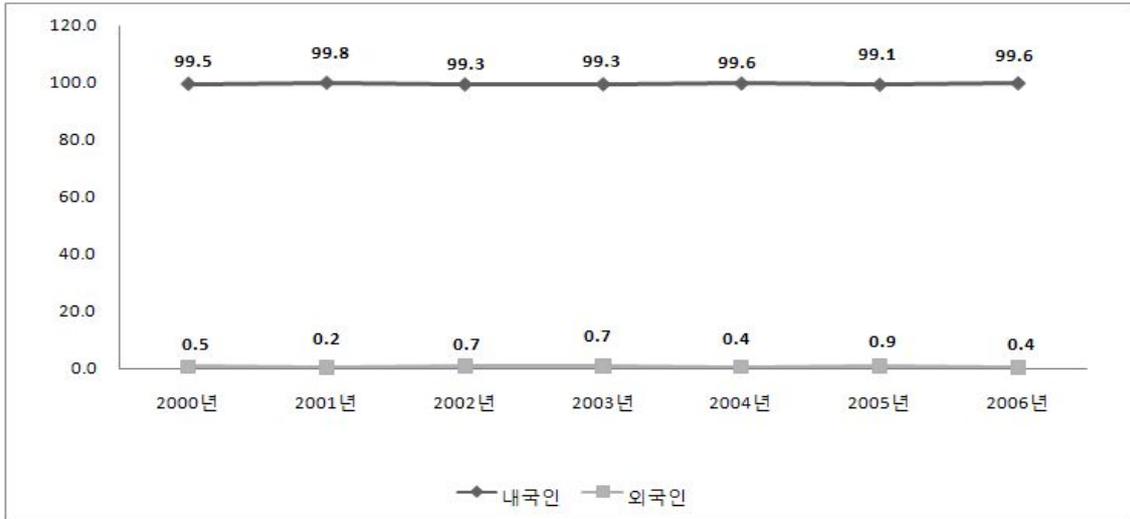
2) 국 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며 외국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를 초과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외국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외국인 수 대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율은 최소한 낮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국적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734 (99.5)	2,594 (99.8)	2,396 (99.3)	2,812 (99.3)	2,732 (99.6)	2,305 (99.1)	1,867 (99.6)	15,440 (99.4)
외국인	4 (0.5)	5 (0.2)	18 (0.7)	20 (0.7)	12 (0.4)	20 (0.9)	7 (0.4)	86 (0.6)
계	738 (100.0)	2,599 (100.0)	2,414 (100.0)	2,832 (100.0)	2,744 (100.0)	2,325 (100.0)	1,874 (100.0)	15,526 (100.0)



<그림 3-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3)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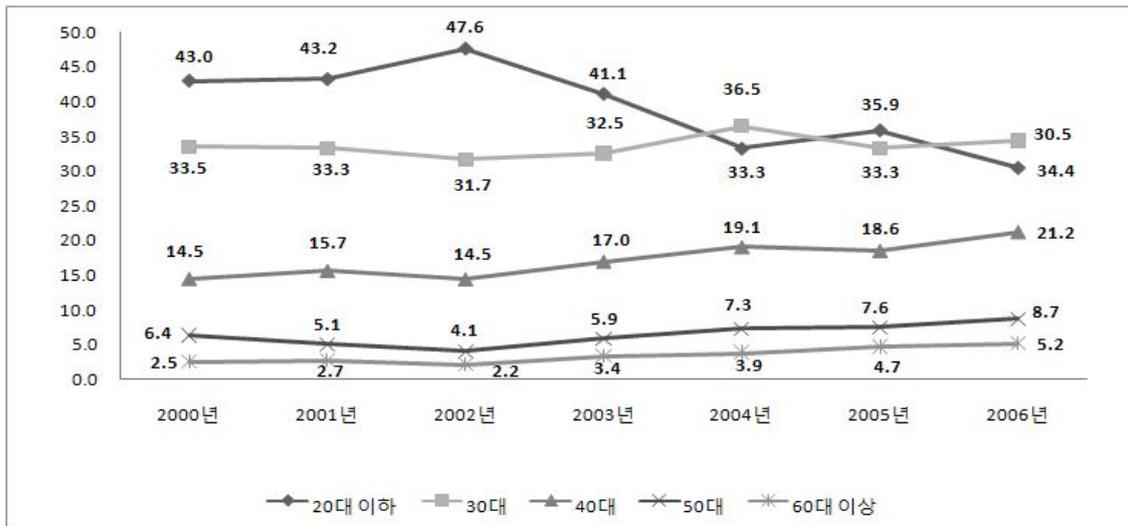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0% 내외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범죄자가 3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2-30대 범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2000년 43.0%, 2001년 43.2%, 2002년 47.6%로 점차 비율이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34.4%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0대’의 경우는 2000년 33.5%, 2001년 33.3%, 2002년 31.7%, 2003년 32.5%, 2004년 36.5%, 2005년 33.3%, 2006년 30.5%로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범죄자들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범죄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뒤에서 범죄유형별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보면 강간의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47.9%), 강제추행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30.1%), 성매수는 20대와 30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각각 43.0% 및 42.2%).

<표 3-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대 이하	290 (43.0)	1,030 (43.2)	1,085 (47.6)	1,138 (41.1)	913 (33.3)	834 (35.9)	572 (30.5)	5,862 (39.0)
30대	226 (33.5)	793 (33.3)	722 (31.7)	900 (32.5)	1,001 (36.5)	773 (33.3)	644 (34.4)	5,059 (33.6)
40대	98 (14.5)	374 (15.7)	330 (14.5)	471 (17.0)	524 (19.1)	431 (18.6)	398 (21.2)	2,626 (17.5)
50대	43 (6.4)	121 (5.1)	93 (4.1)	164 (5.9)	200 (7.3)	176 (7.6)	163 (8.7)	960 (6.4)
60대 이상	17 (2.5)	64 (2.7)	49 (2.2)	94 (3.4)	106 (3.9)	109 (4.7)	97 (5.2)	536 (3.6)
계	674 (100.0)	2,382 (100.0)	2,279 (100.0)	2,767 (100.0)	2,744 (100.0)	2,323 (100.0)	1,874 (100.0)	15,043 (100.0)



<그림 3-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4) 학 력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모든 해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범죄자가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력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이상’의 범죄자의 비율이 2000년 44.0%에서 2002년 50.6%,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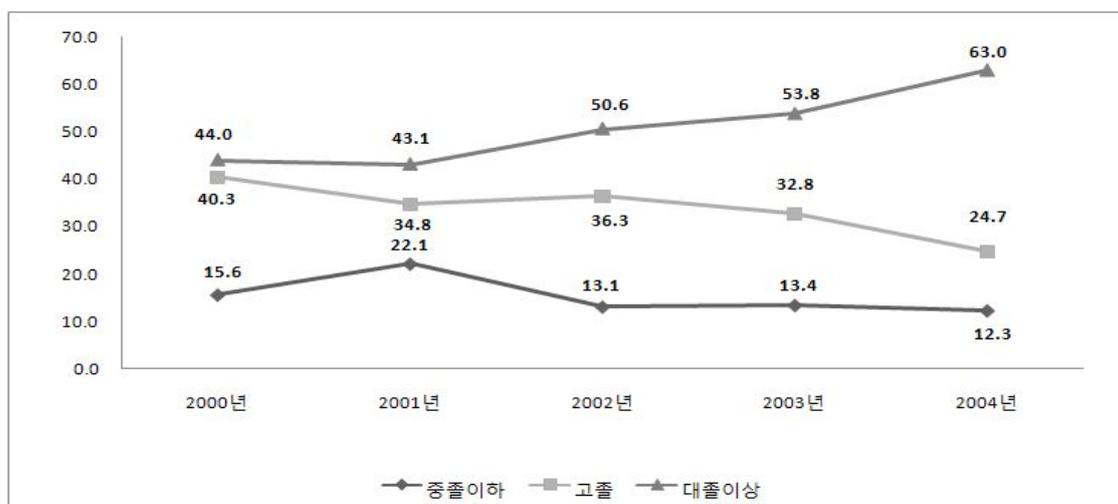
53.8%, 2004년 63.0% 등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고졸’과 ‘중졸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내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함과 아울러 성범죄 자체의 특성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유형별 학력분포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면, 강제추행, 강간, 성매수의 순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강제추행의 경우 대졸학력의 비율이 32.8%인 반면, 강간은 40.2%, 성매수는 59.6%로 집계되었다. 특히 성매수의 경우는 범죄자의 학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내 고학력자의 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3-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중졸 이하	38 (15.6)	191 (22.1)	87 (13.1)	117 (13.4)	124 (12.3)	557 (15.3)
고 졸	98 (40.3)	300 (34.8)	241 (36.3)	285 (32.8)	249 (24.7)	1,173 (32.2)
대졸 이상	107 (44.0)	372 (43.1)	336 (50.6)	468 (53.8)	634 (63.0)	1,917 (52.6)
계	243 (100.0)	863 (100.0)	664 (100.0)	870 (100.0)	1,007 (100.0)	3,647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5) 직 업

년도별 청소년보호직종군(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학원 강사 및 운전자)의 성범죄건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일정수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5 - 2.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 보호를 책임져야 할 직업적 특성상 이들의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 이들의 성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직종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 무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2000년 18.8%, 2001년 20.1%, 2002년 23.2%, 2003년, 21.9%, 2004년 28.7%, 2005년 22.3%, 2006년 2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000년 28.3%, 2001년 26.0%, 2002년 22.6%로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03년 19.0%, 2004년 11.5%, 2005년 12.4%, 2006년 15.6%으로 비중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무직의 경우, 2000년 20.2%, 2001년 22.7%, 2002년 21.3%, 2003년 22.3%, 2004년 22.3%, 2005년 23.4%, 2006년 26.5%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 다른 직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합계의 비율을 보았을 때 학생의 비중이 약 6%에 이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유형별 직업군 분석은 해당 절에서 별도로 보겠으나, 범죄유형별 ‘무직자’에 한해 그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강간 59.1%, 강제추행 29.1%, 성매수 17.2%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강간의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한정된 대상에 대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성매수는 확장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3-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문직	19 (2.6)	52 (2.0)	54 (2.2)	42 (1.5)	12 (0.9)	38 (1.6)	59 (3.1)	276 (2.0)
사무관리직	139 (18.8)	523 (20.1)	558 (23.2)	619 (21.9)	388 (28.7)	516 (22.3)	395 (21.1)	3,138 (22.2)
판매서비스직	209 (28.3)	675 (26.0)	545 (22.6)	539 (19.0)	155 (11.5)	287 (12.4)	293 (15.6)	2,703 (19.2)
유흥업소	40 (5.4)	108 (4.2)	84 (3.5)	102 (3.6)	29 (2.1)	25 (1.1)	6 (0.3)	394 (2.8)
일용노동자	46 (6.2)	161 (6.2)	178 (7.4)	231 (8.2)	115 (8.5)	212 (9.2)	104 (5.5)	1,047 (7.4)
학생	30 (4.1)	141 (5.4)	148 (6.1)	181 (6.4)	97 (7.2)	167 (7.2)	50 (2.7)	814 (5.8)
군인 경찰	18 (2.4)	36 (1.4)	35 (1.5)	31 (1.1)	-	12 (0.5)	8 (0.4)	140 (1.0)
무직	149 (20.2)	588 (22.7)	513 (21.3)	631 (22.3)	301 (22.3)	541 (23.4)	497 (26.5)	3,220 (22.8)
생산직	40 (5.4)	151 (5.8)	116 (4.8)	87 (3.1)	-	52 (2.2)	295 (15.7)	741 (5.3)
농어업	18 (2.4)	53 (2.0)	36 (1.5)	32 (1.1)	-	21 (0.9)	48 (2.6)	208 (1.5)
운전자,운수업	24 (3.3)	95 (3.7)	90 (3.7)	63 (2.2)	-	-	-	272 (1.9)
공공기관	-	-	-	8 (0.3)	13 (1.0)	23 (1.0)	5 (0.3)	49 (0.3)
자영업	-	-	-	193 (6.8)	153 (11.3)	315 (13.6)	80 (4.3)	741 (5.3)
청소년보호직종군	-	-	-	-	-	29 (1.3)	14 (0.7)	43 (0.3)
기타	6 (0.8)	13 (0.5)	53 (2.2)	73 (2.6)	87 (6.4)	75 (3.2)	20 (1.1)	327 (2.3)
계	738 (100.0)	2,596 (100.0)	2,410 (100.0)	2,832 (100.0)	1,350 (100.0)	2,313 (100.0)	1,874 (100.0)	14,113 (100.0)

주1: 2000, 2001, 2002년 조사항목에서는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2: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나 ‘9차 조사’에서는 범죄자 직업에 대한 조사가 없어 이번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0차 조사’ 항목에는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3: 2005년의 경우, ‘11차 조사’와 ‘12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1차 조사’ 항목에서는 ‘군인, 경찰’,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12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4: 2006년의 경우, ‘13차 조사’와 ‘14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3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4차 조사’ 항목에서는 ‘유흥업소’, ‘일용노동자’, ‘학생’, ‘군인, 경찰’, ‘운전자, 운수업’,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6) 혼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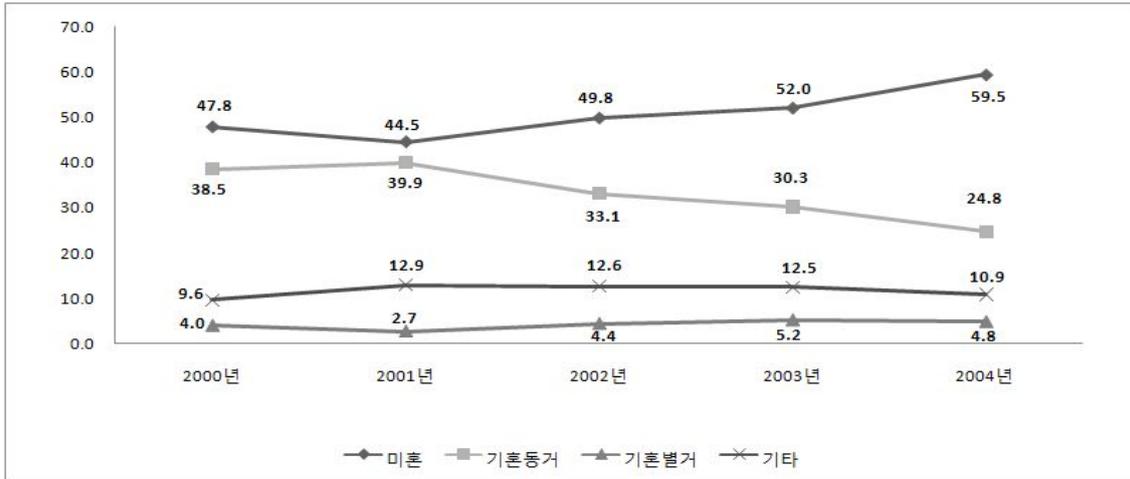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혼인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상태인 범죄자들이 2000년 47.8%, 2001년 44.5%, 2002년 49.8%, 2003년 52.0%, 2004년 5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혼동거’상태의 범죄자들은 2000년 38.5%, 2001년 39.9%, 2002년 33.1%, 2003년 30.3%, 2004년 24.8% 등으로 ‘미혼’ 범죄자들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이혼’ 상태의 범죄자들은 2000년 6.0%, 2001년 7.3%, 2002년 7.5%, 2003년 7.2%, 2004년 6.2%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범죄자가 미혼인 경우의 비율이 강간 51.3%, 강제추행 32.1%, 성매수 61.7%로 나타나, 강간과 성매수의 경우 미혼자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혼인상태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 혼	144 (47.8)	560 (44.5)	588 (49.8)	819 (52.0)	1,049 (59.5)	3,160 (52.0)
기혼동거	116 (38.5)	502 (39.9)	391 (33.1)	477 (30.3)	438 (24.8)	1,924 (31.7)
기혼별거	12 (4.0)	34 (2.7)	52 (4.4)	82 (5.2)	85 (4.8)	265 (4.4)
기혼사별	5 (1.7)	16 (1.3)	15 (1.3)	17 (1.1)	18 (1.0)	71 (1.2)
이 혼	18 (6.0)	92 (7.3)	88 (7.5)	113 (7.2)	109 (6.2)	420 (6.9)
동 거	6 (2.0)	53 (4.2)	42 (3.6)	57 (3.6)	64 (3.6)	222 (3.7)
기 타	-	1 (0.1)	4 (0.3)	9 (0.6)	1 (0.1)	15 (0.2)
계	301 (100.0)	1,258 (100.0)	1,180 (100.0)	1,574 (100.0)	1,764 (100.0)	6,077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8>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다. 처리현황

1) 경합성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경합범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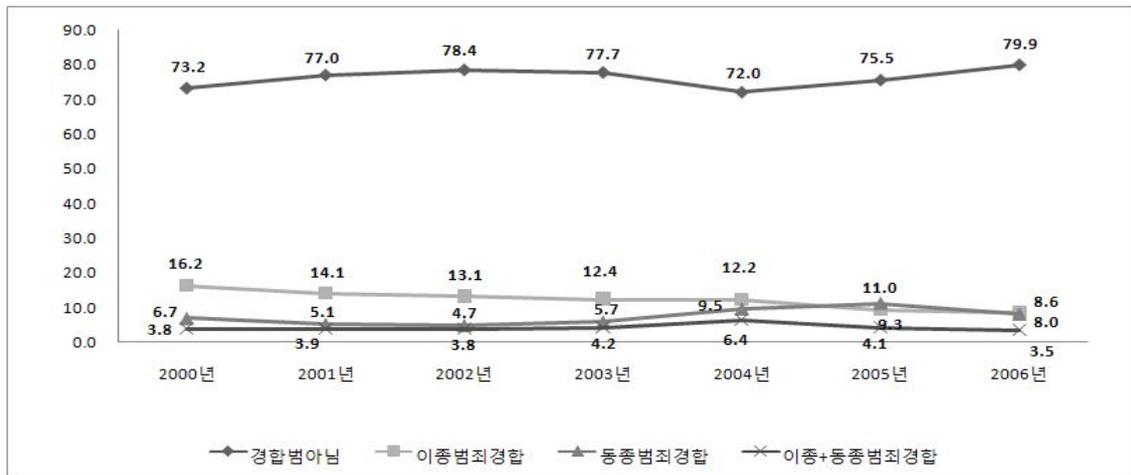
우선, 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73.2%, 2001년 77%, 2002년 78.4%, 2003년 77.7%, 2004년 72.0%, 2005년 75.5%, 2006년 79.9%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범죄경합의 경우에 2000년 16.2%, 2001년 14.1%, 2002년 13.1%, 2003년 12.4%, 2004년 12.2%, 2005년 9.3%, 2006년 8.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종범죄경합의 경우, 2000년 6.7%, 2001년 5.1%, 2002년 4.7%, 2003년 5.7%, 2004년 9.5%, 2005년 11.0%, 2006년 8.0%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중+동종범죄경합의 경우에는 2000년 3.8%, 2001년 3.9%, 2002년 3.8%, 2003년 4.2%, 2004년 6.4%, 2005년 4.1%, 2006년 3.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76.7%로 가장 높으나, 범죄유형별로 편차가 크다. 즉 강간 50.6%, 강제추행 78.5%, 성매수 90.5%로 나타나고 있어, 강간의 경우는 절반 정도의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경합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합범아님	533 (73.2)	1,991 (77.0)	1,882 (78.4)	2,192 (77.7)	1,440 (72.0)	1,755 (75.5)	1,494 (79.9)	11,287 (76.7)
이종범죄경합	118 (16.2)	364 (14.1)	315 (13.1)	349 (12.4)	243 (12.2)	216 (9.3)	160 (8.6)	1,765 (12.0)
동종범죄경합	49 (6.7)	131 (5.1)	112 (4.7)	161 (5.7)	189 (9.5)	256 (11.0)	149 (8.0)	1,047 (7.1)
이종+동종범죄경합	28 (3.8)	100 (3.9)	90 (3.8)	118 (4.2)	127 (6.4)	96 (4.1)	66 (3.5)	625 (4.2)
계	728 (100.0)	2,586 (100.0)	2,399 (100.0)	2,820 (100.0)	1,999 (100.0)	2,323 (100.0)	1,869 (100.0)	14,724 (100.0)



<그림 3-9> 청소년대상 성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2) 1심 선고형의 종류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벌금형의 비율은 2004년 다소 그 비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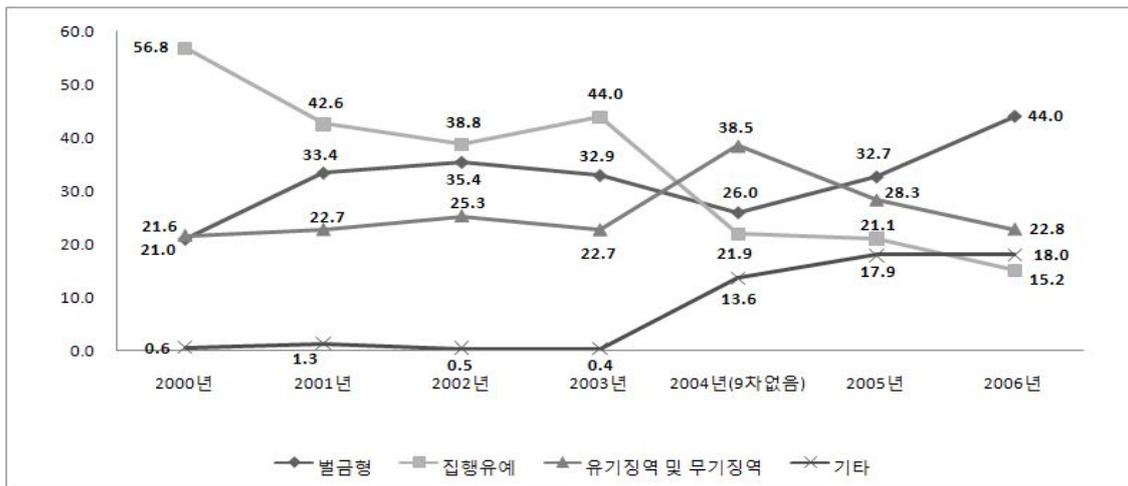
벌금형의 비율이 2000년 21.0%, 2001년 33.4%, 2002년 35.4%, 2003년 32.9%, 2004년 26.0%, 2005년 32.7%, 2006년 44.0%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로 처분되는 경우는 2000년 56.8%였던 것이 2006년에는 15.2%까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유기징역형의 비율은 2004년에 38.4%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2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기징역,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표 3-9>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선고종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차제외)	2005년	2006년	
벌금형	153 (21.0)	840 (33.4)	838 (35.4)	923 (32.9)	543 (26.0)	1,039 (32.7)	825 (44.0)	5,161 (33.2)
집행유예	413 (56.8)	1,071 (42.6)	918 (38.8)	1,232 (44.0)	458 (21.9)	672 (21.1)	285 (15.2)	5,049 (32.5)
유기징역	157 (21.6)	568 (22.6)	592 (25.0)	633 (22.6)	802 (38.4)	899 (28.3)	425 (22.7)	4,076 (26.2)
무기징역	-	4 (0.2)	7 (0.3)	3 (0.1)	2 (0.1)	1 (0.1)	2 (0.1)	19 (0.1)
보호감호/ 치료감호	2 (0.3)	9 (0.4)	4 (0.2)	4 (0.1)	3 (0.1)	6 (0.2)	3 (0.2)	31 (0.2)
보호관찰/사회 봉사/수감명령	-	-	-	-	233 (11.2)	521 (16.4)	332 (17.7)	1,086 (7.0)
기 타	2 (0.3)	23 (0.9)	8 (0.3)	7 (0.2)	47 (2.3)	42 (1.3)	2 (0.1)	131 (0.8)
계	727 (100.0)	2,515 (100.0)	2,367 (100.0)	2,802 (100.0)	2,088 (100.0)	3,180 (100.0)	1,874 (100.0)	15,553 (100.0)

주: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1심 선고형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0>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범죄유형별로 유기징역의 비율을 보면 강간 61.5%, 강제추행 35.8%, 성매수 9.7%로 나타나 성매수에 대한 유기징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매수의 경우 유기징역의 비율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연도에 잠깐 26.0%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3) 1심 형량

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징역 형량의 추세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되는 비율은 2000년 49.4%, 2001년 38.6%, 2002년 40.8%, 2003년 38.2%, 2005년 36.7%, 2006년 39.9% 등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징역 3년 이상 - 5년 미만’의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되는 비율은 2000년 17.7%, 2001년 25.8%, 2002년 26.0%, 2003년 24.2%, 2005년 31.2%, 2006년 23.8%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징역 5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비율은 2000년 20.9%, 2001년 22.1%, 2002년 21.0%, 2003년 23.1%, 2005년 20.6%, 2006년 22.7% 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형량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 제외)	2006년	
1년 미만	19 (12.0)	77 (13.5)	73 (12.2)	92 (14.5)	-	23 (11.6)	62 (13.7)	346 (13.2)
1년 이상 - 3년 미만	78 (49.4)	220 (38.6)	243 (40.8)	243 (38.2)	-	73 (36.7)	181 (39.9)	1,038 (39.7)
3년 이상 - 5년 미만	28 (17.7)	147 (25.8)	155 (26.0)	154 (24.2)	-	62 (31.2)	108 (23.8)	654 (25.0)
5년 이상	33 (20.9)	126 (22.1)	125 (21.0)	147 (23.1)	-	41 (20.6)	103 (22.7)	575 (22.0)
계	158 (100.0)	570 (100.0)	596 (100.0)	636 (100.0)	-	199 (100.0)	454 (100.0)	2,613 (100.0)

주1: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볼 때 강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38.7%, 강제추행은 1년 이

상 3년 미만인 경우가 62.0%, 성매수는 1년 미만인 경우가 60.9%로 각각 해당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4) 신상공개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공개비율은 줄어들고, 교육대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대상이 된 경우가 2000년 59.6%, 2001년 51.4%, 2002년 45.8%, 2003년 40.9%, 2004년 38.2%, 2005년 44.2%로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교육대상이 된 경우는 2001년 0.8%, 2002년 9.2%, 2003년 19.4%, 2004년 27.8%, 2005년 23.1% 등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개대상이 된 경우와 비공개대상이 된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는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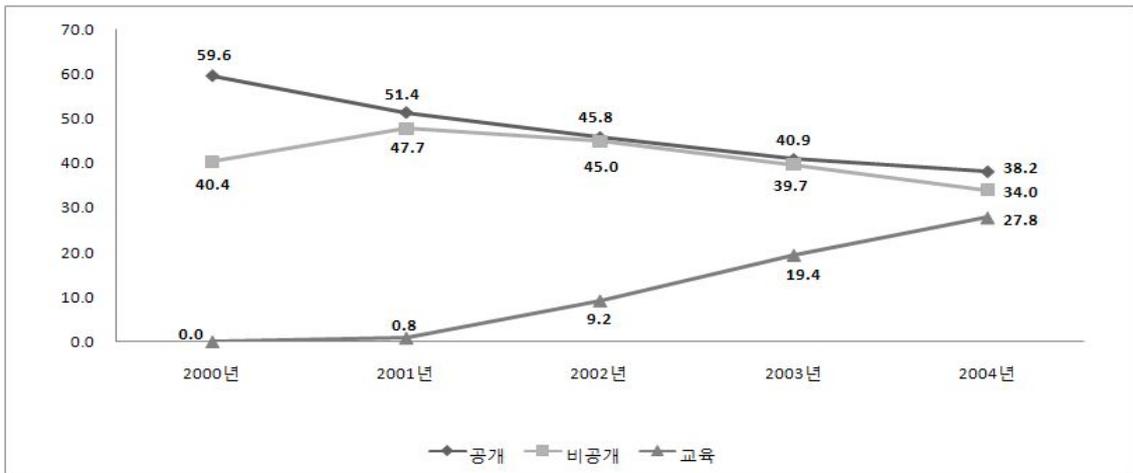
범죄유형별로는 당연히 범죄의 심각성이 큰 강간범죄의 공개비율이 88.6%로, 성매수범죄의 공개비율이 19.6%로 나타났다.

<표 3-11>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심의결과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제외)	2006년	
공 개	440 (59.6)	1,336 (51.4)	1,106 (45.8)	1,159 (40.9)	1,048 (38.2)	489 (44.2)	-	5,578 (44.9)
비공개	298 (40.4)	1,241 (47.7)	1,086 (45.0)	1,123 (39.7)	934 (34.0)	361 (32.6)	-	5,043 (40.6)
교 육	-	22 (0.8)	222 (9.2)	550 (19.4)	764 (27.8)	256 (23.1)	-	1,814 (14.6)
계	738 (100.0)	2,599 (100.0)	2,414 (100.0)	2,832 (100.0)	2,746 (100.0)	1,106 (100.0)	-	12,435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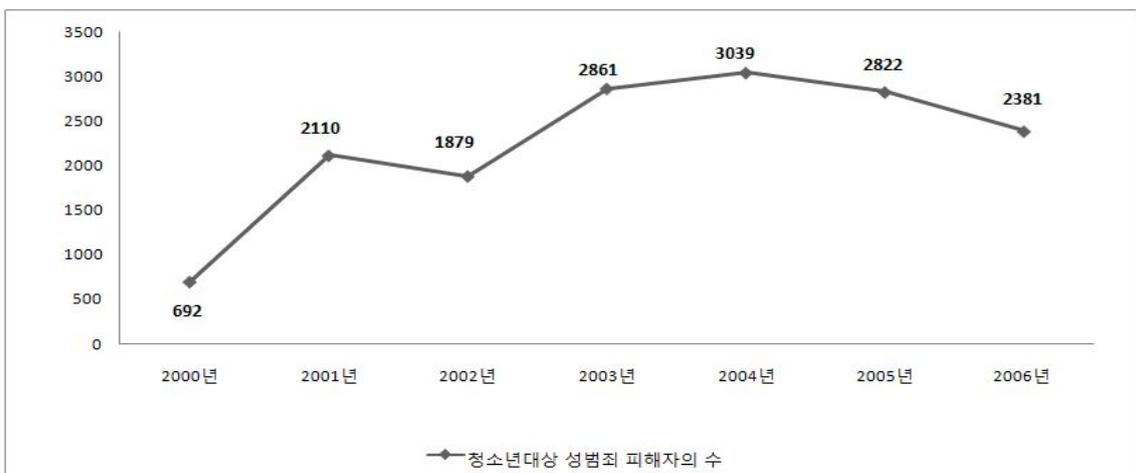


<그림 3-11>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2.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발생추세

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피해자 수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 692명, 2001년 2,110명, 2002년 1,879명, 2003년 2,861명, 2004년 3,039명, 2005년 2,822명, 2006년 2,381명으로서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의 연도별 추세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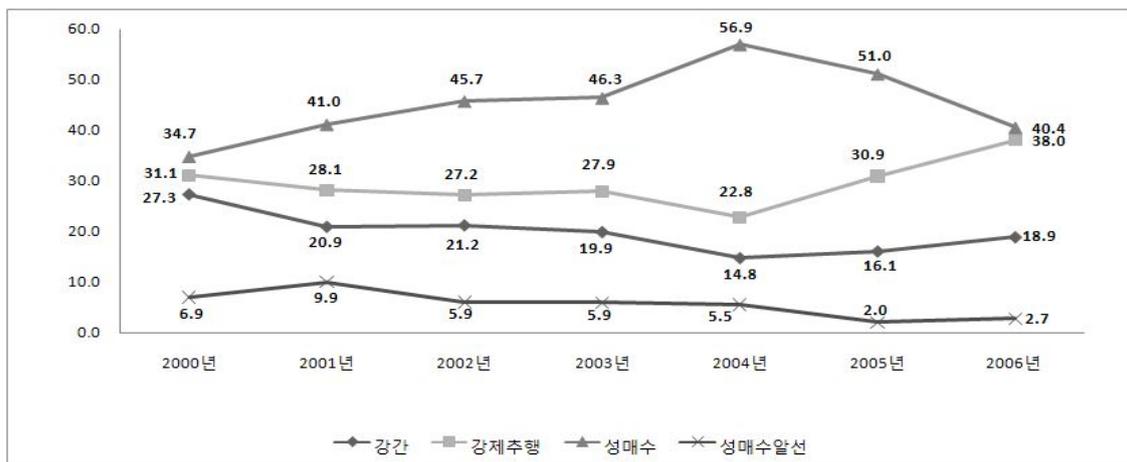


<그림 3-12> 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피해자 수의 변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강간범죄는 2000년 27.3%, 2001년 20.9%, 2002년 21.2%, 2003년 19.9%, 2004년 14.8%, 2005년 16.1%, 2006년 18.9%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낮아졌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2000년 31.1%, 2001년 28.1%, 2002년 27.2%, 2003년 27.9%, 2004년 22.8%, 2005년 30.9%, 2006년 38.0%로 감소하다가 2005년 30.9%, 2006년 38.0%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2>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별 범죄유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유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강간	189 (27.3)	442 (20.9)	399 (21.2)	570 (19.9)	450 (14.8)	455 (16.1)	450 (18.9)	2,955 (18.7)
강제추행	215 (31.1)	593 (28.1)	511 (27.2)	798 (27.9)	694 (22.8)	871 (30.9)	904 (38.0)	4,586 (29.1)
성매수	240 (34.7)	866 (41.0)	858 (45.7)	1,325 (46.3)	1,729 (56.9)	1,440 (51.0)	963 (40.4)	7,421 (47.0)
알선·강요	48 (6.9)	209 (9.9)	111 (5.9)	168 (5.9)	166 (5.5)	56 (2.0)	64 (2.7)	822 (5.2)
계	692 (100.0)	2,110 (100.0)	1,879 (100.0)	2,861 (100.0)	3,039 (100.0)	2,822 (100.0)	2,381 (100.0)	15,784 (100.0)



<그림 3-13>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유형별 비율변화

성매수의 경우 2000년 34.7%, 2001년 41.0%, 2002년 45.7%, 2003년 46.3%, 2004년 56.9%로 증가하다가 2005년 51.0%, 2006년 40.4%로 다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매수알선·강요의 경우 2000년 6.9%, 2001년 9.9%, 2002년 5.9%, 2003년 5.9%, 2004년 5.5%, 2005년 2.0%, 2006년 2.7%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성매수 피해자가 상대적 비율이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연령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세 이하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9.7%, 2001년 9.3%, 2002년 9.0%, 2003년 6.4%, 2004년 3.9%, 2005년 4.9%, 200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세-13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24.0%, 2001년 20.3%, 2002년 21.0%, 2003년 24.9%로 2002년 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다시 상대적 비율이 다시 상승하여 2004년에는 19.2%, 2005년에는 22.0%, 2006년에는 26.1%까지 증가하였다. 14세-15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36.6%, 2001년 42.9%, 2002년 45.9%, 2003년 26.4% 등으로 2002년까지 그 비율이 상승하다 2003년 떨어진 후, 2004년 30.2%, 2005년 36.4%, 2006년 34.4%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6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2000년 29.8%, 2001년 27.5%, 2002년 24.1%로 점차 떨어지다가 2003년 42.3%로 대폭 상승한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4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의 피해자는 16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 계층의 피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7-13세 연령대가 52.3%로 가장 높은 피해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연령대의 피해비율이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높아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 성매수 피해자의 경우 16세 이상이 55.4%로 가장 높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14-15세 계층의 피해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표 3-13>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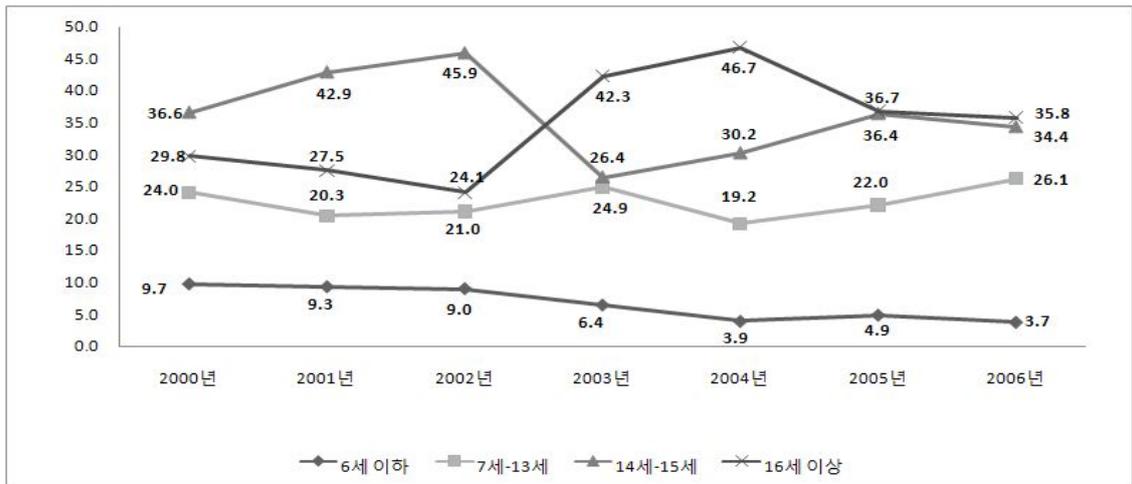
(단위:명(%))

피해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세 이하	64 (9.3)	195 (9.3)	168 (9.0)	184 (6.4)	118 (3.9)	137 (4.9)	89 (3.7)	955 (6.1)
7세-13세	151 (21.9)	389 (18.5)	339 (18.1)	712 (24.9)	582 (19.2)	621 (22.0)	622 (26.1)	3,416 (21.7)
14세-15세	199 (28.9)	660 (31.4)	658 (35.1)	756 (26.4)	919 (30.2)	1,027 (36.4)	818 (34.4)	5,037 (31.9)
16세 이상	274 (39.8)	859 (40.8)	709 (37.8)	1,209 (42.3)	1,420 (46.7)	1,037 (36.7)	852 (35.8)	6,360 (40.3)
계	688 (100.0)	2,103 (100.0)	1,874 (100.0)	2,861 (100.0)	3,039 (100.0)	2,822 (100.0)	2,381 (100.0)	15,768 (100.0)

주1: '8차 조사' 이전까지의 분석에서의 기준은 '7세 이하', '8-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2: '8~9차 조사'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3세', '14-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3: '10차 조사' 이후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그림 3-14>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2) 학 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학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자퇴 및 퇴학, 졸업인 경우가 2000년 35.0%, 2001년 36.2%, 2002년 38.4%, 2003년 35.4%, 2004년 37.6%, 2005년 32.1% 등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재학, 자퇴 및 퇴학, 졸업인 경우 역시 2000년 33.0%, 2001년 34.7%, 2002년 36.3%, 2003년

36.6%, 2004년 39.7%, 2005년 37.6%로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이나 졸업인 경우는 2000년 23.1%, 2001년 21.6%, 2002년 18.0%, 2003년 22.8%, 2004년 17.8%, 2005년 24.0%이며, 전체적으로 비율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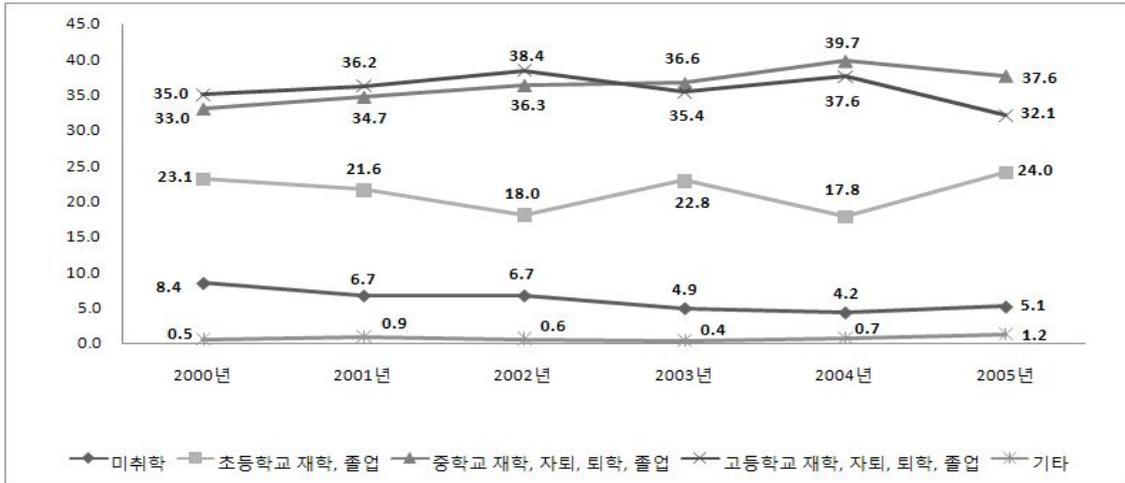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성매수의 경우 자퇴,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매수 피해자 중 자퇴 및 퇴학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표 3-14>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미취학	34 (8.4)	114 (6.7)	105 (6.7)	116 (4.9)	107 (4.2)	64 (5.1)	-	540 (5.5)
초등학교 재학	92 (22.8)	364 (21.3)	280 (17.8)	540 (22.6)	443 (17.6)	300 (23.8)	-	2,019 (20.5)
중학교 재학	77 (19.1)	320 (18.7)	359 (22.8)	521 (21.8)	526 (20.9)	268 (21.2)	-	2,071 (21.0)
고등학교 재학	106 (26.3)	442 (25.8)	436 (27.7)	593 (24.8)	519 (20.6)	253 (20.0)	-	2,349 (23.8)
대학교 재학	2 (0.5)	15 (0.9)	9 (0.6)	9 (0.4)	17 (0.7)	15 (1.2)	-	67 (0.7)
초등학교 졸업	1 (0.2)	5 (0.3)	4 (0.3)	5 (0.2)	5 (0.2)	3 (0.2)	-	23 (0.2)
중학교 졸업	12 (3.0)	34 (2.0)	26 (1.7)	39 (1.6)	73 (2.9)	37 (2.9)	-	221 (2.2)
고등학교 졸업	2 (0.5)	11 (0.6)	10 (0.6)	19 (0.8)	22 (0.9)	4 (0.3)	-	68 (0.7)
중학교자퇴, 퇴학	44 (10.9)	240 (14.0)	187 (11.9)	313 (13.1)	403 (16.0)	170 (13.5)	-	1,357 (13.8)
고등학교 자퇴,퇴학	33 (8.2)	167 (9.8)	159 (10.1)	232 (9.7)	407 (16.1)	148 (11.7)	-	1,146 (11.6)
계	403 (100.0)	1,712 (100.0)	1,575 (100.0)	2,387 (100.0)	2,522 (100.0)	1,262 (100.0)	-	9,861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5>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3) 직 업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직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 제외)	2006년	
무 직	244 (76.7)	815 (75.5)	865 (82.2)	1,013 (49.8)	2,070 (71.7)	518 (87.6)	-	5,525 (69.4)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2 (0.6)	14 (1.3)	3 (0.3)	10 (0.5)	8 (0.3)	7 (1.2)	-	44 (0.6)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3 (0.9)	21 (1.9)	30 (2.9)	23 (1.1)	34 (1.2)	14 (2.4)	-	125 (1.6)
다방종업원	31 (9.7)	113 (10.5)	89 (8.5)	124 (6.1)	72 (2.5)	32 (5.4)	-	461 (5.8)
유흥업소 종업원	9 (2.8)	12 (1.1)	14 (1.3)	28 (1.4)	21 (0.7)	1 (0.2)	-	85 (1.1)
기 타	29 (9.1)	105 (9.7)	51 (4.8)	836 (41.1)	681 (23.6)	19 (3.2)	-	1,721 (21.6)
계	318 (100.0)	1,080 (100.0)	1,052 (100.0)	2,034 (100.0)	2,886 (100.0)	591 (100.0)	-	7,961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학교를 다니는 것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2000년

76.7%, 2002년 82.2%, 2005년 87.6% 등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방 종업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는 2000년 0.6%, 2001년 1.3%, 2002년 0.3%, 2003년 0.5%, 2004년 0.3%, 2005년 1.2%로 그 상대적인 비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는 2000년 0.9%였던 것이 이후 상승하여 2005년에는 2.4%의 비율을 보였다.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평균 1.1%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 동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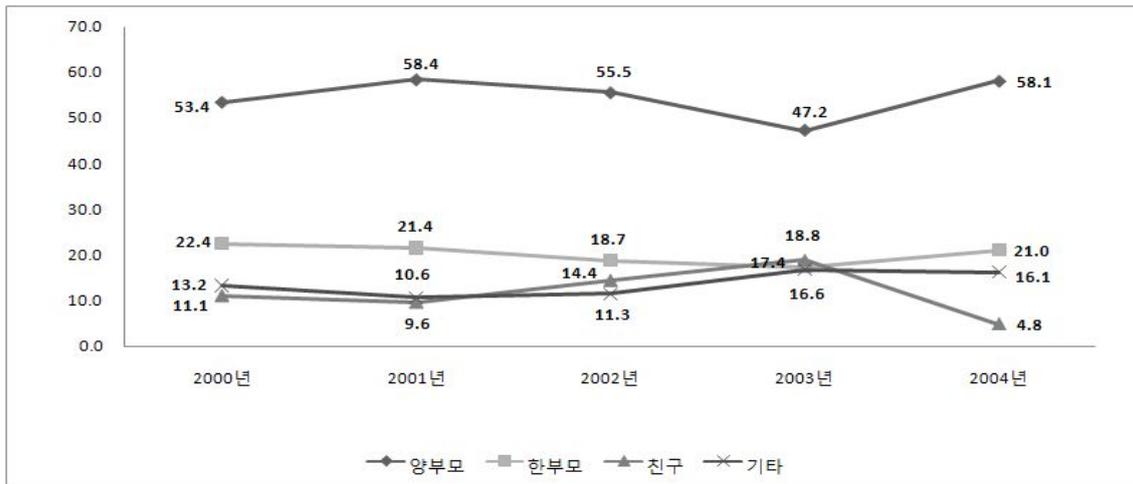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의 동거인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동거인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양부모	203 (53.4)	915 (58.4)	871 (55.5)	1,262 (47.2)	1,293 (58.1)	652 (60.1)	-	5,196 (54.7)
한부모	85 (22.4)	336 (21.4)	294 (18.7)	464 (17.4)	467 (21.0)	221 (20.4)	-	1,867 (19.7)
조부모	18 (4.7)	66 (4.2)	63 (4.0)	120 (4.5)	124 (5.6)	59 (5.4)	-	450 (4.7)
친척	11 (2.9)	34 (2.2)	44 (2.8)	135 (5.0)	48 (2.2)	21 (1.9)	-	293 (3.1)
형제자매	11 (2.9)	19 (1.2)	39 (2.5)	146 (5.5)	62 (2.8)	27 (2.5)	-	304 (3.2)
친구	42 (11.1)	150 (9.6)	226 (14.4)	503 (18.8)	107 (4.8)	30 (2.8)	-	1,058 (11.1)
기타	10 (2.6)	47 (3.0)	32 (2.0)	44 (1.6)	125 (5.6)	75 (6.9)	-	333 (3.5)
계	380 (100.0)	1,567 (100.0)	1,569 (100.0)	2,674 (100.0)	2,226 (100.0)	1,085 (100.0)	-	9,501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6>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피해자들이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2000년 53.4%, 2001년 58.4%, 2002년 55.5%, 2003년 47.2%, 2004년 58.1%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 부모가 2000년 22.4%, 2001년 21.4%, 2002년 18.7%, 2003년 17.4%, 2004년 21.0%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가 2000년 11.1%, 2001년 9.6%, 2002년 14.4%, 2003년 18.8%, 2004년 4.8%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볼 때 양부모가 모두 있는 비율은 성매수의 경우 47.2%로 가장 낮았으며, 강제추행은 71.7%로 가장 높았다. 다만 어떤 범죄유형이건 최근으로 올수록 양부모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다.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 가출여부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연도별 가출 여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사건 당시 청소년이 가출한 상태인 경우 2000년 17.1%, 2001년 25.6%, 2002년 22.4%, 2003년 26.6%, 2004년 38.7% 등으로 2000년 이후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출하지 않는 경우가 70.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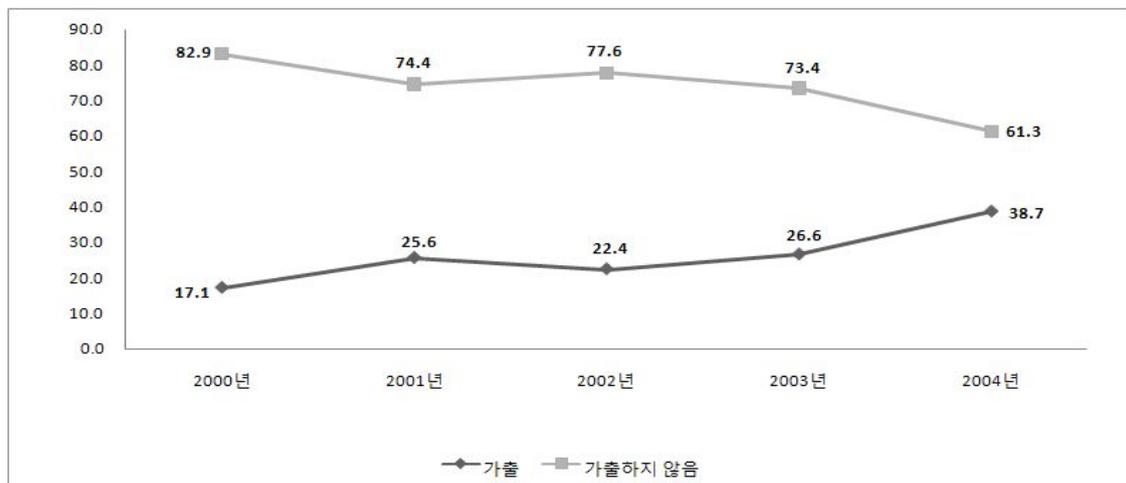
특히 범죄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성매수의 경우가 피해자의 가출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가출을 하여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17>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청소년 가출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가 출	70 (17.1)	395 (25.6)	329 (22.4)	638 (26.6)	995 (38.7)	452 (34.5)	-	2,879 (29.7)
가출하지 않음	339 (82.9)	1,149 (74.4)	1,141 (77.6)	1,764 (73.4)	1,577 (61.3)	857 (65.5)	-	6,827 (70.3)
계	409 (100.0)	1,544 (100.0)	1,470 (100.0)	2,402 (100.0)	2,572 (100.0)	1,309 (100.0)	-	9,706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7>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 음주여부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연도별 피해자 음주여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는 2000년 82.6%, 2001년 78.2%, 2002년 83.6%,

2003년 86.9%, 2004년 87.6% 등으로 2001년 잠시 낮아졌다가 예년의 비율로 돌아왔고, 약간의 음주 상태인 경우는 2000년 13.8%, 2001년 18.0%, 2002년 13.3%, 2003년 10.5%, 2004년 9.9%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만취상태는 평균 2.9%로 매년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비음주의 경우가 평균 84.9%로 상대적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범죄유형별로 보았을 때 강간의 경우가 만취상태에 있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8>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 음주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비음주	270 (82.6)	734 (78.2)	871 (83.6)	630 (86.9)	2,314 (87.6)	-	-	4,819 (84.9)
약간의 음주상태	45 (13.8)	169 (18.0)	139 (13.3)	76 (10.5)	262 (9.9)	-	-	691 (12.2)
만취상태	12 (3.7)	36 (3.8)	32 (3.1)	19 (2.6)	67 (2.5)	-	-	166 (2.9)
계	327 (100.0)	939 (100.0)	1,042 (100.0)	725 (100.0)	2,643 (100.0)	-	-	5,676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음주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 처벌의사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2000년 61.8%, 2001년 64.2%, 2002년 77.2%, 2003년 84.5%, 2004년 93.0% 등으로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38.2%, 2001년 35.8%, 2002년 22.8%, 2003년 15.5%, 2004년 7.0% 등으로 매년 상대적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79.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9>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처벌희망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처벌을 원함	186 (61.8)	700 (64.2)	757 (77.2)	593 (84.5)	1,507 (93.0)	-	-	3,743 (79.7)
처벌을 원하지 않음	115 (38.2)	390 (35.8)	224 (22.8)	109 (15.5)	113 (7.0)	-	-	951 (20.3)
계	301 (100.0)	1,090 (100.0)	981 (100.0)	702 (100.0)	1,620 (100.0)	-	-	4,694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합의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2000년 41.0%, 2001년 53.1%, 2002년 65.1%, 2003년 67.5%, 2004년 80.8% 등으로 상대적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2000년 59.0%, 2001년 46.9%, 2002년 34.9%, 2003년 32.5%, 2004년 19.2% 등으로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68.9%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표 3-20>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합의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합의하지 않음	119 (41.0)	454 (53.1)	474 (65.1)	359 (67.5)	1,692 (80.8)	-	-	3,098 (68.9)
합의함	171 (59.0)	401 (46.9)	254 (34.9)	173 (32.5)	401 (19.2)	-	-	1,400 (31.1)
계	290 (100.0)	855 (100.0)	728 (100.0)	532 (100.0)	2,093 (100.0)	-	-	4,498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1) 범행장소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장소의 사건연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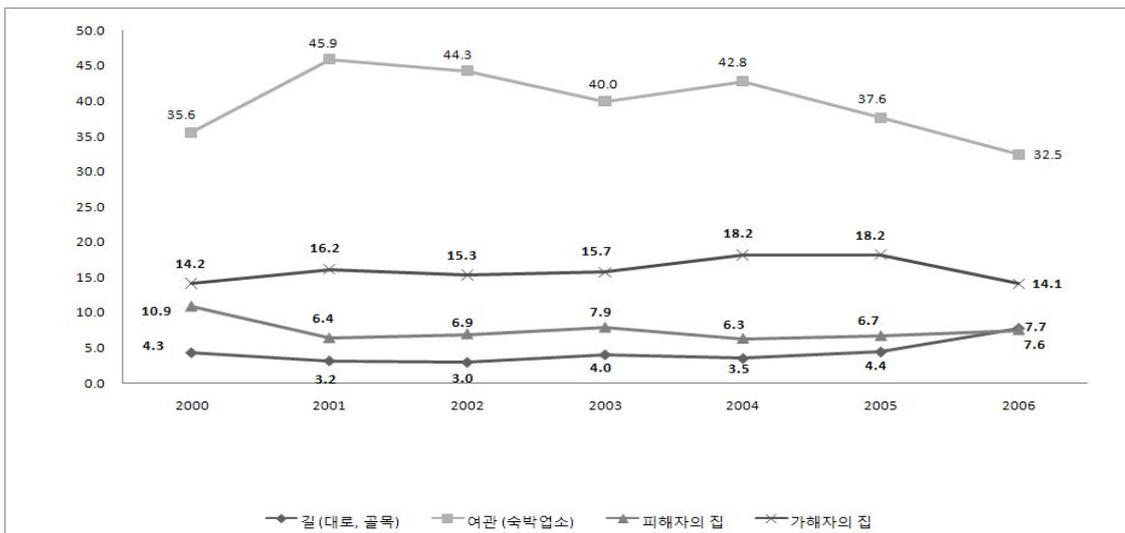
<표 3-21>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행장소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길 (대로, 골목)	29 (4.3)	76 (3.2)	68 (3.0)	109 (4.0)	92 (3.5)	112 (4.4)	179 (7.7)	665 (4.3)
사무실	15 (2.2)	60 (2.5)	45 (2.0)	31 (1.1)	43 (1.6)	78 (3.1)	21 (0.9)	293 (1.9)
공원 야산 등	34 (5.1)	82 (3.4)	72 (3.2)	65 (2.4)	66 (2.5)	66 (2.6)	75 (3.2)	460 (3.0)
유흥주점 노래방 등	11 (1.6)	34 (1.4)	34 (1.5)	27 (1.0)	32 (1.2)	26 (1.0)	20 (0.9)	184 (1.2)
여관 (숙박업소)	238 (35.6)	1,094 (45.9)	1,009 (44.3)	1,078 (40.0)	1,120 (42.8)	950 (37.6)	751 (32.5)	6,240 (40.3)
피해자의 집	73 (10.9)	152 (6.4)	158 (6.9)	213 (7.9)	165 (6.3)	169 (6.7)	175 (7.6)	1,105 (7.1)
주거침입	15 (2.2)	25 (1.0)	19 (0.8)	20 (0.7)	7 (0.3)	8 (0.3)	20 (0.9)	114 (0.7)
가해자의 집	95 (14.2)	385 (16.2)	349 (15.3)	424 (15.7)	476 (18.2)	460 (18.2)	327 (14.1)	2,516 (16.3)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 주거지	14 (2.1)	91 (3.8)	106 (4.7)	121 (4.5)	88 (3.4)	102 (4.0)	120 (5.2)	642 (4.1)
제3자의 집	35 (5.2)	82 (3.4)	120 (5.3)	211 (7.8)	61 (2.3)	57 (2.3)	67 (2.9)	633 (4.1)
자동차 안	61 (9.1)	177 (7.4)	216 (9.5)	191 (7.1)	203 (7.8)	166 (6.6)	167 (7.2)	1,181 (7.6)
기 타	49 (7.3)	124 (5.2)	80 (3.5)	207 (7.7)	264 (10.1)	331 (13.1)	392 (16.9)	1,447 (9.3)
계	669 (100.0)	2,382 (100.0)	2,276 (100.0)	2,697 (100.0)	2,617 (100.0)	2,525 (100.0)	2,314 (100.0)	15,480 (100.0)

여관 등 숙박업소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1년 45.9%로 증가한 이후, 2003년 40.0%, 2005년 37.6%, 2006년에는 32.5%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

면 가해자의 집은 2000년 14.2%에서 2002년 15.3%, 2004년과 2005년 18.2%로 증가하다 2006년 14.4%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의 비율이 40.3%로 가장 많고,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16.3%, 자동차 안은 7.6%를 구성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범죄장소가 최근으로 올수록 가해자의 집인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범죄장소의 다양성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경우 여관 등 숙박업소가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가장 높으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줄어들어 성매수 장소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림 3-18>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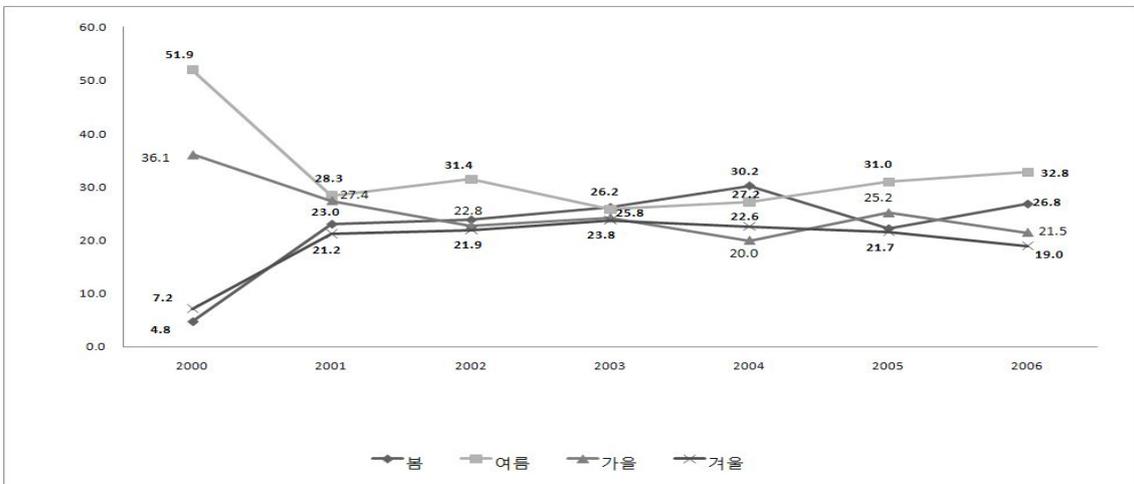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행 발생계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에 발생하는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01년 23.0%로 급증한 다음 2002년 23.8%, 2004년 30.2%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5년 22.2%, 2006년 26.8%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을에 발생하는 비율은 2000년 36.1%에서 2004년 20.0%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여름에 발생하는 비율도 2000년 51.9%에서 크게 감소하여 2001년 28.3%, 2003년 25.8%, 2005년 31.0%로 30.0% 내외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01년 21.2%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까지 22%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22>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행발생계절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봄	32 (4.8)	543 (23.0)	536 (23.8)	694 (26.2)	789 (30.2)	299 (22.2)	636 (26.8)	3,529 (24.8)
여름	348 (51.9)	668 (28.3)	707 (31.4)	684 (25.8)	710 (27.2)	417 (31.0)	777 (32.8)	4,311 (30.2)
가을	242 (36.1)	647 (27.4)	513 (22.8)	643 (24.3)	521 (20.0)	339 (25.2)	509 (21.5)	3,414 (23.9)
겨울	48 (7.2)	500 (21.2)	493 (21.9)	630 (23.8)	591 (22.6)	292 (21.7)	450 (19.0)	3,004 (21.1)
계	670 (100.0)	2,358 (100.0)	2,249 (100.0)	2,651 (100.0)	2,611 (100.0)	1,347 (100.0)	2,372 (100.0)	14,258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범행발생계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9>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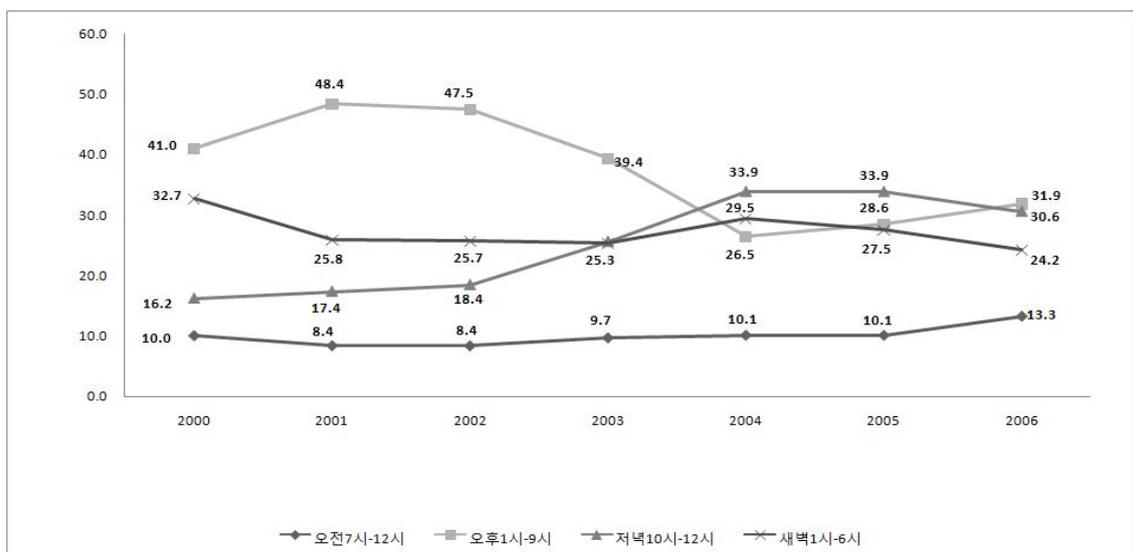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죄발생 시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전 7시에서 12시가 2000년 10.0%, 2002년 8.4%, 2004년 10.1%, 2006년 13.3%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매년 10%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후 1시-9시의 경우는 2000년 41.0%, 2001년 48.4%, 2002년 47.5%로 다소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2003년 39.4%, 2004년 26.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다시 2005년 28.6%, 2006년 31.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저녁 10시-12시의 경우는 2000

년 16.2%, 2001년 17.4%, 2002년 18.4%의 비율을 보이다가 2003년 25.6%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4, 2005년 33.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새벽 1시에서 6시는 2000년 32.7%, 2002년 25.7%, 2004년 29.5%, 2006년 24.2%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오후 1시에서 9시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전 7시에서 12시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3>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발생시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오전7시- 오후12시	62 (10.0)	184 (8.4)	171 (8.4)	245 (9.7)	232 (10.1)	224 (10.1)	271 (13.3)	1,389 (10.0)
오후1시- 오후9시	253 (41.0)	1,060 (48.4)	971 (47.5)	997 (39.4)	607 (26.5)	633 (28.6)	653 (31.9)	5,174 (37.1)
저녁10시- 오전12시	100 (16.2)	380 (17.4)	377 (18.4)	648 (25.6)	776 (33.9)	751 (33.9)	626 (30.6)	3,658 (26.3)
새벽1시- 오전6시	202 (32.7)	566 (25.8)	525 (25.7)	639 (25.3)	675 (29.5)	609 (27.5)	495 (24.2)	3,711 (26.6)
계	617 (100.0)	2,190 (100.0)	2,044 (100.0)	2,529 (100.0)	2,290 (100.0)	2,217 (100.0)	2,045 (100.0)	13,932 (100.0)

주1. '1-7차 조사'인 2003년 상반기까지는 범죄발생시간을 위와같은 범주로 나누었으나, 이후 2003년 하반기분석인 '8차 조사' 이후로는 오전은 6시부터 12시, 오후1시부터 6시, 저녁7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부터 6시로 분류되어 오전6시부터 12시를 오전7시-12시에, 오후1시부터 6시를 오후1시-9시에, 저녁7시부터 밤12시를 저녁10시-6시로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림 3-20>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3) 공범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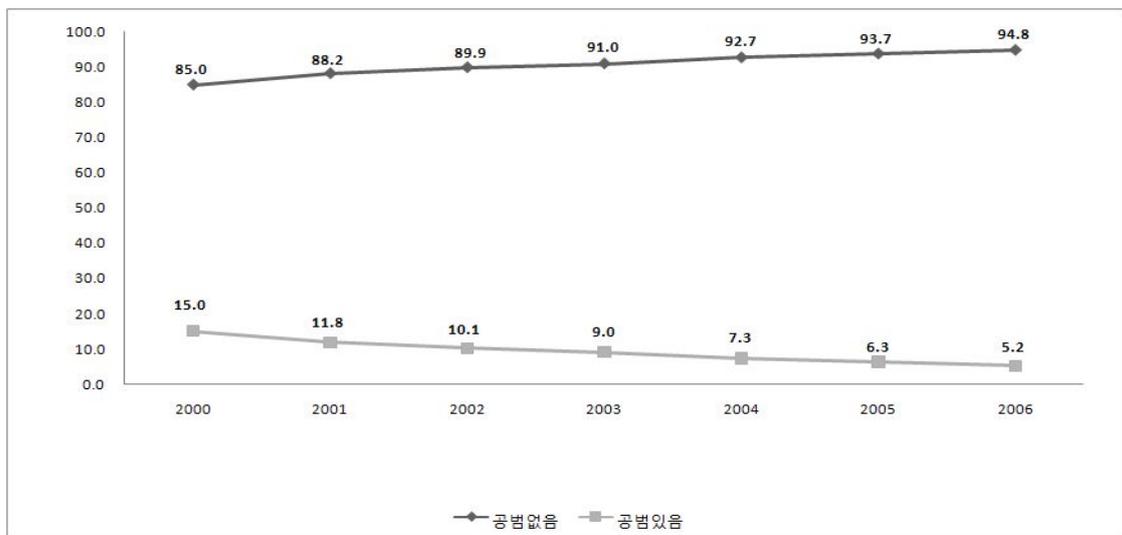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부분은 공범이 없이 진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범 없는 단독범의 경우가 2000년 85.0%, 2002년 89.9%, 2004년 92.7%, 2006년 94.8%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특히 강간범죄에 대해 공범이 없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나고 있어 단독범에 의한 강간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범죄의 의도성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표 3-24>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시 공범유무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공범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범없음	566 (85.0)	2,070 (88.2)	2,023 (89.9)	2,433 (91.0)	2,427 (92.7)	1,270 (93.7)	2,232 (94.8)	13,021 (91.3)
공범있음	100 (15.0)	277 (11.8)	228 (10.1)	242 (9.0)	192 (7.3)	85 (6.3)	122 (5.2)	1,246 (8.7)
계	666 (100.0)	2,347 (100.0)	2,251 (100.0)	2,675 (100.0)	2,619 (100.0)	1,355 (100.0)	2,355 (100.0)	14,268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공범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21>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행시 공범유무의 연도별 추세

제2절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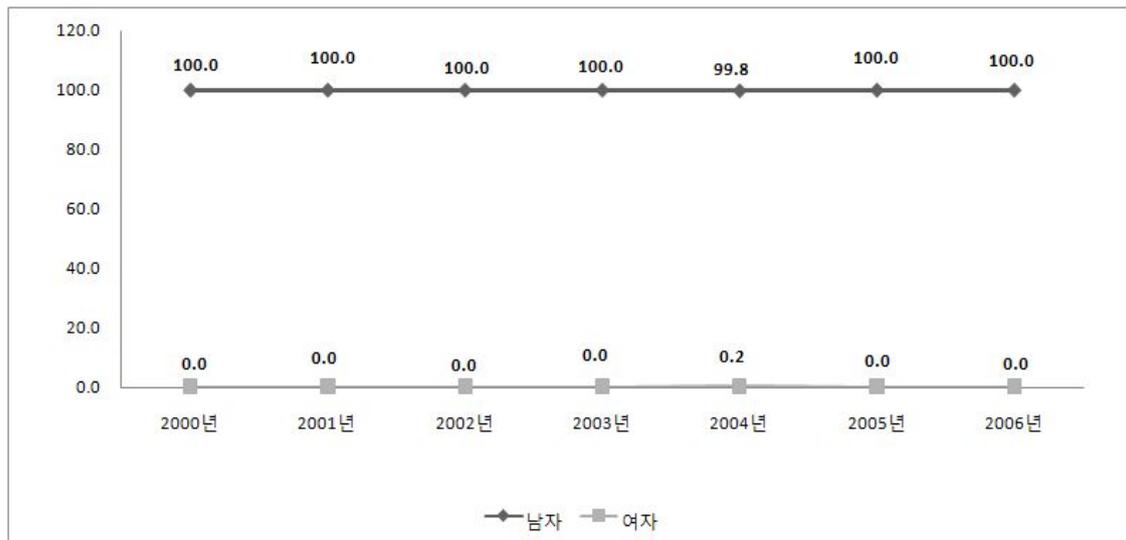
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발생추세

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 있어서 2004년에 여자가 한명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범죄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표 3-2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성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 자	194 (100.0)	482 (100.0)	418 (100.0)	483 (100.0)	400 (99.8)	321 (100.0)	331 (100.0)	2629 (99.9)
여 자	-	-	-	-	1 (0.2)	-	-	1 (0.1)
계	194 (100.0)	482 (100.0)	418 (100.0)	483 (100.0)	401 (100.0)	321 (100.0)	331 (100.0)	2,630 (100.0)



<그림 3-22>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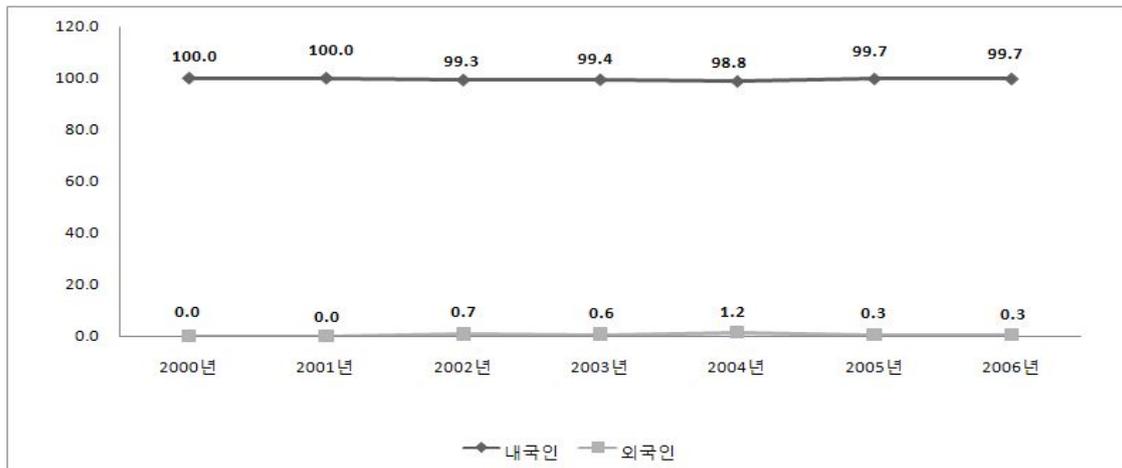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국 적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의 국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의 비율이 2000년 100.0%, 2001년 100.0%, 2002년 99.3%, 2003년 99.4%, 2004년 98.8%, 2005년 99.7%, 2006년 99.7% 등으로 해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범죄는 내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6>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국적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194 (100.0)	482 (100.0)	415 (99.3)	480 (99.4)	396 (98.8)	320 (99.7)	330 (99.7)	2,617 (99.5)
외국인	-	-	3 (0.7)	3 (0.6)	5 (1.2)	1 (0.3)	1 (0.3)	13 (0.5)
계	194 (100.0)	482 (100.0)	418 (100.0)	483 (100.0)	401 (100.0)	321 (100.0)	331 (100.0)	2,630 (100.0)



<그림 3-23>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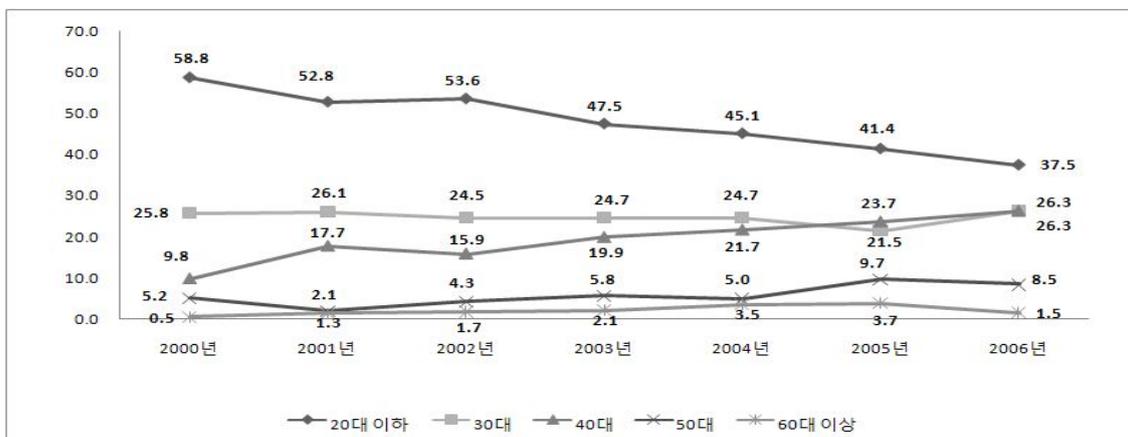
2) 연 령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의 연령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이하의 경우 2000년 58.8%, 2001년 52.8%, 2002년 53.6%, 2003년 47.5%, 2004년 45.1%, 2005년 41.4%, 2006년 37.5%로 매년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

다. 30대의 경우는 2000년 25.8%, 2001년 26.1%, 2002년 24.5%, 2003년 24.7%, 2004년 24.7%, 2005년 21.5%, 2006년 26.3%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40대의 경우는 2000년 9.8%, 2001년 17.7%, 2002년 15.9%, 2003년 19.9%, 2004년 21.7%, 2005년 23.7%, 2006년 26.3%로서 2002년을 제외하고 매년 상대적 비율이 상승했다. 50대의 경우는 2000년 5.2%, 2001년 2.1%, 2002년 4.3%, 2003년 5.8%, 2004년 5.0%, 2005년 9.7%, 2006년 8.5%의 낮은 비율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평균 2.1%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강간범죄의 가해자들은 모든 해에 걸쳐서 20대 이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대 이하	114 (58.8)	253 (52.8)	223 (53.6)	229 (47.5)	181 (45.1)	133 (41.4)	124 (37.5)	1,257 (47.9)
30대	50 (25.8)	125 (26.1)	102 (24.5)	119 (24.7)	99 (24.7)	69 (21.5)	87 (26.3)	651 (24.8)
40대	19 (9.8)	85 (17.7)	66 (15.9)	96 (19.9)	87 (21.7)	76 (23.7)	87 (26.3)	516 (19.7)
50대	10 (5.2)	10 (2.1)	18 (4.3)	28 (5.8)	20 (5.0)	31 (9.7)	28 (8.5)	145 (5.5)
60대 이상	1 (0.5)	6 (1.3)	7 (1.7)	10 (2.1)	14 (3.5)	12 (3.7)	5 (1.5)	55 (2.1)
계	194 (100.0)	479 (100.0)	416 (100.0)	482 (100.0)	401 (100.0)	321 (100.0)	331 (100.0)	2,624 (100.0)



<그림 3-24>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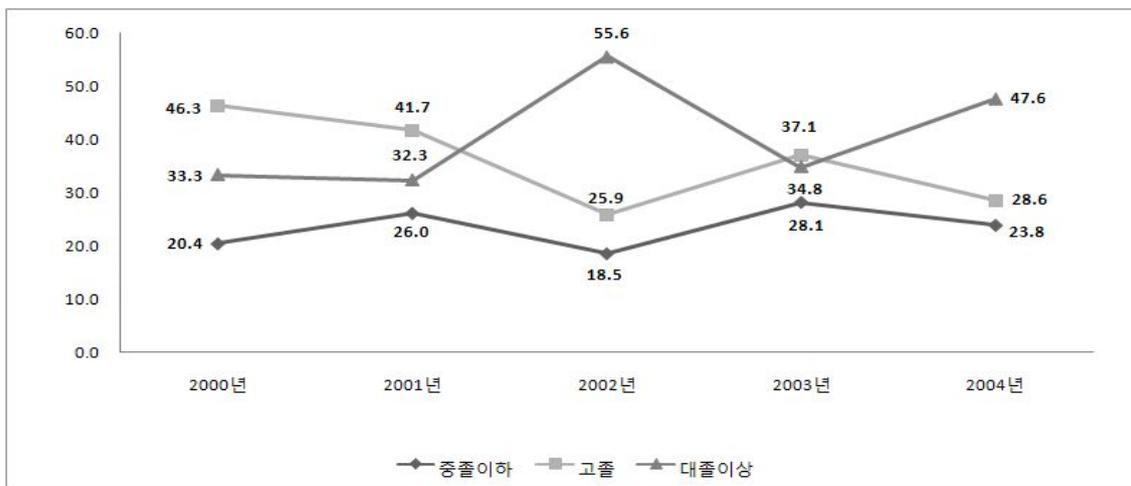
3) 학 력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자의 학력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이하 범죄자의 비율은 2000년 20.4%, 2001년 26.0%, 2002년 18.5%, 2003년 28.1%, 2004년 23.8%로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고졸 범죄자의 비율은 2000년 46.3%, 2001년 41.7%, 2002년 25.9%, 2003년 37.1%, 2004년 28.6%로서 2002년까지 매년 낮아진 이후 다시 상승과 하락을 하는 양상이다. 대졸 이상의 경우는 2000년 33.3%, 2001년 32.3%, 2002년 55.6%, 2003년 34.8%, 2004년 47.6%로 2002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 하강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3-28>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중졸 이하	11 (20.4)	25 (26.0)	10 (18.5)	25 (28.1)	25 (23.8)	96 24.1
고졸	25 (46.3)	40 (41.7)	14 (25.9)	33 (37.1)	30 (28.6)	142 35.7
대졸 이상	18 (33.3)	31 (32.3)	30 (55.6)	31 (34.8)	50 (47.6)	160 40.2
계	54 (100.0)	96 (100.0)	54 (100.0)	89 (100.0)	105 (100.0)	398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2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4) 직 업

<표 3-29>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문직	1 (0.5)	3 (0.6)	4 (1.0)	5 (1.0)	-	5 (1.6)	11 (3.3)	29 (1.2)
사무관리직	11 (5.7)	44 (9.1)	44 (10.6)	57 (11.8)	44 (21.8)	28 (8.7)	34 (10.3)	262 (10.8)
판매서비스직	56 (28.9)	104 (21.6)	89 (21.3)	99 (20.5)	22 (10.9)	48 (15.0)	49 (14.8)	467 (19.2)
유흥업소	5 (2.6)	5 (1.0)	1 (0.2)	11 (2.3)	4 (2.0)	4 (1.2)	2 (0.6)	32 (1.3)
일용노동자	20 (10.3)	48 (10.0)	44 (10.6)	57 (11.8)	24 (11.9)	50 (15.6)	24 (7.3)	267 (11.0)
학 생	11 (5.7)	33 (6.9)	28 (6.7)	11 (2.3)	10 (5.0)	27 (8.4)	7 (2.1)	127 (5.2)
군인 경찰	10 (5.2)	18 (3.7)	12 (2.9)	11 (2.3)	-	4 (1.2)	4 (1.2)	59 (2.4)
무 직	54 (27.8)	156 (32.4)	142 (34.1)	159 (32.9)	56 (27.7)	101 (31.5)	104 (31.4)	772 (31.8)
생산직	10 (5.2)	34 (7.1)	18 (4.3)	18 (3.7)	-	9 (2.8)	69 (20.8)	158 (6.5)
농어업	9 (4.6)	13 (2.7)	12 (2.9)	14 (2.9)	-	4 (1.2)	15 (4.5)	67 (2.8)
운전자,운수업	7 (3.6)	21 (4.4)	13 (3.1)	14 (2.9)	-	-	-	55 (2.3)
공공기관	-	-	-	-	2 (1.0)	3 (0.9)	-	5 (0.2)
자영업	-	-	-	16 (3.3)	29 (14.4)	31 (9.7)	9 (2.7)	85 (3.5)
청소년보호직종군	-	-	-	-	-	4 (1.2)	1 (0.3)	5 (0.2)
기 타	-	2 (0.4)	10 (2.4)	11 (2.3)	11 (5.4)	3 (0.9)	2 (0.6)	39 (1.6)
계	194 (100.0)	481 (100.0)	417 (100.0)	483 (100.0)	202 (100.0)	321 (100.0)	331 (100.0)	2,429 (100.0)

주1: 2000, 2001, 2002년 조사항목에서는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2: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나 ‘9차 조사’에서는 범죄자 직업에 대한 조사가 없어 이번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0차 조사’ 항목에는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3: 2005년의 경우, ‘11차 조사’와 ‘12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1차 조사’ 항목에서는 ‘군인, 경찰’,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12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4: 2006년의 경우, ‘13차 조사’와 ‘14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3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4차 조사’ 항목에서는 ‘유흥업소’, ‘일용노동자’, ‘학생’, ‘군인, 경찰’, ‘운전자, 운수업’,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 일용노동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직의 경우, 2000년 27.8%, 2001년 32.4%, 2002년 34.1%, 2003년 32.9%, 2004년 27.7%, 2005년 31.5%, 2006년 31.4%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000년 28.9%, 2001년 21.6%, 2002년 21.3%, 2004년 10.9%, 2005년 15.0%, 2006년 14.8%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2000년 5.7%, 2001년 9.1%, 2002년 10.6%, 2003년 11.8%, 2004년 21.8%, 2005년 8.7%, 2006년 10.3%인 것으로 나타나 2004년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은 10.8%였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2000년 10.3%, 2001년 10.0%, 2002년 10.6%, 2003년 11.8%, 2004년 11.9%, 2005년 15.6%, 2006년 7.3%로서 전체 평균 비율은 11.0%이다. 기타 다른 직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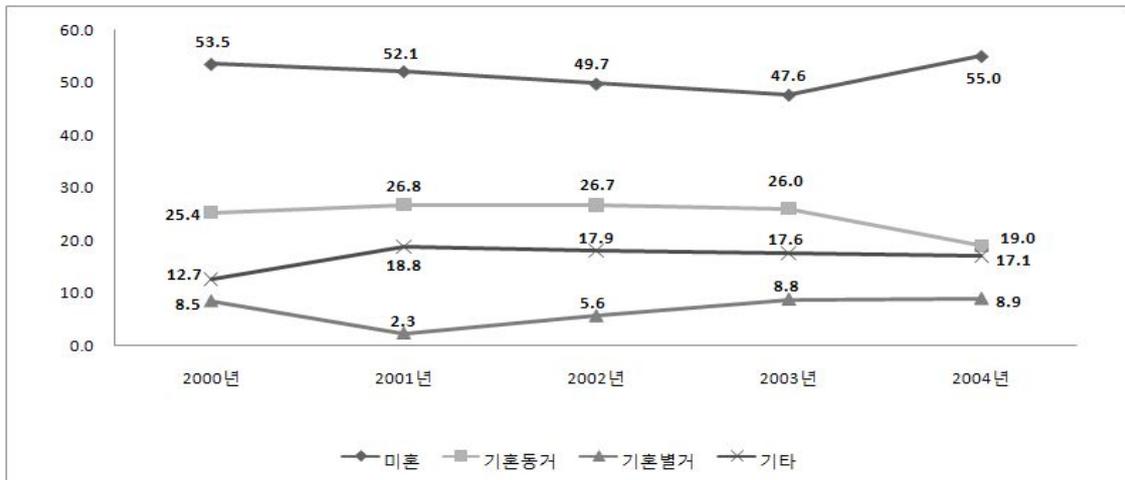
5) 혼 인

청소년대상 강간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연도별 혼인상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30>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혼인상태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 혼	38 (53.5)	111 (52.1)	97 (49.7)	130 (47.6)	148 (55.0)	524 (51.3)
기혼동거	18 (25.4)	57 (26.8)	52 (26.7)	71 (26.0)	51 (19.0)	249 (24.4)
기혼별거	6 (8.5)	5 (2.3)	11 (5.6)	24 (8.8)	24 (8.9)	70 (6.9)
기혼사별	2 (2.8)	1 (0.5)	5 (2.6)	5 (1.8)	5 (1.9)	18 (1.8)
이 혼	4 (5.6)	17 (8.0)	13 (6.7)	24 (8.8)	19 (7.1)	77 (7.5)
동 거	3 (4.2)	21 (9.9)	17 (8.7)	16 (5.9)	22 (8.2)	79 (7.7)
기 타	-	1 (0.5)	-	3 (1.1)	-	4 (0.4)
계	71 (100.0)	213 (100.0)	195 (100.0)	273 (100.0)	269 (100.0)	1,021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26>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미혼의 경우 2000년 53.5%, 2001년 52.1%, 2002년 49.7%, 2003년 47.6%로 상대적 비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 2004년 55.0%로 다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동거의 경우는 2000년 25.4%, 2001년 26.8%, 2002년 26.7%, 2003년 26.0%, 2004년 19.0%로 등으로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별거의 경우는 2000년 8.5%, 2001년 2.3%, 2002년 5.6%, 2003년 8.8%, 2004년 8.9% 등으로 2001년 하강한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혼의 경우는 2000년 5.6%, 2001년 8.0%, 2002년 6.7%, 2003년 8.8%, 2004년 7.1% 등으로 역시 미미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거의 경우는 2000년 4.2%, 2001년 9.9%, 2002년 8.7%, 2003년 5.9%, 2004년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강간 사건 범죄자들은 모든 해에 걸쳐서 미혼 가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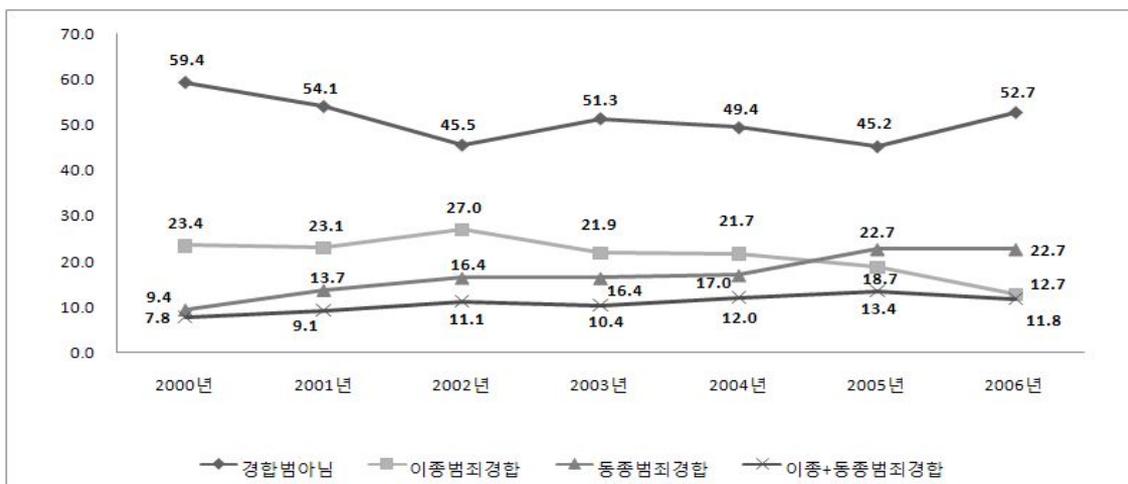
1) 경합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강간범죄의 연도별 경합여부는 다음과 같다. 경합범이 아닌 경우는 2000년 59.4%, 2001년 54.1%, 2002년 45.5%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51.3%, 2004년 49.4%, 2005년 45.2%, 2006년 52.7%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범죄 경합의 경우에 2000년

23.4%, 2001년 23.1%, 2002년 27.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 21.9%, 2004년 21.7%, 2005년 18.7%, 2006년 12.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종범죄경합의 경우에는 2000년 9.4%, 2001년 13.7%, 2002년 16.4%, 2003년 16.4%, 2004년 17.0%, 2005년 22.7%, 2006년 22.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종+동종범죄경합의 경우에는 2000년 7.8%, 2001년 9.1%, 2002년 11.1%, 2003년 10.4%, 2004년 12.0%, 2005년 13.4%, 2006년 11.8%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강간범죄의 경우 경합여부는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50.6%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경합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합범아님	114 (59.4)	260 (54.1)	189 (45.5)	248 (51.3)	198 (49.4)	145 (45.2)	174 (52.7)	1,328 (50.6)
이종범죄경합	45 (23.4)	111 (23.1)	112 (27.0)	106 (21.9)	87 (21.7)	60 (18.7)	42 (12.7)	563 (21.5)
동종범죄경합	18 (9.4)	66 (13.7)	68 (16.4)	79 (16.4)	68 (17.0)	73 (22.7)	75 (22.7)	447 (17.0)
이종+동종범죄경합	15 (7.8)	44 (9.1)	46 (11.1)	50 (10.4)	48 (12.0)	43 (13.4)	39 (11.8)	285 (10.9)
계	192 (100.0)	481 (100.0)	415 (100.0)	483 (100.0)	401 (100.0)	321 (100.0)	330 (100.0)	2,623 (100.0)



<그림 3-2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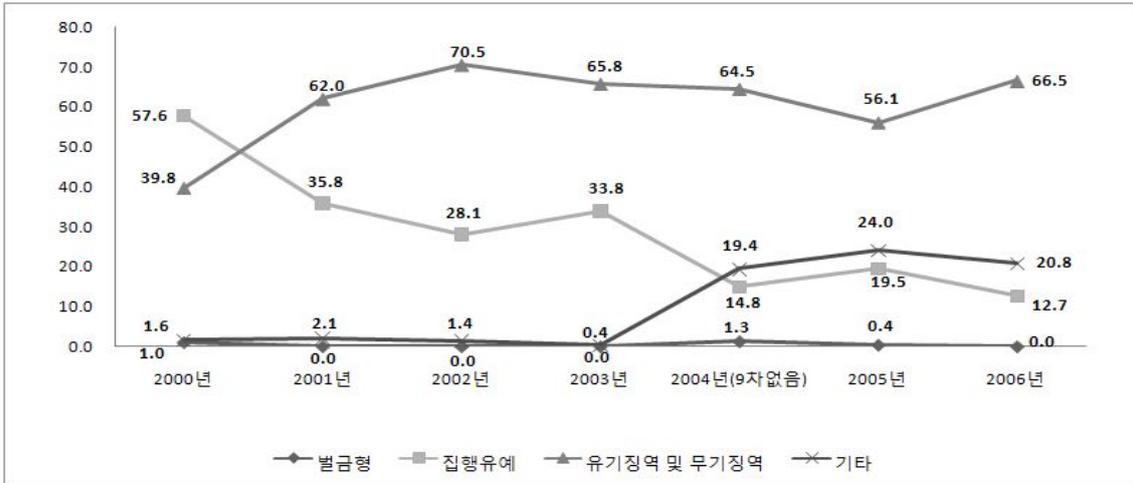
2) 1심 선고형의 종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강간 범죄에 대한 연도별 1심 선고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벌금형의 경우 2000년에 1.0%(2건), 2004년 1.3%(4건), 2005년 0.4%(2건)를 나타내고 있을 뿐 강간사건에서 벌금형의 비율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집행유예의 경우 2000년 57.6%, 2001년 35.8%, 2002년 28.1%, 2003년 33.8%, 2004년 14.8%, 2005년 19.5%, 2006년 12.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유기징역의 경우 2000년 39.8%, 2001년 61.2%, 2002년 68.8%, 2003년 65.1%, 2004년 63.9%, 2005년 55.9%, 2006년 65.9%로 200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의 경우 2001년 0.9%, 2002년 1.7%, 2003년 0.6%, 2004년 0.6%, 2005년 0.2%, 2006년 0.6%로 상대적 비율이 낮은 편이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경우는 2000년 1.0%, 2001년 0.6%, 2002년 0.7%, 2003년 0.2%, 2004년 0.6%, 2005년 0.2%, 2006년 0.3%로 마찬가지로 상대적 비율은 낮다.

<표 3-3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선고종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차제외)	2005년	2006년	
벌 금 형	2 (1.0)	-	-	-	4 (1.3)	2 (0.4)	-	8 (0.3)
집행유예	110 (57.6)	167 (35.8)	117 (28.1)	162 (33.8)	46 (14.8)	96 (19.5)	42 (12.7)	740 (27.6)
유기징역	76 (39.8)	285 (61.2)	287 (68.8)	312 (65.1)	198 (63.9)	275 (55.9)	218 (65.9)	1,651 (61.5)
무기징역	-	4 (0.9)	7 (1.7)	3 (0.6)	2 (0.6)	1 (0.2)	2 (0.6)	19 (0.7)
보호감호/ 치료감호	2 (1.0)	3 (0.6)	3 (0.7)	1 (0.2)	2 (0.6)	1 (0.2)	1 (0.3)	13 (0.5)
보호관찰/사회 봉사/수강명령	-	-	-	-	43 (13.9)	102 (20.7)	68 (20.5)	213 (7.9)
기 타	1 (0.5)	7 (1.5)	3 (0.7)	1 (0.2)	15 (4.8)	15 (3.0)	-	42 (1.6)
계	191 (100.0)	466 (100.0)	417 (100.0)	479 (100.0)	310 (100.0)	492 (100.0)	331 (100.0)	2,686 (100.0)

주: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1심선고형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28>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3) 1심 선고형량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강간 범죄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의 연도별 추세는 다음과 같다.

<표 3-3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형량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 제외)	2006년	
1년 미만	1 (1.3)	3 (1.1)	2 (0.7)	2 (0.6)	-	-	5 (2.0)	13 (1.0)
1년 이상- 3년 미만	25 (32.5)	54 (18.9)	61 (21.0)	71 (22.7)	-	18 (17.6)	62 (25.1)	291 (22.1)
3년 이상- 5년 미만	23 (29.9)	113 (39.6)	110 (37.9)	116 (37.1)	-	51 (50.0)	88 (35.6)	501 (38.1)
5년 이상	28 (36.4)	115 (40.4)	117 (40.3)	124 (39.6)	-	33 (32.4)	92 (37.2)	509 (38.7)
계	77 (100.0)	285 (100.0)	290 (100.0)	313 (100.0)	-	102 (100.0)	247 (100.0)	1,314 (100.0)

주1: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1심에서 '1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1.3%, 2001년 1.1%, 2002년 0.7%, 2003년 0.6%, 2006년 2.0% 등 평균 1%대를 전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1년-3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32.5%, 2001년 18.9%, 2002년 21.0%, 2003년 22.7%, 2005년 17.6%, 2006년

25.1%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심에서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29.9%, 2001년 39.6%, 2002년 37.9%, 2003년 37.1%, 2005년 50.0%, 2006년 35.6%이며, ‘5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36.4%, 2001년 40.4%, 2002년 40.3%, 2003년 39.6%, 2005년 32.4%, 2006년 37.2%의 비율을 유지한다.

4) 신상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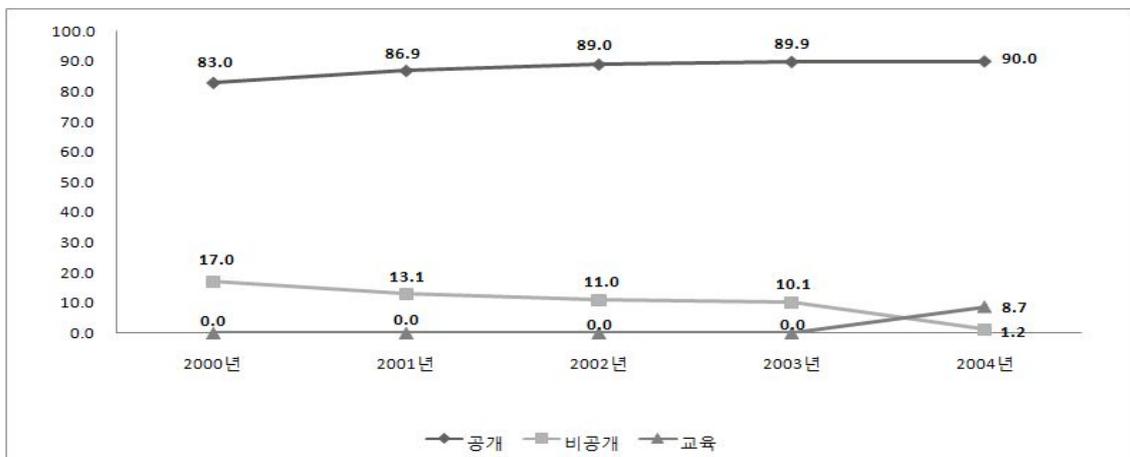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공개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4>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심의결과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 제외)	2006년	
공 개	161 (83.0)	419 (86.9)	372 (89.0)	434 (89.9)	361 (90.0)	137 (92.6)	-	1,884 (88.6)
비공개	33 (17.0)	63 (13.1)	46 (11.0)	49 (10.1)	5 (1.2)	3 (2.0)	-	199 (9.4)
교 육	-	-	-	-	35 (8.7)	8 (5.4)	-	43 (2.0)
계	194 (100.0)	482 (100.0)	418 (100.0)	483 (100.0)	401 (100.0)	148 (100.0)	-	2,126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2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강간범죄의 경우 교육대상이 된 경우는 2004년 이후 다소 나타나고 있으며, 공개대상이 된 경우는 2000년 83.0%, 2001년 86.9%, 2002년 89.0%, 2003년 89.9%, 2004년 90.0%, 2005년 92.6% 등 전체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간 피해자의 연령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세 이하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1.6%, 2001년 3.2%, 2002년 4.0%, 2003년 2.3%, 2004년 1.3%, 2005년 1.5%, 2006년 2.0%로 2002년 까지 다소 상승하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7세-13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23.8%, 2001년 24.7%, 2002년 27.8%, 2003년 30.7%, 2004년 26.0%, 2005년 29.7%, 2006년 23.3% 등으로 다소 증감을 보이고 있다. 14세-15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37.6%, 2001년 41.0%, 2002년 40.9%, 2003년 29.3%, 2004년 34.0%, 2005년 32.1%, 2006년 38.7%로서 2003년에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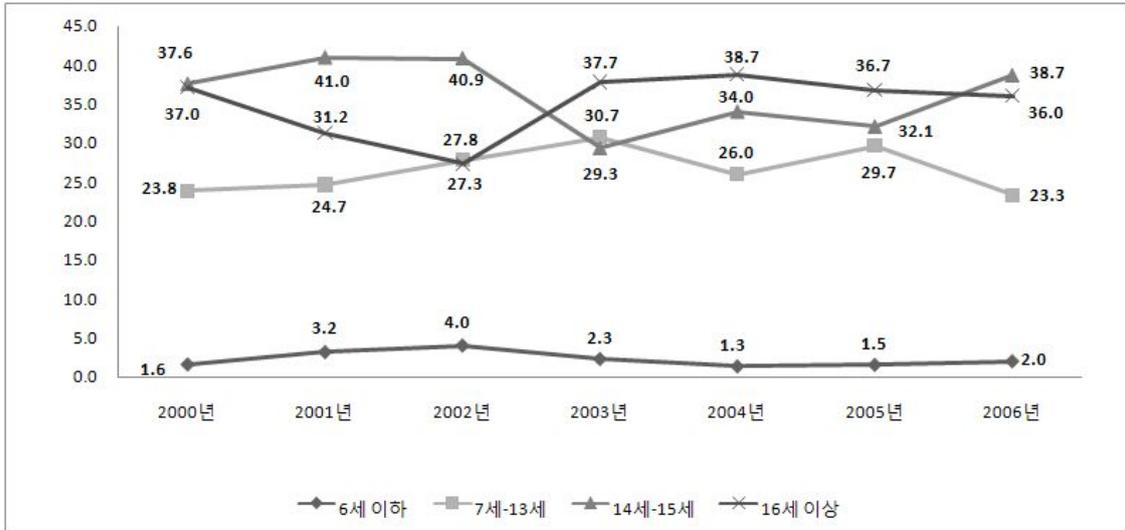
<표 3-35>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세 이하	3 (1.6)	14 (3.2)	16 (4.0)	13 (2.3)	6 (1.3)	7 (1.5)	9 (2.0)	68 (2.3)
7세-13세	45 (23.8)	109 (24.7)	111 (27.8)	175 (30.7)	117 (26.0)	135 (29.7)	105 (23.3)	797 (27.0)
14세-15세	71 (37.6)	181 (41.0)	163 (40.9)	167 (29.3)	153 (34.0)	146 (32.1)	174 (38.7)	1,055 (35.7)
16세 이상	70 (37.0)	138 (31.2)	109 (27.3)	215 (37.7)	174 (38.7)	167 (36.7)	162 (36.0)	1,035 (35.0)
계	189 (100.0)	442 (100.0)	399 (100.0)	570 (100.0)	450 (100.0)	455 (100.0)	450 (100.0)	2,955 (100.0)

주1: '8차 조사' 이전까지의 분석에서의 기준은 '7세 이하', '8-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2: '8~9차 조사'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3세', '14-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3: '10차 조사' 이후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그림 3-3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16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37.0%, 2001년 31.2%, 2002년 27.3%, 2003년 37.7%, 2004년 38.7%, 2005년 36.7%, 2006년 36.0%로서 2002년 까지 감소하다 2003년 다시 증가한 이후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학 력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피해청소년의 학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자퇴 및 퇴학, 졸업인 경우가 2000년 38.0%, 2001년 40.4%, 2002년 38.8%, 2003년 41.4%, 2004년 37.2%, 2005년 37.6% 등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재학, 자퇴 및 퇴학, 졸업인 경우 역시 2000년 39.1%, 2001년 38.1%, 2002년 38.8%, 2003년 36.1%, 2004년 40.8%, 2005년 34.5%로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이나 졸업인 경우는 2000년 19.6%, 2001년 16.9%, 2002년 18.3%, 2003년 19.7%, 2004년 19.5%, 2005년 26.8%이며, 전체적으로 비율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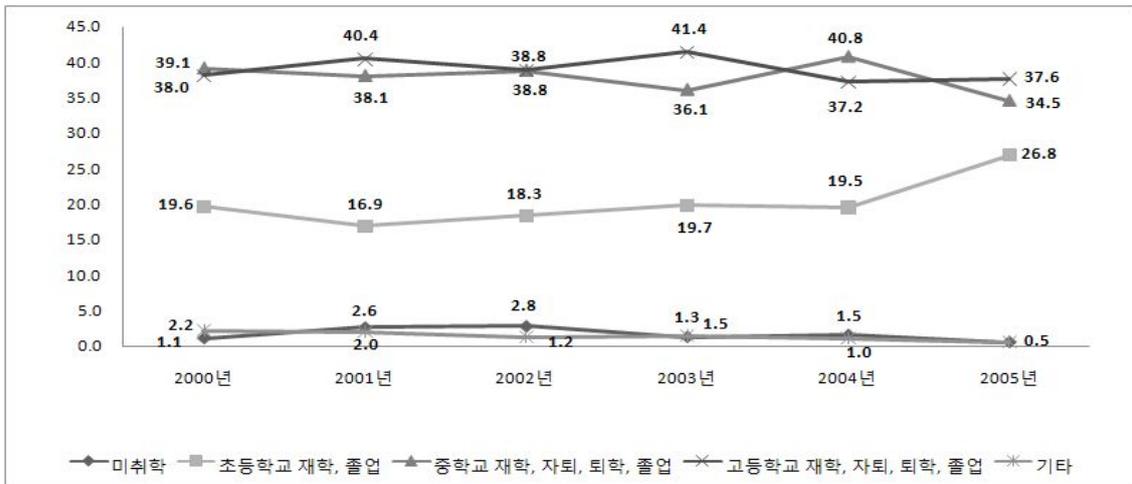
<표 3-36>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청소년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 제외)	2006년	
미취학	1 (1.1)	9 (2.6)	9 (2.8)	6 (1.3)	6 (1.5)	1 (0.5)	-	32 (1.8)
초등학교 재학	18 (19.6)	56 (16.3)	59 (18.3)	93 (19.7)	74 (19.0)	52 (26.8)	-	352 (19.4)
중학교 재학	32 (34.8)	103 (29.9)	106 (32.9)	144 (30.6)	127 (32.6)	51 (26.3)	-	563 (31.1)
고등학교 재학	31 (33.7)	114 (33.1)	111 (34.5)	163 (34.6)	121 (31.0)	58 (29.9)	-	598 (33.0)
대학교 재학	2 (2.2)	7 (2.0)	4 (1.2)	7 (1.5)	4 (1.0)	1 (0.5)	-	25 (1.4)
초등학교 졸업	-	2 (0.6)	-	-	2 (0.5)	-	-	4 (0.2)
중학교 졸업	2 (2.2)	4 (1.2)	4 (1.2)	3 (0.6)	7 (1.8)	4 (2.1)	-	24 (1.3)
고등학교 졸업	2 (2.2)	5 (1.5)	2 (0.6)	10 (2.1)	6 (1.5)	1 (0.5)	-	26 (1.4)
중학교자퇴, 퇴학	2 (2.2)	24 (7.0)	15 (4.7)	23 (4.9)	25 (6.4)	12 (6.2)	-	101 (5.6)
고등학교 자퇴, 퇴학	2 (2.2)	20 (5.8)	12 (3.7)	22 (4.7)	18 (4.6)	14 (7.2)	-	88 (4.9)
계	92 (100.0)	344 (100.0)	322 (100.0)	471 (100.0)	390 (100.0)	194 (100.0)	-	1,813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3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3) 직 업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의 직업은 대부분 학생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방종업원이 직업인 경우가 2000년 18.4%, 2001년 16.2%, 2002년 13.3%, 2003년 7.2%, 2004년 2.3%, 2005년 14.3%로 나타내고 있다.

<표 3-37>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무 직	51 (58.6)	151 (66.2)	158 (75.2)	154 (39.6)	278 (63.3)	36 (73.5)	-	828 (59.1)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2 (2.3)	4 (1.8)	1 (0.5)	2 (0.5)	-	-	-	9 (0.6)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1 (1.1)	8 (3.5)	6 (2.9)	3 (0.8)	6 (1.4)	2 (4.1)	-	26 (1.9)
다방종업원	16 (18.4)	37 (16.2)	28 (13.3)	28 (7.2)	10 (2.3)	7 (14.3)	-	126 (9.0)
유흥업소 종업원	-	-	1 (0.5)	-	1 (0.2)	-	-	2 (0.1)
기 타	17 (19.5)	28 (12.3)	16 (7.6)	202 (51.9)	144 (32.8)	4 (8.2)	-	411 (29.3)
계	87 (100.0)	228 (100.0)	210 (100.0)	389 (100.0)	439 (100.0)	49 (100.0)	-	1,402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장애여부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강간 피해자의 장애여부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가 없는 경우 2000년 95.4%, 2001년 95.7%, 2002년 95.1%, 2003년 94.8%, 2004년 96.2%, 2005년 95.9%, 2006년 95.8% 등으로 평균 95.7%를 나타냈다. 신체장애의 경우 2001년 0.8%, 2003년 1.3%, 2004년 0.2%, 2005년 0.5%, 2006년 0.7%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정신장애의 경우 평균인 3.8%를 전후로 다소 증감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3-38>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청소년 장애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장애없음	83 (95.4)	246 (95.7)	272 (95.1)	145 (94.8)	428 (96.2)	420 (95.9)	430 (95.8)	2,024 (95.7)
신체장애	-	2 (0.8)	-	2 (1.3)	1 (0.2)	2 (0.5)	3 (0.7)	10 (0.5)
정신장애	4 (4.6)	9 (3.5)	14 (4.9)	6 (3.9)	16 (3.6)	16 (3.7)	16 (3.6)	81 (3.8)
계	87 (100.0)	257 (100.0)	286 (100.0)	153 (100.0)	445 (100.0)	438 (100.0)	449 (100.0)	2,115 (100.0)

주: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장애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5) 동거형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간피해자의 연도별 동거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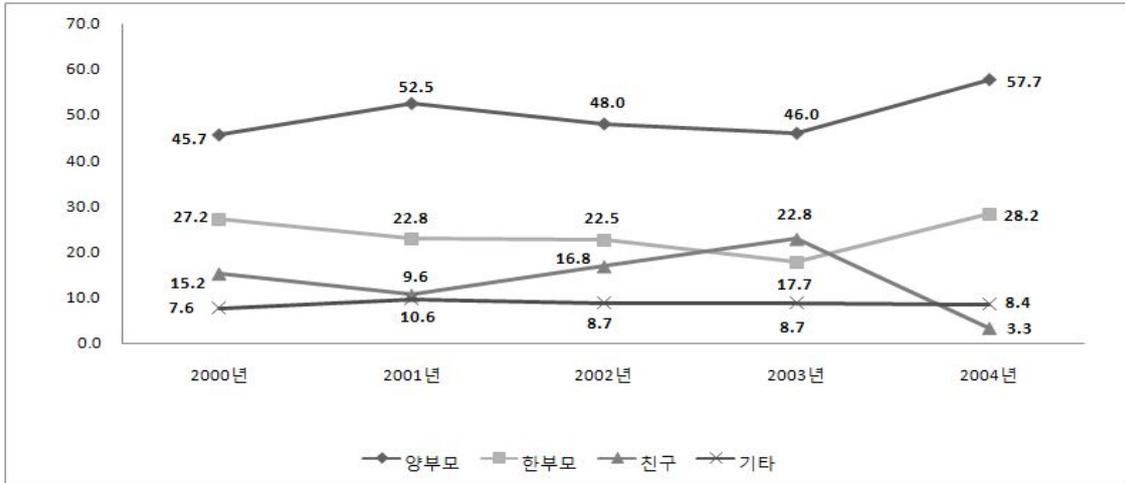
<표 3-3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동거인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양부모	42 (45.7)	159 (52.5)	160 (48.0)	242 (46.0)	192 (57.7)	117 (68.0)	-	912 (51.8)
한부모	25 (27.2)	69 (22.8)	75 (22.5)	93 (17.7)	94 (28.2)	27 (15.7)	-	383 (21.8)
조부모	4 (4.3)	14 (4.6)	13 (3.9)	25 (4.8)	8 (2.4)	7 (4.1)	-	71 (4.0)
친척	2 (2.2)	6 (2.0)	9 (2.7)	22 (4.2)	1 (0.3)	1 (0.6)	-	41 (2.3)
형제자매	2 (2.2)	4 (1.3)	14 (4.2)	16 (3.0)	6 (1.8)	2 (1.2)	-	44 (2.5)
친구	14 (15.2)	32 (10.6)	56 (16.8)	120 (22.8)	11 (3.3)	2 (1.2)	-	235 (13.4)
기타	3 (3.3)	19 (6.3)	6 (1.8)	8 (1.5)	21 (6.3)	16 (9.3)	-	73 (4.2)
계	92 (100.0)	303 (100.0)	333 (100.0)	526 (100.0)	333 (100.0)	172 (100.0)	-	1,759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3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양쪽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가 2000년 45.7%, 2001년 52.5%, 2002년 48.0%, 2003년 46.0%, 2004년 57.7%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쪽 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2000년 27.2%, 2001년 22.8%, 2002년 22.5%, 2003년 17.7%, 2004년 28.2%로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전체 평균으로는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51.8%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1.8%에 해당한다. 그 외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가 13.4%,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4.0%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나.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 가출여부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강간 피해자의 가출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출한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는 2000년 9.8%, 2001년 16.0%, 2002년 9.9%, 2003년 12.6%, 2004년 16.0% 등으로 다소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인 평균을 볼 때, 가출한 경우는 14.0%로 상당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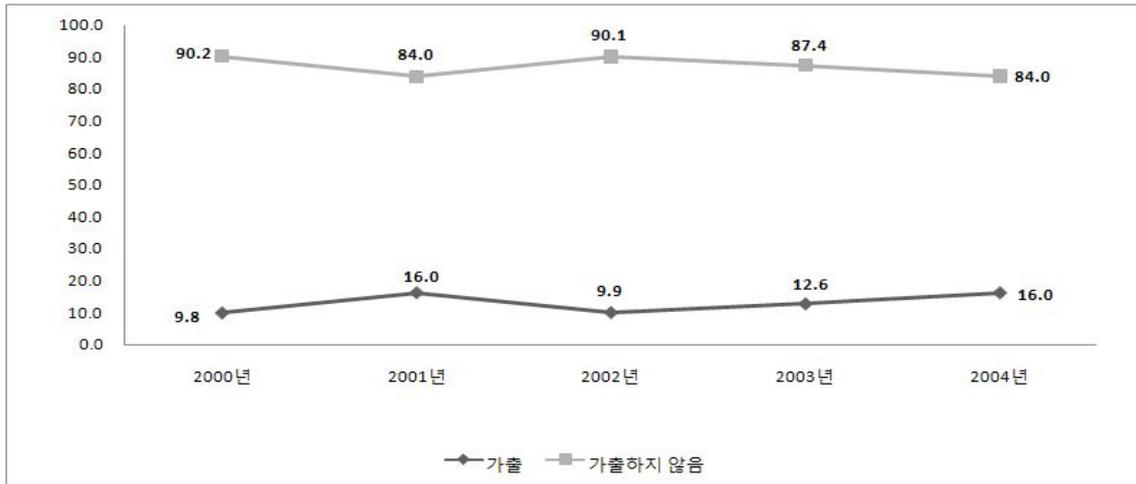
<표 3-4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청소년 가출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가 출	11 (9.8)	52 (16.0)	32 (9.9)	60 (12.6)	63 (16.0)	37 (18.4)	-	255 (14.0)
가출하지 않음	101 (90.2)	272 (84.0)	290 (90.1)	415 (87.4)	330 (84.0)	164 (81.6)	-	1,572 (86.0)
계	112 (100.0)	324 (100.0)	322 (100.0)	475 (100.0)	393 (100.0)	201 (100.0)	-	1,827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33>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 음주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간 피해자의 사건연도별 음주여부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음주의 경우 2000년 67.9%, 2001년 66.7, 2002년 75.2%, 2003년 83.2%, 2004년 74.9% 등으로 2002년 까지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03년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약간의 음주 상태의 경우 2000년 22.0%, 2001년 21.2%, 2002년 16.2%, 2003년 10.4%, 2004년 13.1% 등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취상태의 경우 2000년 10.1%, 2001년 12.1%, 2002년 8.6%, 2003년 6.4%, 2004년 12.0%로서 2001년 까지 높아졌고 이후 다

시 그 비율이 낮아졌다가 2004년에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음주의 경우가 74.0%로 대부분이다.

<표 3-4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 음주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비음주	74 (67.9)	176 (66.7)	227 (75.2)	168 (83.2)	332 (74.9)	-	-	977 (74.0)
약간의 음주상태	24 (22.0)	56 (21.2)	49 (16.2)	21 (10.4)	58 (13.1)	-	-	208 (15.8)
만취상태	11 (10.1)	32 (12.1)	26 (8.6)	13 (6.4)	53 (12.0)	-	-	135 (10.2)
계	109 (100.0)	264 (100.0)	302 (100.0)	202 (100.0)	443 (100.0)	-	-	1,320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음주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 처벌의사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는지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42>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처벌희망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처벌을 원함	78 (61.4)	251 (62.0)	300 (82.9)	191 (85.7)	402 (94.8)	-	-	1,222 (79.3)
처벌을 원하지 않음	49 (38.6)	154 (38.0)	62 (17.1)	32 (14.3)	22 (5.2)	-	-	319 (20.7)
계	127 (100.0)	405 (100.0)	362 (100.0)	223 (100.0)	424 (100.0)	-	-	1,541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처벌 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2000년 61.4%, 2001년 62.0%, 2002년 82.9%, 2003년 85.7%, 2004년 94.8% 등으로 매년 상대적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38.6%, 2001년 38.0%, 2002년 17.1%, 2003년 14.3%, 2004년 5.2% 등으로 상대적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합의여부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피해자-가해자간 합의여부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40.5%, 2001년 49.4%, 2002년 67.3%, 2003년 63.8%, 2004년 84.4%로서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합의 하지 않는 경우가 평균 6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43> 청소년대상 강간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합의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합의하지 않음	49 (40.5)	159 (49.4)	171 (67.3)	102 (63.8)	320 (84.4)	-	-	801 (64.8)
합의함	72 (59.5)	163 (50.6)	83 (32.7)	58 (36.3)	59 (15.6)	-	-	435 (35.2)
계	121 (100.0)	322 (100.0)	254 (100.0)	160 (100.0)	379 (100.0)	-	-	1,236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합의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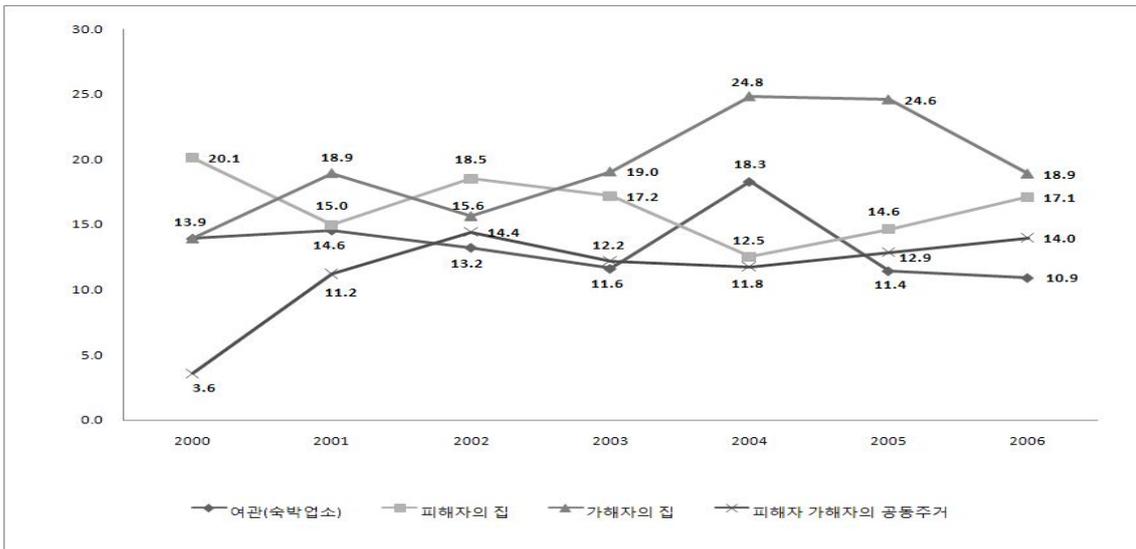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1) 범행장소

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의 사건연도별 범행장소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44>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행장소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길(대로, 골목)	1 (0.5)	7 (1.5)	7 (1.7)	16 (3.3)	9 (2.3)	14 (3.5)	18 (4.0)	72 (2.5)
사무실	1 (0.5)	8 (1.7)	3 (0.7)	7 (1.4)	5 (1.3)	10 (2.5)	3 (0.7)	37 (1.3)
공원 야산 등	18 (9.3)	38 (7.9)	20 (4.8)	29 (6.0)	22 (5.5)	19 (4.7)	19 (4.2)	165 (5.8)
유흥주점 노래방 등	4 (2.1)	7 (1.5)	9 (2.2)	2 (0.4)	4 (1.0)	3 (0.7)	4 (0.9)	33 (0.4)
여관(숙박업소)	27 (13.9)	70 (14.6)	55 (13.2)	56 (11.6)	73 (18.3)	46 (11.4)	49 (10.9)	376 (13.3)
피해자의 집	39 (20.1)	72 (15.0)	77 (18.5)	83 (17.2)	50 (12.5)	59 (14.6)	77 (17.1)	457 (16.2)
주거침입	11 (5.7)	11 (2.3)	11 (2.6)	11 (2.3)	1 (0.3)	5 (1.2)	6 (1.3)	56 (2.0)
가해자의 집	27 (13.9)	91 (18.9)	65 (15.6)	92 (19.0)	99 (24.8)	99 (24.6)	85 (18.9)	558 (19.7)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	7 (3.6)	54 (11.2)	60 (14.4)	59 (12.2)	47 (11.8)	52 (12.9)	63 (14.0)	342 (12.1)
제3자의 집	13 (6.7)	41 (8.5)	35 (8.4)	61 (12.6)	13 (3.3)	20 (5.0)	22 (4.9)	205 (7.3)
자동차 안	30 (15.5)	58 (12.1)	56 (13.5)	49 (10.1)	37 (9.3)	30 (7.4)	34 (7.6)	294 (10.4)
기 타	16 (8.2)	24 (5.0)	18 (4.3)	18 (3.7)	39 (9.8)	46 (11.4)	70 (15.6)	231 (8.2)
계	194 (100.0)	481 (100.0)	416 (100.0)	483 (100.0)	399 (100.0)	403 (100.0)	450 (100.0)	2,826 (100.0)



<그림 3-34>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길(대로, 골목)에서 발생한 사건은 2000년 0.5%, 2002년 1.7%, 2004년 2.3%, 2006년 4.0%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사무실은 2000년 0.5%, 2002년 0.7%, 2004년 1.3%, 2006년 0.7%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원, 야산 등은 2000년 9.3%, 2002년 4.8%, 2004년 5.5%, 2006년 4.2% 등으로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관(숙박업소) 2000년 13.9%, 2002년 13.2%, 2004년 18.3%, 2006년 10.9%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집은 2000년 20.1%, 2002년 18.5%, 2004년 12.5%, 2006년 17.1%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다. 주거침입의 경우 2000년 5.7%, 2002년 2.6%, 2004년 0.3%, 2006년 1.3% 등의 추세를 보였다. 가해자의 집은 2000년 13.9%, 2002년 15.6%, 2004년 24.8%, 2006년 18.9%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는 2000년 3.6%, 2002년 14.4%, 2004년 11.8%, 2006년 14.0% 등으로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3자의 집의 경우도 2000년 6.7%, 2002년 8.4%, 2004년 3.3%, 2006년 4.9%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자동차 안의 경우 2000년 15.5%, 2002년 13.5%, 2004년 9.3%, 2006년 7.6% 등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해자의 집이 19.7%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의 집이 16.2%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성범죄의 범행장소와 비교해보면, 여관(숙박업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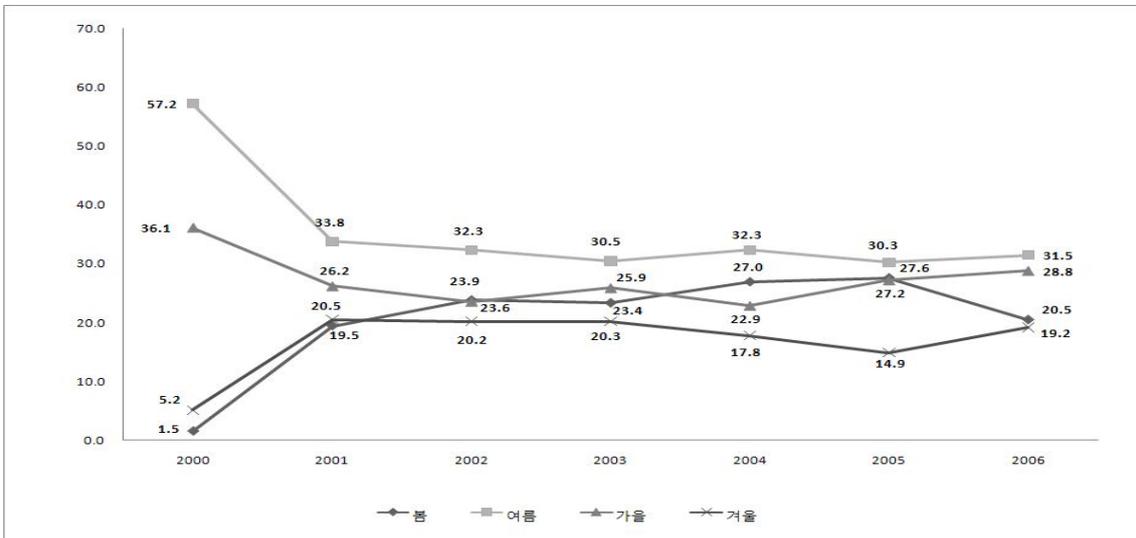
2) 범행시기

청소년 대상 강간사건의 사건연도별 범죄발생 계절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4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발생계절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봄	3 (1.5)	93 (19.5)	99 (23.9)	112 (23.4)	106 (27.0)	63 (27.6)	92 (20.5)	568 (21.6)
여름	111 (57.2)	161 (33.8)	134 (32.3)	146 (30.5)	127 (32.3)	69 (30.3)	141 (31.5)	889 (33.8)
가을	70 (36.1)	125 (26.2)	98 (23.6)	124 (25.9)	90 (22.9)	62 (27.2)	129 (28.8)	698 (26.5)
겨울	10 (5.2)	98 (20.5)	84 (20.2)	97 (20.3)	70 (17.8)	34 (14.9)	86 (19.2)	479 (18.2)
계	194 (100.0)	477 (100.0)	415 (100.0)	479 (100.0)	393 (100.0)	228 (100.0)	448 (100.0)	2,634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범행발생계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35>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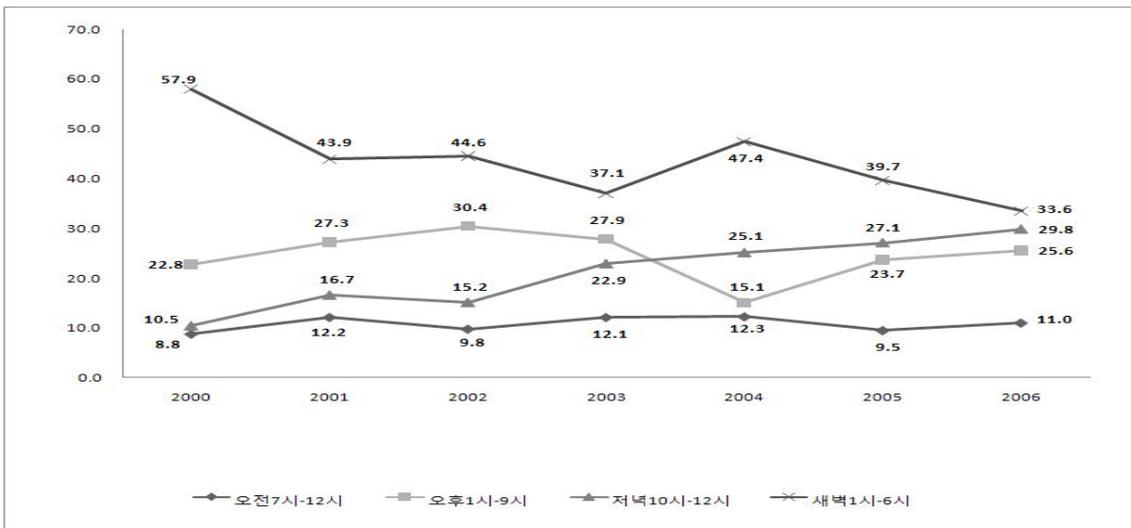
봄의 경우 2000년 1.5%, 2002년 23.9%, 2004년 27.0%, 2006년 20.5% 등으로 상대적 비율이 점차 상승하였다. 여름은 2000년 57.2%, 2002년과 2004년 32.3%, 2006년 31.5% 등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가을의 경우 2000년 36.1%, 2002년 23.6%, 2004년 22.9%, 2006년 28.8% 등으로 점차 상대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다. 겨울의 경우 2000년 5.2%, 2002년 20.2%, 2004년 17.8%, 2006년 19.2%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19.2%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여름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을이 26.5%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겨울이 18.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46>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발생시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오전7시-12시	15 (8.8)	54 (12.2)	36 (9.8)	54 (12.1)	43 (12.3)	34 (9.5)	44 (11.0)	280 (11.0)
오후1시-9시	39 (22.8)	121 (27.3)	112 (30.4)	124 (27.9)	53 (15.1)	85 (23.7)	102 (25.6)	636 (25.1)
저녁10시-12시	18 (10.5)	74 (16.7)	56 (15.2)	102 (22.9)	88 (25.1)	97 (27.1)	119 (29.8)	554 (21.9)
새벽1시-6시	99 (57.9)	195 (43.9)	164 (44.6)	165 (37.1)	166 (47.4)	142 (39.7)	134 (33.6)	1,065 (42.0)
계	171 (100.0)	444 (100.0)	368 (100.0)	445 (100.0)	350 (100.0)	358 (100.0)	399 (100.0)	2,535 (100.0)

주1. '1-7차 조사'인 2003년 상반기까지는 범죄발생시간을 위와 같은 범주로 나누었으나, 이후 2003년 하반기분석인 '8차 조사' 이후로는 오전은 6시부터 12시, 오후1시부터 6시, 저녁7시부터 밤12시, 새벽 1시부터 6시로 분류되어 오전6시부터 12시를 오전7시-12시에, 오후1시부터 6시를 오후1시-9시에, 저녁7시부터 밤12시를 저녁10시-6시로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림 3-36>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가운데 강간 사건에 대한 사건연도별 범죄 발생 시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오전 7시-12시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8.8%,

2002년 9.8%, 2004년 12.3%, 2006년 11.0%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오후 1시-9시에 발생한 사건은 2000년 22.8%, 2002년 30.4%, 2004년 15.1%, 2006년 25.6% 등으로 2004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녁 10시-12시의 경우도 2000년 10.5%, 2002년 15.2%, 2004년 25.1%, 2006년 29.8%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새벽 1시-6시에는 2000년 57.9%, 2002년 44.6%, 2004년 47.4%, 2006년 33.6% 등으로 2001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새벽 1시-6시가 42.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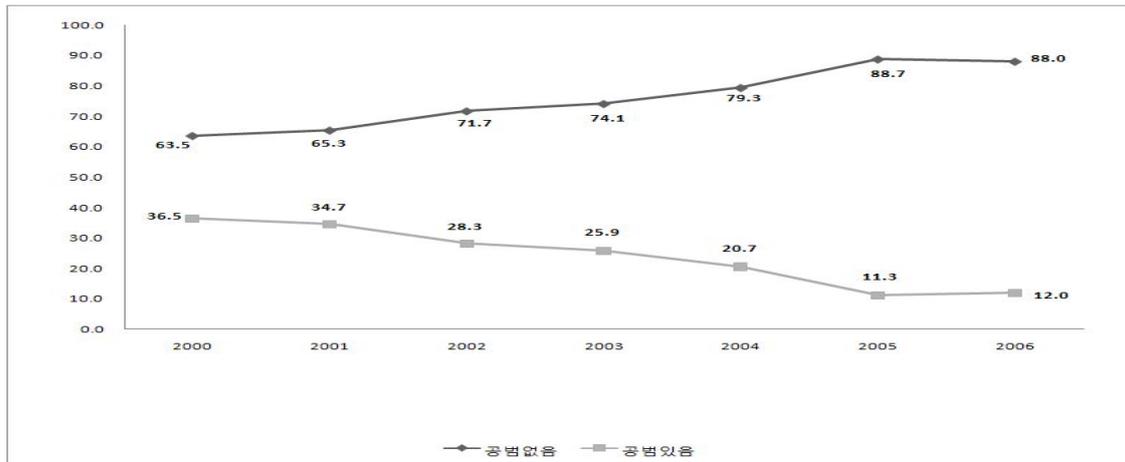
나. 공범관계

청소년 대상 강간사건의 공범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범이 없는 경우는 2000년 63.5%, 2002년 71.7%, 2004년 79.3%, 2006년 88.0% 등으로 점차 상대적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는 2000년 36.5%, 2002년 28.3%, 2004년 20.7%, 2006년 12.0% 등으로 상대적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공범이 없는 경우가 75.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4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공범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범없음	122 (63.5)	313 (65.3)	296 (71.7)	357 (74.1)	315 (79.3)	205 (88.7)	396 (88.0)	2,004 (75.8)
공범있음	70 (36.5)	166 (34.7)	117 (28.3)	125 (25.9)	82 (20.7)	26 (11.3)	54 (12.0)	640 (24.2)
계	192 (100.0)	479 (100.0)	413 (100.0)	482 (100.0)	397 (100.0)	231 (100.0)	450 (100.0)	2,644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공범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37>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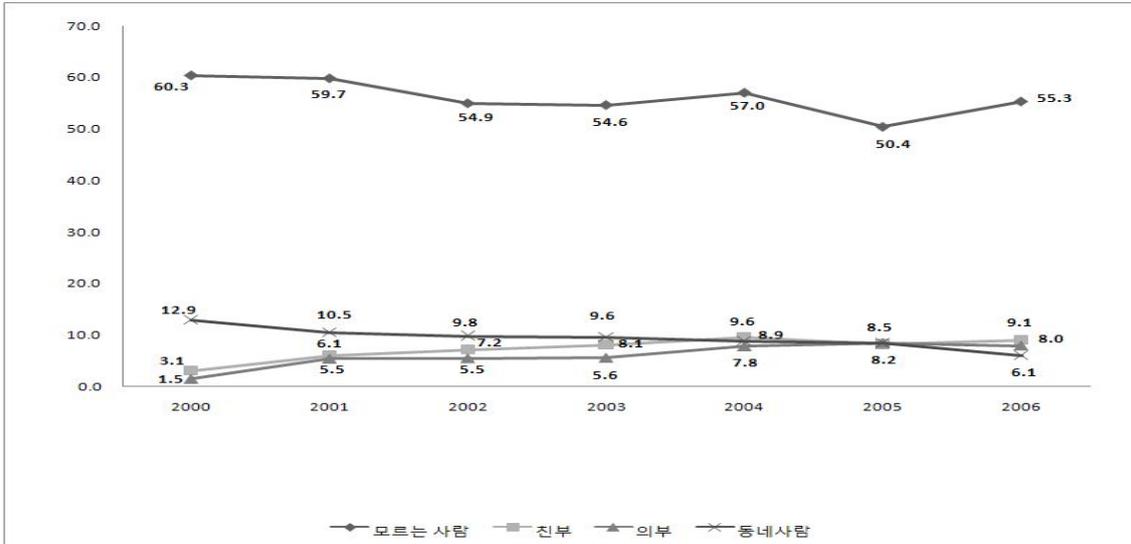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청소년 대상 강간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8>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가해자- 피해자관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모르는 사람	117 (60.3)	285 (59.7)	229 (54.9)	262 (54.6)	225 (57.0)	202 (50.4)	236 (55.3)	1,556 (55.8)
친부	6 (3.1)	29 (6.1)	30 (7.2)	39 (8.1)	38 (9.6)	33 (8.2)	39 (9.1)	214 (7.7)
의부	3 (1.5)	26 (5.5)	23 (5.5)	27 (5.6)	31 (7.8)	34 (8.5)	34 (8.0)	178 (6.4)
친척	3 (1.5)	7 (1.5)	13 (3.1)	13 (2.7)	8 (2.0)	9 (2.2)	12 (2.8)	65 (2.3)
친구	-	10 (2.1)	13 (3.1)	12 (2.5)	17 (4.3)	4 (1.0)	17 (4.0)	73 (2.6)
동네사람	25 (12.9)	50 (10.5)	41 (9.8)	46 (9.6)	35 (8.9)	34 (8.5)	26 (6.1)	257 (9.2)
권력관계	6 (3.1)	13 (2.7)	4 (1.0)	11 (2.3)	9 (2.3)	7 (1.7)	15 (3.5)	65 (2.3)
기타	34 (17.5)	57 (11.9)	64 (15.3)	70 (14.6)	32 (8.1)	78 (19.5)	48 (11.2)	383 (13.7)
계	194 (100.0)	477 (100.0)	417 (100.0)	480 (100.0)	395 (100.0)	401 (100.0)	427 (100.0)	2,791 (100.0)

주1. 2006년 조사에서는 '모의 동거인'과 '친오빠'도 분석하였으나 이전 분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모의 동거인'은 '의부'로 '친오빠'는 '친척'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림 3-38>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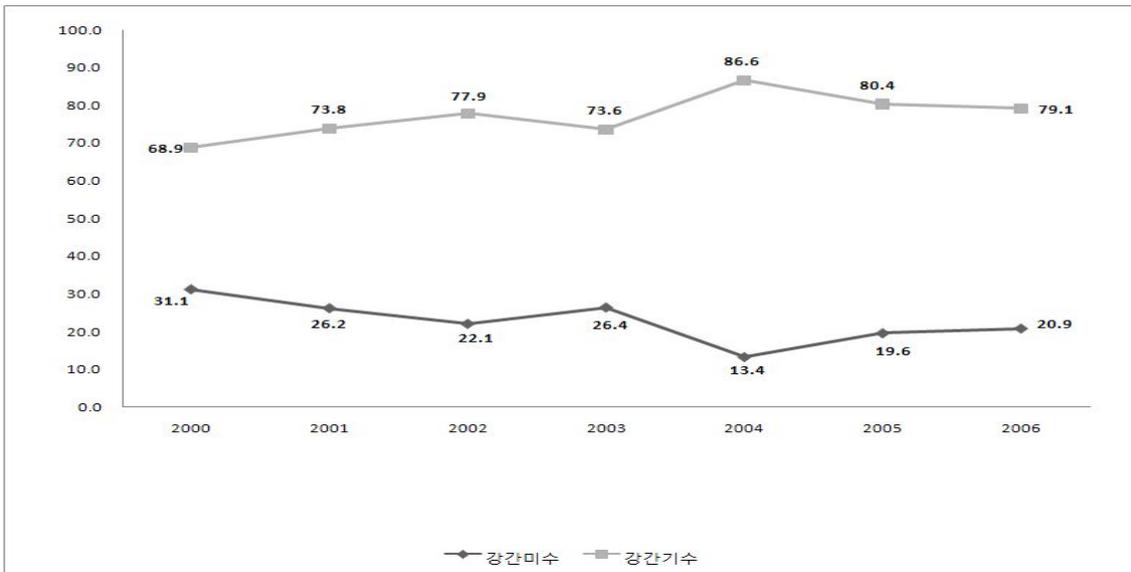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2000년 60.3%, 2002년 54.9%, 2004년 57.0%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가해자가 친부인 경우는 2000년 3.1%, 2002년 7.2%, 2004년 9.6%, 2006년 9.1%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해자가 의부의 경우는 2000년 1.5%, 2002년 5.5%, 2004년 7.8%, 2006년 8.0% 등으로 친부와 마찬가지로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가해자가 동네 사람인 경우는 2000년 12.9%, 2002년 9.8%, 2004년 8.9%, 2006년 6.1%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를 연도별로 강간여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간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강간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강간미수	57 (31.1)	120 (26.2)	91 (22.1)	124 (26.4)	27 (13.4)	63 (19.6)	39 (20.9)	521 (23.3)
강간기수	126 (68.9)	338 (73.8)	321 (77.9)	346 (73.6)	175 (86.6)	258 (80.4)	148 (79.1)	1,712 (76.7)
계	183 (100.0)	458 (100.0)	412 (100.0)	470 (100.0)	202 (100.0)	321 (100.0)	187 (100.0)	2,233 (100.0)



<그림 3-39>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간여부의 연도별 추세

강간미수의 경우가 2000년 31.1%, 2002년 22.1%, 2004년 13.4%, 2006년 20.9%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강간기수의 경우도 2000년 68.9%, 2002년 77.9%, 2004년 86.6%, 2006년 79.1%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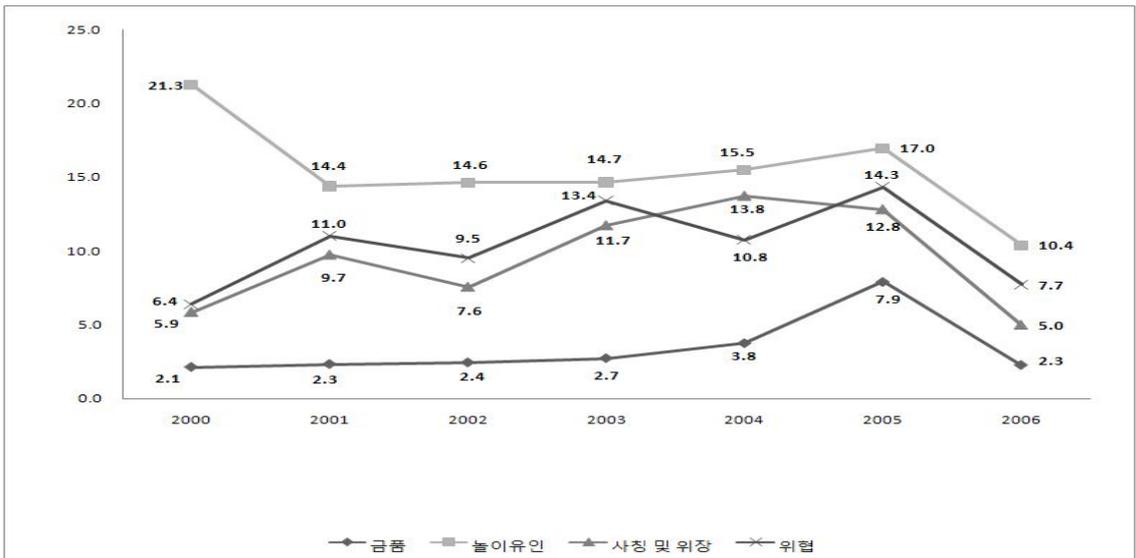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강간사건의 피해자의 유인방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한 유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2000년 39.9%, 2002년 41.0%, 2004년 29.5%, 2006년 42.1%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금품을 이용해 유인한 경우도 2000년 2.1%, 2002년 2.4%, 2004년 3.8%, 2006년 2.4%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놀이를 통해 유인한 경우는 2000년 21.3%, 2002년 14.6%, 2004년 15.5%, 2006년 10.4% 등의 분포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칭 및 위장을 통해 유인한 경우는 2000년 5.9%, 2002년 7.6%, 2004년 13.8%, 2006년 5.0% 등, 위협을 통해 유인한 경우가 2000년 6.4%, 2002년 9.5%, 2004년 10.8%, 2006년 7.7%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폭력의 경우는 2000년 2.7%, 2002년 4.1%, 2004년 6.0%, 2006년 3.2%. 만취상태의 경우는 2000년 5.3%, 2002년 2.9%, 2004년 4.8%, 2006년 1.4%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유인방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당사항없음	75 (39.9)	184 (39.0)	168 (41.0)	151 (31.7)	118 (29.5)	39 (14.7)	186 (42.1)	921 (34.7)
금품	4 (2.1)	11 (2.3)	10 (2.4)	13 (2.7)	15 (3.8)	21 (7.9)	10 (2.3)	84 (3.2)
질문	4 (2.1)	11 (2.3)	2 (0.5)	5 (1.0)	10 (2.5)	8 (3.0)	3 (0.7)	43 (1.6)
놀이유인	40 (21.3)	68 (14.4)	60 (14.6)	70 (14.7)	62 (15.5)	45 (17.0)	46 (10.4)	391 (14.7)
애정칭찬	1 (0.5)	5 (1.1)	2 (0.5)	9 (1.9)	5 (1.3)	5 (1.9)	5 (1.1)	32 (1.2)
사칭 및 위장	11 (5.9)	46 (9.7)	31 (7.6)	56 (11.7)	55 (13.8)	34 (12.8)	22 (5.0)	255 (9.6)
위협	12 (6.4)	52 (11.0)	39 (9.5)	64 (13.4)	43 (10.8)	38 (14.3)	34 (7.7)	282 (10.6)
폭력	5 (2.7)	9 (1.9)	17 (4.1)	12 (2.5)	24 (6.0)	15 (5.7)	14 (3.2)	96 (3.6)
만취상태	10 (5.3)	13 (2.8)	12 (2.9)	12 (2.5)	19 (4.8)	9 (3.4)	6 (1.4)	81 (3.1)
기타	26 (13.8)	73 (15.5)	69 (16.8)	85 (17.8)	49 (12.3)	51 (19.2)	116 (26.2)	469 (17.7)
계	188 (100.0)	472 (100.0)	410 (100.0)	477 (100.0)	400 (100.0)	265 (100.0)	442 (100.0)	2,654 (100.0)

주1. '기타'항목에는 '완력'과 '편의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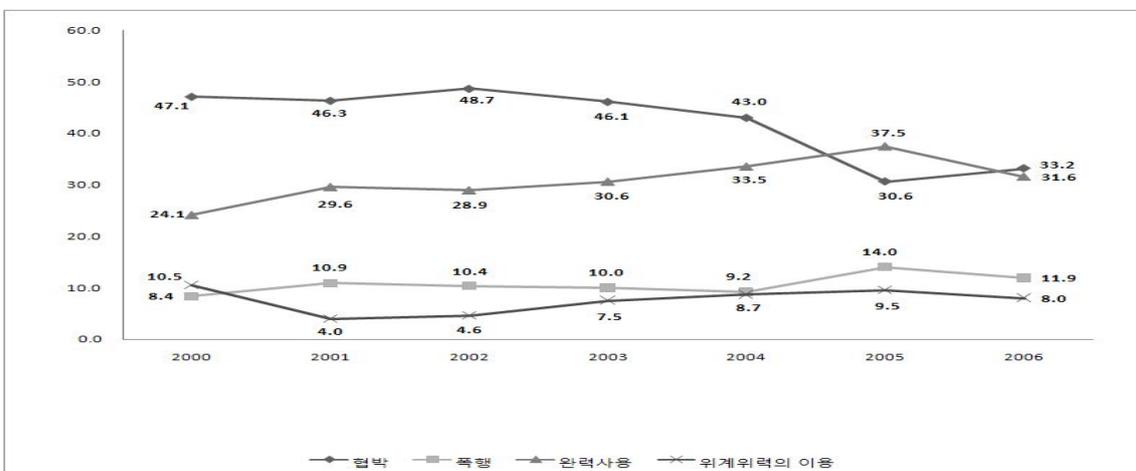


<그림 3-40>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강제강압방식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박을 통해 강제한 경우가 2000년 47.1%, 2002년 48.7%, 2004년 43.0%, 2006년 33.2% 등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폭행을 통한 방법이 2000년 8.4%, 2002년 10.4%, 2004년 9.2%, 2006년 11.9%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완력사용의 경우는 2000년 24.1%, 2002년 28.9%, 2004년 33.5%, 2006년 31.6%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위계위력의 이용하여 강제한 경우는 2000년 10.5%, 2002년 4.6%, 2004년 8.7%, 2006년 8.0%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표 3-5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강제강압의 방식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협박	90 (47.1)	221 (46.3)	202 (48.7)	208 (46.1)	154 (43.0)	116 (30.6)	145 (33.2)	1,136 (41.9)
폭행	16 (8.4)	52 (10.9)	43 (10.4)	45 (10.0)	33 (9.2)	53 (14.0)	52 (11.9)	294 (10.9)
완력사용	46 (24.1)	141 (29.6)	120 (28.9)	138 (30.6)	120 (33.5)	142 (37.5)	138 (31.6)	845 (31.2)
위계위력의 이용	20 (10.5)	19 (4.0)	19 (4.6)	34 (7.5)	31 (8.7)	36 (9.5)	35 (8.0)	194 (7.2)
속박, 감금	1 (0.5)	5 (1.0)	3 (0.7)	11 (2.4)	6 (1.7)	4 (1.1)	33 (7.6)	63 (2.3)
기타	18 (9.4)	39 (8.2)	28 (6.7)	15 (3.3)	14 (3.9)	28 (7.4)	34 (7.8)	176 (6.5)
계	191 (100.0)	477 (100.0)	415 (100.0)	451 (100.0)	358 (100.0)	379 (100.0)	437 (100.0)	2,708 (100.0)



<그림 3-41>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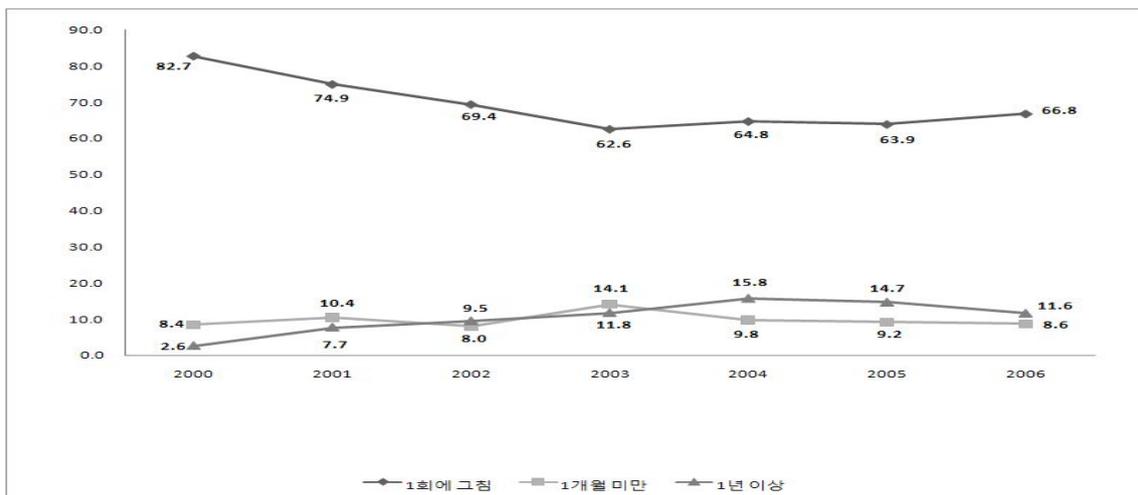
마. 피해의 정도 및 결과

1) 범죄지속기간

청소년 대상 강간사건의 범죄 지속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2>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지속기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회에 그침	158 (82.7)	359 (74.9)	286 (69.4)	298 (62.6)	259 (64.8)	257 (63.9)	294 (66.8)	1,911 (68.3)
1개월 미만	16 (8.4)	50 (10.4)	33 (8.0)	67 (14.1)	39 (9.8)	37 (9.2)	38 (8.6)	280 (10.0)
1-5개월	8 (4.2)	26 (5.4)	36 (8.7)	32 (6.7)	25 (6.3)	34 (8.5)	36 (8.2)	197 (7.0)
6개월-1년 미만	4 (2.1)	7 (1.5)	18 (4.4)	23 (4.8)	14 (3.5)	15 (3.7)	21 (4.8)	102 (3.6)
1년 이상	5 (2.6)	37 (7.7)	39 (9.5)	56 (11.8)	63 (15.8)	59 (14.7)	51 (11.6)	310 (11.1)
계	191 (100.0)	479 (100.0)	412 (100.0)	476 (100.0)	400 (100.0)	402 (100.0)	440 (100.0)	2,800 (100.0)



<그림 3-42>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 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범행이 1회에 그친 경우가 2000년 82.7%, 2002년 69.4%, 2004년 64.8%, 2006년 66.8% 등으로 매년 상대적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범행지속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2000년 8.4%, 2002년 8.0%, 2004년 9.8%, 2006년 8.6%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1-5개월의 경우도 2000년 4.2%, 2002년 8.7%, 2004년 6.3%, 2006년 8.2%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범행지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2000년 2.6%, 2002년 9.5%, 2004년 15.8%, 2006년 11.6%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 피해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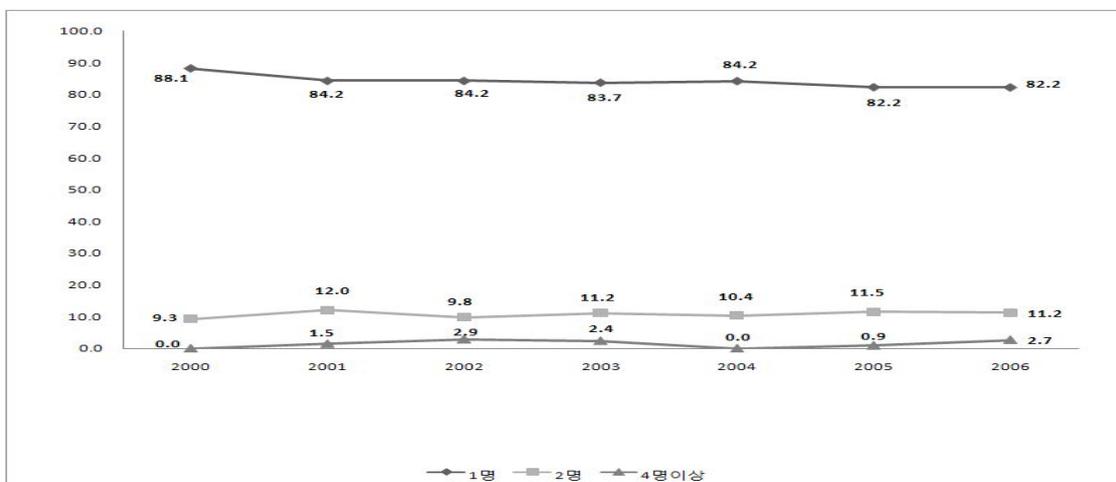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강간사건의 피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명	171 (88.1)	406 (84.2)	352 (84.2)	210 (83.7)	170 (84.2)	264 (82.2)	272 (82.2)	1,845 (83.9)
2명	18 (9.3)	58 (12.0)	41 (9.8)	28 (11.2)	21 (10.4)	37 (11.5)	37 (11.2)	240 (10.9)
3명	5 (2.6)	11 (2.3)	13 (3.1)	7 (2.8)	11 (5.4)	17 (5.3)	13 (3.9)	77 (3.5)
4명이상	-	7 (1.5)	12 (2.9)	6 (2.4)	-	3 (0.9)	9 (2.7)	37 (1.7)
계	194 (100.0)	482 (100.0)	418 (100.0)	251 (100.0)	202 (100.0)	321 (100.0)	331 (100.0)	2,199 (100.0)

주1.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주2.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43>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피해자가 1명인 경우는 2000년 88.1%, 2002, 2004년 84.2%, 2006년 82.2% 등의 비율을 나타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수가 2명인 경우는 2000년 9.3%, 2002년 9.8%, 2004년 10.4%, 2006년 11.2%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3명인 경우는 2000년 2.6%, 2002년 3.1%, 2004년 5.4%, 2006년 3.9%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 피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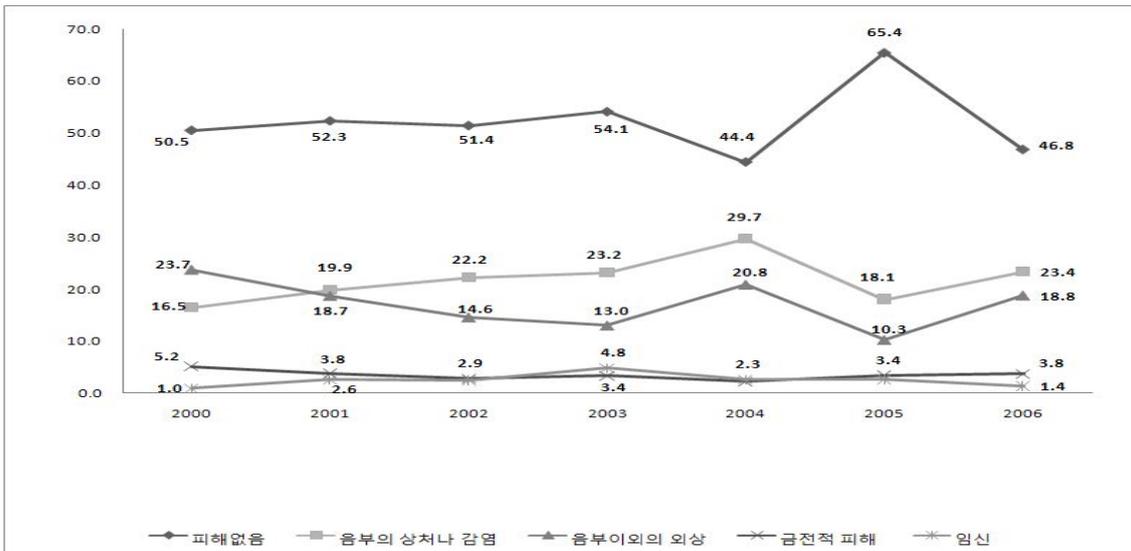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서 피해자의 강간 이외의 피해의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간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는 2000년 50.5%, 2002년 51.4%, 2004년 44.4%, 2006년 46.8%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음부의 상처나 감염이 있는 경우 역시 2000년 16.5%, 2002년 22.2%, 2004년 29.7%, 2006년 23.4% 등으로 2005년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4>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유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강간 피해유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피해없음	49 (50.5)	179 (52.3)	162 (51.4)	112 (54.1)	115 (44.4)	286 (65.4)	162 (46.8)	1,065 (53.2)
음부의 상처나 감염	16 (16.5)	68 (19.9)	70 (22.2)	48 (23.2)	77 (29.7)	79 (18.1)	81 (23.4)	439 (21.9)
음부이외의 외상	23 (23.7)	64 (18.7)	46 (14.6)	27 (13.0)	54 (20.8)	45 (10.3)	65 (18.8)	324 (16.2)
금전적 피해	5 (5.2)	13 (3.8)	9 (2.9)	7 (3.4)	6 (2.3)	15 (3.4)	13 (3.8)	68 (3.4)
임신	1 (1.0)	9 (2.6)	8 (2.5)	10 (4.8)	7 (2.7)	12 (2.7)	5 (1.4)	52 (2.6)
기타	3 (3.1)	9 (2.6)	20 (6.3)	3 (1.4)	-	-	20 (5.8)	55 (2.7)
계	97 (100.0)	342 (100.0)	315 (100.0)	207 (100.0)	259 (100.0)	437 (100.0)	346 (100.0)	2,003 (100.0)

주1.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주2.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44>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유형의 연도별 추세

음부 이외의 외상이 있는 사건의 경우 2000년 23.7%, 2002년 14.6%, 2004년 20.8%, 2006년 18.8%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이외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평균 3.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강간의 결과 임신에 이르게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평균 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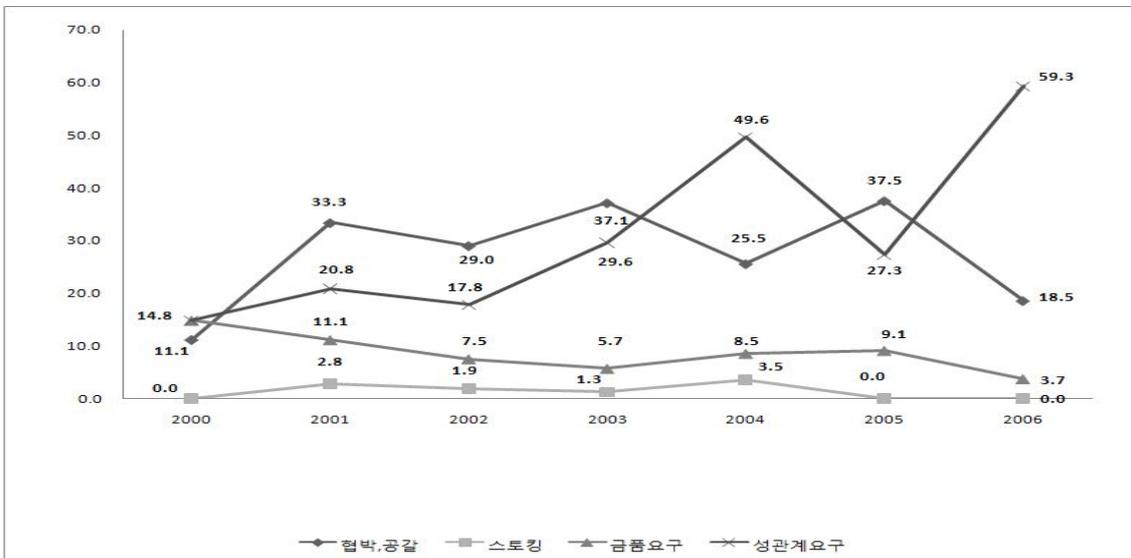
4) 2차 폭력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서 범행 이후 2차폭력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행이후 협박·공갈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가 2000년 11.1%, 2002년 29.0%, 2004년 25.5%, 2006년 18.5%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범행이후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2000년 14.8%, 2002년 7.5%, 2004년 8.5%, 2006년 3.7% 등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강간 이후 성관계를 계속 요구한 경우는 2000년 14.8%, 2002년 17.8%, 2004년 49.6%, 2006년 59.3% 등으로 200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55>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범행이후 2차폭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행이후의 2차폭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협박, 공갈	3 (11.1)	24 (33.3)	31 (29.0)	59 (37.1)	36 (25.5)	33 (37.5)	15 (18.5)	201 (29.8)
스토킹	-	2 (2.8)	2 (1.9)	2 (1.3)	5 (3.5)	-	-	11 (1.6)
금품요구	4 (14.8)	8 (11.1)	8 (7.5)	9 (5.7)	12 (8.5)	8 (9.1)	3 (3.7)	52 (7.7)
성관계요구	4 (14.8)	15 (20.8)	19 (17.8)	47 (29.6)	70 (49.6)	24 (27.3)	48 (59.3)	227 (33.6)
강간미수	2 (7.4)	1 (1.4)	2 (1.9)	3 (1.9)	7 (5.0)	4 (4.5)	-	19 (2.8)
성매매요구	1 (3.7)	2 (2.8)	-	2 (1.3)	-	1 (1.1)	-	6 (0.9)
기 타	13 (48.1)	20 (27.8)	45 (42.1)	37 (23.3)	11 (7.8)	18 (20.5)	15 (18.5)	159 (23.6)
계	27 (100.0)	72 (100.0)	107 (100.0)	159 (100.0)	141 (100.0)	88 (100.0)	81 (100.0)	675 (100.0)



<그림 3-45>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범행이후 2차폭력의 연도별 추세

제3절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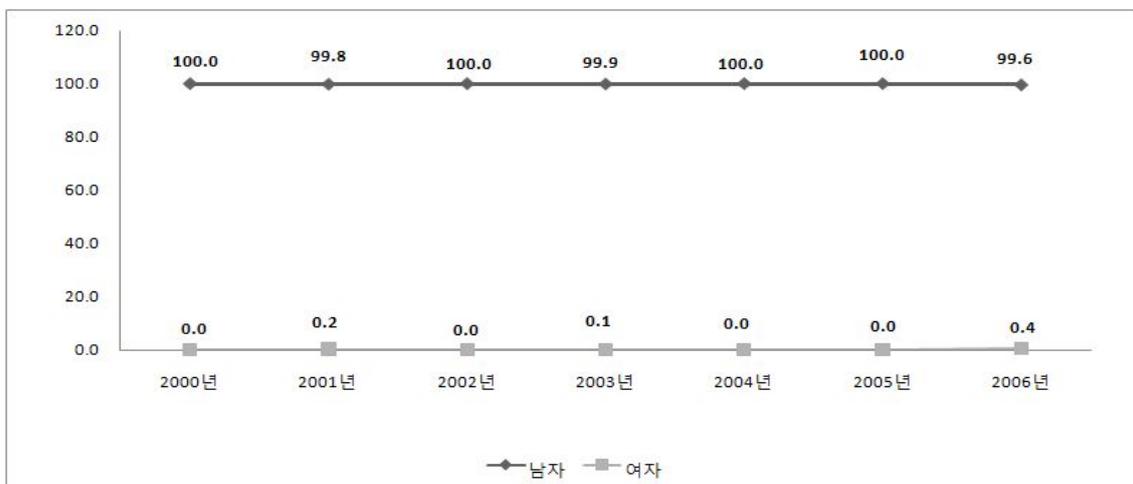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 별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죄자의 성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범죄자의 경우가 2000년 100%, 2001년 99.8%, 2002년 100.0%, 2003년 99.9%, 2004년 100%, 2005년 100%, 2006년 99.6%로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5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성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 자	187 (100.0)	503 (99.8)	454 (100.0)	708 (99.9)	627 (100.0)	737 (100.0)	672 (99.6)	3,888 (99.9)
여 자	-	1 (0.2)	-	1 (0.1)	-	-	3 (0.4)	5 (0.1)
계	187 (100.0)	504 (100.0)	454 (100.0)	709 (100.0)	627 (100.0)	737 (100.0)	675 (100.0)	3,8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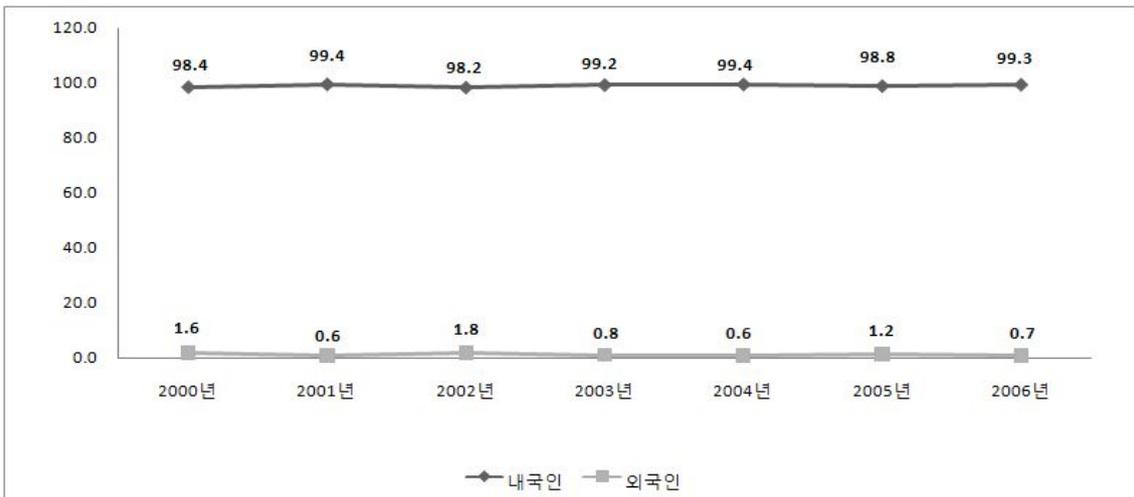
<그림 3-4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2) 국 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죄에 대한 연도별 범죄자의 국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내국인의 경우 2000년 98.4%, 2001년 99.4%, 2002년 98.2%, 2003년 99.2%, 2004년 99.4%, 2005년 98.8%, 2006년 99.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2000년 1.6%, 2001년 0.6%, 2002년 1.8%, 2003년 0.8%, 2004년 0.6%, 2005년 1.2%, 2006년 0.7%이다. 전체적으로 99%가 내국인에 의한 범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5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국적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184 (98.4)	501 (99.4)	446 (98.2)	706 (99.2)	623 (99.4)	728 (98.8)	670 (99.3)	3858 (99.0)
외국인	3 (1.6)	3 (0.6)	8 (1.8)	6 (0.8)	4 (0.6)	9 (1.2)	5 (0.7)	38 (1.0)
계	187 (100.0)	504 (100.0)	454 (100.0)	712 (100.0)	627 (100.0)	737 (100.0)	675 (100.0)	3896 (100.0)



<그림 3-4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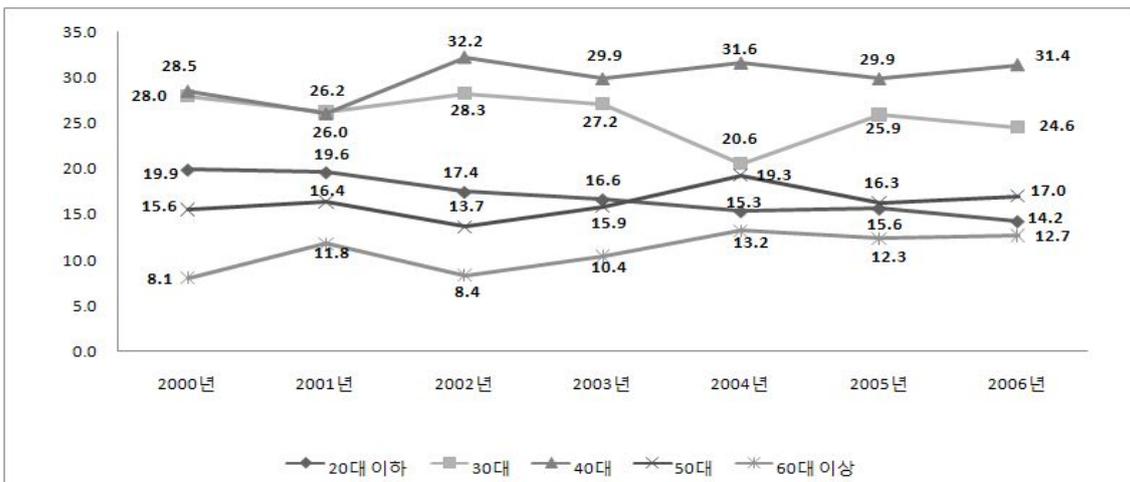
3) 연 령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죄자의 연령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20대 이하의 경우는 2000년 19.9%, 2001년 19.6%, 2002년 17.4%, 2003년 16.6%, 2004년 15.3%, 2005년 15.6%, 2006년 14.2%로 평균 16.4%로 큰 변화는 없으나, 30대의 경우는 2000년 28.0%, 2001년 26.2%, 2002년 28.3%, 2003년 27.2%, 2004년 20.6%, 2005년 25.9%, 2006년 24.6%로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의 경우는 2000년 28.5%, 2001년 26.0%, 2002년 32.2%, 2003년 29.9%, 2004년 31.6%, 2005년 29.9%, 2006년 31.4%로 조금씩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50대의 경우는 2000년 15.6%, 2001년 16.4%, 2002년 13.7%, 2003년 15.9%, 2004년 19.3%, 2005년 16.3%, 2006년 17.0%로 평균 16.5%이다. 60대 이상의 평균은 11.5%로 가장 낮다.

<표 3-5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대 이하	37 (19.9)	98 (19.6)	79 (17.4)	118 (16.6)	96 (15.3)	115 (15.6)	96 (14.2)	639 (16.4)
30대	52 (28.0)	131 (26.2)	128 (28.3)	193 (27.2)	129 (20.6)	191 (25.9)	166 (24.6)	990 (25.5)
40대	53 (28.5)	130 (26.0)	146 (32.2)	212 (29.9)	198 (31.6)	220 (29.9)	212 (31.4)	1171 (30.1)
50대	29 (15.6)	82 (16.4)	62 (13.7)	113 (15.9)	121 (19.3)	120 (16.3)	115 (17.0)	642 (16.5)
60대 이상	15 (8.1)	59 (11.8)	38 (8.4)	74 (10.4)	83 (13.2)	91 (12.3)	86 (12.7)	446 (11.5)
계	186 (100.0)	500 (100.0)	453 (100.0)	710 (100.0)	627 (100.0)	737 (100.0)	675 (100.0)	3,888 (100.0)



<그림 3-4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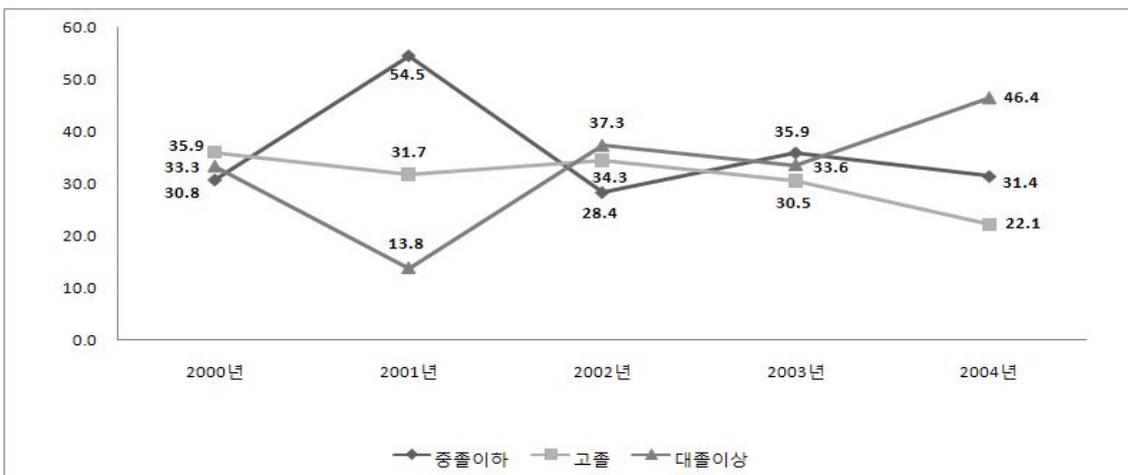
4) 학 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범죄자에 대한 연도별 교육수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는 2000년 30.8%, 2001년 54.5%, 2002년 28.4%, 2003년 35.9%, 2004년 31.4% 등으로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고졸의 경우 2000년 35.9%, 2001년 31.7%, 2002년 34.3%, 2003년 30.5%, 2004년 22.1%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은 2000년 33.3%, 2001년 13.8%, 2002년 37.3%, 2003년 33.6%, 2004년 46.4% 등으로 2001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4년 46.4%의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중졸이하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강제추행범죄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5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중졸이하	12 (30.8)	67 (54.5)	19 (28.4)	46 (35.9)	44 (31.4)	188 (37.8)
고졸	14 (35.9)	39 (31.7)	23 (34.3)	39 (30.5)	31 (22.1)	146 (29.4)
대졸이상	13 (33.3)	17 (13.8)	25 (37.3)	43 (33.6)	65 (46.4)	163 (32.8)
계	39 (100.0)	123 (100.0)	67 (100.0)	128 (100.0)	140 (100.0)	497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4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5) 직 업

<표 3-6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문직	6 (3.2)	11 (2.2)	13 (2.9)	9 (1.3)	2 (0.6)	10 (1.4)	23 (3.4)	74 (2.1)
사무관리직	22 (11.8)	49 (9.7)	47 (10.4)	94 (13.2)	70 (22.2)	99 (13.4)	64 (9.5)	445 (12.4)
판매서비스직	49 (26.2)	114 (22.7)	103 (22.7)	144 (20.2)	35 (11.1)	78 (10.6)	94 (13.9)	617 (17.2)
유흥업소	-	4 (0.8)	-	5 (0.7)	8 (2.5)	4 (0.5)	1 (0.1)	22 (0.6)
일용노동자	21 (11.2)	72 (14.3)	82 (18.1)	113 (15.8)	37 (11.7)	105 (14.2)	58 (8.6)	488 (13.6)
학생	4 (2.1)	6 (1.2)	8 (1.8)	21 (2.9)	20 (6.3)	16 (2.2)	12 (1.8)	87 (2.4)
군인 경찰	4 (2.1)	4 (0.8)	4 (0.9)	3 (0.4)	-	3 (0.4)	3 (0.4)	21 (0.6)
무직	49 (26.2)	167 (33.2)	124 (27.3)	187 (26.2)	74 (23.5)	221 (30.0)	221 (32.7)	1,043 (29.1)
생산직	12 (6.4)	30 (6.0)	30 (6.6)	29 (4.1)	-	25 (3.4)	128 (19.0)	254 (7.1)
농어업	7 (3.7)	21 (4.2)	13 (2.9)	12 (1.7)	-	10 (1.4)	23 (3.4)	86 (2.4)
운전자,운수업	10 (5.3)	25 (5.0)	20 (4.4)	22 (3.1)	-	-	-	77 (2.1)
공공기관	-	-	-	1 (0.1)	1 (0.3)	8 (1.1)	3 (0.4)	13 (0.4)
자영업	-	-	-	53 (7.4)	42 (13.3)	98 (13.3)	28 (4.1)	221 (6.2)
청소년보호직종군	-	-	-	-	-	19 (2.6)	10 (1.5)	29 (0.8)
기타	3 (1.6)	-	10 (2.2)	20 (2.8)	26 (8.3)	41 (5.6)	7 (1.0)	107 (3.0)
계	187 (100.0)	503 (100.0)	454 (100.0)	713 (100.0)	315 (100.0)	737 (100.0)	675 (100.0)	3,584 (100.0)

주1: 2000, 2001, 2002년 조사항목에서는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2: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나 '9차 조사'에서는 범죄자 직업에 대한 조사가 없어 이번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0차 조사' 항목에는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3: 2005년의 경우, '11차 조사'와 '12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1차 조사' 항목에서는 '군인, 경찰',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12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4: 2006년의 경우, '13차 조사'와 '14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3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4차 조사' 항목에서는 '유흥업소', '일용노동자', '학생', '군인, 경찰', '운전자, 운수업',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 일용노동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직의 경우, 2000년 26.2%, 2001년 33.2%, 2002년 27.3%, 2003년 26.2%, 2004년 23.5%, 2005년 30.0%, 2006년 32.7%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000년 26.2%, 2001년 22.7%, 2002년 22.7%, 2003년 20.2%, 2004년 11.1%, 2005년 10.6%, 2006년 13.9%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2000년 11.8%, 2001년 9.7%, 2002년 10.4%, 2003년 13.2%, 2004년 22.2%, 2005년 13.4%, 2006년 9.5%인 것으로 나타나 2004년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은 12.4%였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2000년 11.2%, 2001년 14.3%, 2002년 18.1%, 2003년 15.8%, 2004년 11.7%, 2005년 14.2%, 2006년 8.6%로서 전체 평균 비율은 13.6%이다. 기타 다른 직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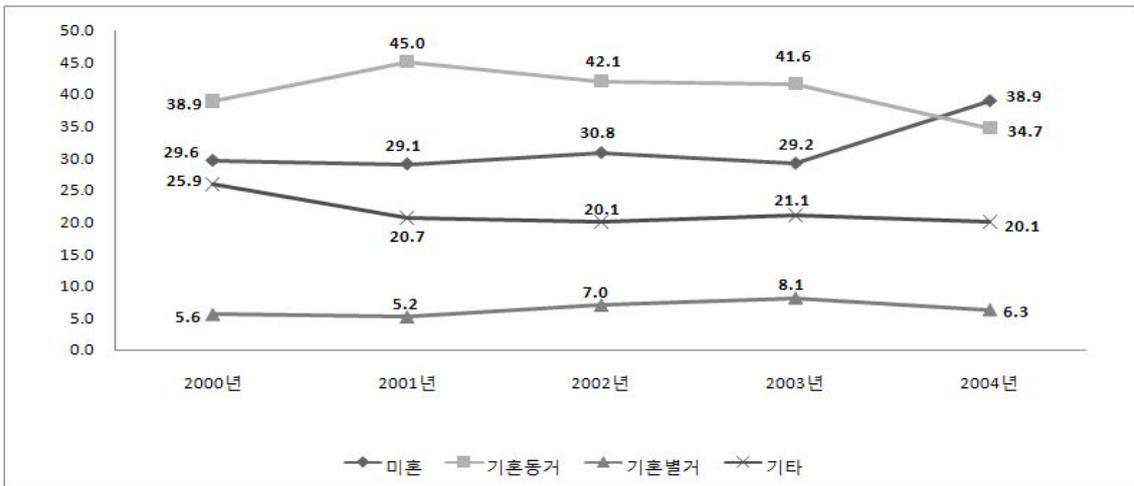
6) 혼 인

청소년 상대 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도별 혼인상태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6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혼인상태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 혼	16 (29.6)	73 (29.1)	66 (30.8)	108 (29.2)	130 (38.9)	393 (32.1)
기혼동거	21 (38.9)	113 (45.0)	90 (42.1)	154 (41.6)	116 (34.7)	494 (40.4)
기혼별거	3 (5.6)	13 (5.2)	15 (7.0)	30 (8.1)	21 (6.3)	82 (6.7)
기혼사별	3 (5.6)	10 (4.0)	7 (3.3)	9 (2.4)	9 (2.7)	38 (3.1)
이 혼	8 (14.8)	29 (11.6)	23 (10.7)	39 (10.5)	32 (9.6)	131 (10.7)
동 거	3 (5.6)	13 (5.2)	12 (5.6)	29 (7.8)	26 (7.8)	83 (6.8)
기 타	-	-	1 (0.5)	1 (0.3)	-	2 (0.2)
계	54 (100.0)	251 (100.0)	214 (100.0)	370 (100.0)	334 (100.0)	1,223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5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미혼의 경우 2000년 29.6%, 2001년 29.1%, 2002년 30.8%, 2003년 29.2%, 2004년 38.9%로 2004년에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기혼동거는 2000년 38.9%, 2001년 45.0%, 2002년 42.1%, 2003년 41.6%, 2004년 34.7%로 2001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별거의 경우 2000년 5.6%, 2001년 5.2%, 2002년 7.0%, 2003년 8.1%, 2004년 6.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혼동거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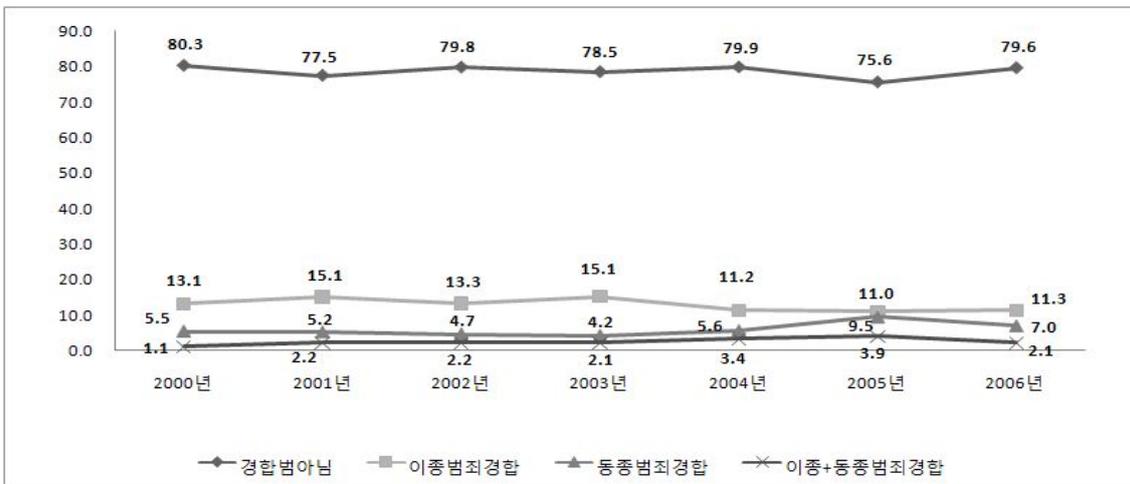
1) 경합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강제추행 범죄의 연도별 경합여부는 다음과 같다. 경합범이 아닌 경우는 2000년 80.3%, 2001년 77.5%, 2002년 79.8%, 2003년 78.5%, 2004년 79.9%, 2005년 75.6%, 2006년 79.6%이며, 이중범죄경합의 경우에 2000년 13.1%, 2001년 15.1%, 2002년 13.3%, 2003년 15.1%, 2004년 11.2%, 2005년 11.0%, 2006년 11.3% 이며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경합의 경우는 2000년 5.5%, 2001년 5.2%, 2002년 4.7%, 2003년 4.2%, 2004년 5.6%, 2005년 9.5%, 2006년 7.0%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동종범죄경합의 경우에 2000년 1.1%, 2001년 2.2%, 2002년 2.2%, 2003년 2.1%, 2004년 3.4%, 2005년 3.9%, 2006년 2.1% 등으로 전체적으로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표 3-6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경합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합범아님	147 (80.3)	385 (77.5)	360 (79.8)	555 (78.5)	500 (79.9)	557 (75.6)	536 (79.6)	3,040 (78.5)
이종범죄경합	24 (13.1)	75 (15.1)	60 (13.3)	107 (15.1)	70 (11.2)	81 (11.0)	76 (11.3)	493 (12.7)
동종범죄경합	10 (5.5)	26 (5.2)	21 (4.7)	30 (4.2)	35 (5.6)	70 (9.5)	47 (7.0)	239 (6.2)
이종+동종범죄경합	2 (1.1)	11 (2.2)	10 (2.2)	15 (2.1)	21 (3.4)	29 (3.9)	14 (2.1)	102 (2.6)
계	183 (100.0)	497 (100.0)	451 (100.0)	707 (100.0)	626 (100.0)	737 (100.0)	673 (100.0)	3,874 (100.0)



<그림 3-5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경합여부의 비율변화

2) 1심 선고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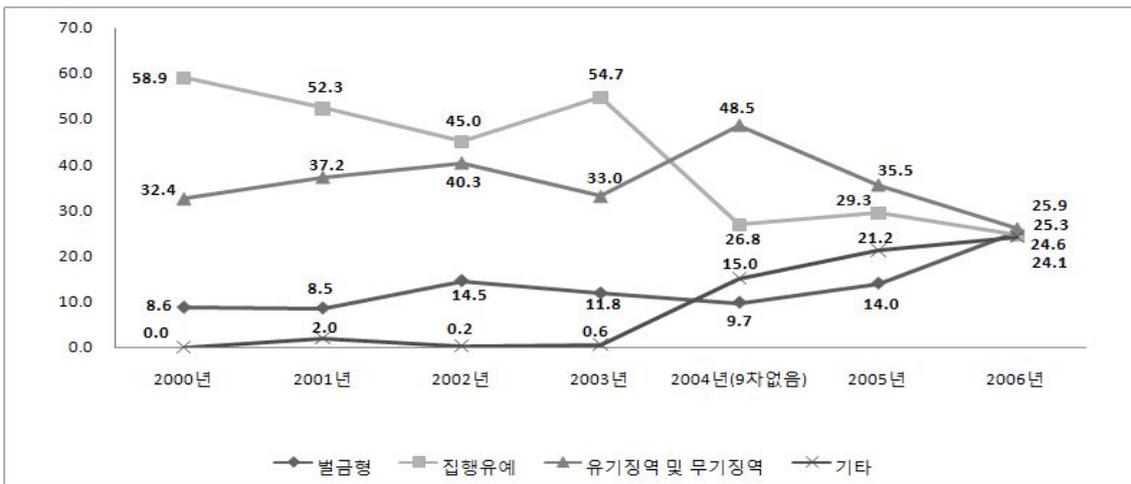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형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8.6%, 2001년 8.5%, 2002년 14.5%, 2003년 11.8%, 2004년 9.7%, 2005년 14.0%, 2006년 25.3%로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2000년 58.9%, 2001년 52.3%, 2002년 45.0%, 2003년 33.0%, 2004년 26.8%, 2005년 35.5%,

2006년 24.6%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유기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32.4%, 2001년 37.2%, 2002년 40.3%, 2003년 54.7%, 2004년 48.5%, 2005년 35.5%, 2006년 25.9%로 2004년까지 상대적 비율이 상승했다가 2005년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표 3-6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선고형의 종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차제외)	2005년	2006년	
벌금형	16 (8.6)	42 (8.5)	65 (14.5)	83 (11.8)	52 (9.7)	154 (14.0)	171 (25.3)	583 (14.1)
집행유예	109 (58.9)	259 (52.3)	201 (45.0)	385 (54.7)	143 (26.8)	323 (29.3)	166 (24.6)	1,586 (38.3)
유기징역	60 (32.4)	184 (37.2)	180 (40.3)	232 (33.0)	259 (48.5)	391 (35.5)	175 (25.9)	1,481 (35.8)
보호감호/ 치료감호	-	6 (1.2)	1 (0.2)	3 (0.4)	1 (0.2)	5 (0.5)	2 (0.3)	18 (0.4)
보호관찰/사회 봉사/수감명령	-	-	-	-	58 (10.9)	213 (19.3)	160 (23.7)	431 (10.4)
기타	-	4 (0.8)	-	1 (0.1)	21 (3.9)	16 (1.5)	1 (0.1)	43 (1.0)
계	185 (100.0)	495 (100.0)	447 (100.0)	704 (100.0)	534 (100.0)	1,102 (100.0)	675 (100.0)	4,142 (100.0)

주: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수치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1심 선고형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52>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3) 1심 형량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범죄의 연도별 1심 형량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1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15.0%, 2001년 17.6%, 2002년 13.9%, 2003년 16.9%, 2005년 20.3%, 2006년 22.3%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73.3%, 2001년 64.4%, 2002년 61.1%, 2003년 60.2%, 2005년 57.0%, 2006년 61.1%로 나타나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6.7%, 2001년 12.2%, 2002년 21.1%, 2003년 14.0%, 2005년 13.9%, 2006년 10.3%이며, '5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0년 5.0%, 2001년 5.9%, 2002년 3.9%, 2003년 8.9%, 2005년 8.9%, 2006년 6.3%로 나타나 상대적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2003년 갑자기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6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형량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 제외)	2006년	
1년 미만	9 (15.0)	33 (17.6)	25 (13.9)	40 (16.9)	-	16 (20.3)	39 (22.3)	162 (17.6)
1년 이상- 3년 미만	44 (73.3)	121 (64.4)	110 (61.1)	142 (60.2)	-	45 (57.0)	107 (61.1)	569 (62.0)
3년 이상- 5년 미만	4 (6.7)	23 (12.2)	38 (21.1)	33 (14.0)	-	11 (13.9)	18 (10.3)	127 (13.8)
5년 이상	3 (5.0)	11 (5.9)	7 (3.9)	21 (8.9)	-	7 (8.9)	11 (6.3)	60 (6.5)
계	60 (100.0)	188 (100.0)	180 (100.0)	236 (100.0)	-	79 (100.0)	175 (100.0)	918 (100.0)

주1: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신상공개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의 공개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개대상이 된 경우는 2000년 70.6%, 2001년 71.4%, 2002년 77.5%,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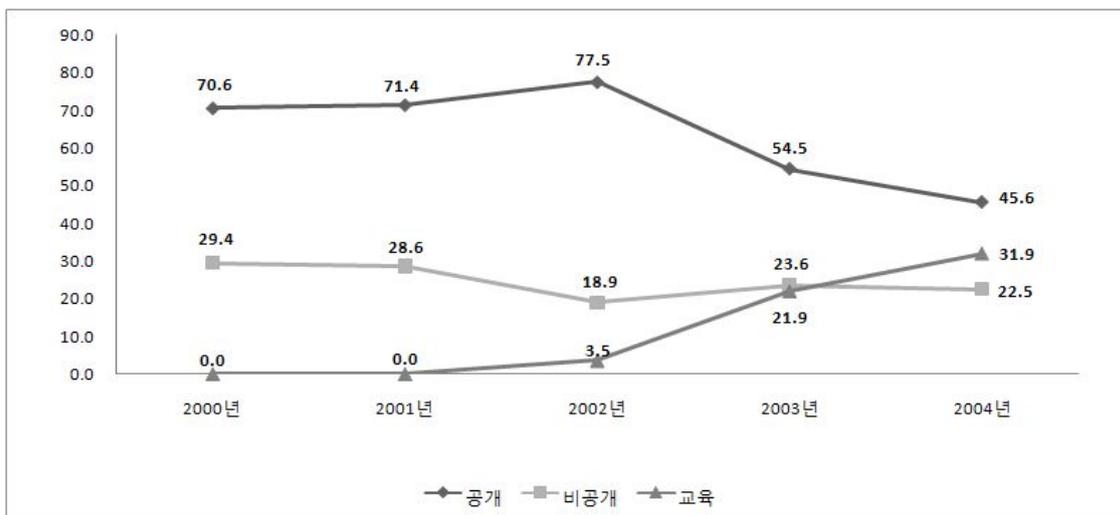
년 54.5%, 2004년 45.6%, 2005년 59.1%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대상이 된 경우는 2002년 3.5%, 2003년 21.9%, 2004년 31.9%, 2005년 22.2%로 나타내고 있다.

<표 3-6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심의결과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 제외)	2006년	
공 개	132 (70.6)	360 (71.4)	352 (77.5)	388 (54.5)	286 (45.6)	208 (59.1)	-	1,726 (60.9)
비공개	55 (29.4)	144 (28.6)	86 (18.9)	168 (23.6)	141 (22.5)	66 (18.8)	-	660 (23.3)
교 육	-	-	16 (3.5)	156 (21.9)	200 (31.9)	78 (22.2)	-	450 (15.9)
계	187 (100.0)	504 (100.0)	454 (100.0)	712 (100.0)	627 (100.0)	352 (100.0)	-	2,836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5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 령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제 추행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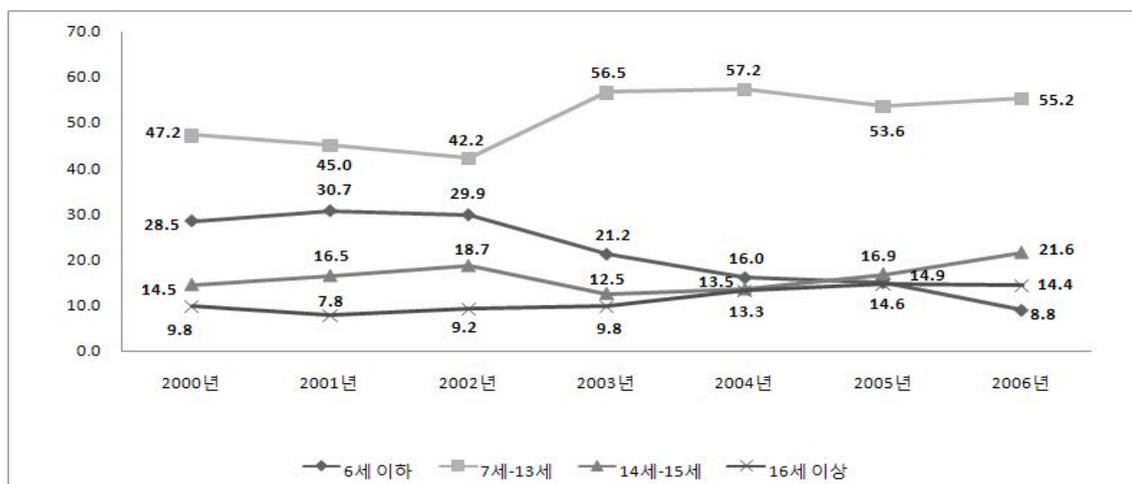
<표 3-6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세 이하	61 (28.5)	181 (30.7)	152 (29.9)	169 (21.2)	111 (16.0)	130 (14.9)	80 (8.8)	884 (19.3)
7세-13세	101 (47.2)	265 (45.0)	215 (42.2)	451 (56.5)	397 (57.2)	467 (53.6)	499 (55.2)	2,395 (52.3)
14세-15세	31 (14.5)	97 (16.5)	95 (18.7)	100 (12.5)	94 (13.5)	147 (16.9)	195 (21.6)	759 (16.6)
16세 이상	21 (9.8)	46 (7.8)	47 (9.2)	78 (9.8)	92 (13.3)	127 (14.6)	130 (14.4)	541 (11.8)
계	214 (100.0)	589 (100.0)	509 (100.0)	798 (100.0)	694 (100.0)	871 (100.0)	904 (100.0)	4,579 (100.0)

주1: '8차 조사'이전까지의 분석에서의 기준은 '7세 이하', '8-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2: '8~9차 조사'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3세', '14-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3: '10차 조사' 이후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그림 3-5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6세 이하 피해자는 2000년 28.5%, 2001년 30.7%, 2002년 29.9%, 2003년 21.2%, 2004년 16.0%, 2005년 14.9%, 2006년 8.8% 등으로 2001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7세-13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47.2%, 2001년 45.0%, 2002년 42.2%, 2003년 56.5%, 2004년 57.2%, 2005년 53.6%, 2006년 55.2% 등으로 2002년까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2003년 다시 높아졌다. 14세-15세 피해자의 경우 2000년 14.5%, 2001년 16.5%, 2002년 18.7%, 2003년 12.5%, 2004년 13.5%, 2005년 16.9%, 2006년 21.6% 등으로 2002년 까지 계속 높아졌으나 2003년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6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9.8%, 2001년 7.8%, 2002년 9.2%, 2003년 9.8%, 2004년 13.3%, 2005년 14.6%, 2006년 14.4%로 2001년 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7세-13세의 피해자가 매년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6세 이하의 피해자가 뒤를 이었다.

2) 학 력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청소년의 학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서 강간범죄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에 반해,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재학이나 졸업이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이나 졸업인 경우는 2000년 52.6%, 2001년 54.2%, 2002년 45.7%, 2003년 57.7%, 2004년 54.4%, 2005년 5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학력은 대부분 10-2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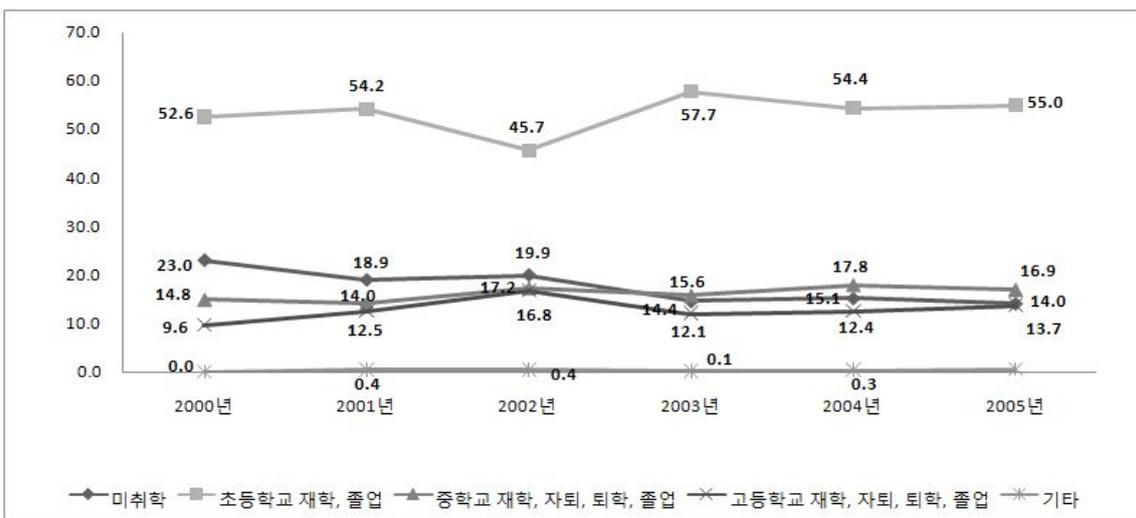
<표 3-6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청소년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 제외)	2006년	
미취학	1 (1.1)	9 (2.6)	9 (2.8)	6 (1.3)	6 (1.5)	1 (0.5)	-	32 (1.8)
초등학교 재학	18 (19.6)	56 (16.3)	59 (18.3)	93 (19.7)	74 (19.0)	52 (26.8)	-	352 (19.4)
중학교 재학	32 (34.8)	103 (29.9)	106 (32.9)	144 (30.6)	127 (32.6)	51 (26.3)	-	563 (31.1)
고등학교 재학	31 (33.7)	114 (33.1)	111 (34.5)	163 (34.6)	121 (31.0)	58 (29.9)	-	598 (33.0)
대학교 재학	2 (2.2)	7 (2.0)	4 (1.2)	7 (1.5)	4 (1.0)	1 (0.5)	-	25 (1.4)
초등학교 졸업	-	2 (0.6)	-	-	2 (0.5)	-	-	4 (0.2)
중학교 졸업	2 (2.2)	4 (1.2)	4 (1.2)	3 (0.6)	7 (1.8)	4 (2.1)	-	24 (1.3)
고등학교 졸업	2 (2.2)	5 (1.5)	2 (0.6)	10 (2.1)	6 (1.5)	1 (0.5)	-	26 (1.4)
중학교 자퇴, 퇴학	2 (2.2)	24 (7.0)	15 (4.7)	23 (4.9)	25 (6.4)	12 (6.2)	-	101 (5.6)
고등학교 자퇴, 퇴학	2 (2.2)	20 (5.8)	12 (3.7)	22 (4.7)	18 (4.6)	14 (7.2)	-	88 (4.9)
계	92 (100.0)	344 (100.0)	322 (100.0)	471 (100.0)	390 (100.0)	194 (100.0)	-	1,813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5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3) 직 업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도별 직업분포는 다음과 같다. 무직 2000년 95.0%, 2001년 83.3%, 2002년 93.4%, 2003년 90.5%, 2004년 60.8%, 2005년 89.5%로 가장 많았다.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 2001년 0.8%, 2002년 2.6%, 2003년 1.0%, 2004년 0.7%, 2005년 1.1%로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방종업원 역시 2001년 3.6%, 2002년 0.9%, 2003년 1.4%, 2004년 0.3%, 2005년 2.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무직의 평균비율이 64.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6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무 직	76 (95.0)	210 (83.3)	213 (93.4)	179 (36.2)	413 (60.8)	85 (89.5)	-	1,176 (64.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	-	-	-	2 (0.3)	4 (4.2)	-	6 (0.3)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	2 (0.8)	6 (2.6)	5 (1.0)	5 (0.7)	1 (1.1)	-	19 (1.0)
다방종업원	-	9 (3.6)	2 (0.9)	7 (1.4)	2 (0.3)	2 (2.1)	-	22 (1.2)
유흥업소 종업원	-	-	1 (0.4)	1 (0.2)	1 (0.1)	1 (1.1)	-	4 (0.2)
기 타	4 (5.0)	31 (12.3)	6 (2.6)	302 (61.1)	256 (37.7)	2 (2.1)	-	601 (32.9)
계	80 (100.0)	252 (100.0)	228 (100.0)	494 (100.0)	679 (100.0)	95 (100.0)	-	1,828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장애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장애가 없는 경우는 2000년 95.8%, 2001년 96.0%, 2002년 98.6%, 2003년 98.6%, 2004년 98.1%, 2005년 98.7%,

2006년 98.6%이며, 평균 98.1%로 매년 높은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2001년 0.3%, 2003년 0.4%, 2004년 0.3%, 2005년 0.2%, 2006년 0.3%로 비중이 매우 낮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2000년 4.2%, 2001년 3.7%, 2002년 1.4%, 2003년 1.3%, 2004년 1.6%, 2005년 1.1%, 2006년 1.1%로 상대적 비율은 낮으며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6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청소년 장애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장애없음	92 (95.8)	362 (96.0)	351 (98.6)	230 (98.3)	679 (98.1)	836 (98.7)	891 (98.6)	3,441 (98.1)
신체장애	-	1 (0.3)	-	1 (0.4)	2 (0.3)	2 (0.2)	3 (0.3)	9 (0.3)
정신장애	4 (4.2)	14 (3.7)	5 (1.4)	3 (1.3)	11 (1.6)	9 (1.1)	10 (1.1)	56 (1.6)
계	96 (100.0)	377 (100.0)	356 (100.0)	234 (100.0)	692 (100.0)	847 (100.0)	904 (100.0)	3,506 (100.0)

주: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장애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5) 동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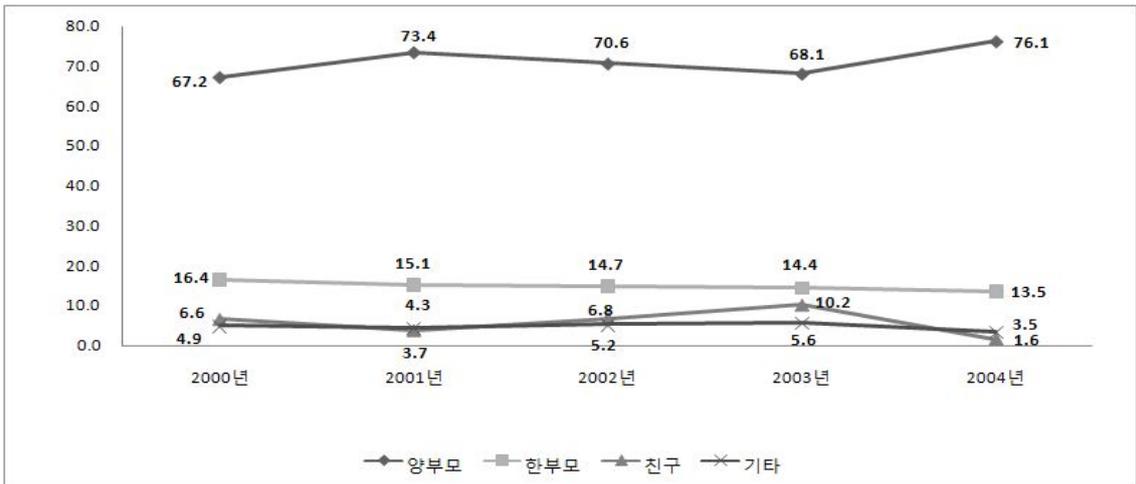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제 추행 피해자의 동거인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2000년 67.2%, 2001년 73.4%, 2002년 70.6%, 2003년 68.1%, 2004년 76.1%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쪽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000년 16.4%, 2001년 15.1%, 2002년 14.7%, 2003년 14.4%, 2004년 13.5%로 큰 변화는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조부모, 친척, 형제자매, 친구 등과 동거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표 3-7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동거인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 제외)	2006년	
양부모	82 (67.2)	356 (73.4)	312 (70.6)	507 (68.1)	440 (76.1)	276 (73.0)	-	1,973 (71.7)
한부모	20 (16.4)	73 (15.1)	65 (14.7)	107 (14.4)	78 (13.5)	54 (14.3)	-	397 (14.4)
조부모	6 (4.9)	17 (3.5)	12 (2.7)	13 (1.7)	31 (5.4)	15 (4.0)	-	94 (3.4)
친척	2 (1.6)	8 (1.6)	9 (2.0)	20 (2.7)	7 (1.2)	5 (1.3)	-	51 (1.9)
형제자매	2 (1.6)	3 (0.6)	6 (1.4)	15 (2.0)	4 (0.7)	3 (0.8)	-	33 (1.2)
친구	8 (6.6)	18 (3.7)	30 (6.8)	76 (10.2)	9 (1.6)	2 (0.5)	-	143 (5.2)
기타	2 (1.6)	10 (2.1)	8 (1.8)	7 (0.9)	9 (1.6)	23 (6.1)	-	59 (2.1)
계	122 (100.0)	485 (100.0)	442 (100.0)	745 (100.0)	578 (100.0)	378 (100.0)	-	2,750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5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나.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 가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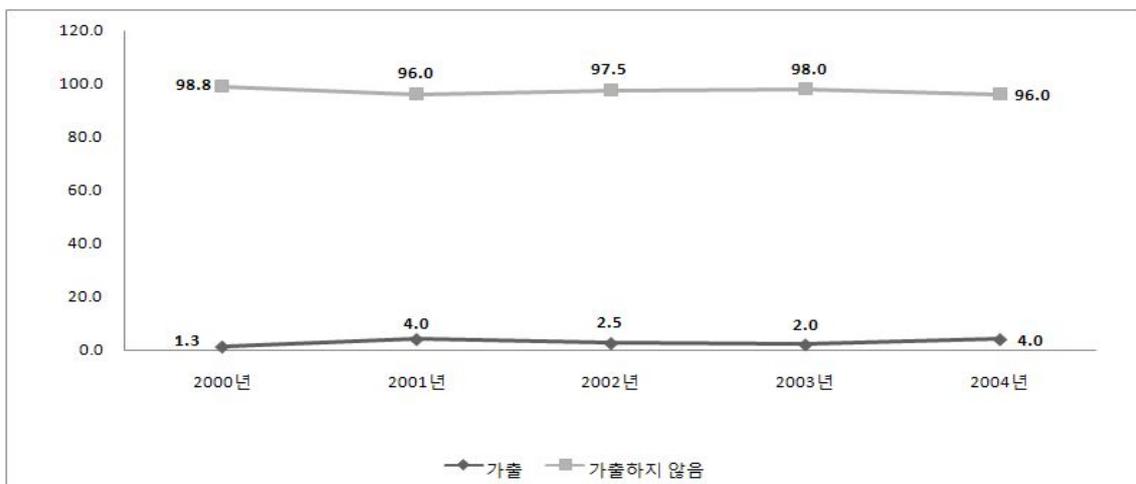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 피해자의 사건연도별 가출여부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출한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1.3%, 2001년 4.0%, 2002년 2.5%, 2003년 2.0%, 2004년 4.0%로서 2001년에 한차례 상승한 이후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가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7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청소년 가출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 제외)	2006년	
가 출	2 (1.3)	22 (4.0)	12 (2.5)	15 (2.0)	27 (4.0)	25 (5.5)	-	103 (3.4)
가출하지 않음	158 (98.8)	523 (96.0)	460 (97.5)	735 (98.0)	646 (96.0)	432 (94.5)	-	2,954 (96.6)
계	160 (100.0)	545 (100.0)	472 (100.0)	750 (100.0)	673 (100.0)	457 (100.0)	-	3,057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5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 음주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 피해자의 사건연도별 음주여부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는 2000년 96.0%, 2001년 95.7%, 2002년 97.1%, 2003년 97.2%, 2004년 95.9%로 매년 높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약간의 음주상태의 경우는 2000년 3.4%, 2001년 4.3%, 2002년 2.9%, 2003년 2.4%, 2004년 3.8%로 2001년 잠시 증가한 이후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만취상태의 경우는 2000년 0.7%, 2003년 0.3%, 2004년 0.3%를 각각 나타냈다.

<표 3-7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 음주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비음주	144 (96.0)	419 (95.7)	395 (97.1)	318 (97.2)	651 (95.9)	-	-	1,927 (96.3)
약간의 음주상태	5 (3.3)	19 (4.3)	12 (2.9)	8 (2.4)	26 (3.8)	-	-	70 (3.5)
만취상태	1 (0.7)	-	-	1 (0.3)	2 (0.3)	-	-	4 (0.2)
계	150 (100.0)	438 (100.0)	407 (100.0)	327 (100.0)	679 (100.0)	-	-	2,001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음주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 처벌의사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는지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2000년 64.6%, 2001년 66.5%, 2002년 75.1%, 2003년 86.8%, 2004년 95.2%로 매년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35.4%, 2001년 33.5%, 2002년 24.9%, 2003년 13.2%, 2004년 4.8%로 상대적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매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7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처벌희망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처벌을 원함	82 (64.6)	363 (66.5)	340 (75.1)	310 (86.8)	610 (95.2)	-	-	1,705 (80.3)
처벌을 원하지 않음	45 (35.4)	183 (33.5)	113 (24.9)	47 (13.2)	31 (4.8)	-	-	419 (19.7)
계	127 (100.0)	546 (100.0)	453 (100.0)	357 (100.0)	641 (100.0)	-	-	2,124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합의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7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합의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합의하지 않음	52 (38.8)	210 (50.4)	217 (59.8)	179 (64.4)	479 (81.0)	-	-	1,137 (63.8)
합의함	82 (61.2)	207 (49.6)	146 (40.2)	99 (35.6)	112 (19.0)	-	-	646 (36.2)
계	134 (100.0)	417 (100.0)	363 (100.0)	278 (100.0)	591 (100.0)	-	-	1,783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2000년 38.8%, 2001년 50.4%, 2002년 59.8%, 2003년 64.4%, 2004년 81.0%로 매년 상대적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한 경우는 2000년 61.2%, 2001년 49.6%, 2002년 40.2%, 2003년 35.6%, 2004년 19.0%로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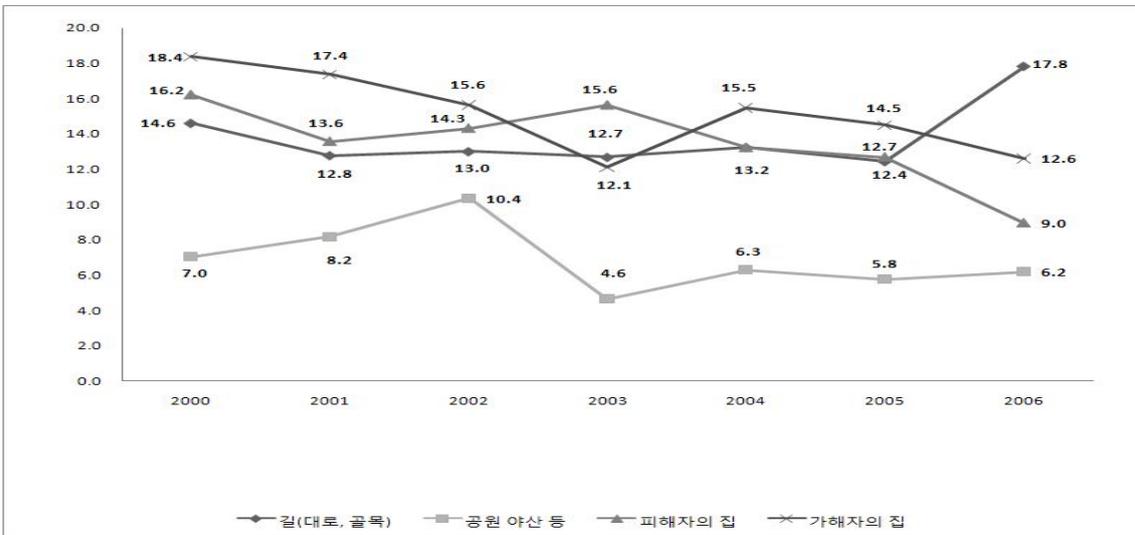
1) 범행장소

청소년 대상 강제 추행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해자의 집이 2000년 18.4%, 2002년 15.6%, 2004년 15.5%, 2006년 12.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자의 집은 2000년 16.2%, 2002년 14.3%, 2004년 13.2%, 2006년 9.0% 등의 비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로나 골목 같은 길에서 범죄가 발생한 비율은 2000년 14.6%, 2002년 13.0%, 2004년 13.2%, 2006년 17.8%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비율은 2000년 9.2%, 2002년 14.3%로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2004년 6.5%, 2006년 5.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행장소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길(대로, 골목)	27 (14.6)	64 (12.8)	59 (13.0)	90 (12.7)	82 (13.2)	97 (12.4)	161 (17.8)	580 (14.0)
사무실	6 (3.2)	20 (4.0)	12 (2.6)	12 (1.7)	11 (1.8)	50 (6.4)	14 (1.5)	125 (3.0)
공원 야산 등	13 (7.0)	41 (8.2)	47 (10.4)	33 (4.6)	39 (6.3)	45 (5.8)	56 (6.2)	274 (6.6)
유흥주점 노래방 등	2 (1.1)	12 (2.4)	8 (1.8)	6 (0.8)	7 (1.1)	13 (1.7)	9 (1.0)	57 (1.4)
여관 (숙박업소)	7 (3.8)	20 (4.0)	7 (1.5)	18 (2.5)	11 (1.8)	16 (2.1)	22 (2.4)	101 (2.4)
피해자의 집	30 (16.2)	68 (13.6)	65 (14.3)	111 (15.6)	82 (13.2)	99 (12.7)	81 (9.0)	536 (12.9)
주거침입	4 (2.2)	13 (2.6)	8 (1.8)	9 (1.3)	6 (1.0)	3 (0.4)	14 (1.5)	57 (1.4)
가해자의 집	34 (18.4)	87 (17.4)	71 (15.6)	86 (12.1)	96 (15.5)	113 (14.5)	114 (12.6)	601 (14.5)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6 (3.2)	34 (6.8)	45 (9.9)	60 (8.5)	41 (6.6)	50 (6.4)	57 (6.3)	293 (7.1)

제3자의 집	7 (3.8)	14 (2.8)	21 (4.6)	42 (5.9)	13 (2.1)	11 (1.4)	25 (2.8)	133 (3.2)
자동차 안	17 (9.2)	37 (7.4)	65 (14.3)	77 (10.8)	40 (6.5)	39 (5.0)	48 (5.3)	323 (7.8)
찜질방	-	-	-	-	53 (8.5)	72 (9.2)	41 (4.5)	166 (4.0)
기 타	32 (17.3)	91 (18.2)	46 (10.1)	166 (23.4)	139 (22.4)	172 (22.1)	262 (29.0)	908 (21.9)
계	185 (100.0)	501 (100.0)	454 (100.0)	710 (100.0)	620 (100.0)	780 (100.0)	904 (100.0)	4,154 (100.0)



<그림 3-5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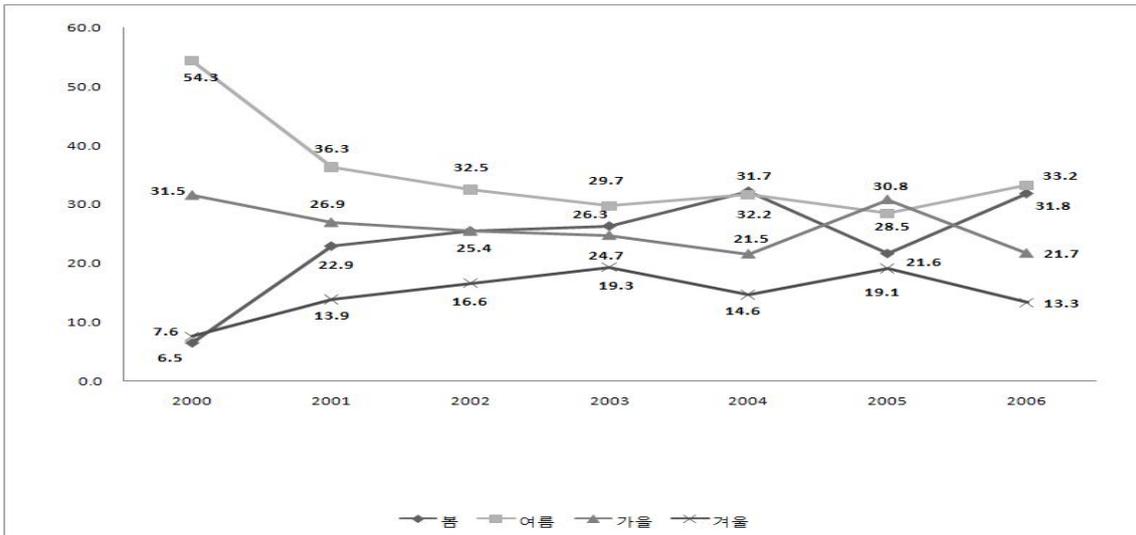
2) 발생시기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죄의 범행발생계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6.5%, 2002년 25.4%, 2004년 32.2% 2006년 31.8%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에 발생한 사건은 2000년 54.3%, 2002년 32.5%, 2004년 31.7%, 2006년 33.2% 등으로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가을에 발생한 범죄는 2000년 31.5%, 2002년 25.4%, 2004년 21.5%, 2006년 21.7% 등의 분포를, 겨울에 발생한 범죄는 2000년 7.6%, 2002년 16.6%, 2004년 14.6%, 2006년 13.3%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7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발생계절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봄	12 (6.5)	114 (22.9)	115 (25.4)	184 (26.3)	200 (32.2)	85 (21.6)	286 (31.8)	996 (26.6)
여름	100 (54.3)	181 (36.3)	147 (32.5)	208 (29.7)	197 (31.7)	112 (28.5)	299 (33.2)	1,244 (33.2)
가을	58 (31.5)	134 (26.9)	115 (25.4)	173 (24.7)	134 (21.5)	121 (30.8)	195 (21.7)	930 (24.8)
겨울	14 (7.6)	69 (13.9)	75 (16.6)	135 (19.3)	91 (14.6)	75 (19.1)	120 (13.3)	579 (15.4)
계	184 (100.0)	498 (100.0)	452 (100.0)	700 (100.0)	622 (100.0)	393 (100.0)	900 (100.0)	3,749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범행발생계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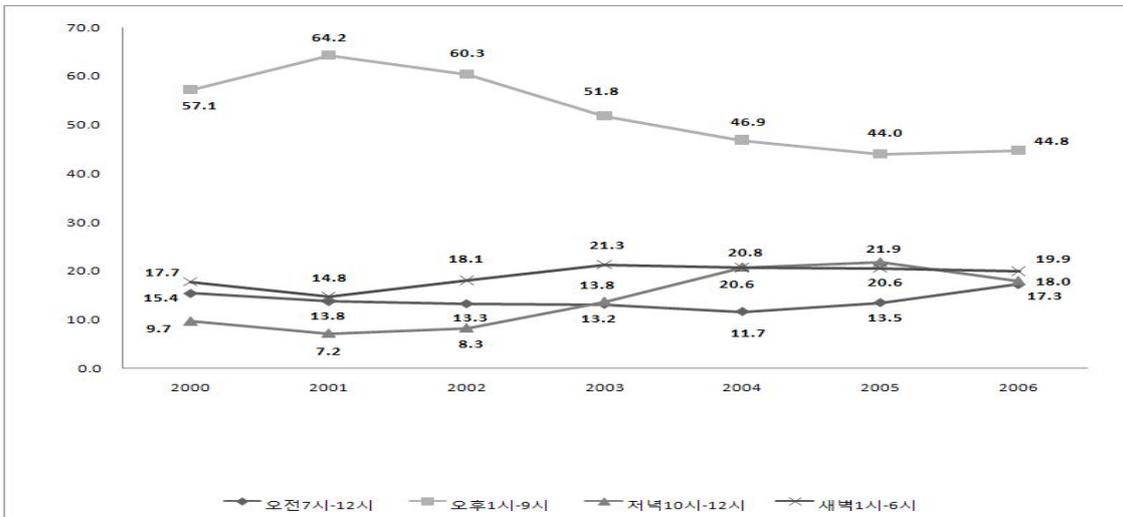
<그림 3-5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범죄 발생 시간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오후 1시-9시에 발생한 사건이 2000년 57.1%, 2002년 60.3%, 2004년 46.9%, 2006년 44.8% 등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새벽 1시-6시가 2000년 17.7%, 2002년 18.1%, 2004년 20.6%, 2006년 19.9% 등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3-77>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발생시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오전7시-12시	27 (15.4)	65 (13.8)	56 (13.3)	88 (13.2)	65 (11.7)	96 (13.5)	139 (17.3)	536 (14.1)
오후1시-9시	100 (57.1)	303 (64.2)	254 (60.3)	346 (51.8)	261 (46.9)	312 (44.0)	360 (44.8)	1,936 (50.9)
저녁10시-12시	17 (9.7)	34 (7.2)	35 (8.3)	92 (13.8)	116 (20.8)	155 (21.9)	145 (18.0)	594 (15.6)
새벽1시-6시	31 (17.7)	70 (14.8)	76 (18.1)	142 (21.3)	115 (20.6)	146 (20.6)	160 (19.9)	740 (19.4)
계	175 (100.0)	472 (100.0)	421 (100.0)	668 (100.0)	557 (100.0)	709 (100.0)	804 (100.0)	3,806 (100.0)

주1. '1-7차 조사'인 2003년 상반기까지는 범죄발생시간을 위와 같은 범주로 나누었으나, 이후 2003년 하반기분석인 '8차 조사' 이후로는 오전은 6시부터 12시, 오후1시부터 6시, 저녁7시부터 밤12시, 새벽 1시부터 6시로 분류되어 오전6시부터 12시를 오전7시-12시에, 오후1시부터 6시를 오후1시-9시에, 저녁7시부터 밤12시를 저녁10시-6시로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림 3-6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나. 공범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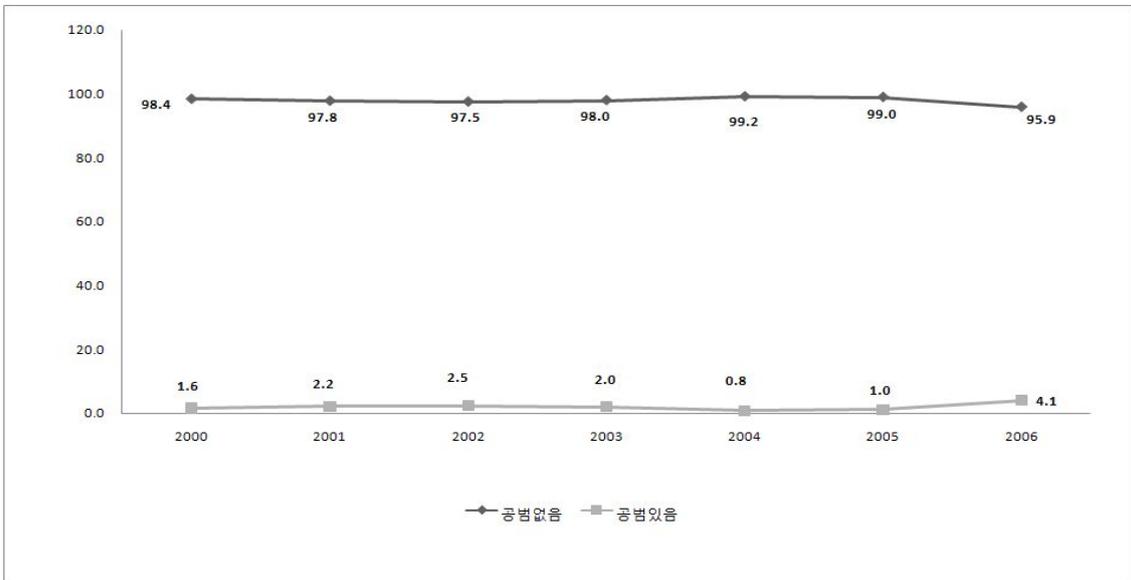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공범이 없는 단독범인 경우가 2000년 98.4%, 2002년 97.5%, 2004년 99.2%, 2006년 95.9%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모든 해에 걸쳐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8>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공범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범없음	183 (98.4)	486 (97.8)	437 (97.5)	689 (98.0)	622 (99.2)	393 (99.0)	1,631 (95.9)	4,441 (97.4)
공범있음	3 (1.6)	11 (2.2)	11 (2.5)	14 (2.0)	5 (0.8)	4 (1.0)	70 (4.1)	118 (2.6)
계	186 (100.0)	497 (100.0)	448 (100.0)	703 (100.0)	627 (100.0)	397 (100.0)	1,701 (100.0)	4,559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공범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6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가 2000년 56.5%, 2002년 56.2%, 2004년 61.7%, 2006년 67.2% 등으로 매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네사람이 2000년 24.2%, 2002년 18.1%, 2004년 15.3%, 2006년 10.0% 등의 분포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 밖에 의무의 비율과 친부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크게 높지는 않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79>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가해자- 피해자관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모르는 사람	105 (56.5)	272 (54.9)	254 (56.2)	391 (55.1)	386 (61.7)	487 (62.4)	577 (67.2)	2,472 (60.2)
친 부	2 (1.1)	14 (2.8)	24 (5.3)	24 (3.4)	15 (2.4)	27 (3.5)	27 (3.1)	133 (3.2)
의 부	2 (1.1)	19 (3.8)	20 (4.4)	32 (4.5)	21 (3.4)	24 (3.1)	27 (3.1)	145 (3.5)
친 척	4 (2.2)	4 (0.8)	7 (1.5)	15 (2.1)	10 (1.6)	16 (2.0)	18 (2.1)	74 (1.8)
친 구	1 (0.5)	1 (0.2)	1 (0.2)	1 (0.1)	3 (0.5)	1 (0.1)	5 (0.6)	13 (0.3)
동네사람	45 (24.2)	113 (22.8)	82 (18.1)	126 (17.7)	96 (15.3)	101 (12.9)	86 (10.0)	649 (15.8)
권력관계	7 (3.8)	18 (3.6)	10 (2.2)	16 (2.3)	17 (2.7)	21 (2.7)	44 (5.1)	133 (3.2)
기 타	20 (10.8)	54 (10.9)	54 (11.9)	105 (14.8)	78 (12.5)	104 (13.3)	75 (8.7)	490 (11.9)
계	186 (100.0)	495 (100.0)	452 (100.0)	710 (100.0)	626 (100.0)	781 (100.0)	859 (100.0)	4,109 (100.0)

주1. 2006년 조사에서는 '모의 동거인'과 '친오빠'도 분석하였으나 이전 분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모의 동거인'은 '의부'로 '친오빠'는 '친척'으로 재분류하였다.

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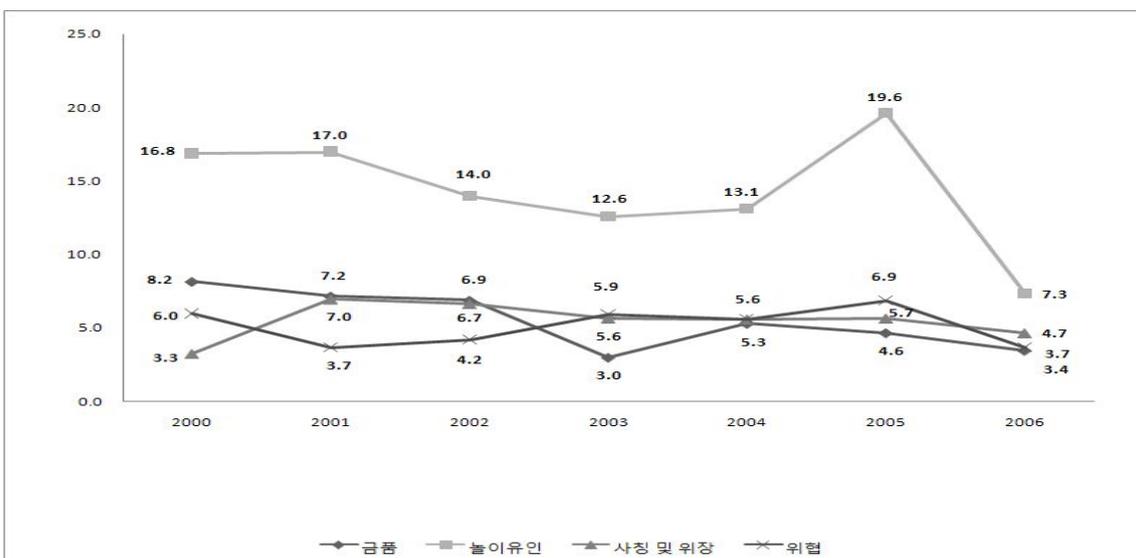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놀이 유인이 2000년 16.8%, 2002년 14.0%, 2004년 13.1%, 2006년 7.3%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상대적인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사칭 및 위장으로 유인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유인방법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2000년 42.4%, 2002년 41.2%, 2004년 37.6%, 2006년 56.9%로 매년 전체의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0>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유인방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당사항없음	78 (42.4)	224 (45.8)	186 (41.2)	292 (41.2)	235 (37.6)	106 (21.4)	512 (56.9)	1,633 (42.4)
금품	15 (8.2)	35 (7.2)	31 (6.9)	21 (3.0)	33 (5.3)	23 (4.6)	31 (3.4)	189 (4.9)
질문	6 (3.3)	14 (2.9)	15 (3.3)	34 (4.8)	37 (5.9)	30 (6.1)	22 (2.4)	158 (4.1)
놀이유인	31 (16.8)	83 (17.0)	63 (14.0)	89 (12.6)	82 (13.1)	97 (19.6)	66 (7.3)	511 (13.3)
애정칭찬	5 (2.7)	13 (2.7)	18 (4.0)	25 (3.5)	40 (6.4)	27 (5.5)	16 (1.8)	144 (3.7)
사칭 및 위장	6 (3.3)	34 (7.0)	30 (6.7)	40 (5.6)	35 (5.6)	28 (5.7)	42 (4.7)	215 (5.6)
위협	11 (6.0)	18 (3.7)	19 (4.2)	42 (5.9)	35 (5.6)	34 (6.9)	33 (3.7)	192 (5.0)
폭력	2 (1.1)	8 (1.6)	8 (1.8)	17 (2.4)	8 (1.3)	22 (4.4)	9 (1.0)	74 (1.9)
만취상태	-	3 (0.6)	5 (1.1)	9 (1.3)	14 (2.2)	5 (1.0)	2 (0.2)	38 (1.0)
기타	29 (15.8)	57 (11.7)	76 (16.9)	139 (19.6)	106 (17.0)	123 (24.8)	167 (18.6)	697 (18.1)
계	184 (100.0)	489 (100.0)	451 (100.0)	708 (100.0)	625 (100.0)	495 (100.0)	900 (100.0)	3,852 (100.0)

주1. '기타'항목에는 '완력'과 '편의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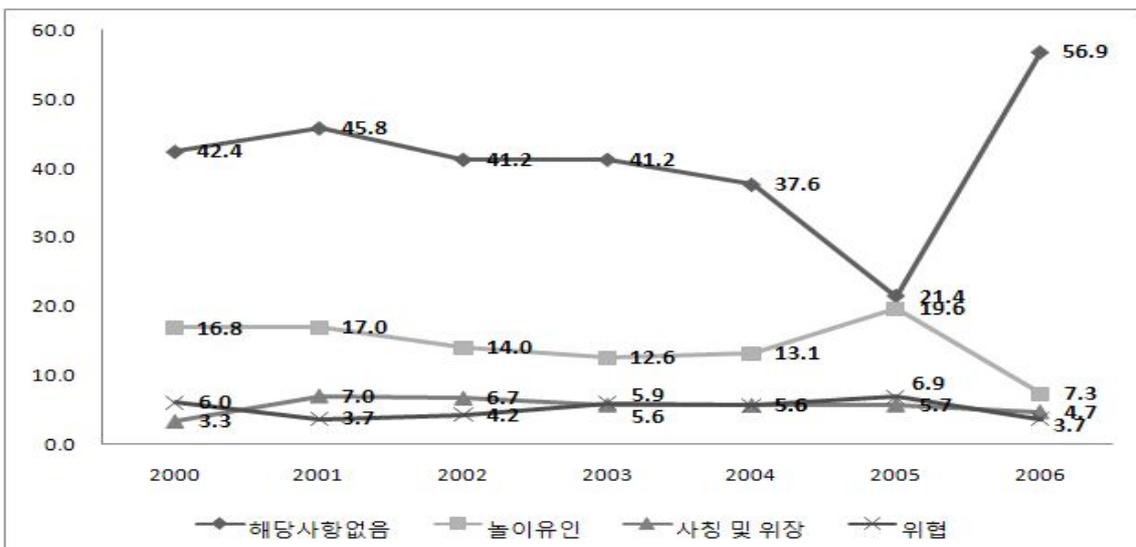


<그림 3-6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강제 사용의 방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를 한 경우가 2000년 43.8%, 2002년 48.1%, 2004년 26.9%, 2006년 59.2%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와 협박을 사용한 경우도 평균 18.6%,와 14.5% 등으로 그 상대적 비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1>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강제강압의 방식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협박	21 (11.4)	83 (17.1)	75 (16.8)	97 (15.9)	88 (18.5)	65 (10.4)	94 (12.1)	523 (14.5)
폭행	12 (6.5)	12 (2.5)	17 (3.8)	23 (3.8)	15 (3.2)	25 (4.0)	18 (2.3)	122 (3.4)
완력사용	81 (43.8)	231 (47.6)	215 (48.1)	261 (42.8)	128 (26.9)	353 (56.3)	461 (59.2)	1,730 (47.9)
위계위력의 이용	46 (24.9)	71 (14.6)	62 (13.9)	153 (25.1)	143 (30.0)	141 (22.5)	54 (6.9)	670 (18.6)
속박, 감금	2 (1.1)	1 (0.2)	1 (0.2)	7 (1.1)	94 (19.7)	5 (0.8)	4 (0.5)	114 (3.2)
기타	23 (12.4)	87 (17.9)	77 (17.2)	69 (11.3)	8 (1.7)	38 (6.1)	148 (19.0)	450 (12.5)
계	185 (100.0)	485 (100.0)	447 (100.0)	610 (100.0)	476 (100.0)	627 (100.0)	779 (100.0)	3,6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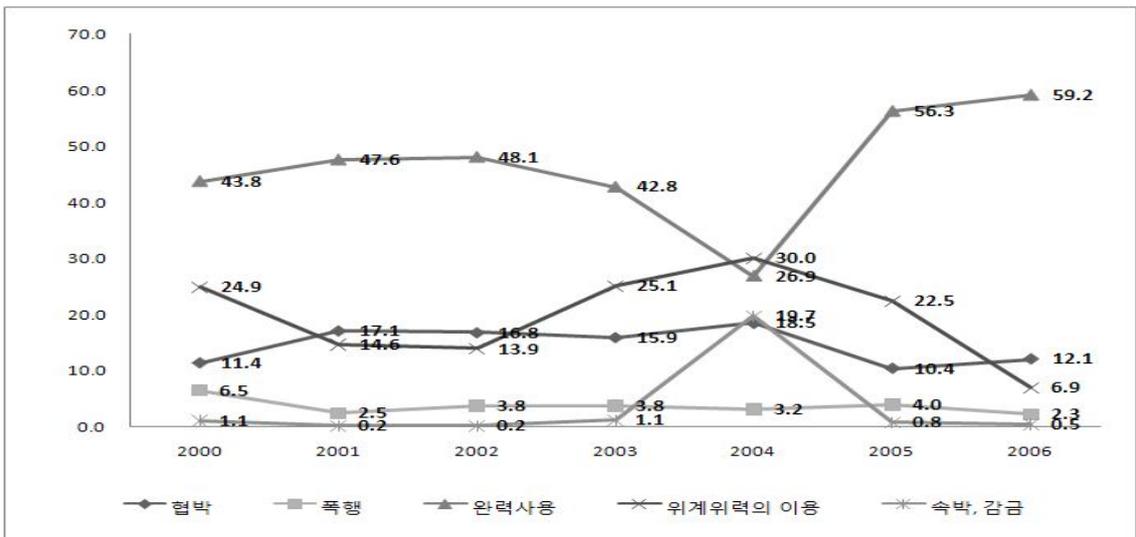


<그림 3-6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강제강압 방식의 연도별 추세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에서 강제추행의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2>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강제추행의 유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성적 키스	31 (17.1)	73 (15.0)	59 (13.3)	81 (11.8)	72 (11.8)	54 (9.2)	79 (5.5)	449 (10.2)
성기이외의 접촉	68 (37.6)	188 (38.5)	170 (38.4)	252 (36.7)	254 (41.8)	232 (39.7)	362 (25.3)	1,526 (34.5)
피해자의 성기접촉	56 (30.9)	155 (31.8)	140 (31.6)	227 (33.0)	206 (33.9)	209 (35.7)	513 (35.9)	1,506 (34.1)
가해자의 성기접촉	11 (6.1)	18 (3.7)	33 (7.4)	53 (7.7)	29 (4.8)	44 (7.5)	288 (20.2)	476 (10.8)
구강성교	7 (3.9)	9 (1.8)	4 (0.9)	19 (2.8)	7 (1.2)	13 (2.2)	81 (5.7)	140 (3.2)
항문성교	2 (1.1)	4 (0.8)	3 (0.7)	6 (0.9)	3 (0.5)	7 (1.2)	32 (2.2)	57 (1.3)
이물질삽입	-	1 (0.2)	2 (0.5)	-	-	1 (0.2)	4 (0.3)	8 (0.2)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	5 (2.8)	24 (4.9)	10 (2.3)	24 (3.5)	12 (2.0)	-	-	75 (1.7)
기 타	1 (0.6)	16 (3.3)	22 (5.0)	25 (3.6)	25 (4.1)	25 (4.3)	70 (4.9)	184 (4.2)
계	181 (100.0)	488 (100.0)	443 (100.0)	687 (100.0)	608 (100.0)	585 (100.0)	1,429 (100.0)	4,421 (100.0)



<그림 3-6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연도별 추세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유형이 성기 이외의 접촉으로서 2000년

37.6%, 2002년 38.5%, 2004년 41.8%, 2006년 25.3%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접촉이 2000년 31.1%, 2002년 31.6%, 2004년 33.9%, 2006년 35.9% 등으로 나타나 성기 이회의 접촉과 피해자의 성기 접촉이 전체의 70%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해자의 성기접촉이 2000년 6.1%, 2002년 7.4%, 2004년 4.8% 등의 10% 미만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6년 20.2%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 피해의 정도 및 결과

1) 피해자의 수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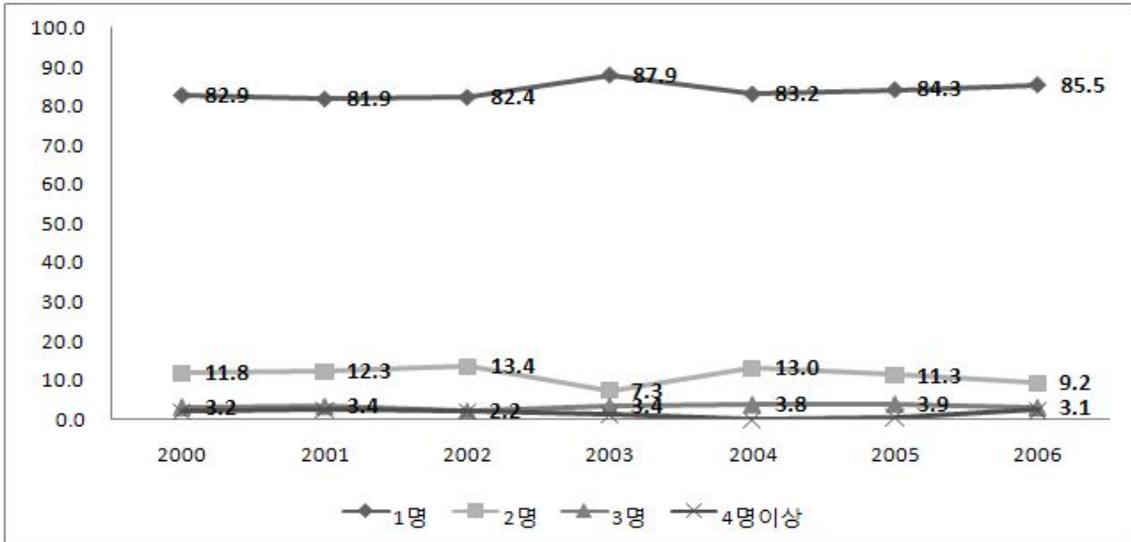
<표 3-83>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명	155 (82.9)	413 (81.9)	374 (82.4)	335 (87.9)	262 (83.2)	621 (84.3)	577 (85.5)	2,737 (84.1)
2명	22 (11.8)	62 (12.3)	61 (13.4)	28 (7.3)	41 (13.0)	83 (11.3)	62 (9.2)	359 (11.0)
3명	6 (3.2)	17 (3.4)	10 (2.2)	13 (3.4)	12 (3.8)	29 (3.9)	21 (3.1)	108 (3.3)
4명 이상	4 (2.1)	12 (2.4)	9 (2.0)	5 (1.3)	-	4 (0.5)	15 (2.2)	49 (1.5)
계	187 (100.0)	504 (100.0)	454 (100.0)	381 (100.0)	315 (100.0)	737 (100.0)	675 (100.0)	3,253 (100.0)

주1.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주2.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2000년 82.9%, 2002년 82.4%, 2004년 83.2%, 2006년 85.5% 등 높은 비율이 매년 유지되고 있으며, 4년간 전체 3,253건 중에 2,737건으로 84.1%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밖에 2명인 경우가 2000년 11.8%, 2002년 13.4%, 2004년 13.0%, 2006년 9.2% 등의 분포를, 3명인 경우가 2000년 3.2%, 2002년 2.2%, 2004년 3.78%, 2006년 3.1%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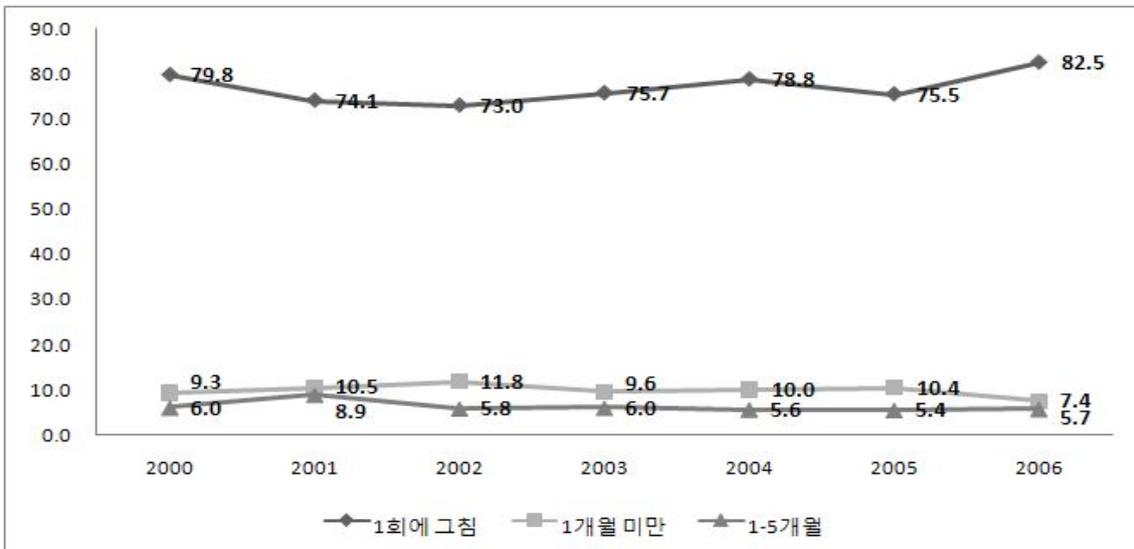
<그림 3-65>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2) 범죄지속기간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범죄 지속 기간의 연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회에 그침 경우가 2000년 79.8%, 2002년 73.0%, 2004년 78.8%, 2006년 82.5% 등의 분포를 나타내 매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1개월 이하가 2000년 9.3%, 2002년 11.8%, 2004년 10.0%, 2006년 7.4%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범죄지속기간이 6개월-1년의 평균분포가 3.0%인 것에 비해 1년 이상의 분포가 4.0%로 오히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8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지속기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회에 그침	146 (79.8)	366 (74.1)	327 (73.0)	531 (75.7)	491 (78.8)	582 (75.5)	723 (82.5)	3,166 (77.3)
1개월 미만	17 (9.3)	52 (10.5)	53 (11.8)	67 (9.6)	62 (10.0)	80 (10.4)	65 (7.4)	396 (9.7)
1-5개월	11 (6.0)	44 (8.9)	26 (5.8)	42 (6.0)	35 (5.6)	42 (5.4)	50 (5.7)	250 (6.1)
6개월-1년 미만	5 (2.7)	14 (2.8)	20 (4.5)	27 (3.9)	14 (2.2)	23 (3.0)	19 (2.2)	122 (3.0)
1년 이상	4 (2.2)	18 (3.6)	22 (4.9)	34 (4.9)	21 (3.4)	44 (5.7)	19 (2.2)	162 (4.0)
계	183 (100.0)	494 (100.0)	448 (100.0)	701 (100.0)	623 (100.0)	771 (100.0)	876 (100.0)	4,096 (100.0)



<그림 3-66>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 범죄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제4절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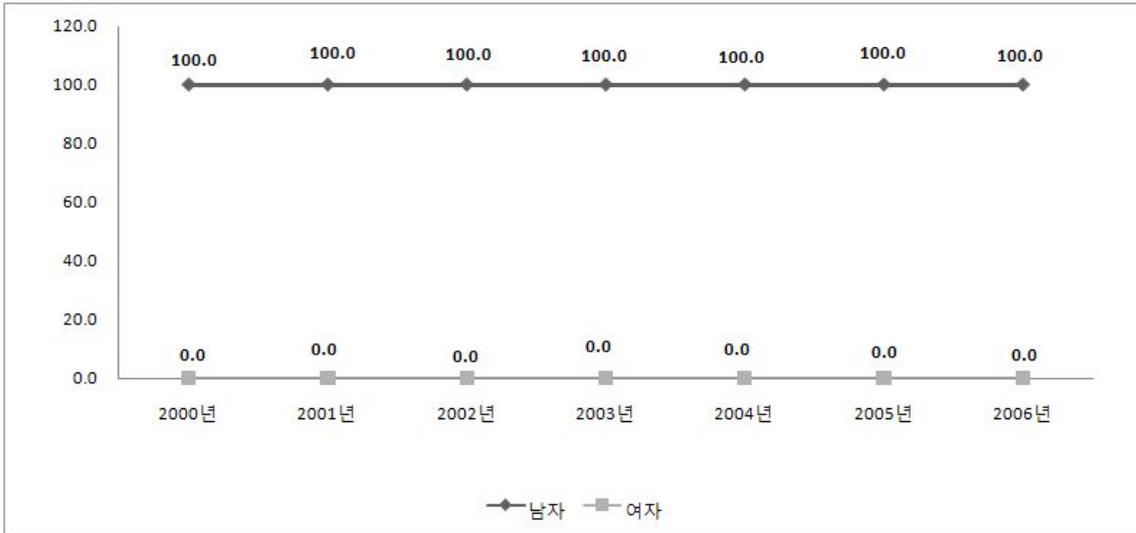
1) 성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는 모두 남자였다.

<표 3-85>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성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 자	-	-	-	-	1,595 (100.0)	1,275 (100.0)	833 (100.0)	3,703 (100.0)
계	-	-	-	-	1,595 (100.0)	1,275 (100.0)	833 (100.0)	3,703 (100.0)

주: 2003년 이전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의 성별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어, 2004년 이후에 대해서만 통계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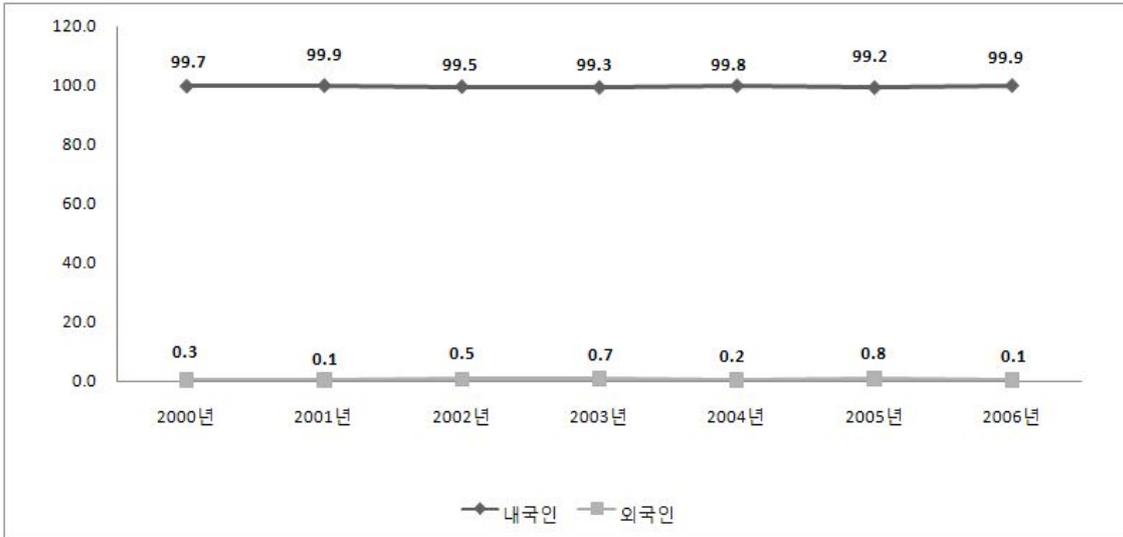
<그림 3-67>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2) 국 적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의 국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의 비율이 2000년 99.7%, 2001년 99.9%, 2002년 99.5%, 2003년 99.3%, 2004년 99.8%, 2005년 99.2%, 2006년 99.9% 등으로 해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범죄는 내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6>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국적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303 (99.7)	1,405 (99.9)	1,408 (99.5)	1,495 (99.3)	1,592 (99.8)	1,220 (99.2)	832 (99.9)	8,255 (99.6)
외국인	1 (0.3)	2 (0.1)	7 (0.5)	11 (0.7)	3 (0.2)	10 (0.8)	1 (0.1)	35 (0.4)
계	304 (100.0)	1,407 (100.0)	1,415 (100.0)	1,506 (100.0)	1,595 (100.0)	1,230 (100.0)	833 (100.0)	8,2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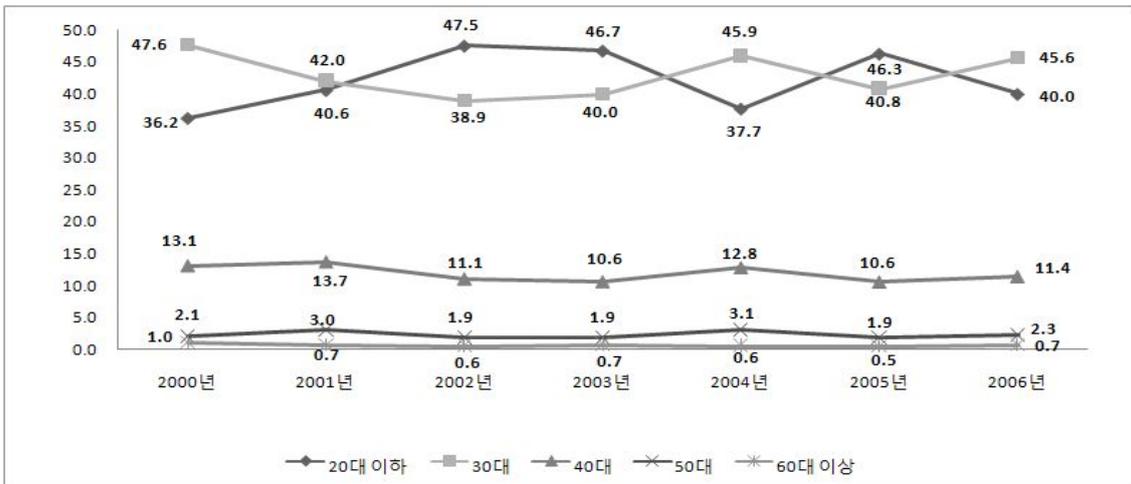
<그림 3-68>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국적의 비율변화

3) 연령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 2000년 36.2%, 2001년 40.6%, 2002년 47.5%, 2003년 46.7%, 2004년 37.7%, 2005년 46.3%, 2006년 40.0%이며, 30대 역시 2000년 47.3%, 2001년 42.0%, 2002년 38.9%, 2003년 40.0%, 2004년 45.9%, 2005년 40.8%, 2006년 45.6%로 증감을 지속하고 있다.

<표 3-87>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대 이하	105 (36.2)	569 (40.6)	670 (47.5)	703 (46.7)	601 (37.7)	569 (46.3)	333 (40.0)	3,550 (43.0)
30대	138 (47.6)	589 (42.0)	549 (38.9)	601 (40.0)	732 (45.9)	502 (40.8)	380 (45.6)	3,491 (42.2)
40대	38 (13.1)	192 (13.7)	156 (11.1)	160 (10.6)	204 (12.8)	130 (10.6)	95 (11.4)	975 (11.8)
50대	6 (2.1)	42 (3.0)	27 (1.9)	29 (1.9)	49 (3.1)	23 (1.9)	19 (2.3)	195 (2.4)
60대 이상	3 (1.0)	10 (0.7)	8 (0.6)	11 (0.7)	9 (0.6)	6 (0.5)	6 (0.7)	53 (0.6)
계	290 (100.0)	1,402 (100.0)	1,410 (100.0)	1,504 (100.0)	1,595 (100.0)	1,230 (100.0)	833 (100.0)	8,264 (100.0)



<그림 3-6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40대는 2000년 13.1%, 2001년 13.7%, 2002년 11.1%, 2003년 10.6%, 2004년 12.8%, 2005년 10.6%, 2006년 11.4%이고, 50대는 2000년 2.1%, 2001년 3.0%, 2002년 1.9%, 2003년 1.9%, 2004년 3.1%, 2005년 1.9%, 2006년 2.3%로 미미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자의 연령이 20대 이하가 43.0%로 가장 많고, 30대는 42.2%를, 40대는 11.8%를 차지하였다.

4) 학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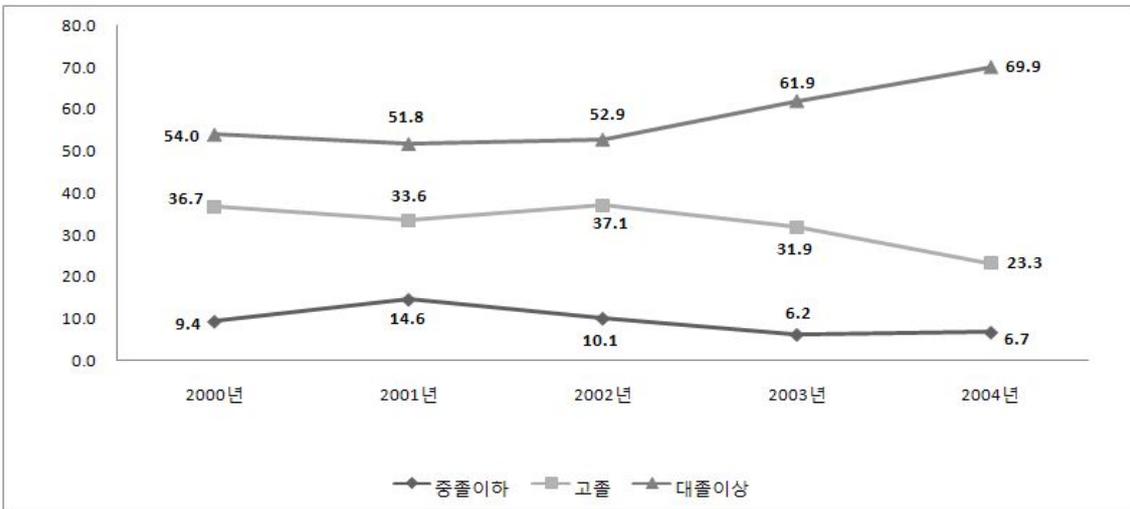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2000년 9.4%에서 2001년 14.6%로 증가하였다가 2002년 10.1%, 2003년 6.2%, 2004년 6.7%로 감소하였다. 고졸자는 2000년 36.7%, 2001년 33.6%, 2002년 37.1%, 2003년 31.9%, 2004년 23.3%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비율은 2000년 54.0%, 2001년 51.8%, 2002년 52.9%, 2003년 61.9%, 2004년 69.9%로 점차적으로 증가 하였다.

<표 3-88>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중졸이하	13 (9.4)	90 (14.6)	53 (10.1)	39 (6.2)	50 (6.7)	245 (9.2)
고졸	51 (36.7)	207 (33.6)	195 (37.1)	201 (31.9)	173 (23.3)	827 (31.2)
대졸이상	75 (54.0)	319 (51.8)	278 (52.9)	390 (61.9)	519 (69.9)	1,581 (59.6)
계	139 (100.0)	616 (100.0)	526 (100.0)	630 (100.0)	742 (100.0)	2,653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7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학력의 비율변화

5) 직 업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고 그 밖에 판매서비스직, 무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2000년 34.2%, 2001년 30.2%, 2002년 33.1%, 2003년 30.9%, 2004년 33.7%, 2005년 31.9%, 2006년 35.3%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은 32.3%였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000년 28.6%, 2001년 27.5%, 2002년 22.9%, 2003년 18.2%, 2004년 11.7%, 2005년 12.5%, 2006년 16.2%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문직	12 (3.9)	38 (2.7)	37 (2.6)	28 (1.9)	10 (1.3)	23 (1.9)	25 (3.0)	173 (2.3)
사무관리직	104 (34.2)	425 (30.2)	467 (33.1)	465 (30.9)	264 (33.7)	389 (31.9)	294 (35.3)	2,408 (32.3)
판매서비스직	87 (28.6)	386 (27.5)	323 (22.9)	274 (18.2)	92 (11.7)	153 (12.5)	135 (16.2)	1,450 (19.4)
유흥업소	9 (3.0)	15 (1.1)	10 (0.7)	25 (1.7)	9 (1.1)	10 (0.8)	-	78 (1.0)
일용노동자	5 (1.6)	41 (2.9)	50 (3.5)	60 (4.0)	52 (6.6)	57 (4.7)	21 (2.5)	286 (3.8)
학생	15 (4.9)	99 (7.0)	112 (7.9)	147 (9.8)	64 (8.2)	124 (10.2)	31 (3.7)	592 (7.9)
군인 경찰	4 (1.3)	14 (1.0)	17 (1.2)	17 (1.1)	-	4 (0.3)	1 (0.1)	57 (0.8)
무직	39 (12.8)	224 (15.9)	231 (16.3)	258 (17.1)	159 (20.3)	209 (17.1)	163 (19.6)	1,283 (17.2)
생산직	18 (5.9)	87 (6.2)	67 (4.7)	40 (2.7)	-	18 (1.5)	98 (11.8)	328 (4.4)
농어업	2 (0.7)	19 (1.4)	11 (0.8)	6 (0.4)	-	7 (0.6)	10 (1.2)	55 (0.7)
운전자,운수업	7 (2.3)	47 (3.3)	55 (3.9)	27 (1.8)	-	-	-	136 (1.8)
공공기관	-	-	-	7 (0.5)	9 (1.1)	12 (1.0)	2 (0.2)	30 (0.4)
자영업	-	-	-	110 (7.3)	77 (9.8)	178 (14.6)	39 (4.7)	404 (5.4)
청소년보호직종군	-	-	-	-	-	6 (0.5)	3 (0.4)	9 (0.1)
기타	2 (0.7)	11 (0.8)	33 (2.3)	41 (2.7)	47 (6.0)	30 (2.5)	11 (1.3)	175 (2.3)
계	304 (100.0)	1,406 (100.0)	1,413 (100.0)	1,505 (100.0)	783 (100.0)	1,220 (100.0)	833 (100.0)	7,464 (100.0)

주1: 2000, 2001, 2002년 조사항목에서는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2: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나 '9차 조사'에서는 범죄자 직업에 대한 조사가 없어 이번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0차 조사' 항목에는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3: 2005년의 경우, '11차 조사'와 '12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1차 조사' 항목에서는 '군인, 경찰',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12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4: 2006년의 경우, '13차 조사'와 '14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3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4차 조사' 항목에서는 '유흥업소', '일용노동자', '학생', '군인, 경찰', '운전자, 운수업',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무직의 경우, 2000년 12.8%, 2001년 15.9%, 2002년 16.3%, 2003년 17.1%, 2004년 20.3%, 2005년 17.1%, 2006년 19.6%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기할 점은 학생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2000년 4.9%, 2001년 7.0%, 2002년 7.9%, 2003년 9.8%, 2004년 8.2%, 2005년 10.2%, 2006년 2.5%로서 전체 평균 비율은 7.9%이다. 기타 다른 직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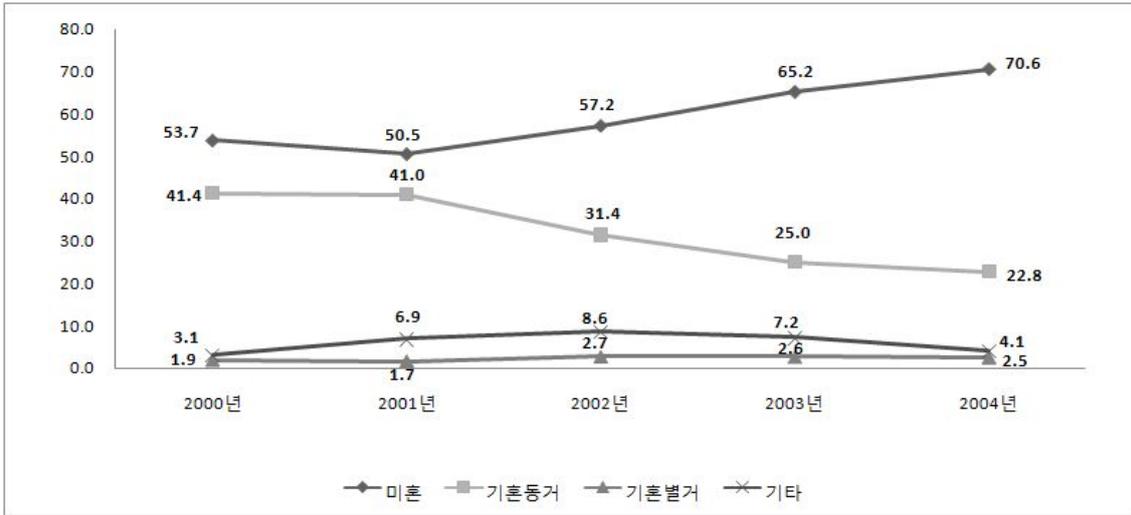
6) 혼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수 가해자의 연도별 혼인 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인 경우는 2000년 53.7%, 2001년 50.5%, 2002년 57.2%, 2003년 65.2%, 2004년 70.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혼동거자의 비율은 2000년 41.4%, 2001년 41.0%, 2002년 31.4%, 2003년 25.0%, 2004년 22.8%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혼상태인 가해자의 경우 2000년 3.1%에서 2001년 5.0%, 2002년 6.6%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5.6%, 2004년 3.2%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혼인 상태의 가해자가 61.7%로 가장 많고, 기혼 동거는 29.6%, 이혼자의 경우 4.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9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혼인상태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 혼	87 (53.7)	361 (50.5)	417 (57.2)	572 (65.2)	754 (70.6)	2,191 (61.7)
기혼동거	67 (41.4)	293 (41.0)	229 (31.4)	219 (25.0)	243 (22.8)	1,051 (29.6)
기혼별거	3 (1.9)	12 (1.7)	20 (2.7)	23 (2.6)	27 (2.5)	85 (2.4)
기혼사별	-	4 (0.6)	3 (0.4)	3 (0.3)	2 (0.2)	12 (0.3)
이 혼	5 (3.1)	36 (5.0)	48 (6.6)	49 (5.6)	34 (3.2)	172 (4.8)
동 거	-	9 (1.3)	9 (1.2)	7 (0.8)	7 (0.7)	32 (0.9)
기 타	-	-	3 (0.4)	4 (0.5)	1 (0.1)	8 (0.2)
계	162 (100.0)	715 (100.0)	729 (100.0)	877 (100.0)	1,068 (100.0)	3,551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71>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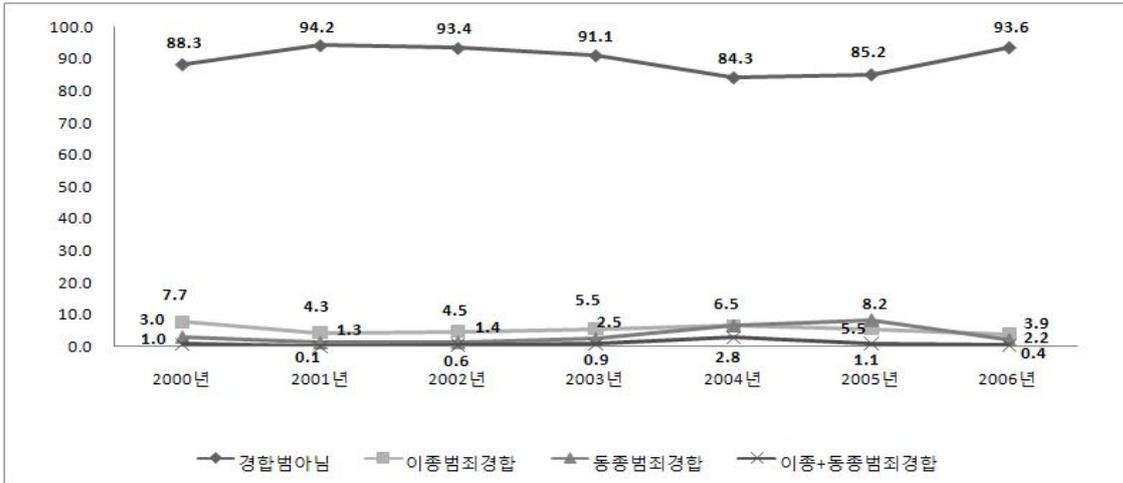
나. 처리현황

1) 경합성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성매수범죄의 연도별 경합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경합범이 아닌 비율은 2000년 88.3%에서 2001년 94.2%로 상승한 이후 2002년 93.4% 2003년 91.1%, 2004년 84.3%로 소폭 하락하였고, 다시 2005년 85.2%, 2006년 93.6%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이중범죄경합, 동종범죄경합, 이중+동종범죄경합의 비율은 모두 10%를 넘지 않으며 비중의 차이도 크지 않다.

<표 3-91>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경합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합범아님	265 (88.3)	1,322 (94.2)	1,314 (93.4)	1,367 (91.1)	717 (84.3)	1,048 (85.2)	778 (93.6)	6,811 (90.5)
이중범죄경합	23 (7.7)	61 (4.3)	64 (4.5)	83 (5.5)	55 (6.5)	68 (5.5)	32 (3.9)	386 (5.1)
동종범죄경합	9 (3.0)	18 (1.3)	20 (1.4)	37 (2.5)	55 (6.5)	101 (8.2)	18 (2.2)	258 (3.4)
이중+동종범죄경합	3 (1.0)	2 (0.1)	9 (0.6)	13 (0.9)	24 (2.8)	13 (1.1)	3 (0.4)	67 (0.9)
계	300 (100.0)	1,403 (100.0)	1,407 (100.0)	1,500 (100.0)	851 (100.0)	1,230 (100.0)	831 (100.0)	7,522 (100.0)



<그림 3-7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2) 1심 선고형의 종류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에 있어서 연도별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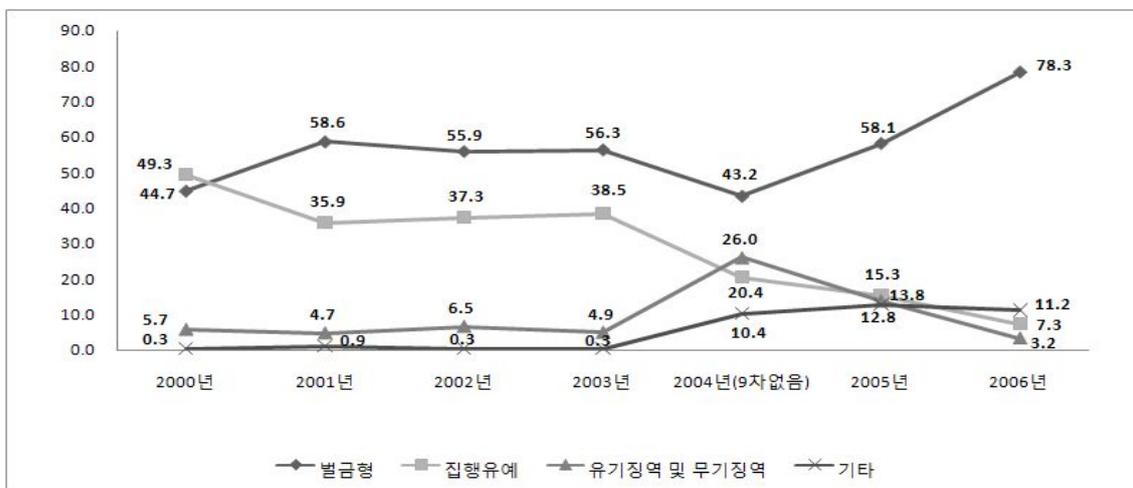
<표 3-92>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선고종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차제외)	2005년	2006년	
벌금형	134 (44.7)	797 (58.6)	772 (55.9)	840 (56.3)	487 (43.2)	880 (58.1)	652 (78.3)	4,562 (57.0)
집행유예	148 (49.3)	488 (35.9)	516 (37.3)	574 (38.5)	230 (20.4)	231 (15.3)	61 (7.3)	2,248 (28.1)
유기징역	17 (5.7)	64 (4.7)	90 (6.5)	73 (4.9)	293 (26.0)	209 (13.8)	27 (3.2)	773 (9.7)
보호관찰/사회 봉사/수강명령	-	-	-	-	107 (9.5)	187 (12.4)	92 (11.0)	386 (4.8)
기 타	1 (0.3)	12 (0.9)	4 (0.3)	5 (0.3)	10 (0.9)	7 (0.5)	1 (0.1)	40 (0.5)
계	300 (100.0)	1,361 (100.0)	1,382 (100.0)	1,492 (100.0)	1,127 (100.0)	1,514 (100.0)	833 (100.0)	8,009 (100.0)

주: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수치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1심선고형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2000년 44.7%에서 2001년 58.6%로 급증한 이후 2002년 55.9%, 2003년 56.3%, 2004년 43.2%로 소폭 하락하였고, 다

시 2005년 58.1%, 2006년 78.3%로 급증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2000년 49.3%, 2001년 35.9%, 2002년 37.3%, 2003년 38.5%, 2004년 20.4%, 2005년 15.3%, 2006년 7.3%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000년 5.7%, 2001년 4.7%, 2002년 6.5%, 2003년 4.9%, 2004년 26.0%, 2005년 13.8%, 2006년 3.2%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벌금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집행유예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7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3) 1심 형량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에 대한 1심 형량을 살펴보면, 1심에서 ‘1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성매수 범죄는 2000년 52.9%, 2001년 66.1%, 2002년 51.1%, 2003년 70.4%, 2005년 50.0%, 2006년 66.7%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3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되는 비율은 2000년 29.4%, 2001년 22.6%, 2002년 46.7%, 2003년 19.7%, 2005년 42.9%, 2006년 25.9%로 2002년과 2003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매년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9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형량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제외)	2006년	
1년 미만	9 (52.9)	41 (66.1)	46 (51.1)	50 (70.4)	-	7 (50.0)	18 (66.7)	171 (60.9)
1년-3년 미만	5 (29.4)	14 (22.6)	42 (46.7)	14 (19.7)	-	6 (42.9)	7 (25.9)	88 (31.3)
3년 이상- 5년 미만	1 (5.9)	7 (11.3)	1 (1.1)	5 (7.0)	-	-	2 (7.4)	16 (5.7)
5년 이상	2 (11.8)	-	1 (1.1)	2 (2.8)	-	1 (7.1)	-	6 (2.1)
계	17 (100.0)	62 (100.0)	90 (100.0)	71 (100.0)	-	14 (100.0)	27 (100.0)	281 (100.0)

주1: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공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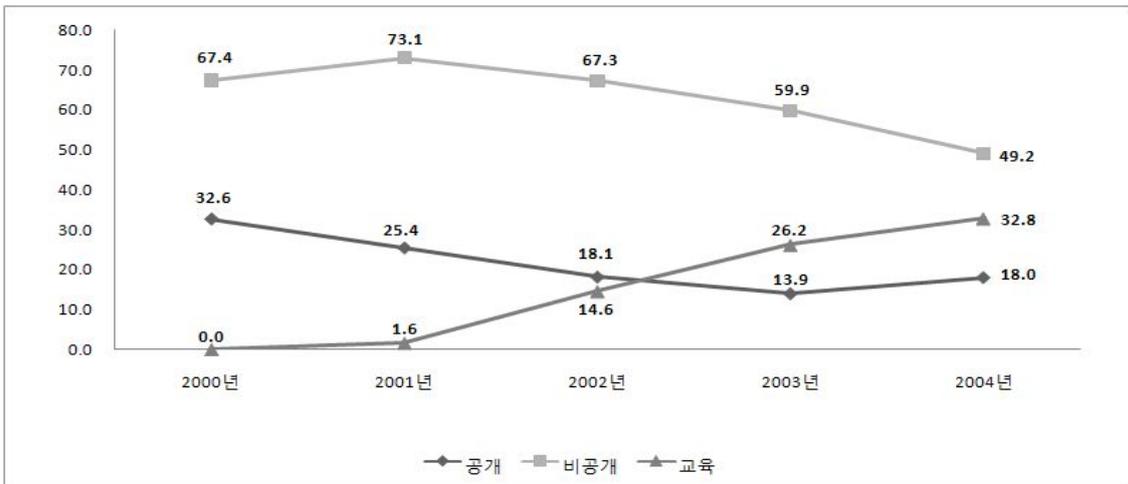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공개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심의결과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제외)	2006년	
공 개	99 (32.6)	357 (25.4)	256 (18.1)	210 (13.9)	287 (18.0)	130 (22.0)	-	1,339 (19.6)
비공개	205 (67.4)	1028 (73.1)	953 (67.3)	902 (59.9)	786 (49.2)	292 (49.3)	-	4,166 (61.1)
교 육	-	22 (1.6)	206 (14.6)	394 (26.2)	524 (32.8)	170 (28.7)	-	1,316 (19.3)
계	304 (100.0)	1,407 (100.0)	1,415 (100.0)	1,506 (100.0)	1,597 (100.0)	592 (100.0)	-	6,821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7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먼저 공개대상이 된 경우는 2000년 32.6%, 2001년 25.4%, 2002년 18.1%, 2003년 13.9%, 2004년 18.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대상이 된 경우는 2001년 1.6%, 2002년 14.6%, 2003년 26.2%, 2004년 32.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행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수 피해자의 사건연도별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6세 이하인 경우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명, 1명씩 밖에 없었으며, 7세-13세 피해자의 경우 평균 2.9%로 많지 않았다. 14세-15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36.4%, 2001년 40.8%, 2002년 43.5%, 2003년 35.8%, 2004년 37.0%, 2005년 50.1%, 2006년 46.0%로 2003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대적 비율이 상승하였다. 16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61.9%, 2001년 57.4%, 2002년 55.1%, 2003년 58.2%, 2004년 59.1%, 2005년 48.6%, 2006년 52.1%로 2005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성

매수의 경우 16세 이상의 피해자가 평균 5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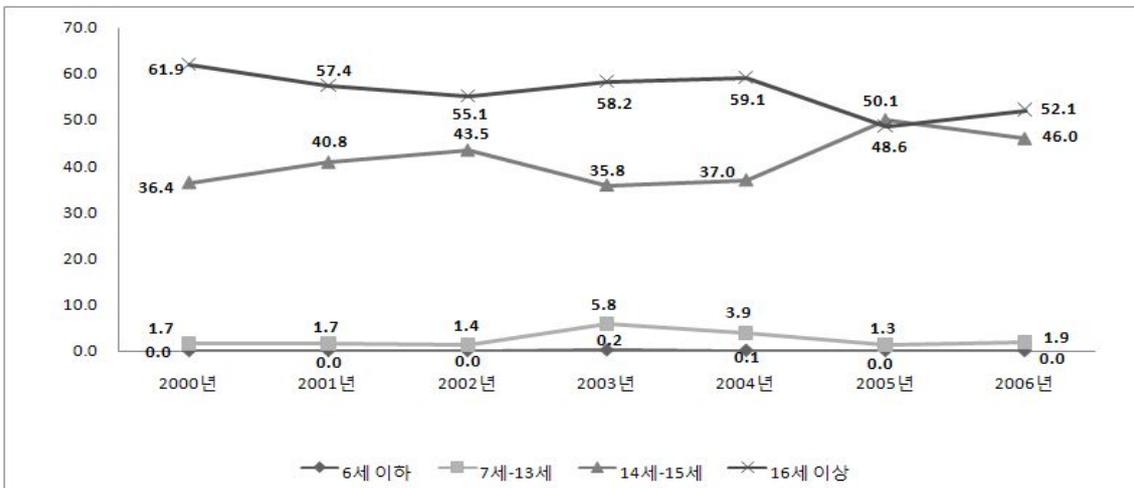
<표 3-9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세 이하	-	-	-	2 (0.2)	1 (0.1)	-	-	3 (0.1)
7세-13세	4 (1.7)	15 (1.7)	12 (1.4)	77 (5.8)	67 (3.9)	19 (1.3)	18 (1.9)	212 (2.9)
14세-15세	87 (36.4)	354 (40.8)	372 (43.5)	475 (35.8)	639 (37.0)	721 (50.1)	443 (46.0)	3,091 (41.7)
16세 이상	148 (61.9)	498 (57.4)	472 (55.1)	771 (58.2)	1022 (59.1)	700 (48.6)	502 (52.1)	4,113 (55.4)
계	239 (100.0)	867 (100.0)	856 (100.0)	1,325 (100.0)	1,729 (100.0)	1,440 (100.0)	963 (100.0)	7,419 (100.0)

주1: '8차 조사' 이전까지의 분석에서의 기준은 '7세 이하', '8-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2: '8~9차 조사'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3세', '14-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3: '10차 조사' 이후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그림 3-7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2) 학 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사건연도별 성매매 피해자의 학력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자퇴, 퇴학, 졸업인 경우가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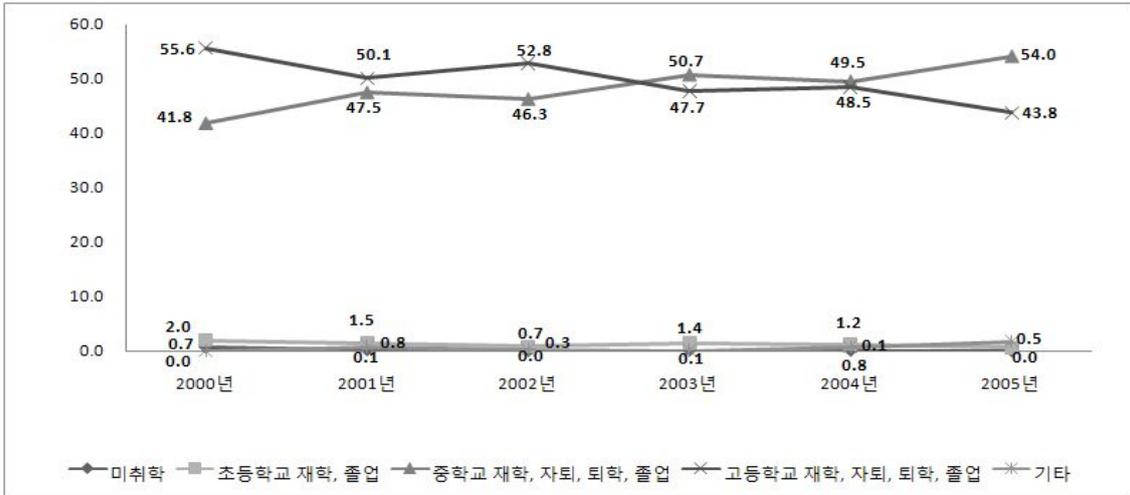
55.6%, 2001년 50.1%, 2002년 52.8%, 2003년 47.7%, 2004년 48.5%, 2005년 4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재학, 자퇴, 퇴학, 졸업 역시 2000년 41.89%, 2001년 47.5%, 2002년 46.3%, 2003년 50.7%, 2004년 49.5%, 2005년 54.0%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6>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청소년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미취학	1 (0.7)	1 (0.1)	-	1 (0.1)	1 (0.1)	-	-	4 (0.1)
초등학교 재학	3 (2.0)	10 (1.4)	3 (0.4)	13 (1.2)	14 (1.0)	-	-	43 (0.9)
중학교 재학	24 (15.7)	139 (19.1)	168 (23.3)	259 (23.9)	282 (20.3)	148 (24.8)	-	1,020 (21.8)
고등학교 재학	54 (35.3)	246 (33.7)	247 (34.3)	326 (30.0)	312 (22.5)	131 (22.0)	-	1,316 (28.2)
대학교 재학	-	6 (0.8)	2 (0.3)	1 (0.1)	11 (0.8)	10 (1.7)	-	30 (0.6)
초등학교 졸업	-	1 (0.1)	2 (0.3)	2 (0.2)	3 (0.2)	3 (0.5)	-	11 (0.2)
중학교 졸업	8 (5.2)	23 (3.2)	19 (2.6)	34 (3.1)	60 (4.3)	31 (5.2)	-	175 (3.7)
고등학교 졸업	-	3 (0.4)	7 (1.0)	7 (0.6)	13 (0.9)	3 (0.5)	-	33 (0.7)
중학교자퇴, 퇴학	32 (20.9)	184 (25.2)	146 (20.3)	257 (23.7)	345 (24.8)	143 (24.0)	-	1,107 (23.7)
고등학교 자퇴, 퇴학	31 (20.3)	116 (15.9)	126 (17.5)	185 (17.1)	348 (25.1)	127 (21.3)	-	933 (20.0)
계	153 (100.0)	729 (100.0)	720 (100.0)	1,085 (100.0)	1,389 (100.0)	596 (100.0)	-	4,672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76>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3) 직업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의 직업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2000년 77.2%, 2001년 75.8%, 2002년 80.5%, 2003년 60.1%, 2004년 78.2%, 2005년 90.4%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는 2001년 1.5%, 2002년 0.3%, 2003년 0.7%, 2004년 0.2%, 2005년 0.7%를 나타냈으며,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는 2000년 1.3%, 2001년 1.8%, 2002년 2.9%, 2003년 1.2%, 2004년 1.3%, 2005년 2.3%로 상대적 비율은 낮았다. 다방종업원은 평균 5.9%를 나타내고 있다. 유흥업소종업원의 경우 2000년 6.0%, 2001년 2.0%, 2002년 2.0%, 2003년 2.3%, 2004년 1.1%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7%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경우 2000년 5.4%, 2001년 7.7%, 2002년 4.7%, 2003년 29.5%, 2004년 16.35, 2005년 3.1%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 이외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매년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97>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무직	115 (77.2)	454 (75.8)	494 (80.5)	675 (60.1)	1,331 (78.2)	385 (90.4)	-	3,454 (74.9)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	9 (1.5)	2 (0.3)	8 (0.7)	4 (0.2)	3 (0.7)	-	26 (0.6)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2 (1.3)	11 (1.8)	18 (2.9)	13 (1.2)	22 (1.3)	10 (2.3)	-	76 (1.6)
다방종업원	15 (10.1)	67 (11.2)	59 (9.6)	70 (6.2)	48 (2.8)	15 (3.5)	-	274 (5.9)
유흥업소 종업원	9 (6.0)	12 (2.0)	12 (2.0)	26 (2.3)	19 (1.1)	-	-	78 (1.7)
기타	8 (5.4)	46 (7.7)	29 (4.7)	332 (29.5)	277 (16.3)	13 (3.1)	-	705 (15.3)
계	149 (100.0)	599 (100.0)	614 (100.0)	1,124 (100.0)	1,701 (100.0)	426 (100.0)	-	4,613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동거형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피해자의 동거인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쪽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2000년 46.0%, 2001년 53.3%, 2002년 50.9%, 2003년 37.9%, 2004년 50.5%로 2003년에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인 경우 2000년 24.5%, 2001년 25.0%, 2002년 19.6%, 2003년 19.9%, 2004년 22.3%로 큰 변화가 없으며, 친구의 경우 2000년 12.9%, 2001년 11.3%, 2002년 17.7%, 2003년 20.2%, 2004년 7.0%, 2005년 4.7%로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을 보면, 동거인이 양부모인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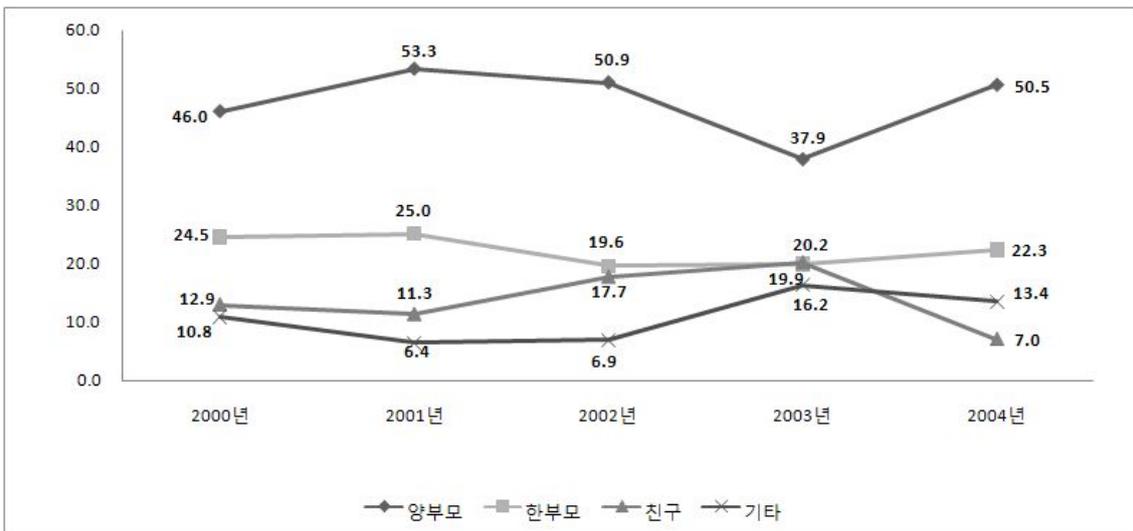
<표 3-98>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동거인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양부모	64 (46.0)	358 (53.3)	377 (50.9)	479 (37.9)	625 (50.5)	255 (49.4)	-	2,158 (47.2)
한부모	34 (24.5)	168 (25.0)	145 (19.6)	252 (19.9)	276 (22.3)	131 (25.4)	-	1,006 (22.0)
조부모	8 (5.8)	27 (4.0)	36 (4.9)	74 (5.8)	83 (6.7)	36 (7.0)	-	264 (5.8)
친척	4 (2.9)	18 (2.7)	21 (2.8)	82 (6.5)	39 (3.2)	15 (2.9)	-	179 (3.9)
형제자매	7 (5.0)	8 (1.2)	15 (2.0)	96 (7.6)	48 (3.9)	22 (4.3)	-	196 (4.3)
친구	18 (12.9)	76 (11.3)	131 (17.7)	255 (20.2)	87 (7.0)	24 (4.7)	-	591 (12.9)
기타	4 (2.9)	17 (2.5)	15 (2.0)	27 (2.1)	79 (6.4)	33 (6.4)	-	175 (3.8)
계	139 (100.0)	672 (100.0)	740 (100.0)	1,265 (100.0)	1,237 (100.0)	516 (100.0)	-	4,569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77>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나. 피해정황 및 처벌의사

1) 가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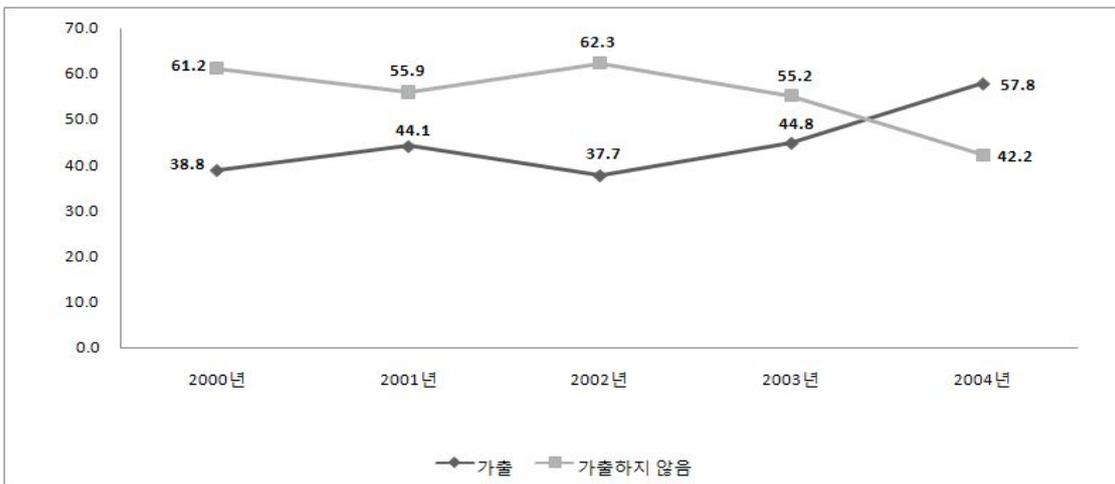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의 사건연도별 가출 여부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99>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청소년 가출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가 출	47 (38.8)	250 (44.1)	231 (37.7)	480 (44.8)	797 (57.8)	369 (59.5)		2,174 (49.7)
가출하지 않음	74 (61.2)	317 (55.9)	382 (62.3)	591 (55.2)	581 (42.2)	251 (40.5)		2,196 (50.3)
계	121 (100.0)	567 (100.0)	613 (100.0)	1,071 (100.0)	1,378 (100.0)	620 (100.0)		4,370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78> 청소년대상 강간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가출한 청소년이 성매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2000년 38.8%, 2001년 44.1%, 2002년 37.7%, 2003년 44.8%, 2004년 57.8%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이 성매수 피해자가 된 경우는

2000년 61.2%, 2001년 55.9%, 2002년 62.3%, 2003년 55.2%, 2004년 42.2%, 2005년 40.5%로 감소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가출한 경우가 평균 49.7%로 월등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음주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수 피해자의 사건연도별 음주여부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음주의 경우는 2000년 76.5%, 2001년 58.3%, 2002년 74.8%, 2003년 73.5%, 2004년 87.4%로 2001년 큰 비율로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약간의 음주상태인 경우 2000년 23.5%, 2001년 40.0%, 2002년 23.4%, 2003년 24.0%, 2004년 11.8%로 2001년 큰 비율로 상승하였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만취 상태인 경우는 2001년 1.7%, 2002년 1.8%, 2003년 2.6%, 2004년 0.8%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음주의 경우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00>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음주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 음주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비음주	52 (76.5)	137 (58.3)	249 (74.8)	144 (73.5)	1,322 (87.4)	-	-	1,904 (81.2)
약간의 음주상태	16 (23.5)	94 (40.0)	78 (23.4)	47 (24.0)	178 (11.8)	-	-	413 (17.6)
만취상태	-	4 (1.7)	6 (1.8)	5 (2.6)	12 (0.8)	-	-	27 (1.2)
계	68 (100.0)	235 (100.0)	333 (100.0)	196 (100.0)	1,512 (100.0)	-	-	2,344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음주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 처벌의사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2000년 54.3%, 2001년 61.3%, 2002년 70.5%, 2003년 75.4%, 2004년 89.2%로 매년 큰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45.7%, 2001년 38.7%, 2002년 29.5%, 2003년 24.6%, 2004년 10.8%로 매년 그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매년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01>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처벌희망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처벌을 원함	25 (54.3)	84 (61.3)	117 (70.5)	92 (75.4)	488 (89.2)	-	-	806 (79.2)
처벌을 원하지 않음	21 (45.7)	53 (38.7)	49 (29.5)	30 (24.6)	59 (10.8)	-	-	212 (20.8)
계	46 (100.0)	137 (100.0)	166 (100.0)	122 (100.0)	547 (100.0)	-	-	1,018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합의여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수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2> 청소년대상 성매수 피해자 합의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합의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합의하지 않음	17 (50.0)	85 (73.3)	86 (77.5)	78 (83.0)	770 (93.0)	-	-	1,036 (87.6)
합의함	17 (50.0)	31 (26.7)	25 (22.5)	16 (17.0)	58 (7.0)	-	-	147 (12.4)
계	34 (100.0)	116 (100.0)	111 (100.0)	94 (100.0)	828 (100.0)	-	-	1,183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합의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50.0%, 2001년 73.3%, 2002년 77.5%, 2003년 83.0%, 2004년 93.0%로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하는 경우는 2000년 50.0%, 2001년 26.7%, 2002년 22.5%, 2003년 17.0%, 2004년 7.0%로 매년 그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5) 성관계 경험

청소년 대상 성매수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2000년 11.6%, 2001년 12.7%, 2002년 19.1%, 2003년 19.1%, 2004년 11.8%로 2001년 이후 그 비율이 상승하다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00년 88.4%, 2001년 87.3%, 2002년 80.9%, 2003년 80.9%, 2004년 88.2%로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성관계 경험이 있던 청소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10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성관계경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성관계 경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없다	11 (11.6)	42 (12.7)	71 (19.1)	42 (19.1)	124 (11.8)			290 (14.0)
있다	84 (88.4)	290 (87.3)	301 (80.9)	178 (80.9)	930 (88.2)			1,783 (86.0)
계	95 (100.0)	332 (100.0)	372 (100.0)	220 (100.0)	1,054 (100.0)			2,073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성관계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성관계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6) 피조사 경험

청소년 대상 성매수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는 2000년 94.8%, 2001년 88.4%, 2002년 90.3%, 2003년 90.3%, 2004년 93.8%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이전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경우는 2000년 5.2%, 2001년 11.6%, 2002년 9.7%, 2003년 9.7%, 2004년 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0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이전 성매매혐의조사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성매매 혐의 조사 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없 다	55 (94.8)	183 (88.4)	213 (90.3)	149 (90.3)	872 (93.8)			1,472 (92.2)
있 다	3 (5.2)	24 (11.6)	23 (9.7)	16 (9.7)	58 (6.2)			124 (7.8)
계	58 (100.0)	207 (100.0)	236 (100.0)	165 (100.0)	930 (100.0)			1,596 (100.0)

주1: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이전 성매매혐의조사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이전 성매매혐의조사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7) 성매매 이유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매매 이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용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000년 64.2%, 2001년 66.3%, 2002년 64.9%, 2003년 58.0%, 2004년 57.0%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무해결이나 물건구입을 위해 성매매를 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생계비 마련의 경우 2000년 12.4%, 2001년 4.3%, 2002년 5.1%, 2003년 9.1%, 2004년 10.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2001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숙식 해결의 경우 2000년 8.8%, 2001년 11.3%, 2002년 10.3%, 2003년 16.2%, 2004년 19.8%로 점차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용돈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0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성매매 이유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성매매 이유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용돈/유혹비	88 (64.2)	482 (66.3)	461 (64.9)	594 (58.0)	889 (57.0)			2,514 (60.4)
채무해결	-	20 (2.8)	20 (2.8)	14 (1.4)	15 (1.0)			69 (1.7)
물건구입	4 (2.9)	32 (4.4)	40 (5.6)	50 (4.9)	51 (3.3)			177 (4.3)
생계비 마련	17 (12.4)	31 (4.3)	36 (5.1)	93 (9.1)	165 (10.6)			342 (8.2)
숙식해결	12 (8.8)	82 (11.3)	73 (10.3)	166 (16.2)	309 (19.8)			642 (15.4)
남성의 유혹	6 (4.4)	21 (2.9)	27 (3.8)	19 (1.9)	45 (2.9)			118 (2.8)
기타	10 (7.3)	59 (8.1)	53 (7.5)	89 (8.7)	86 (5.5)			297 (7.1)
계	137 (100.0)	727 (100.0)	710 (100.0)	1,025 (100.0)	1,560 (100.0)			4,159 (100.0)

주: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성매매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범행의 상황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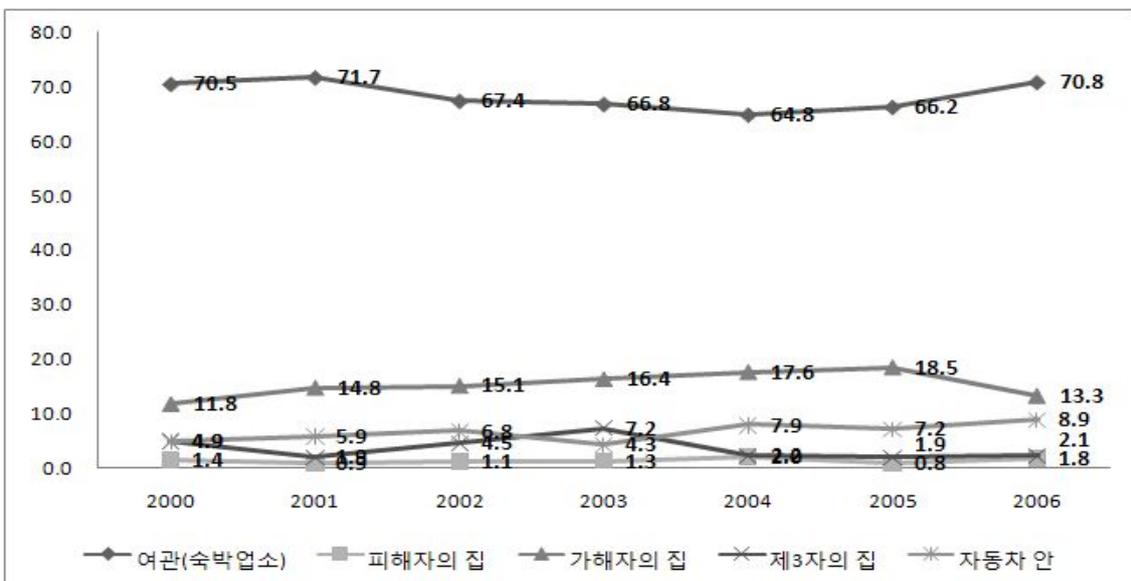
1) 범행장소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장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범행이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70.5%, 2002년 67.4%, 2004년 64.8%, 2006년 70.8%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가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2000년 11.8%, 2002년 15.1%, 2004년 17.6%, 2006년 13.3% 등으로 그 상대적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 2006년도에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106>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행장소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길 (대로, 골목)	1 (0.3)	5 (0.4)	2 (0.1)	3 (0.2)	1 (0.1)	1 (0.1)	-	13 (0.2)
사무실	8 (2.8)	32 (2.3)	30 (2.1)	12 (0.8)	27 (1.7)	18 (1.3)	4 (0.4)	131 (1.5)
공원 야산 등	3 (1.0)	4 (0.3)	5 (0.4)	3 (0.2)	5 (0.3)	2 (0.1)	-	22 (0.3)
유흥주점 노래방 등	5 (1.7)	15 (1.1)	17 (1.2)	19 (1.3)	21 (1.3)	10 (0.7)	7 (0.7)	94 (1.1)
여관 (숙박업소)	203 (70.5)	1,003 (71.7)	947 (67.4)	1,004 (66.8)	1,032 (64.8)	888 (66.2)	680 (70.8)	5,757 (67.8)
피해자의 집	4 (1.4)	12 (0.9)	16 (1.1)	19 (1.3)	32 (2.0)	11 (0.8)	17 (1.8)	111 (1.3)
주거침입	-	1 (0.1)	-	-	-	-	-	1
가해자의 집	34 (11.8)	207 (14.8)	213 (15.1)	246 (16.4)	281 (17.6)	248 (18.5)	128 (13.3)	1,357 (16.0)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1 (0.3)	3 (0.2)	1 (0.1)	2 (0.1)	-	-	-	7 (0.1)
제3자의 집	14 (4.9)	27 (1.9)	63 (4.5)	108 (7.2)	35 (2.2)	26 (1.9)	20 (2.1)	293 (3.5)
자동차 안	14 (4.9)	82 (5.9)	95 (6.8)	65 (4.3)	126 (7.9)	97 (7.2)	85 (8.9)	564 (6.6)
기 타	1 (0.3)	9 (0.6)	16 (1.1)	23 (1.5)	33 (2.1)	40 (3.0)	19 (2.0)	141 (1.7)
계	288 (100.0)	1,399 (100.0)	1,406 (100.0)	1,504 (100.0)	1,593 (100.0)	1,341 (100.0)	960 (100.0)	8,491 (100.0)



<그림 3-7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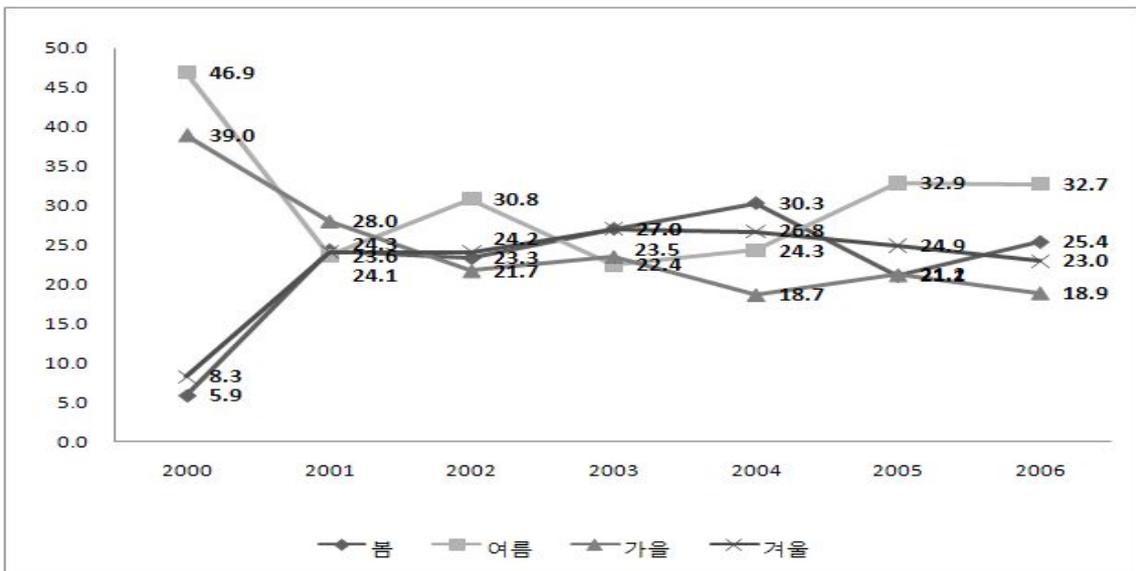
2) 발생시기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발생 계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봄에 발생하는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04년 30.3%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2006년 25.4%로 감소하고 있다.

<표 3-107>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발생계절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봄	17 (5.9)	336 (24.3)	322 (23.3)	398 (27.0)	482 (30.3)	148 (21.1)	244 (25.4)	1,947 (25.0)
여름	136 (46.9)	326 (23.6)	426 (30.8)	330 (22.4)	386 (24.3)	231 (32.9)	315 (32.7)	2,150 (27.6)
가을	113 (39.0)	387 (28.0)	300 (21.7)	346 (23.5)	297 (18.7)	149 (21.2)	182 (18.9)	1,774 (22.8)
겨울	24 (8.3)	333 (24.1)	334 (24.2)	398 (27.0)	426 (26.8)	175 (24.9)	221 (23.0)	1,911 (24.6)
계	290 (100.0)	1,382 (100.0)	1,382 (100.0)	1,472 (100.0)	1,591 (100.0)	703 (100.0)	962 (100.0)	7,782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범행발생계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여름에 발생하는 비율도 2000년 46.9%에서 2001년 23.6%로 급감한 이후 2002년

30.8%, 2004년 24.3%, 2006년 32.7%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 가을에 발생하는 비율은 2000년 39.0%에서 2002년 21.7%, 2004년 18.7%, 2006년 18.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은 2000년 8.3%에서 2001년 24.1%로 급증한 이후 2004년 26.8%, 2006년 23.0%로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건 발생 비율을 보았을 때 여름이 27.6%로 가장 많고, 봄이 25.0%, 가을과 겨울이 각각 22.8%, 24.6%의 비율을 보인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범죄 발생 시간을 사건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전 7시-12시는 2000년 7.1%에서 2001년 5.1%로 감소하였다가 2002년 6.3%, 2004년 9.0%, 2006년 10.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오후 1시-9시는 2000년도 42.0%에서 2001년 50%로 증가한 이후 2002년 48.2%, 2004년 21.0%, 2006년 22.7%로 감소하는 비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저녁 10시-12시는 2000년 24.2%에서 2002년 22.8%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4년 32.1%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41.5%, 2006년 42.5%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3년도 전기조사인 1차~7차조사의 시간 범주와 2003년도 후기 이후인 '8차 조사'부터의 시간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요인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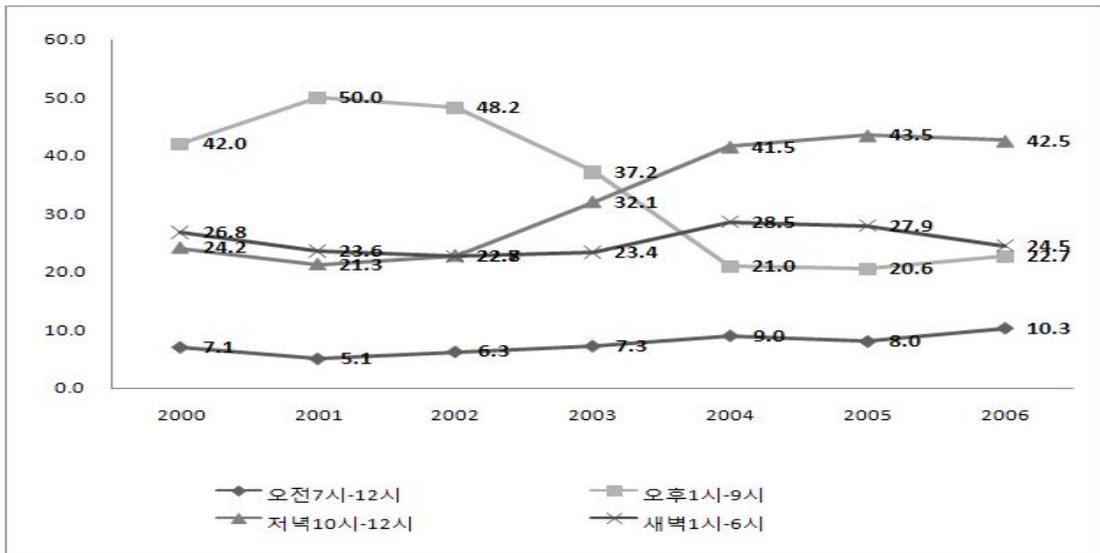
<표 3-108>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발생시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오전7시-12시	19 (7.1)	65 (5.1)	79 (6.3)	103 (7.3)	124 (9.0)	92 (8.0)	84 (10.3)	566 (7.5)
오후1시-9시	113 (42.0)	636 (50.0)	605 (48.2)	527 (37.2)	289 (21.0)	235 (20.6)	185 (22.7)	2,590 (34.3)
저녁10시-12시	65 (24.2)	271 (21.3)	286 (22.8)	454 (32.1)	572 (41.5)	497 (43.5)	347 (42.5)	2,492 (33.0)
새벽1시-6시	72 (26.8)	301 (23.6)	285 (22.7)	332 (23.4)	393 (28.5)	319 (27.9)	200 (24.5)	1,902 (25.2)
계	269 (100.0)	1,273 (100.0)	1,255 (100.0)	1,416 (100.0)	1,378 (100.0)	1,143 (100.0)	816 (100.0)	7,550 (100.0)

주1. '1-7차 조사'인 2003년 상반기까지는 범죄발생시간을 위와 같은 범주로 나누었으나, 이후 2003년 하반기분석인 '8차 조사' 이후로는 오전은 6시부터 12시, 오후1시부터 6시, 저녁7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부터 6시로 분류되어 오전6시부터 12시를 오전7시-12시에, 오후1시부터 6시를 오후1시-9시에, 저녁7시부터 밤12시를 저녁10시-6시로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

새벽1시-6시는 2000년 26.8% 2002년 22.7%, 2004년 28.5%, 2006년 24.5%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후 1시-9시 사이인 오후에 34.3%, 저녁시간대에 33.0%의 성매수 범죄가 발생하며, 새벽1시-6시에는 23.2%, 오전 7-12시에는 7.5%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나. 공범관계



<그림 3-81>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 중 공범의 여부를 사건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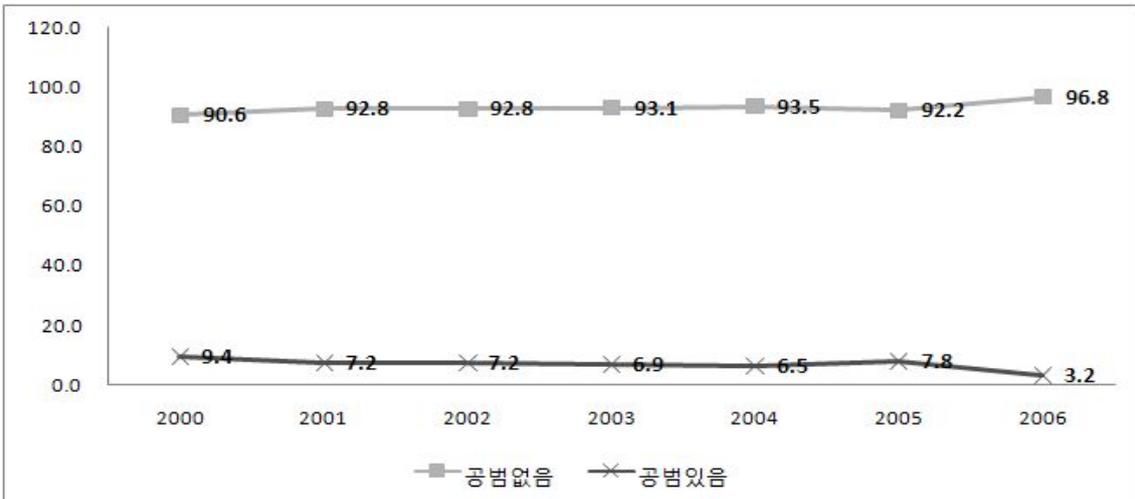
공범이 없는 경우가 2000년 90.6%, 2002년 92.8%, 2004년 93.5%, 2006년 96.8%로 전반적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가 2000년 9.4%에서 2002년 7.2%, 2004년 6.5%, 2006년 3.21%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인 경우가 전체 사건의 93.4%를 차지한다.

<표 3-109>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공범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범없음	259 (90.6)	1,271 (92.8)	1,290 (92.8)	1,387 (93.1)	1,487 (93.5)	649 (92.2)	933 (96.8)	7,276 (93.4)
공범있음	27 (9.4)	99 (7.2)	100 (7.2)	103 (6.9)	103 (6.5)	55 (7.8)	31 (3.2)	518 (6.6)
계	286 (100.0)	1,370 (100.0)	1,390 (100.0)	1,490 (100.0)	1,590 (100.0)	704 (100.0)	964 (100.0)	7,794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의 결과에서는 공범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 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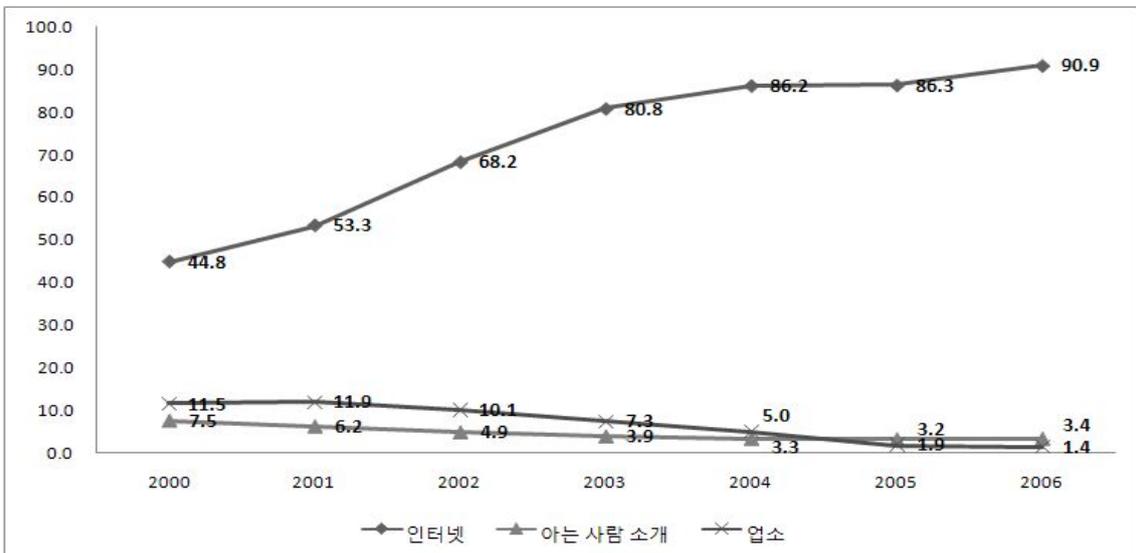
다.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시 가해자와 청소년이 만나는 방법을 사건연도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만나는 경우가 2000년 44.8%에서 2002년 68.2%, 2004년 86.2%, 2006년 90.9%까지 매년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전화방을 통해서 만나는 비율은 2000년 20.8%에서 2002년 7.1%, 2004년 1.1%, 2006년 0.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티켓다방 등의 업소를 통한 만남도 2000년 11.5%에서 2003년 7.0%로 감소하였다. 업소를 통한 만남 또한 2000년 11.5%에서 2002년 10.1%, 2004년 5.0%, 2006년 1.4%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76.0%, 티켓 다방 등 업소를 통한 만남이 6.7%, 전화방을 통한 만남이 5.6%를 차지하였다.

<표 3-110>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와 청소년 만남방법

(단위:명(%))

만남방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터넷	125 (44.8)	735 (53.3)	953 (68.2)	1,204 (80.8)	1,370 (86.2)	1,155 (86.3)	836 (90.9)	6,378 (76.0)
전화방	58 (20.8)	234 (17.0)	99 (7.1)	18 (1.2)	17 (1.1)	37 (2.8)	8 (0.9)	471 (5.6)
이동통신	4 (1.4)	32 (2.3)	31 (2.2)	15 (1.0)	8 (0.5)	3 (0.2)	2 (0.2)	95 (1.1)
거리현팅	17 (6.1)	58 (4.2)	43 (3.1)	28 (1.9)	39 (2.5)	14 (1.0)	10 (1.1)	209 (2.5)
아는 사람 소개	21 (7.5)	86 (6.2)	68 (4.9)	58 (3.9)	53 (3.3)	43 (3.2)	31 (3.4)	360 (4.3)
업소 (티켓다방 등)	32 (11.5)	164 (11.9)	141 (10.1)	109 (7.3)	79 (5.0)	25 (1.9)	13 (1.4)	563 (6.7)
기타	22 (7.9)	69 (5.0)	62 (4.4)	59 (4.0)	24 (1.5)	62 (4.6)	20 (2.2)	318 (3.8)
계	279 (100.0)	1,378 (100.0)	1,397 (100.0)	1,491 (100.0)	1,590 (100.0)	1,339 (100.0)	920 (100.0)	8,394 (100.0)



<그림 3-83>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와 청소년 만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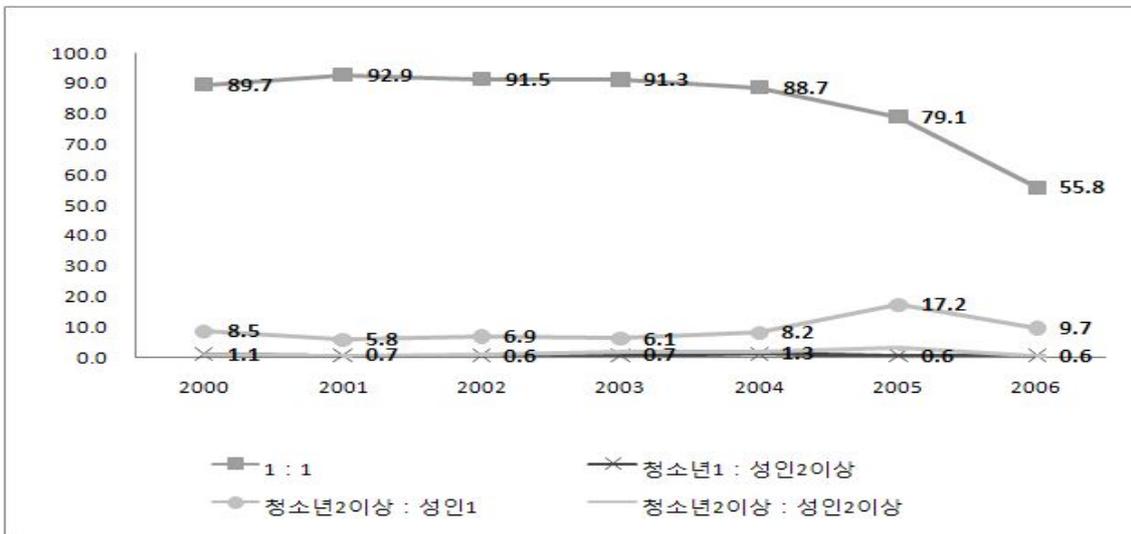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에서 범행시 성교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교 인원이 1 : 1인 비율이 2000년 89.7%, 2002년 91.5%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04년 88.7%, 2006년 83.8%로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청소년 2인 이상 : 성인 1인’의 성교 인원은 2000년 8.5%에서 2002년 6.9%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04년 8.2%, 2006년 14.5%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에 성교 인원이 1 : 1인 경우가 89.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청소년 2인 이상 : 성인1인의 성교인원도 8.7%나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111>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인원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성교인원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 1	252 (89.7)	1,288 (92.9)	1,287 (91.5)	1,367 (91.3)	1,413 (88.7)	555 (79.1)	808 (83.8)	6,970 (89.0)
청소년1 : 성인2 이상	3 (1.1)	10 (0.7)	8 (0.6)	11 (0.7)	20 (1.3)	4 (0.6)	9 (0.9)	65 (0.8)
청소년2 이상 : 성인1	24 (8.5)	80 (5.8)	97 (6.9)	91 (6.1)	130 (8.2)	121 (17.2)	140 (14.5)	683 (8.7)
청소년2 이상 : 성인2 이상	2 (0.7)	7 (0.5)	14 (1.0)	27 (1.8)	30 (1.9)	21 (3.0)	6 (0.6)	107 (1.4)
기 타	-	2 (0.1)	1 (0.1)	1 (0.1)	-	1 (0.1)	1 (0.1)	6 (0.1)
계	281 (100.0)	1,387 (100.0)	1,407 (100.0)	1,497 (100.0)	1,593 (100.0)	702 (100.0)	964 (100.0)	7,831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4>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인원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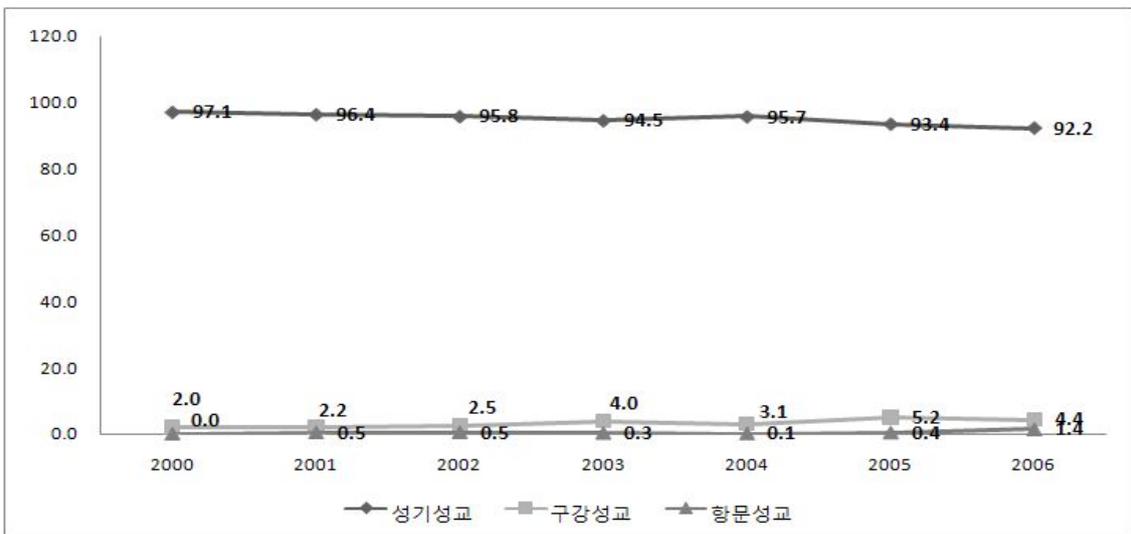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성교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기성교의 비율이 2000년 97.1%에서 2002년 95.8%, 2004년 95.7%, 2006년 92.2%로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구강성교의 비율은 2000년 2%에서 2002년 2.5%, 2004년

3.1%, 2006년 4.4%로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성기성교가 95.0%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3-112>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유형의 연도별추세 (단위 : 명(%))

성교유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성기성교	238 (97.1)	1,264 (96.4)	1,307 (95.8)	1,282 (94.5)	1,450 (95.7)	652 (93.4)	863 (92.2)	7,056 (95.0)
구강성교	5 (2.0)	29 (2.2)	34 (2.5)	54 (4.0)	47 (3.1)	36 (5.2)	41 (4.4)	246 (3.3)
항문성교	-	6 (0.5)	7 (0.5)	4 (0.3)	2 (0.1)	3 (0.4)	13 (1.4)	35 (0.5)
기타	2 (0.8)	12 (0.9)	17 (1.2)	17 (1.3)	16 (1.1)	7 (1.0)	19 (2.0)	90 (1.2)
계	245 (100.0)	1,311 (100.0)	1,365 (100.0)	1,357 (100.0)	1,515 (100.0)	698 (100.0)	936 (100.0)	7,427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5>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성교유형의 연도별추세

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1) 피해자의 수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1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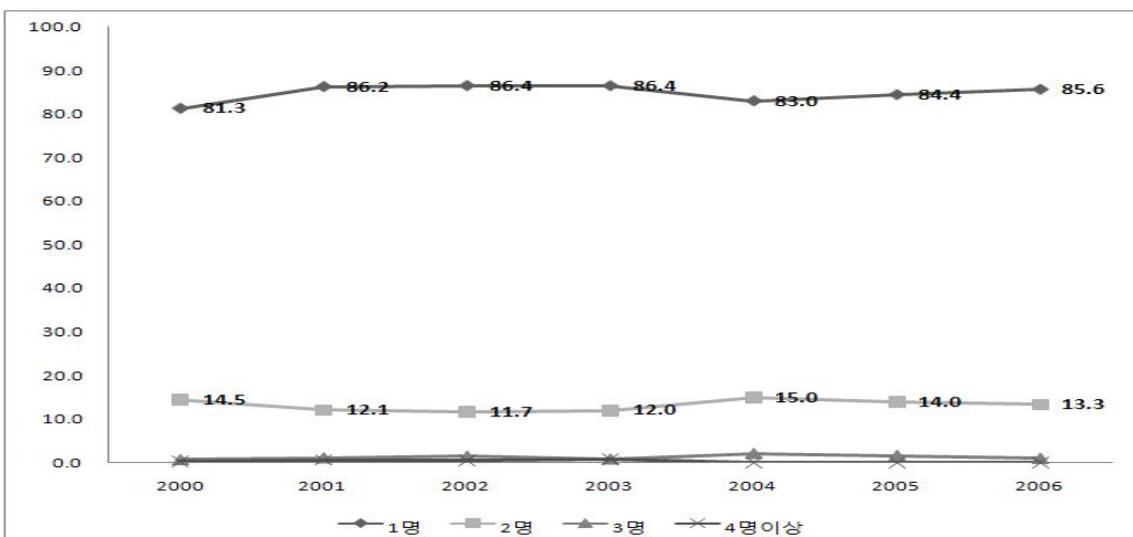
경우가 2000년 81.3%, 2002년 86.4%, 2004년 83.0%, 2006년 85.6%로 미미한 변화를 보이며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2명인 경우가 2000년에는 14.5%였으나 2002년 11.7%, 2004년 15.0%, 2006년 13.3%로 소폭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3명 혹은 4명 이상은 각각 1.3%, 0.4%로 미미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85.3%를 차지하고 2명인 경우가 12.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13>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명	247 (81.3)	1,213 (86.2)	1,223 (86.4)	661 (86.4)	648 (83.0)	1,037 (84.4)	713 (85.6)	5,742 (85.3)
2명	44 (14.5)	170 (12.1)	165 (11.7)	92 (12.0)	117 (15.0)	172 (14.0)	111 (13.3)	871 (12.9)
3명	2 (0.7)	15 (1.1)	20 (1.4)	6 (0.8)	16 (2.0)	20 (1.6)	8 (1.0)	87 (1.3)
4명 이상	1 (0.3)	9 (0.6)	7 (0.5)	6 (0.8)	-	-	1 (0.1)	24 (0.4)
계	304 (100.0)	1,407 (100.0)	1,415 (100.0)	765 (100.0)	781 (100.0)	1,229 (100.0)	833 (100.0)	6,734 (100.0)

주1.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주2.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6>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수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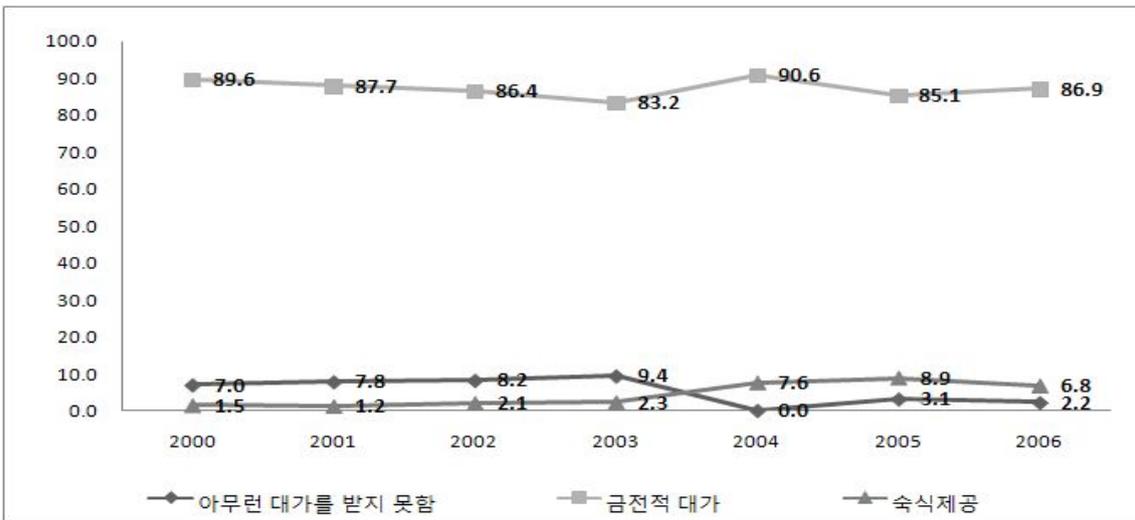
2) 성매수의 대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 가운데 연도별로 성매수 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14>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성매수대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성매수 대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아무런 대가 받지 못함	14 (7.0)	63 (7.8)	47 (8.2)	33 (9.4)	-	23 (3.1)	22 (2.2)	202 (3.7)
금전적 대가	180 (89.6)	708 (87.7)	495 (86.4)	292 (83.2)	1,560 (90.6)	624 (85.1)	884 (86.9)	4,743 (87.8)
숙식제공	3 (1.5)	10 (1.2)	12 (2.1)	8 (2.3)	131 (7.6)	65 (8.9)	69 (6.8)	298 (5.5)
기 타	4 (2.0)	26 (3.2)	19 (3.3)	18 (5.1)	36 (2.1)	21 (2.9)	42 (4.1)	166 (3.1)
계	201 (100.0)	807 (100.0)	573 (100.0)	351 (100.0)	1,721 (100.0)	733 (100.0)	1,017 (100.0)	5,403 (100.0)

- 주1.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성매수 대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주2. 2004년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함'의 항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3.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성매수 대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7>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성매수대가의 연도별 추세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2000년 7.0%, 2002년 8.2%, 2003년 9.4% 등으로 매년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5년

3.1%, 2006년 2.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 2000년 89.6%, 2002년 86.4%, 2004년 90.6%, 2006년 86.9% 등으로 그 비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숙식이 제공 되는 경우는 2000년 1.5%, 2002년 2.1%, 2004년 7.6%, 2006년 6.8% 등으로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타사례는 평균 3.1%로 매년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가 8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성매수 외의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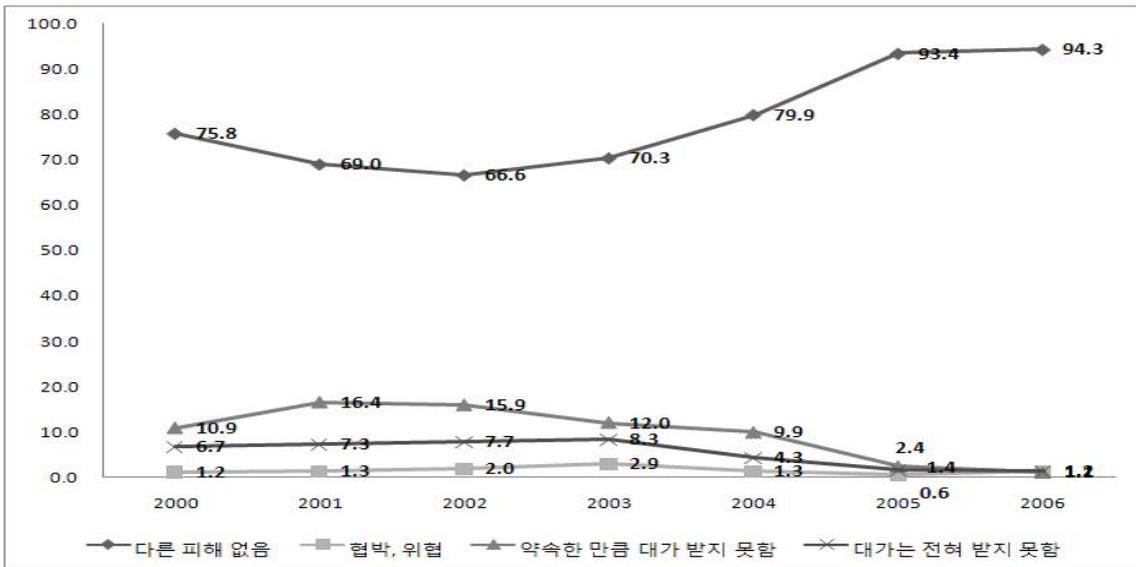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에서 성매수 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15>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기타 피해사항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기타 피해사항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다른 피해 없음	125 (75.8)	520 (69.0)	508 (66.6)	287 (70.3)	1,370 (79.9)	651 (93.4)	908 (94.3)	4,369 (79.9)
폭행	-	16 (2.1)	16 (2.1)	8 (2.0)	11 (0.6)	3 (0.4)	9 (0.9)	63 (1.2)
폭언	1 (0.6)	6 (0.8)	1 (0.1)	1 (0.2)	19 (1.1)	2 (0.3)	-	30 (0.5)
절도	3 (1.8)	8 (1.1)	8 (1.0)	9 (2.2)	6 (0.3)	3 (0.4)	5 (0.5)	42 (0.8)
협박, 위협	2 (1.2)	10 (1.3)	15 (2.0)	12 (2.9)	23 (1.3)	4 (0.6)	12 (1.2)	78 (1.4)
성매매이후 스토킹	1 (0.6)	2 (0.3)	6 (0.8)	-	4 (0.2)	1 (0.1)	-	14 (0.3)
약속한 만큼 대가 받지 못함	18 (10.9)	124 (16.4)	121 (15.9)	49 (12.0)	170 (9.9)	17 (2.4)	11 (1.1)	510 (9.3)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함	11 (6.7)	55 (7.3)	59 (7.7)	34 (8.3)	74 (4.3)	10 (1.4)	12 (1.2)	255 (4.7)
기타	4 (2.4)	13 (1.7)	29 (3.8)	8 (2.0)	38 (2.2)	6 (0.9)	6 (0.6)	104 (1.9)
계	165 (100.0)	754 (100.0)	763 (100.0)	408 (100.0)	1,715 (100.0)	697 (100.0)	963 (100.0)	5,465 (100.0)

주1. 2003년은 '7차 조사'와 '8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8차 조사'에서는 기타피해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7차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기타피해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88>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기타 피해사항의 연도별 추세

기타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는 2000년 75.8%, 2002년 66.6%, 2004년 79.9%, 2006년 94.3% 등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행의 경우는 1.2%를 전후한 비율로 낮은 분포가 유지되고 있으며, 폭언, 절도의 경우도 역시 낮은 분포가 유지되고 있다. 협박, 위협의 경우는 2000년 1.2%, 2002년 2.0%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04년 2.9%, 2006년 1.2%로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매매 이후 스토킹은 평균적으로 0.3%를 보였다. 약속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00년 10.9%, 2002년 15.9%, 2004년 9.9%, 2006년 1.1% 2001년 이후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2000년 6.7%, 2002년 7.7%, 2004년 4.3%, 2006년 1.2% 등으로 매년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타의 경우는 평균 1.9%로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제5절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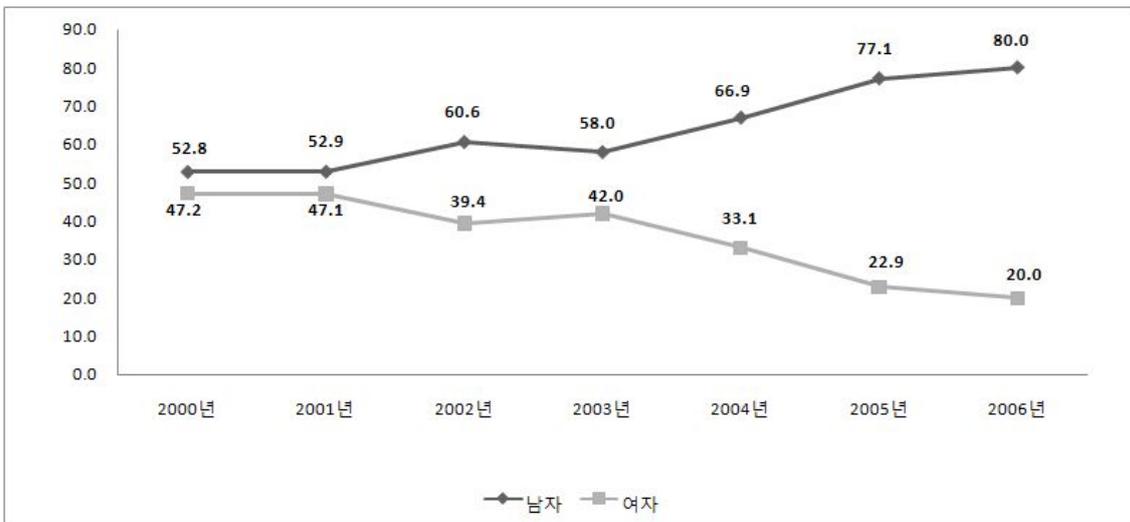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 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범죄자들에 대한 연도별 범죄자의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남자는 2000년 52.8%, 2001년 52.9%, 2002년 60.6%, 2003년 58.0%, 2004년 66.9%, 2005년 77.1%, 2006년 80.0%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평균은 60.2%이다.

<표 3-116>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성별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 자	28 (52.8)	109 (52.9)	77 (60.6)	76 (58.0)	81 (66.9)	27 (77.1)	28 (80.0)	426 (60.2)
여 자	25 (47.2)	97 (47.1)	50 (39.4)	55 (42.0)	40 (33.1)	8 (22.9)	7 (20.0)	282 (39.8)
계	53 (100.0)	206 (100.0)	127 (100.0)	131 (100.0)	121 (100.0)	35 (100.0)	35 (100.0)	708 (100.0)



<그림 3-89>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성별의 비율변화

여자의 경우 2000년 47.2%, 2001년 47.1%, 2002년 39.4%, 2003년 42.0%, 2004년 33.1%, 2005년 22.9%, 2006년 20.0%이며, 전체 평균은 39.8%이다. 알선·강요범죄에 있어서도 남자 범죄자가 평균 60.2%로 높았지만, 다른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여성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 국 적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모두 내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7>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 국적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	-	-	-	121 (100.0)	37 (100.0)	35 (100.0)	193 (100.0)
계	-	-	-	-	121 (100.0)	37 (100.0)	35 (100.0)	193 (100.0)

주: 2003년 이전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의 국적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어, 2004년 이후에 대해서만 통계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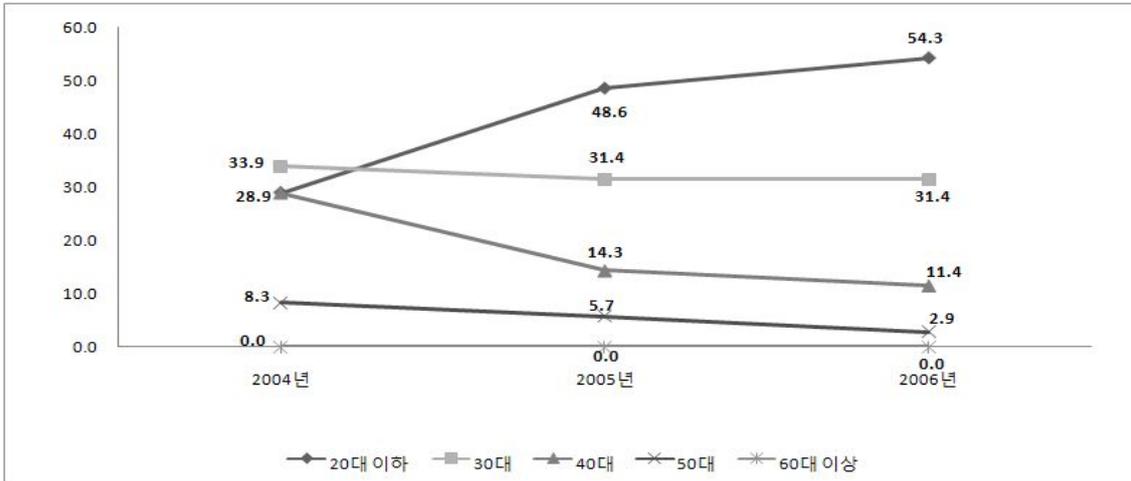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대 이하의 경우, 2004년 28.9%, 2005년 48.6%, 2006년 5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는 2004년 33.9%, 2005년 31.4%, 2006년 31.4%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40대 이하의 경우, 2004년 28.9%, 2005년 14.3%, 2006년 11.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역시 2004년 8.3%, 2005년 5.7%, 2006년 2.9%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118>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범죄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대 이하	-	-	-	-	35 (28.9)	17 (48.6)	19 (54.3)	71 (37.2)
30대	-	-	-	-	41 (33.9)	11 (31.4)	11 (31.4)	63 (33.0)
40대	-	-	-	-	35 (28.9)	5 (14.3)	4 (11.4)	44 (23.0)
50대	-	-	-	-	10 (8.3)	2 (5.7)	1 (2.9)	13 (6.8)
60대 이상	-	-	-	-	-	-	-	-
계	-	-	-	-	121 (100.0)	35 (100.0)	35 (100.0)	191 (100.0)

주: 2003년 이전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의 연령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어, 2004년 이후에 대해서만 통계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90>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연령의 비율변화

4) 직 업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알선·강요범죄에 대한 연도별 범죄자의 직업 분포는 다음과 같다. 알선·강요범죄자의 거의 대부분은 판매서비스직 또는 유흥업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유흥업주는 2000년 49.1%, 2001년 40.8%, 2002년 57.9%, 2003년 46.6%, 2004년 16.0%, 2005년 20.0%, 2006년 8.6%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판매서비스직은 2000년 32.1%, 2001년 34.5%, 2002년 23.8%, 2003년 16.8%, 2004년 12.0%, 2005년 22.9%, 2006년 42.9%로 2004년 까지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였다. 기타 다른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19>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문직	-	-	-	-	-	-	-	-
사무관리직	2 (3.8)	5 (2.4)	-	3 (2.3)	10 (20.0)	-	3 (8.6)	23 (3.6)
판매서비스직	17 (32.1)	71 (34.5)	30 (23.8)	22 (16.8)	6 (12.0)	8 (22.9)	15 (42.9)	169 (26.6)
유흥업소	26 (49.1)	84 (40.8)	73 (57.9)	61 (46.6)	8 (16.0)	7 (20.0)	3 (8.6)	262 (41.2)
일용노동자	-	-	2 (1.6)	1 (0.8)	2 (4.0)	-	1 (2.9)	6 (0.9)
학생	-	3 (1.5)	-	2 (1.5)	3 (6.0)	-	-	8 (1.3)
군인 경찰	-	-	2 (1.6)	-	-	1 (2.9)	-	3 (0.5)
무직	7 (13.2)	41 (19.9)	16 (12.7)	27 (20.6)	12 (24.0)	10 (28.6)	9 (25.7)	122 (19.2)
생산직	-	-	1 (0.8)	-	-	-	-	1 (0.2)
농어업	-	-	-	-	-	-	-	-
운전자, 운수업	-	2 (1.0)	2 (1.6)	-	-	-	-	4 (0.6)
공공기관	-	-	-	-	1 (2.0)	-	-	1 (0.2)
자영업	-	-	-	14 (10.7)	5 (10.0)	8 (22.9)	4 (11.4)	31 (4.9)
청소년보호직종군	-	-	-	-	-	-	-	-
기타	1 (1.9)	-	-	1 (0.8)	3 (6.0)	1 (2.9)	-	6 (0.9)
계	53 (100.0)	206 (100.0)	126 (100.0)	131 (100.0)	50 (100.0)	35 (100.0)	35 (100.0)	636 (100.0)

주1: 2000, 2001, 2002년 조사항목에서는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2: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나 ‘9차 조사’에서는 범죄자 직업에 대한 조사가 없어 이번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0차 조사’ 항목에는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3: 2005년의 경우, ‘11차 조사’와 ‘12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1차 조사’ 항목에서는 ‘군인, 경찰’, ‘생산직’, ‘농어업’,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12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4: 2006년의 경우, ‘13차 조사’와 ‘14차 조사’를 합한 결과이며 ‘13차 조사’ 항목에서는 ‘운전자,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4차 조사’ 항목에서는 ‘유흥업소’, ‘일용노동자’, ‘학생’, ‘군인, 경찰’, ‘운전자, 운수업’, ‘공공기관’, ‘자영업’, ‘청소년보호직종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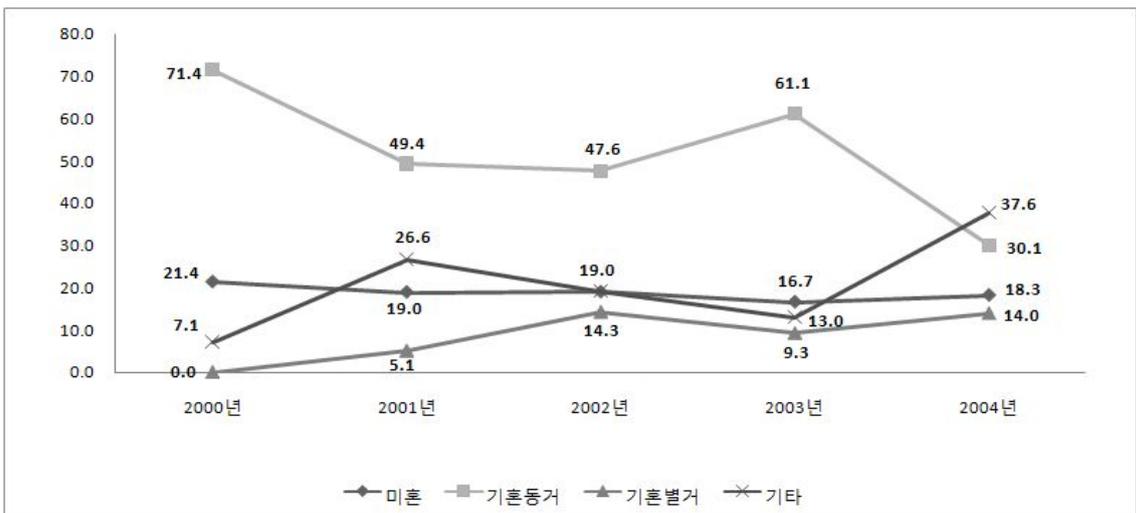
5) 혼 인

알선·강요범죄자의 연도별 혼인상태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혼동거가 2000년 71.4, 2001년 49.4%, 2002년 47.6%, 2003년 61.1%, 2004년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혼이 2000년 21.4%, 2001년 19.0%, 2002년 19.0%, 2003년 16.7%, 2004년 18.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0>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자 혼인상태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혼인상태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 혼	3 (21.4)	15 (19.0)	8 (19.0)	9 (16.7)	17 (18.3)	52 (18.4)
기혼동거	10 (71.4)	39 (49.4)	20 (47.6)	33 (61.1)	28 (30.1)	130 (46.1)
기혼별거	-	4 (5.1)	6 (14.3)	5 (9.3)	13 (14.0)	28 (9.9)
기혼사별	-	1 (1.3)	-	-	2 (2.2)	3 (1.1)
이 혼	1 (7.1)	10 (12.7)	4 (9.5)	1 (1.9)	24 (25.8)	40 (14.2)
동 거	-	10 (12.7)	4 (9.5)	5 (9.3)	9 (9.7)	28 (9.9)
기 타	-	-	-	1 (1.9)	-	1 (0.4)
계	14 (100.0)	79 (100.0)	42 (100.0)	54 (100.0)	93 (100.0)	282 (100.0)

주: '11차 조사' 이후로는 범죄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05년 이후의 추세는 생략되었다.



<그림 3-9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자 혼인상태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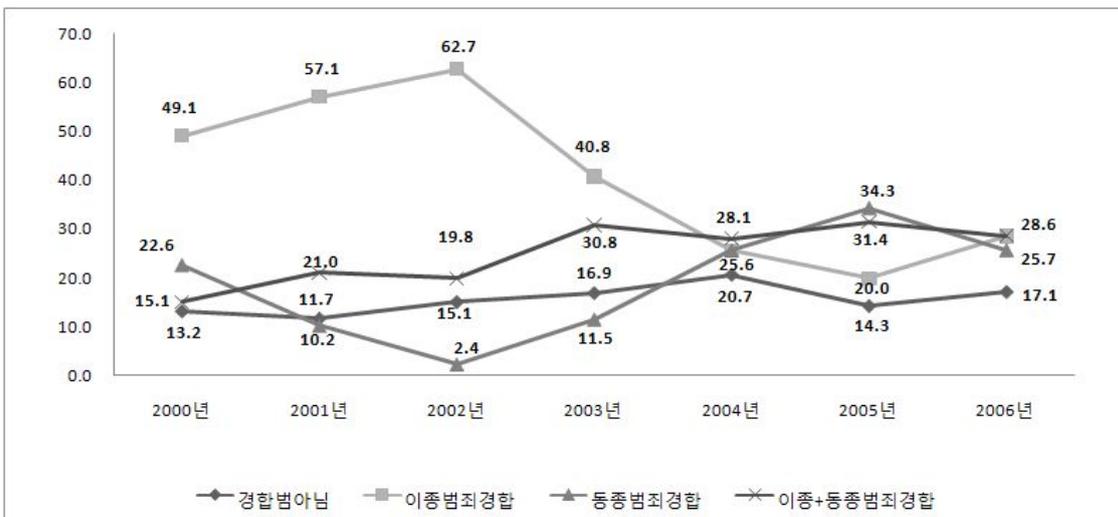
나. 처리현황

1) 경합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의 연도별 경합여부는 다음과 같다. 경합범이 아닌 경우는 2000년 13.2%, 2001년 11.7%, 2002년 15.1%, 2003년 16.9%, 2004년 20.7%, 2005년 14.3%, 2006년 17.1%로 비율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경합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합범아님	7 (13.2)	24 (11.7)	19 (15.1)	22 (16.9)	25 (20.7)	5 (14.3)	6 (17.1)	108 (15.3)
이종범죄경합	26 (49.1)	117 (57.1)	79 (62.7)	53 (40.8)	31 (25.6)	7 (20.0)	10 (28.6)	323 (45.8)
동종범죄경합	12 (22.6)	21 (10.2)	3 (2.4)	15 (11.5)	31 (25.6)	12 (34.3)	9 (25.7)	103 (14.6)
이종+동종범죄경합	8 (15.1)	43 (21.0)	25 (19.8)	40 (30.8)	34 (28.1)	11 (31.4)	10 (28.6)	171 (24.3)
계	53 (100.0)	205 (100.0)	126 (100.0)	130 (100.0)	121 (100.0)	35 (100.0)	35 (100.0)	705 (100.0)



<그림 3-92> 청소년대상 알선·강요 범죄경합여부의 비율변화

이종범죄경합의 경우에 2000년 49.1%, 2001년 57.1%, 2002년 62.7%, 2003년 40.8%, 2004년 25.6%, 2005년 20.0%, 2006년 28.6%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경합의 경우에는 2000년 22.6%, 2001년 10.2%, 2002년 2.4%, 2003년 11.5%, 2004년 25.6%, 2005년 34.3%, 2006년 25.7%이며, 이종+동종범죄경합의 경우는 2000년 15.1%, 2001년 21.0%, 2002년 19.8%, 2003년 30.8%, 2004년 28.1%, 2005년 31.4%, 2006년 28.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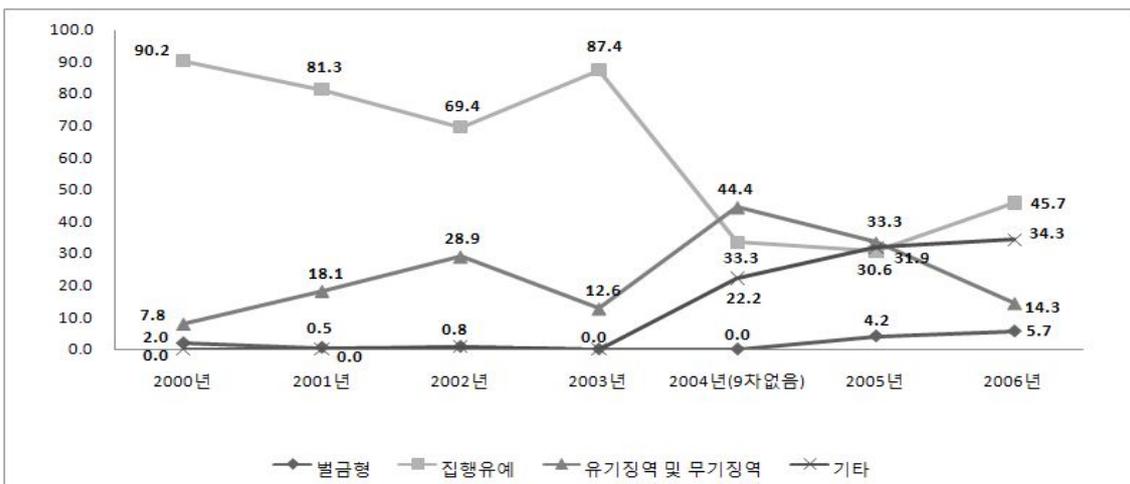
2) 1심 선고형의 종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에 대한 연도별 1심 선고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알선·강요범죄 중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000년, 2001년, 2002년에 각각 1명, 2005년 3명, 2006년 2명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나 그 비율은 2000년 90.2%, 2001년 81.3%, 2002년 69.4%, 2003년 87.4%, 2004년 33.3%, 2005년 30.6%, 2006년 45.7%로서 대체로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2000년 7.8%, 2001년 18.1%, 2002년 28.9%, 2003년 12.6%, 2004년 44.4%, 2005년 33.3%, 2006년 14.3%로 2004년 까지 상승하다가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22>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1심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선고형의 종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차제외)	2005년	2006년	
벌금형	1 (2.0)	1 (0.5)	1 (0.8)	-	-	3 (4.2)	2 (5.7)	8 (1.1)
집행유예	46 (90.2)	157 (81.3)	84 (69.4)	111 (87.4)	39 (33.3)	22 (30.6)	16 (45.7)	475 (66.3)
유기징역	4 (7.8)	35 (18.1)	35 (28.9)	16 (12.6)	52 (44.4)	24 (33.3)	5 (14.3)	171 (23.9)
보호관찰/사회 봉사/수감명령	-	-	-	-	25 (21.4)	19 (26.4)	12 (34.3)	56 (7.8)
기타	-	-	1 (0.8)	-	1 (0.9)	4 (5.6)	-	6 (0.8)
계	51 (100.0)	193 (100.0)	121 (100.0)	127 (100.0)	117 (100.0)	72 (100.0)	35 (100.0)	716 (100.0)

주: 2004년의 경우,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수치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9차 조사'에서는 1심 선고형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93>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1심선고형의 비율변화

3) 1심 형량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에 대한 1심 형량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1심에서 '1년-3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00년 100%, 2001년 88.6%, 2002년 83.3%, 2003년 100%, 2005년 100%, 2006년 100%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2001년 11.4%, 2002년 16.7% 뿐이었고, 징역형 중 다른 형량이 선고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123>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1심형량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1심형량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제외)	2006년	
1년 이상- 3년 미만	4 (100.0)	31 (88.6)	30 (83.3)	16 (100.0)	-	4 (100.0)	5 (100.0)	90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	4 (11.4)	6 (16.7)	-	-	-	-	10 (10.0)
계	4 (100.0)	35 (100.0)	36 (100.0)	16 (100.0)	-	4 (100.0)	5 (100.0)	100 (100.0)

주1: 2004년은 '9차 조사'와 '10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1심형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공개여부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의 경우, 공개대상이 된 경우가 2000년 90.6%, 2001년 97.1%, 2002년 99.2%, 2003년 96.9%, 2004년 94.2%, 2005년 100% 등 모든 해에 걸쳐 거의 모든 대상자가 공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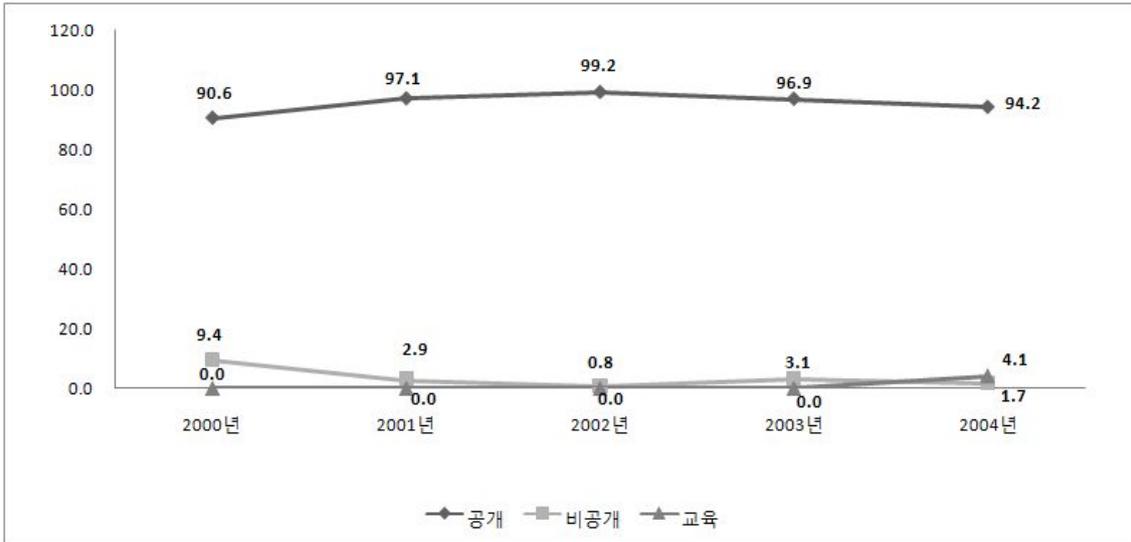
<표 3-124>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심의결과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차제외)	2006년	
공 개	48 (90.6)	200 (97.1)	126 (99.2)	127 (96.9)	114 (94.2)	14 (100.0)	-	629 (96.5)
비공개	5 (9.4)	6 (2.9)	1 (0.8)	4 (3.1)	2 (1.7)	-	-	18 (2.8)
교 육	-	-	-	-	5 (4.1)	-	-	5 (0.8)
계	53 (100.0)	206 (100.0)	127 (100.0)	131 (100.0)	121 (100.0)	14 (100.0)	-	652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94>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공개여부의 비율변화

2.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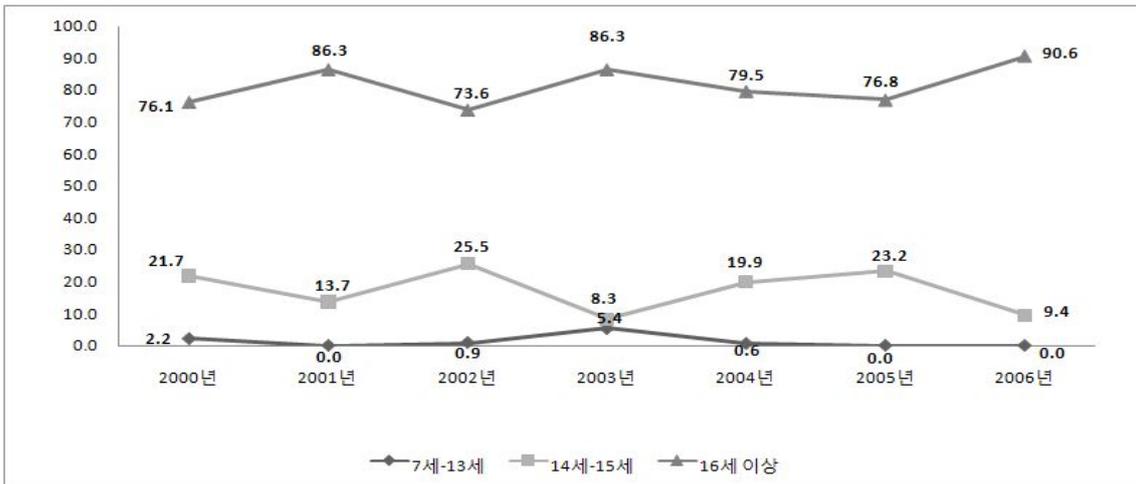
1) 연령

청소년 대상 알선·강요 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세-13세 피해자의 경우 2000년, 2002년에 각각 1건, 2003년 9건, 2004년 1건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고, 14세-15세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21.7%, 2001년 13.7%, 2002년 25.5%, 2003년 8.3%, 2004년 19.9%, 2005년 23.2%, 2006년 9.4%로 큰 비율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16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는 2000년 76.1%, 2001년 86.3%, 2002년 73.6%, 2003년 86.3%, 2004년 79.5%, 2005년 76.8%, 2006년 90.6%였다. 전체적으로 16세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매년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25>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자의 연령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세-13세	1 (2.2)	-	1 (0.9)	9 (5.4)	1 (0.6)	-	-	12 (1.5)
14세-15세	10 (21.7)	28 (13.7)	28 (25.5)	14 (8.3)	33 (19.9)	13 (23.2)	6 (9.4)	132 (16.2)
16세 이상	35 (76.1)	177 (86.3)	81 (73.6)	145 (86.3)	132 (79.5)	43 (76.8)	58 (90.6)	671 (82.3)
계	46 (100.0)	205 (100.0)	110 (100.0)	168 (100.0)	166 (100.0)	56 (100.0)	64 (100.0)	815 (100.0)

주1: '8차 조사' 이전까지의 분석에서의 기준은 '7세 이하', '8-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2: '8~9차 조사'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3세', '14-15세', '16세 이상'이었다.
 주3: '10차 조사' 이후의 분석 기준은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세 이상'이었다.



<그림 3-95>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연령의 비율변화

2) 학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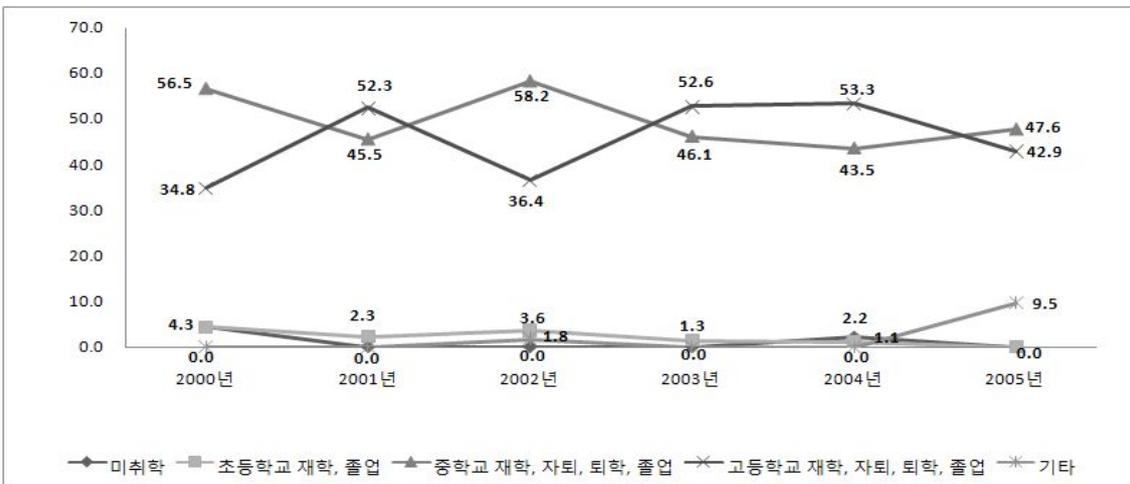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 피해자의 학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자퇴, 퇴학, 졸업인 경우가 2000년 34.8%, 2001년 52.3%, 2002년 36.4%, 2003년 52.6%, 2004년 53.3%, 2005년 42.9%로서 큰 비율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재학, 자퇴, 퇴학, 졸업 역시 2000년 56.5%, 2001년 45.5%, 2002년 58.2%, 2003년 46.1%, 2004년 43.5%, 2005년 47.6%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의 경우 2000년 4.3%, 2004년 2.2%를 나타냈다.

<표 3-126>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학력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피해청소년의 학력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미취학	1 (4.3)	-	-	-	2 (2.2)	-	-	3 (0.8)
초등학교 재학	-	-	-	-	1 (1.1)	-	-	1 (0.3)
중학교 재학	2 (8.7)	8 (9.1)	6 (10.9)	12 (15.8)	9 (9.8)	-	-	37 (10.4)
고등학교 재학	8 (34.8)	19 (21.6)	7 (12.7)	20 (26.3)	16 (17.4)	5 (23.8)	-	75 (21.1)
대학교 재학	-	-	1 (1.8)	-	-	2 (9.5)	-	3 (0.8)
초등학교 졸업	1 (4.3)	2 (2.3)	2 (3.6)	1 (1.3)	-	-	-	6 (1.7)
중학교 졸업	1 (4.3)	5 (5.7)	2 (3.6)	2 (2.6)	5 (5.4)	1 (4.8)	-	16 (4.5)
고등학교 졸업	-	-	-	1 (1.3)	1 (1.1)	-	-	2 (0.6)
중학교 자퇴, 퇴학	10 (43.5)	27 (30.7)	24 (43.6)	21 (27.6)	26 (28.3)	9 (42.9)	-	117 (33.0)
고등학교 자퇴, 퇴학	-	27 (30.7)	13 (23.6)	19 (25.0)	32 (34.8)	4 (19.0)	-	95 (26.8)
계	23 (100.0)	88 (100.0)	55 (100.0)	76 (100.0)	92 (100.0)	21 (100.0)	-	355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96>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학력의 비율변화

3) 직 업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 피해자의 사건 이전 일자리의 여부 및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이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경우는 2000년 33.3%, 2001년 34.9%, 2002년 31.9%, 2003년 18.5%, 2004년 71.6%, 2005년 57.1%이며, 유흥업소 아르바이트의 경우 2001년 0.9%, 2002년 2.8%, 2004년 3.0%를 나타냈다.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 2000년 3.7%, 2001년 5.7%, 2002년 1.4%, 2003년 7.4%, 2004년 1.5%, 2005년 4.8%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다방종업원의 경우 2000년 22.2%, 2001년 43.4%, 2002년 34.7%, 2003년 70.4%, 2004년 17.9%, 2005년 38.1%이며,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2000년 40.7%, 2001년 10.4%, 2002년 22.2%, 2003년 3.7%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2001년 4.7%, 2002년 6.9%, 2004년 6.0%이다. 전체적으로 무직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27>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직업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무직	9 (33.3)	37 (34.9)	23 (31.9)	5 (18.5)	48 (71.6)	12 (57.1)	-	134 (41.9)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	1 (0.9)	2 (2.8)	-	2 (3.0)	-	-	5 (1.6)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1 (3.7)	6 (5.7)	1 (1.4)	2 (7.4)	1 (1.5)	1 (4.8)	-	12 (3.8)
다방종업원	6 (22.2)	46 (43.4)	25 (34.7)	19 (70.4)	12 (17.9)	8 (38.1)	-	116 (36.3)
유흥업소 종업원	11 (40.7)	11 (10.4)	16 (22.2)	1 (3.7)	-	-	-	39 (12.2)
기타	-	5 (4.7)	5 (6.9)	-	4 (6.0)	-	-	14 (4.4)
계	27 (100.0)	106 (100.0)	72 (100.0)	27 (100.0)	67 (100.0)	21 (100.0)	-	320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4) 동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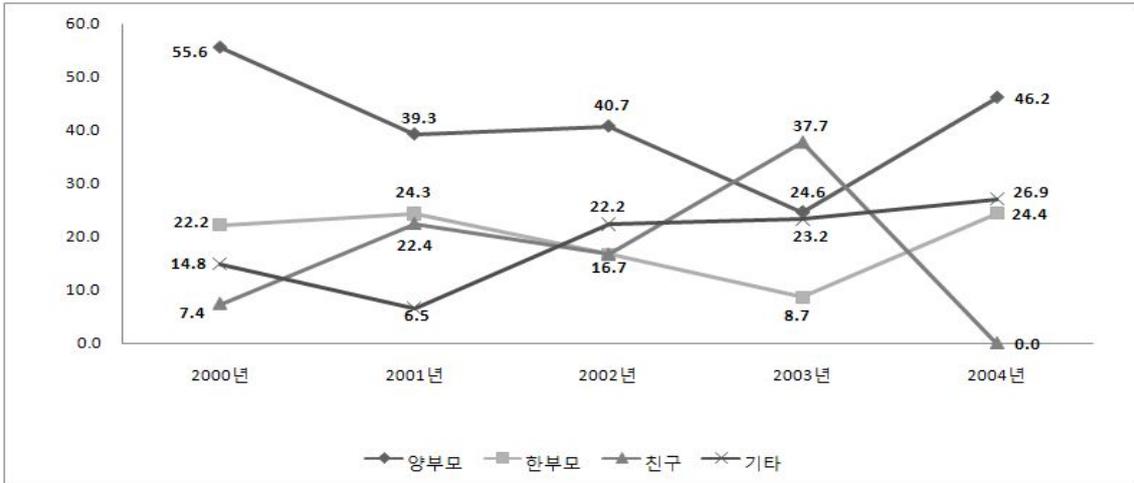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 피해자의 동거인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쪽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2000년 55.6%, 2001년 39.3%, 2002년 40.7%, 2003년 24.6%, 2004년 46.25, 2005년 21.1%로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2000년 22.2%, 2001년 24.3%, 2002년 16.7%, 2003년 8.7%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4년 24.4%, 2005년 47.4%로 다시 상승하였다. 조부모의 경우 2001년 7.5%, 2002년 3.7%로 감소하다가 2003년 5.8%, 2004년 2.6%, 2005년 5.3%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친구의 경우 2000년 7.4%, 2001년 22.4%, 2002년 16.7%, 2003년 37.7%, 2005년 10.5%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기타의 경우 2000년 3.7%, 2001년 0.9%, 2002년 5.6%, 2003년 1.4%, 2004년 20.5%, 2005년 15.8%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128>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동거인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양부모	15 (55.6)	42 (39.3)	22 (40.7)	34 (24.6)	36 (46.2)	4 (21.1)	-	153 (36.2)
한부모	6 (22.2)	26 (24.3)	9 (16.7)	12 (8.7)	19 (24.4)	9 (47.4)	-	81 (19.1)
조부모	-	8 (7.5)	2 (3.7)	8 (5.8)	2 (2.6)	1 (5.3)	-	21 (5.0)
친척	3 (11.1)	2 (1.9)	5 (9.3)	11 (8.0)	1 (1.3)	-	-	22 (5.2)
형제자매	-	4 (3.7)	4 (7.4)	19 (13.8)	4 (5.1)	-	-	31 (7.3)
친구	2 (7.4)	24 (22.4)	9 (16.7)	52 (37.7)	-	2 (10.5)	-	89 (21.0)
기타	1 (3.7)	1 (0.9)	3 (5.6)	2 (1.4)	16 (20.5)	3 (15.8)	-	26 (6.1)
계	27 (100.0)	107 (100.0)	54 (100.0)	138 (100.0)	78 (100.0)	19 (100.0)	-	423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동거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97>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나. 피해정황과 처벌의사

1) 가출여부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 피해자의 가출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29>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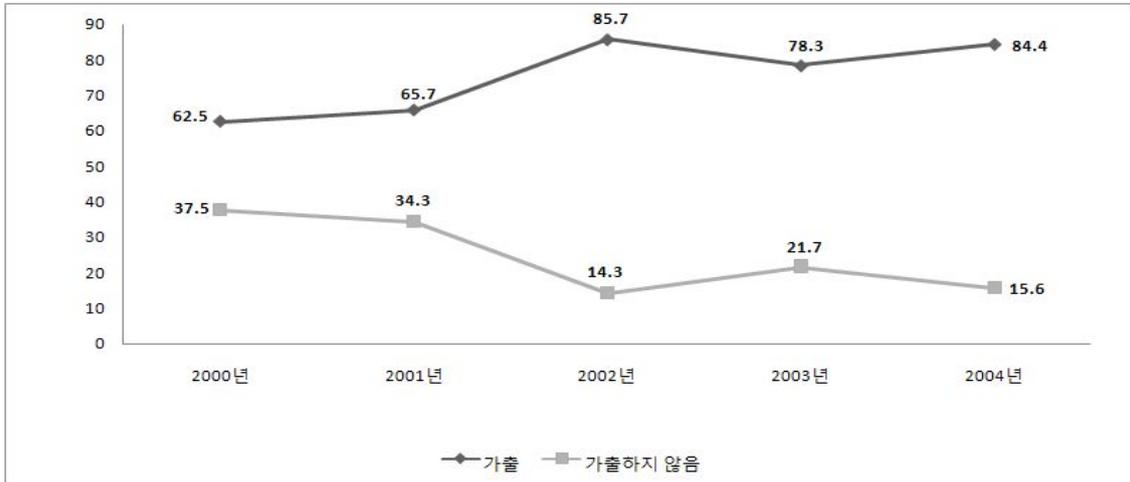
청소년 가출여부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차제외)	2006년	
가출	10 (62.5)	71 (65.7)	54 (85.7)	83 (78.3)	108 (84.4)	21 (67.7)	-	347 (76.8)
가출하지 않음	6 (37.5)	37 (34.3)	9 (14.3)	23 (21.7)	20 (15.6)	10 (32.3)	-	1,572 (23.2)
계	16 (100.0)	108 (100.0)	63 (100.0)	106 (100.0)	128 (100.0)	31 (100.0)	-	452 (100.0)

주1: 2006년은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각각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통계는 생략하였다.

주2: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 가출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가출한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2000년 62.5%, 2001년 65.7%, 2002년 85.7%, 2003년 78.3%, 2004년 84.4%로 상대적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2000년 37.5%, 2001년

34.3%, 2002년 14.3%, 2003년 21.7%, 2004년 15.6%로 상대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3-98>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2) 고용경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 피해자가 업소로 고용된 경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해 고용된 경우가 2001년 7.2%, 2002년 5.9%, 2003년 18.7%, 2004년 31.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경우는 2000년 4.9%, 2001년 4.1%, 2002년 5.9%, 2003년 1.8%, 2004년 1.9%로 감소하였다. 동종업주의 소개로 고용된 경우는 2000년 24.4%, 2001년 10.3%, 2002년 13.7%, 2003년 15.1%, 2004년 12.7%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된 다른 청소년의 소개로 고용된 경우는 2000년 17.1%, 2001년 29.9%, 2002년 34.3%, 2003년 31.3%, 2004년 26.8%로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찾아 온 경우는 2000년 17.1%, 2001년 25.3%, 2002년 20.6%, 2003년 23.5%, 2004년 8.9%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전체적으로 고용된 다른 청소년의 소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그 다음 높았다.

<표 3-130>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업소고용경로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고용경로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터넷	-	14 (7.2)	6 (5.9)	31 (18.7)	49 (31.2)	-	-	100 (15.2)
소개소	2 (4.9)	8 (4.1)	6 (5.9)	3 (1.8)	3 (1.9)	-	-	22 (3.3)
동종업주의 소개	10 (24.4)	20 (10.3)	14 (13.7)	25 (15.1)	20 (12.7)	-	-	89 (13.5)
고용청소년의 소개	7 (17.1)	58 (29.9)	35 (34.3)	52 (31.3)	42 (26.8)	-	-	194 (29.4)
자발적으로 찾아 오	7 (17.1)	49 (25.3)	21 (20.6)	39 (23.5)	14 (8.9)	-	-	130 (19.7)
기 타	15 (36.6)	45 (23.2)	20 (19.6)	16 (9.6)	29 (18.5)	-	-	125 (18.9)
계	41 (100.0)	194 (100.0)	102 (100.0)	166 (100.0)	157 (100.0)	-	-	393 (100.0)

주: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업소고용경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3) 성매매 이유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및 강요범죄 피해자의 성매매 이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돈 유희비를 위해 성매매를 한 경우가 2000년 38.9%, 2001년 38.9%, 2002년 30.3%, 2003년 28.7%, 2004년 39.1%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채무해결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경우는 2000년 5.6%, 2001년 12.5%, 2002년 18.2%, 2003년 27.8%, 2004년 8.3%로 2003년 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건 구입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경우는 2000년과 2003년, 2004년에 각각 1건씩만 나타나고 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경우는 2000년 5.6%, 2001년 13.3%, 2002년 16.7%, 2003년 24.1%, 2004년 18.8%로 매년 상대적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숙식해결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경우는 2000년 33.3%, 2001년 25.0%, 2002년 19.7%, 2003년 5.6%, 2004년 16.5%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표 3-131>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성매매 이유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성매매 이유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차제외)	2004년	2005년	2006년	
용돈/유혹비	7 (38.9)	49 (38.3)	20 (30.3)	31 (28.7)	52 (39.1)	-	-	159 (35.1)
채무해결	1 (5.6)	16 (12.5)	12 (18.2)	30 (27.8)	11 (8.3)	-	-	70 (15.5)
물건구입	1 (5.6)	-	-	1 (0.9)	1 (0.8)	-	-	3 (0.7)
생계비 마련	1 (5.6)	17 (13.3)	11 (16.7)	26 (24.1)	25 (18.8)	-	-	80 (17.7)
숙식해결	6 (33.3)	32 (25.0)	13 (19.7)	6 (5.6)	22 (16.5)	-	-	79 (17.4)
남성의 유혹	-	1 (0.8)	-	-	9 (6.8)	-	-	10 (2.2)
기 타	2 (11.1)	13 (10.2)	10 (15.2)	14 (13.0)	13 (9.8)	-	-	52 (11.5)
계	18 (100.0)	128 (100.0)	66 (100.0)	108 (100.0)	133 (100.0)	-	-	453 (100.0)

주: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1차 조사'와 '12차 조사', '13차 조사'와 '14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피해자 성매매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2006년 통계는 생략하였다.

3. 청소년대상 알선·강요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가. 성매수 업소 관련사항

1) 발생지역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알선·강요범죄의 범죄발생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이 2000년 8.2%, 2001년 12.4%, 2002년 27.8%, 2003년 17.6%, 2004년 15.9%, 2005년 23.1%, 2006년 19.0% 등으로 가장 많은 성매매 알선업소가 적발되었고, 전북지역이 2000년 6.1%, 2001년 9.9%, 2002년 10.3%, 2004년 17.6%, 2005년 19.5%, 2006년 7.7%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과 전남지역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2>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위치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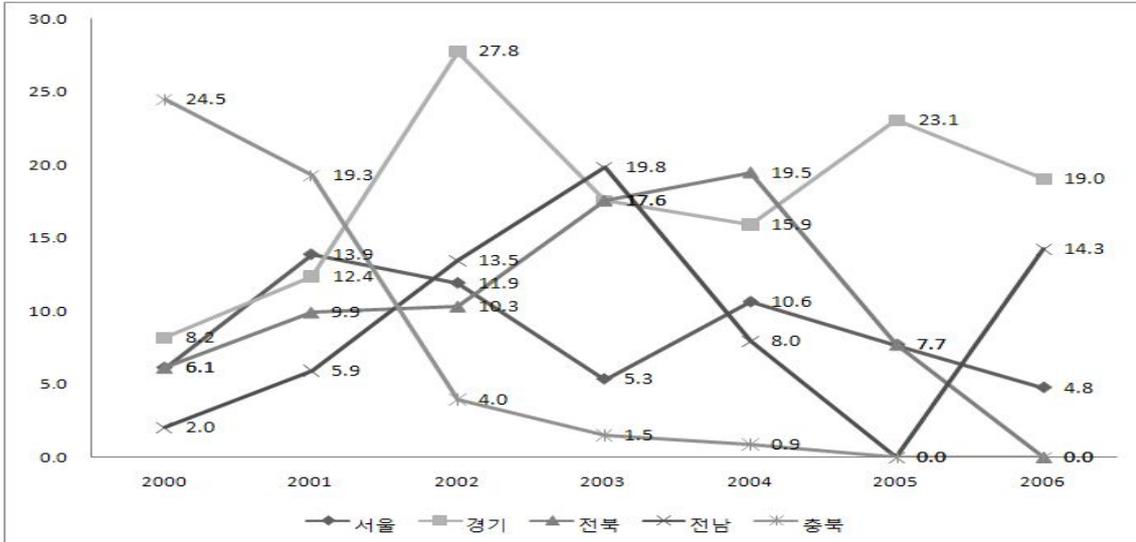
업소위치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	3 (6.1)	28 (13.9)	15 (11.9)	7 (5.3)	12 (10.6)	1 (7.7)	3 (4.8)	69 (9.9)
부산	9 (18.4)	8 (4.0)	5 (4.0)	2 (1.5)	7 (6.2)	1 (7.7)	3 (4.8)	35 (5.0)
대구	1 (2.0)	6 (3.0)	4 (3.2)	5 (3.8)	6 (5.3)	-	4 (6.3)	26 (3.7)
인천	3 (6.1)	1 (0.5)	-	-	2 (1.8)	-	4 (6.3)	10 (1.4)
광주	1 (2.0)	2 (1.0)	1 (0.8)	3 (2.3)	2 (1.8)	3 (23.1)	22 (34.9)	34 (4.9)
대전	-	15 (7.4)	2 (1.6)	9 (6.9)	3 (2.7)	-	-	29 (4.2)
울산	1 (2.0)	6 (3.0)	5 (4.0)	2 (1.5)	4 (3.5)	-	1 (1.6)	19 (2.7)
경기	4 (8.2)	25 (12.4)	35 (27.8)	23 (17.6)	18 (15.9)	3 (23.1)	12 (19.0)	120 (17.2)
경북	6 (12.2)	15 (7.4)	5 (4.0)	10 (7.6)	3 (2.7)	-	-	39 (5.6)
경남	4 (8.2)	16 (7.9)	11 (8.7)	9 (6.9)	15 (13.3)	2 (15.4)	4 (6.3)	61 (8.8)
전북	3 (6.1)	20 (9.9)	13 (10.3)	23 (17.6)	22 (19.5)	1 (7.7)	-	82 (11.8)
전남	1 (2.0)	12 (5.9)	17 (13.5)	26 (19.8)	9 (8.0)	-	9 (14.3)	74 (10.6)
충북	12 (24.5)	39 (19.3)	5 (4.0)	2 (1.5)	1 (0.9)	-	-	59 (8.5)
충남	-	7 (3.5)	6 (4.8)	5 (3.8)	8 (7.1)	1 (7.7)	-	27 (3.9)
강원	-	2 (1.0)	2 (1.6)	1 (0.8)	1 (0.9)	1 (7.7)	-	7 (1.0)
제주	1 (2.0)	-	-	4 (3.1)	-	-	1 (1.6)	6 (0.9)
계	49 (100.0)	202 (100.0)	126 (100.0)	131 (100.0)	113 (100.0)	13 (100.0)	63 (100.0)	697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의 업소위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2) 업소유형

청소년 대상 알선·강요범죄의 업소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사창가가 1.4%, 단란주점이 29.5%, 티켓다방이 46.0%, 전화방이 0.8%, 여관이 2.4%, 보도방이 10.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2000년의 경우 39.2%, 2001년 45.4%, 2002년 39.4%, 2003년 12.3%, 2004

년 16.4%, 2005년 13.6%, 2006년 25.6%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티켓다방의 경우 2000년 17.6%, 2001년 29.3%, 2002년 47.2%, 2003년 70.8%, 2004년 48.3%, 2005년 50.0%, 2006년 64.1%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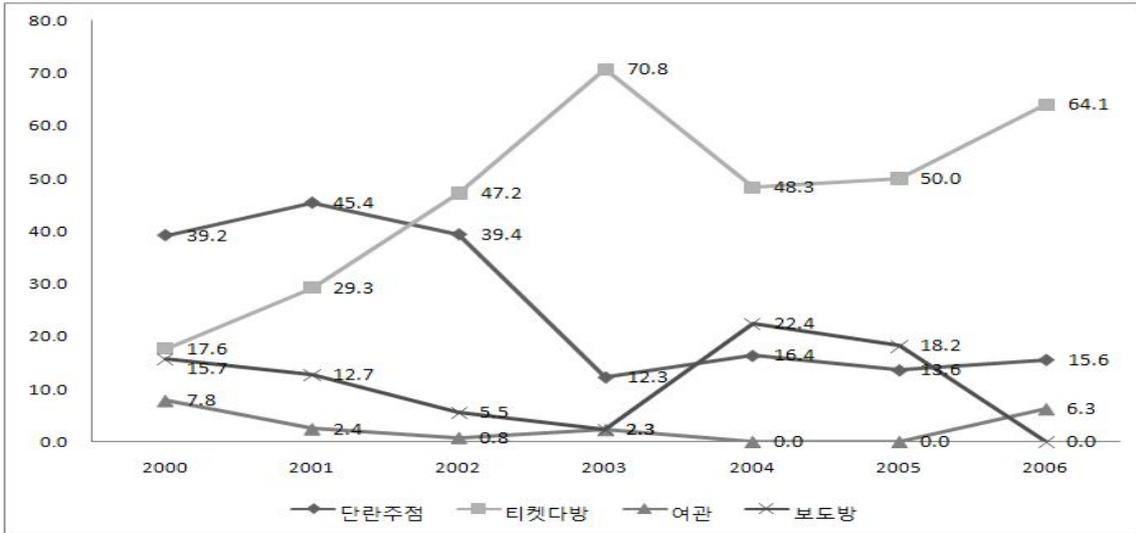


<그림 3-99>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위치의 연도별 추세

<표 3-133>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유형의 연도별 추세 (단위:명(%))

업소유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창가	2 (3.9)	6 (2.9)	1 (0.8)	-	1 (0.9)	-	-	10 (1.4)
단란주점	20 (39.2)	93 (45.4)	50 (39.4)	16 (12.3)	19 (16.4)	3 (13.6)	10 (15.6)	211 (29.5)
티켓다방	9 (17.6)	60 (29.3)	60 (47.2)	92 (70.8)	56 (48.3)	11 (50.0)	41 (64.1)	329 (46.0)
전화방	2 (3.9)	2 (1.0)	1 (0.8)	1 (0.8)	-	-	-	6 (0.8)
여관	4 (7.8)	5 (2.4)	1 (0.8)	3 (2.3)	-	-	4 (6.3)	17 (2.4)
보도방	8 (15.7)	26 (12.7)	7 (5.5)	3 (2.3)	26 (22.4)	4 (18.2)	-	74 (10.3)
기타	6 (11.8)	13 (6.3)	7 (5.5)	15 (11.5)	14 (12.1)	4 (18.2)	9 (14.1)	68 (9.5)
계	51 (100.0)	205 (100.0)	127 (100.0)	130 (100.0)	116 (100.0)	22 (100.0)	64 (100.0)	715 (100.0)

주1.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성매매알선 및 강요 범죄의 업소위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00>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업소유형의 연도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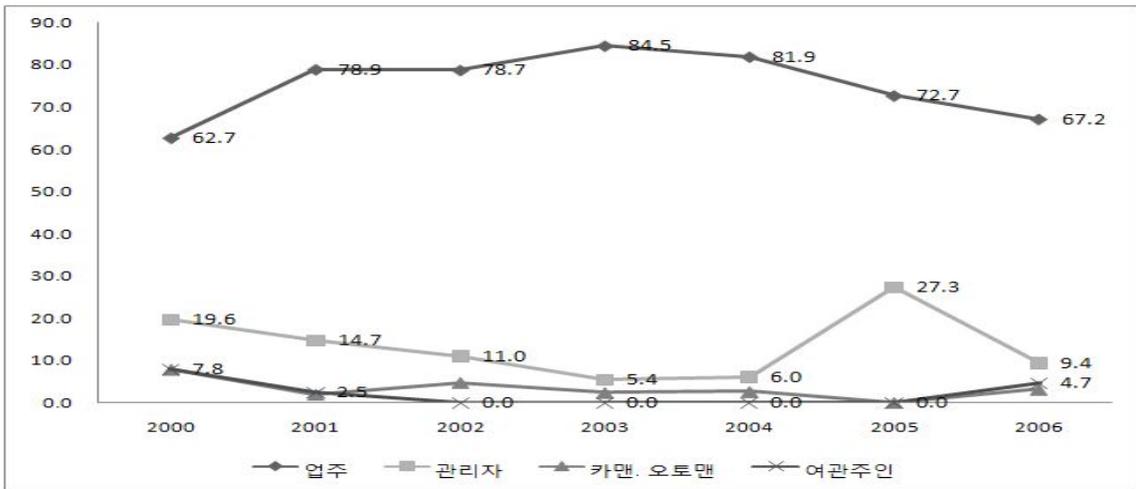
3) 가해자의 역할

청소년 대상 알선·강요범죄의 경우 검거된 가해자의 역할은 업주가 2000년 62.7%, 2001년 78.9%, 2002년 78.7%, 2003년 84.5%, 2004년 81.9%, 2005년 72.7%, 2006년 67.2%로서 전체 평균 78.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자가 11.2%, 카맨 혹은 오토맨의 경우 3.1%, 여관주인의 경우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34>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가해자역할의 연도별 추세(단위:명(%))

가해자역할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업 주	32 (62.7)	161 (78.9)	100 (78.7)	109 (84.5)	95 (81.9)	16 (72.7)	43 (67.2)	556 (78.0)
관리자	10 (19.6)	30 (14.7)	14 (11.0)	7 (5.4)	7 (6.0)	6 (27.3)	6 (9.4)	80 (11.2)
카맨·오토맨	4 (7.8)	4 (2.0)	6 (4.7)	3 (2.3)	3 (2.6)	-	2 (3.1)	22 (3.1)
여관주인	4 (7.8)	5 (2.5)	-	-	-	-	3 (4.7)	12 (1.7)
기 타	1 (2.0)	4 (2.0)	7 (5.5)	10 (7.8)	11 (9.5)	-	10 (15.6)	43 (6.0)
계	51 (100.0)	204 (100.0)	127 (100.0)	129 (100.0)	116 (100.0)	22 (100.0)	64 (100.0)	713 (100.0)

* 2005년은 '11차 조사'와 '12차 조사'의 결과를 합한 수치여야 하나, '1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차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3-101>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 가해자역할의 연도별 추세

제4장 결론 : 연구의 주요 발견점과 정책대안

제1절 2007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자료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청소년의 현황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수는 총 1,839명이며, 이중 강간 385명(20.9%), 강제추행이 643명(35.0%), 성매수가 771명(41.9%), 성매수 알선이 40명(2.2%)을 차지하였다. 피해청소년들의 수를 살펴보면 강간이 546명, 23.0%, 강제추행이 882명, 37.2%, 성매수가 880명, 37.1%로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은 66명, 2.8%로 가장 적었다.

2. 성범죄자의 특성

성과 국적, 연령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99.3%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가 여성인 경우는 13건에 불과하며, 이 중 9건은 성매수 알선, 3건은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국적은 전체의 98.8%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모두 22명으로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간(7명)과 강제추행(12명), 성매수(7명)에 골고루 퍼져있다. 성범죄자의 연령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주된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이다. 강간의 경우에는 20, 30, 40대의 연령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나, 강제추행의 경우는 30~5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강간에 비해 연령대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수와 알선의 경우에는 20~40대의 연령대의 범죄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와 생산직, 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29.8%(545명), 20.5%(376명), 20.3%(3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서비스직 종업원과 판매직이 14.4%(263명), 6.7%(122명)로 나타났다. 행정관리직이 18명(1.0%)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

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무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각각 34.7%(133명), 33.6%(215명)), 다음으로 생산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00명(26.1%), 176명(27.5%)). 성매수범의 경우 사무직(24.4%, 188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무직자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188명, 24.4%).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학원 강사 및 운전자 등의 청소년 보호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총 49명으로 전체의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직업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성범죄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학원, 교습소 등의 강사가 19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교사가 9명(18.4%), 태권도장, 종합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종사자가 8명(16.3%), 학원운전기사가 5명(10.2%)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19.7%(361명), 서울 19.5%(359명)의 순으로 나타나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지역 이외에는 인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145명, 7.9%) 인구대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는 전체범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10%를 넘지 않거나 5% 미만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839명중 62.8%를 차지하는 1,154명이 1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상습화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동종전과만을 갖고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3.5%(65명), 이종과 동종 전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범죄자는 11.7%(2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범죄에서 성범죄자들의 전과율은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비슷하였다. 성매수의 경우에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과 전과가 없는 범죄자들의 비율이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6명, 22.3%). 범죄유형별 동종전과자 비율에서도 성매수를 제외하고 범죄간 동종전과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성매수 범죄는

성매수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문화의 특성 때문에 일반 남성들의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경우는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해청소년의 특성

피해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96.2%(2,284명)는 여자 청소년이다. 남자 피해청소년은 90명(3.8%)에 불과하다. 강간은 모든 피해자가 여자청소년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남자청소년이 77명(8.7%)으로 다른 성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매수와 성매수알선에서 남자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각각 11명(1.3%)과 2명(3.0%)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양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 청소년의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4세이고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은 16세로 나타났다. 피해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 이상이 36.9%(875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30.4%(722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7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이 28.6%(678명)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피해자가 37.0%(202명)로 가장 높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32.2%, 176명)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보다 어린 연령층인 7세 이상 13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전체 피해청소년 중 절반이상인 66.7%(588명)가 13세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56.6%, 498명).

피해 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5명(0.2%),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44명(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강간범죄에서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로 34.9%(804건), 다음이 가해자의 집(15.9%, 367건), 피해자의 집(274건, 11.9%), 자동차안(182건, 7.9%)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범행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강간이 일어난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집이 131건(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가해자집(99건, 18.2%)의 순으로 나타나 집안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69명, 12.7%)과 자동차안(53명, 9.7%)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길(대로, 골목 등)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4명, 17.5%).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135명, 15.3%), 가해자의 집(133명, 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83명, 9.4%)과 놀이터, 학교주변 등(83명, 9.4%)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특성상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가 71.0%(62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해자의 집(135건, 15.4%), 자동차안(84건,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806명(7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네 사람이 137명(5.8%), 교사나 목사, 고용주 등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126명(5.3%)으로 나타났다.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합쳐 161명(6.8%)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68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부가 가해자인 경우 45명(1.9%), 모의 동거인 22명(0.9%), 친척에 의한 경우 25명(1.2%), 친오빠인 경우가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네 가지 범죄유형 중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339명(62.3%)으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에 의한 경우가 89명(16.4%)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안면이 있는 동네사람(97명, 11.1%)과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61명, 7.0%)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의 약 40%는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할 수 있다.

피해청소년의 7.6%가 성폭력범행이후에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2차 피해는 지속적인 성관계의 요구로 나타났다(56명, 3.9%). 그리고 강제추행(2.7%)보다는 강간범죄의 경우(15.5%) 2차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의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을 당한 경우가 16건(3.0%)이었으며, 강간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당한 경우가 50건(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가 다시 강간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10건(1.8%)이 있었다. 강제추행에서도 추행 이후 가해자들이 협박과 공갈을 한 경우가 7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가 6건 있었다.

성범죄자와 대상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은 인터넷이 91.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아는 사람 소개, 업소의 알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이유를 살펴보면 용돈이나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06명(7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66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10명, 2.5%), 남성의 유혹에 넘어가서(9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채무를 위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각각 1명과 3명이 있었다.

5.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13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사건은 568건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34.5%(133건), 강제추행은 64.5%(415건), 성매수는 2.5%(19건), 알선 2.5%(1건)로 강제추행의 경우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인 경우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168명, 29.6%), 13세 이상인 경우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5명, 39.7%). 13세 이상 피해자 집단에서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13세 미만 집단에 비해 높았고, 13세 미만 집단에서는 피해

자의 집안이나 놀이터, 학교·학원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아동들은 집안이나 놀이터, 학교주변에서 범행의 대상이 되고,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45.6%(67명)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경우는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강간범죄가 64.7%(223명)가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동일한 시간대의 38.1%(56명)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범죄가 61.8%(323명)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세 이상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저녁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61.9%(169명)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시간대에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25.8%(135명)가 발생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 동거인에 의한 강간범죄 가해비율은 13세 미만 강간 23.3%(31명)로 나타나, 13세 이상 강간의 15.2%(38명)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동네사람에 의한 13세 미만 강간과 강제추행도 각각 10.5%(14명)와 18.1%(74명)를 보여줌으로써 13세 이상 강간과 강제추행이 각각 6.8%(17명), 4.0%(9명)의 비율을 보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일 집단으로써는 청소년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동네 주변의 이웃이 매우 위험한 계층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

친족관계에는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친척, 친오빠를 포함하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사건은 친족인지, 친족이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미상을 제외하고 범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1건으로 전체범죄의 7.7%이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1건으로 전체의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간(84건,

21.8%)과 강제추행(8.7%, 56명)이고 나머지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는 성매수에서 1건(0.1%)만이 있었다,

범죄유형에 따라 연령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7세 이상-13세 미만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친족관계 51.8%(29명), 비친족관계 53.0%(311명)), 다음으로 친족관계에서는 13세 이상-16세 미만이 30.4%(17명)로 나타났으나, 비친족 관계에서는 13세 이상-16세 미만 그리고 16세 이상이 각각 18.1%(106명)와 16.9%(99명)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의 경우 7세 이상-13세미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이 모두 40.5%(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친족 관계의 경우 16세 이상이 38.2%(11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7.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특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미성년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죄명, 전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성범죄자 1,839명 중에서 미성년 가해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8명이 그 대상이다. 먼저 죄명을 보면 강간이 7명(87.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제추행이 1명(12.5%)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범죄자들의 전과유형을 분석하였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종전과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이종전과횟수를 살펴보면 1회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2명, 3회에서 5회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1명으로 나타났다. 동종전과를 가진 청소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2.1%(774명)

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기징역(26.4%, 486명)과 무기징역(0.4%, 8명)을 합한 징역형이 26.9%(494명), 집행유예가 22.6%(416명),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사회봉사, 수강명령포함)이 7.9%(146명), 소년보호사건도 0.4%(8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심의 결과와 비슷하나, 징역형이 약간 감소하고, 집행유예 및 집행유예/보호관찰 등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의 67.6%, 강제추행범의 30.8%, 성매수범의 3.5%, 성매수 알선의 17.5%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유기징역이 가장 많았으나, 강제추행은 집행유예(34.2%)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성매수범의 경우는 79.6%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성매수 알선의 경우는 62.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강간범죄는 유기징역, 강제추행과 성매수 알선은 집행유예, 성매수는 벌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징역형 선고분포를 살펴보면 1년 이상에서 4년 미만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53.6%).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 범죄의 경우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26.9%로 가장 많고, 다음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8.1%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35%의 사람들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형을 선고받았다.

9. 시사점

성범죄자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 직종에서 학원 및 교습소강사 직업을 가진 성범죄자들이 가장 많았다. 즉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사를 채용할 때는 성범죄 전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상습성이 강하고, 미성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히 상습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의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강사 채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동종전과를 분석하면 과거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다.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범죄의 상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형분석결과 10명중 5명의 성범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5명중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결국 10명중 3명의 성범죄자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10명중에 7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명 중 3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3세미만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10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강간추행의 경우에도 10명 중 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성매매에 대한 양형을 살펴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더욱 경미하다. 이는 성을 사고파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왜곡된 성문화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0명중 8명의 성매수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성매수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은 단 한명에 지나지 않았다.

강간·강제추행범죄가 지속되는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청소년의 장애여부, 청소년의 가출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보다 아는 사람일 때, 청소년이 장애를 가진 경우, 청소년이 양육자의 보호아래 있지 않고 가출한 경우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의한다. 먼저, 성범죄자의 등록 및 열람 제도가 보다 보완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가족내의 성범죄에 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가족안에서 성범죄의 희생자가 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가해자인 성인과의 안전한 격리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세 번째, 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 뿐 아니라 강간·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출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이탈로서 가출한 청소년들과 가정내 학대 등의 문제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에 사회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면서 이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강간·강제추행범죄에서 아동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 이외에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범죄피해시간에서도 오후시간대에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 등에서 아

동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도별 추세분석 결과 및 정책대안

제3장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총7개 년도에 걸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의 추세분석 내용 중에서 주요한 발견점과 함의 그리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특히 이들 내용들은 시간이라는 변수 하에서 그 추세선의 변화가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다.

1. 범죄유형별 추세변화와 범죄특성별 접근의 필요성: 인터넷 성매매의 축소를 위한 그루밍법 제정의 필요성

2000년 후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1만5,56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매수가 53.5%를 차지했고, 강제추행과 강간이 각각 25.0% 및 16.9%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강간 및 알선·강요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강제추행은 꾸준히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발효 전후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범죄에서 성매수 및 알선·강요의 비율은 다소 낮아진 반면, 강제추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도 알 수 있다.

성매수와 다른 성범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매수의 경우 ‘사법기관’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반면 여타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사건이 인지되고 검거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방학기간 중 ‘기획수사 혹은 테마수사’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활동에 의해 성매수자에 대한 검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사법기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사건의 발생 및 검거 건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절대적 수치 및 상대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의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앞서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2000년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44.8%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90.9%까지 치솟아 오름으로써 실제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며,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그루밍(Grooming)법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속칭 그루밍법은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 제15조가 규정하고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고의로 성적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경우 실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도 본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

6) **Sexual Offences Act 2003**

Section 15 Meeting a child following sexual grooming etc.

- (1) A person aged 18 or over (A) commits an offence if—
- (a) having met or communicated with another person (B) on at least two earlier occasions, he—
 - (i) intentionally meets B, or
 - (ii) travels with the intention of meeting B in any part of the world,
 - (b) at the time, he intends to do anything to or in respect of B, during or after the meeting and in any part of the world, which if done will involve the commission by A of a relevant offence,
 - (c) B is under 16, and
 - (d) A does not reasonably believe that B is 16 or over.
- (2) In subsection (1)—
- (a) the reference to A having met or communicated with B is a reference to A having met B in any part of the world or having communicated with B by any means from, to or in any part of the world;
 - (b) “relevant offence” means—
 - (i) an offence under this Part,
 - (ii) an offence within any of paragraphs 61 to 92 of Schedule 3, or
 - (iii) anything done outside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which is not an offence within sub-paragraph (i) or (ii) but would be an offence within sub-paragraph (i) if done in England and Wales.
- (3) In this section as it applies to Northern Ireland—
- (a) subsection (1) has effect with the substitution of “17” for “16” in both places;
 - (b) subsection (2)(b)(iii) has effect with the substitution of “sub-paragraph (ii) if done in Northern

법률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하였으나, 법무부와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의 악용문제, 증거수사문제 등의 난점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의원발의입법으로서 조운선 의원 등 13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신설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2008년 11월에 제출하였다. 판단컨대 영국에서도 동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 등 실무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 조항이 갖는 범죄의 일반예방적 기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악용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정에서 보완입법이 고려된다면 기대 이상의 긍정적 정책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p>외국사례연구의 소개</p>
<p>인터넷 그루밍(Grooming) : 새로운 법률</p> <p style="text-align: right;">Alisdair A. Gillespie (Teesside 대학 전임강사)</p> <p>지난 호 childRIGHT에서 특집으로 다룬 한 기사⁷⁾는 정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아동보호기관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아이들과 친해진 후 그들을 성적으로 가해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점점 커졌는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s.15 Sexual Offences Act 2003으로 실현되었다.</p> <p>그루밍(Grooming)의 개념정의</p> <p>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루밍(grooming)이 무엇인지를 짚고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루밍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를 묘사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루밍이 새로운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동 용어가 온라인상의 행동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요즘 ‘학대의 순환(cycle of abuse)’이라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꼭 함께 움직여야한다. 그루밍은 이 순환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유괴한 후 그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의 행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적 접촉에 동의하게 되기를 바란다. 부분적으로 이것은</p>

Ireland” for “sub-paragraph (i) if done in England and Wales”.

(4)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a)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or both;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아이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cognitive distortions)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범죄라 의심할 여지없는 사건에 대해 체포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가해자들의 소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루밍은 아이의 신뢰를 얻고, 그 아이가 성적 접촉을 허락함은 물론 그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어른이 아이의 친구가 되는 과정인 것이다. 그루밍은 사실 모든 성적 학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인터넷 그루밍에 대해 특히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사이클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 같은 특성을 숨길 수 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들 세대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친구가 되는 단계를 더 빠르게 발생 시킨다.

그루밍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의 연구는 5-20%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런 요구를 받아본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런 상황이 영국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역자 주: 한국의 경우도 최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

새로운 범죄

s.15 Sexual Offences Act 2003 하에서 범죄는 실제로 성적으로 접촉할 의도를 가지고 아동들과 만나는 것이다. 이 범죄는 어느 방법에 의해서든 공판과정에 회부될 수 있고(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는 기소에 의해서만 공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안의 구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을 받는다. 최대 형량은 법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부터 두 배 증가하였다. 처음에는 5년으로 하려했다가 7년으로 늘어났고, 법안의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다른 아동성범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년으로 늘어났다.

위법성

Section 15(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해자는 과거에 두 차례 그 어린이와 만났거나 대화를 했어야 한다.
- 가해자는 그 후 그 어린이를 만났거나 그 어린이를 만날 의도로 찾아다녀야 한다.
- 그 당시, 가해자는 관련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있다.

법안의 조문과 관련해, 몇 사람은 이전 접촉에 대한 구성요건은 성적 내용의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의 접촉은 범행의 준비 과정적 측면이 있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부했다. 그루밍 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옳았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하여 성적 요인을 내포하지 않았던 예비적 접촉을 보여주는 판례는 아직 없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실인 것만은 아닌 오프라인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

첫 소통 후에 이 범죄는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기를 요구한다. 첫째는 범죄자가 아이와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자가 아이를 만날 목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구별은 꽤 중요하다. 위 두 번째 사항은 Criminal Attempts Act 1981에서 시도되었던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의 명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된 행위가 체포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일어난 장소에 관해서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만남은 세상 어디에서든 발생 할 수

있다. 만약 England와 Wales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통의 영토 규정이 적용된다면, 실제 만남은 영국 안에서만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국경 밖에 있는 누군가를 찾았던 경우도 있었다.

<사례>

A(30세)가 B(14세)에게 한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A와 B는 만나기를 희망했고, B는 A에게 자신이 다음 주에 학교 캠프로 프랑스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 A와 B는 남자가 그녀가 있는 프랑스로 갈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난 후 어느 날 B는 일행을 이탈하여 A가 있는 호텔로 가서 서로를 만나고, 성교를 한다.

만약 두 번째 경우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면, A는 위 예에서 범죄의 책임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세계 어디에서든 아동을 만날 목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A는 프랑스로 가는 배에 오르기 전에 체포될 수 있고, s.15에 따라 형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 아래 부분에서는 이 표현이 또한 미리 준비된 작전의 수행(합정수사) 가능성이 증명되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고의

관련된 고의(mens rea)는 어른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 성범죄(relevant sexual offence)’의 정의는 s.15(2)(b)에 나타나 있는데, 그 조항은 Schedule 3 Sexual Offences Act 2003에 있는 어떤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법의 Part 1에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을 포함한다. 그 법은 아동성범죄의 대부분을 통합시키고, 삽입하고, 대체했으며, Schedule 3에 있는 범죄들은 불법적인 성교와 강제추행, 그루밍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접촉 등에 준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물론 의도(intent)란 증명하기에 더욱 어려운 유형의 고의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 어떻게 그루밍의 맥락에서 의도가 증명될 수 있는가? 당사자의 고백 외에 가장 유용한 증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인터넷 채팅과 이메일 내용일 것이다. 이전의 그루밍 사례들에서, 희생자나 가해자 둘 중 한 명은 그 이메일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편지를 보관하는 것처럼), 이것은 유용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일도 중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가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루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매번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유사하게, 가해자가 체포되었을 때, 콘돔, 윤활젤리, 술 등과 같은 것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가해자의 의도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것들을 배심원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 된다.

합정수사(Proactivity)

내무부의 아동보호 TF팀은 새로운 그루밍 범죄의 입법과정에서, 동 범죄가 법률집행기관에 도움을 주어야하고, 개인을 수사할 때 통제된 상황 하에서 (수사관이) 아이로 역할을 하여 TF팀이 합정수사를 하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s.15(1)(a)(ii) 조항은 실제로 가해자가 아이들을 만났는지 여부보다 아이들을 만날 의도가 상당한지를 언급함으로써 이 상황에 도움이 된다. 합정수사를 통해 책임성이 발견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은 Criminal Attempts Act 1981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의 ss.1(2)와 1(3)은 누구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s.15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지만, 그 사람은 범행을 실행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어린이인

척하면서 접근한 상황에서도 책임성은 인정된다.

이 범죄의 규정은 수사기관의 조기개입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아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끝내고,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예, 호텔 방 예약), 범죄자는 그들이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체포될 수 있다. 그는 지금 아이를 만날 의도로 움직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과정을 밝힘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적 책임성을 위해 요청되는 접근수단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수사가 적절히 이용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결론

새로운 그루밍 범죄는 신중히 논의되었고, 아이들을 유린하려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유효하고 보충적인 도구여야만 한다. 인터넷을 통한 아동 그루밍을 범죄화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당화과정이 있었고, 새로운 범죄화는 초기의 개입과 범죄의 접근 사이를 절충시킨다. 만약 범죄자가 그루밍 단계에서 잡힌다면 아이는 성적으로 학대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는 사후에 반응하기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유형의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루밍 범죄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빈번히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슬픈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그루밍 범죄들은 학대가 발생한 후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범죄자는 s.15가 아닌 개별적 성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루밍 범죄가 유용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억제기제(additional deterrent)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범죄자가 성적 행위를 범하기 전에 발견된다면, 적절한 수단이 그에게 가해질 것이다. 이전에 이 활동이 범죄자에 대해 효과적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결론을 내리면 이 새로운 입법은 환영 받아야만 한다.

2. 범죄자 연령의 변화와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대응의 필요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범죄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⁸⁾ 즉 50대와 60대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8.9% → 7.8% → 6.3%이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10%를 넘어 2006년까지 10.3% → 11.1% → 12.3% → 13.9%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게

7) Gillespie, A. A., Children, chat rooms and the law, childRIGHT No 172, pp. 19-20.

8) 50대와 60대 이상을 노인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범죄에 대한 최근 사회의 관심 증대와 성범죄의 특성상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들 연령계층을 노인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특히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에 그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며, 성매수의 경우는 추세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강간의 경우 2000-2002년간 추세가 5.7% → 3.4% → 6.0% 이었으나, 2003-2006년간 추세는 7.9% → 8.5% → 13.4% → 10.0%의 분포를 보인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2000-2002년간 23.7% → 28.2% → 21.1% 이었으나, 2003-2006년간 26.3% → 32.5% → 28.6% → 29.7% 로 나타나고 있어 추세의 꺾임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전체 연도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범죄유형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연령대의 분포를 보면 강간의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47.9%), 강제추행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30.1%), 성매수는 20대와 30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3.0% 및 42.2%).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50대 이상 노인에 의한 강간범죄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40대 이하 강간범죄와 비교하여 연령분포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아래 <표> 참조). 특히 동네사람 25.0%, 의부 18.8%로 이들 두 집단이 청소년에 대한 강간범죄예방의 주요 타겟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를 높이는 방법이 중요한 강간범죄 예방대책이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감시의 중요한 기체가 ‘학교’이다. 예로 판결문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양호교사가 성교육 중에 학생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당해 피해학생의 피해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강간과 강제추행 비율이 69.4%로 40세 미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의 표 참조).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범죄예방교육의 실행과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이 협력하여 교원연수과정 등에 적실성 있는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표 4-1>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가해자 연령대별 피해자와의 관계

노인여부	피해자와 관계	죄명		계
		강간	강제추행	
40대 이하	모르는 사람	186(55.5)	284(66.0)	470(61.4)
	친 부	28(8.4)	27(6.3)	55(7.2)
	의 부	15(4.5)	8(1.9)	23(3.0)
	모의 동거인	13(3.9)	5(1.2)	18(2.4)
	친 척	14(4.2)	7(1.6)	21(2.7)
	친 구	12(3.6)	1(0.2)	13(1.7)
	동네 사람	19(5.7)	39(9.1)	58(7.6)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	12(3.6)	24(5.6)	36(4.7)
	친오빠	-	1(0.2)	1(0.1)
	부모의 친구	7(2.1)	15(3.5)	22(2.9)
	친구의 아버지	8(2.4)	10(2.3)	18(2.4)
	기 타	21(6.3)	9(2.1)	30(3.9)
	계	335(100.0)	(100.0)	765(100.0)
50대 이상	모르는 사람	14(29.2)	124(60.5)	138(54.5)
	친 부	2(4.2)	2(1.0)	4(1.6)
	의 부	9(18.8)	5(2.4)	14(5.5)
	모의 동거인	2(4.2)	-	2(0.8)
	친 척	1(2.1)	2(1.0)	3(1.2)
	동네 사람	12(25.0)	44(21.5)	56(22.1)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	1(2.1)	11(5.4)	12(4.7)
	부모의 친구	4(8.3)	5(2.4)	9(3.6)
	기 타	3(6.3)	12(5.9)	15(5.9)
		계	48(100.0)	205(100.0)

* $\chi^2=46.527$ df=11 p-value=.000

* 참고: 2007년도 판결문 자료를 통합하여 재분석한 것임

<표 4-2>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가해자 연령대별 피해자 연령

노인 여부			죄명		계
			강간	강제추행	
40대 이하	피해자 연령	7세 미만	8(2.4)	42(9.6)	50(6.5)
		7세 이상-13세 미만	103(30.6)	210(48.2)	313(40.5)
		13세 이상-16세 미만	106(31.5)	99(22.7)	205(26.5)
		16세 이상	120(35.6)	85(19.5)	205(26.5)
		계	337(100.0)	436(100.0)	773(100.0)
50대 이상	피해자 연령	7세 미만	1(2.1)	33(15.9)	34(13.3)
		7세 이상-13세 미만	21(43.8)	130(62.8)	151(59.2)
		13세 이상-16세 미만	16(33.3)	24(11.6)	40(15.7)
		16세 이상	10(20.8)	20(9.7)	30(11.8)
		계	48(100.0)	207(100.0)	255(100.0)

* $\chi^2=54.121$ df=3 p<.001

* 참고: 2007년도 판결문 자료를 통합하여 재분석한 것임

둘째, 50대 이상 노인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 강간범죄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의 감시기법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강간만큼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의 경우도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지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여 노인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선의’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아이들의 성기나 몸을 단지 귀엽다는 의미에서 접촉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 나타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전통적 관습과 달리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이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범죄자 학력의 상승

‘대졸이상’의 범죄자 비율이 2000년 44.0%에서 2002년 50.6%, 2003년 53.8%, 2004년 63.0% 등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고졸’과 ‘중졸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내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함과 아울러 성범죄 자체의 특성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강간, 성매수의 순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즉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 대졸학력 비율이 32.8%인 반면, 간간은 40.2%, 성매수는 59.6%로 집계되었다. 특히 성매수의 경우는 범죄자의 학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내 고학력자의 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문제임을 알 수 있다.

추세상의 통계로 집계된 4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회 내 학력수준의 분포가 앞의 수치처럼 급격히 증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내 역지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모든 범죄 포함) 성폭력범죄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는 오히려 학력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한 그루밍법 등의 법제적 정비를 통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수사도 분명 중요하겠으나,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4. 범죄자에 대한 양형 미약

청소년대상 성범죄 1심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벌금형의 비율은 2004년 다소 그 비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벌금형의 비율이 2000년 21.0%, 2001년 33.4%, 2002년 35.4%, 2003년 32.9%, 2004년 26.0%, 2005년 32.7%, 2006년 44.0%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로 처분되는 경우는 2000년 56.8%였던 것이 2006년에는 15.2%까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기징역형의 비율은 2004년에 38.4%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2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유기징역의 비율을 보면 강간 61.5%, 강제추행 35.8%, 성매수 9.7%로 나타나 성매수에 대한 유기징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매수의 경우 유기징역의 비율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연도에 잠깐 26.0%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예로 강간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06년 26.7%(191명 중 51명), 2001년 48.9%(466명 중 228명), 2002년 54.4%(417명 중 227명), 2003년 50.1%(479명 중 240명), 2006년 54.4%(331명 중 180명)로 집계되어 비록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 강간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법규정 상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적지 아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성인 대상 범죄와 달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성매매 피해 계층의 확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특성에 대한 추세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성매매범죄에 대한 피해계층이 연령대의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학교재학여부, 가출문제 등과 관련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선, 연령의 측면에서 과거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청소년 계층이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피해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2년간 14-15세 계층으로 피해율이 확대되고 있다. 즉 전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서 14세-15세 피해자 비율은 2000년 36.4%, 2001년 40.8%, 2002년 43.5%, 2003년 35.8%, 2004년 37.0%에 그쳤으나, 최근 2005년 50.1%, 2006년 46.0%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계층의 신체적 성숙도의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5년 내외의 기간에서 이러한 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전반적으로 청소년 집단 내 하위문화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서 성매매를 선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재학여부와 관련해 2000년대 초반에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자퇴자 및 퇴학자의 성매매 피해비율이 2000년 41.2%, 2001년 41.1%이었으나, 2004년 49.9%, 2005년 45.3%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드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피해청소년의 가출 문제인데 2000년 초반에는 성매매의 피해자로 가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가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출한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2000년 38.8%, 2001년 44.1%, 2002년 37.7%, 2003년 44.8%, 2004년 57.8%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세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라는 울타리와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청소년이 성매매의 함정에 빠져드는 기대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상위연령대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하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도 확대되고 있다고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대안은 청소년 계층이

학교와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성매매는 위험한 것이고, 범죄이며, 꼭 처벌 받는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의 운영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동거형태와 범죄의 양상 변화: 부모 모두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 증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특이한 발견점 중의 하나는 피해 청소년이 부모 모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범죄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들이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2000년 53.4%, 2001년 58.4%, 2002년 55.5%, 2003년 47.2%, 2004년 58.1%, 2005년 60.1%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 모두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집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강간과 강제추행에 있어 가해자가 주위 사람(의부, 동네사람 등)인 경우가 높다는 점도 부모동거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죄유형별로 볼 때 부모가 모두 있는 비율은 성매수의 경우 47.2%로 가장 낮았으며, 강제추행은 71.7%로 가장 높았다. 다만 어떤 범죄유형이건 앞의 통계에서 보듯 최근으로 올수록 양부모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7. 범행장소의 다변화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기타를 제외하고 범죄유형별로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범죄의 추세측면에서 여관 등 숙박업소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1년 45.9%로 증가한 이후, 2003년 40.0%, 2005년 37.6%, 2006년에는 32.5%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가해자의 집은 2000년 14.2%에서 2002년 15.3%, 2004년과 2005년 18.2%로 증가하다 2006년 14.4%로 감소하였다. 7년간의 자

료를 합계한 결과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의 비율이 40.3%로 가장 많고,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16.3%, 자동차 안은 9.8%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모두 가해자의 집에서, 성매매는 숙박업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표 4-3> 2000년-2006년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범죄 다발 장소

구분	전체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1순위	숙박업소 (40.3%)	가해자의 집 (19.7)	가해자의 집 (14.5%)	숙박업소 (67.8%)
2순위	가해자의 집 (16.3%)	피해자의 집 (16.2%)	길 (14.0%)	가해자의 집 (16.0%)
3순위	자동차 안 (7.6%)	숙박업소 (13.3%)	피해자의 집 (12.9%)	자동차 안 (6.6%)
4순위	피해자의 집 (7.1%)	피해·가해자공동주거 (12.1%)	자동차 안 (7.8%)	제3의 집 (3.5%)

범죄유형별 추세를 보면 강간의 경우 범죄장소가 최근으로 올수록 가해자의 집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가해자의 집이 2000년 13.9%에서 2006년 24.6%로 증가),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범죄장소의 다양성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의 집이 2000년 18.4%에서 2006년 12.6%로 감소). 성매매의 경우 여관 등 숙박업소가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가장 높으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줄어들어 성매매 장소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로 가해자의 집이 2000년 11.8%에서 2005년 18.5%로 증가했으며, 자동차 안이 2000년 4.9%에서 2006년 8.9%로 증가하였다.

다음의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발생장소와 비교할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특히 강간과 강제추행)는 확연히 가해자의 집이 되었던 혹은 피해자의 집이 되었던 “집안 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들 범죄가 외부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4-4>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현황(1997-2006)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집안	28.2	23.4	25.9	25.2	23.0	27.2	25.4	26.5	27.1	27.7
노상	15.9	38.4	15.7	17.5	18.8	16.7	16.9	16.3	17.	16.7
상점,시장	2.4	7.3	3.7	3.1	3.5	2.8	3.3	2.3	2.2	1.9
숙박/유흥업소	21.9	8.2	22.3	21.9	23.1	20.1	18.4	23.3	23.5	23.6
사무실	3.3	3.4	3.2	3.2	3.6	2.6	2.6	2.8	2.7	2.6
교통수단	3.5	4.6	3.3	3.5	3.3	7.3	8.9	7.7	6.8	8.2
공사장,창고,공지	1.8	0.6	1.2	1.1	1.1	1.0	1.0	0.5	0.5	0.5
야외	2.6	0.5	1.9	1.4	1.4	1.1	1.1	0.7	0.4	0.3
기타	20.4	13.5	22.9	23.0	22.3	21.2	22.6	19.8	19.6	1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대검찰청 범죄백서

한편 성매매 발생의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범죄가 가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록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청소년의 ‘자발성’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자동차로 가서 성매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처벌의 엄격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그와 함께 청소년들의 인식과 하위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

8. 범죄유형별 발생시간대의 변화: 저녁 10시-12시 급증 추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죄발생시간대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전체범죄에서 가장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시-9시가 37.1%이나, 최근으로 올수록 저녁 10시-12시의 시간대에서 범죄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2000년에 16.2%이었으나, 2005년에 33.9%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모든 범죄 유형에서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간의 경우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은 변화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저녁 10-12시 사이의 발생 빈도가 2000년 10.5%에서 2005년 27.1%로 높아졌다.

둘째, 강제추행의 경우는 주로 오후 1시-9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은 변화가 없으나, 저녁 10-12시 사이의 발생 빈도가 2000년 9.7%에서

2005년 21.9%로 높아졌다.

셋째, 성매매의 경우는 과거 2000년에는 오후 1시-9시 비율이 42.0%이었으나, 2005년에는 저녁 10-12시 비율이 43.5%로 아예 순위가 바뀌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이 가정 및 사회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 전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계층에 대한 사회의 보호와 함께 통제 또한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9. 성매매 매개수단에서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피해비율의 급감

이미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수단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2000년 44.8%에 불과하였던 비율이 2006년에는 90.9%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성매매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위력 등의 피해를 본 성매매 청소년의 피해비율은 2000년 24.2%에서 2006년 5.7%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 의한 성매매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함으로써 성매매 과정의 안전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경래(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그룹과 비교할 때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서 죄의식이 박약하고 성매매를 정당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성매매집단의 기본의식이 일반성매매집단 보다 그러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성매매집단은 일반성매매집단에 비해 판매자와 채팅 등을 하는 과정에서(혹은 실제 성구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집창촌이나 안마시술소에 등에서 관계를 갖는 것에 비해 비록 비용은 더 들더라도 좀 더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래포(rapport)가 형성되고, 이는 판매자가 단순히 돈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친구'로서의 역할까지 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성매매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설명은 성구매자 개인의 문제 외에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가져다주는 일종의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은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판매자 자신도 죄의식이 얼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판매자의 저변을 확대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⁹⁾

결국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대책에 있어 성구매 및 성판매 과정상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수단과 함께 인터넷 자체에서 나오는 효용 내지 역작용적 측면을 줄이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보여준다. 거래비용을 높이는 수단은 각종 기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것이며, 인터넷에 효용을 줄이는 방법은 의식개선과 문화정책 등의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대책들은 기존연구를 성매매 관련 주체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이들 수단들의 개별 내용들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효용을 줄이거나 거래비용을 높이는 정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성매매관련 주체는 크게 구매자, 판매자, 알선자로 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 성판매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으며, 관련 내용은 박경래(2007)를 중심으로 하였다.¹⁰⁾

인터넷 성매매의 온상인 채팅은 특히 다양한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수도 많고 가입 제한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수 백 여개의 크고 작은 인터넷 채팅 서비스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다수 채팅 서비스 업체들이 음란 채팅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집이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하여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익으면 본격적으로 성매매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가를 흥정한 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과정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성매매보다 훨씬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성년자 성 판매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가치관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학생인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내 성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성

9) 박경래. (2008).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존스쿨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10) 박경래. (2007).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교육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현실을 간과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표 4-5> 성매매관련 주체별 문제와 대안

주 체	구 분	인터넷 이용의 효용성 약화	인터넷 이용의 거래비용 증대	
구매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식의 부재 · 인터넷으로 인한 성매매 접근성의 편의성, 보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위주의 검거 및 처벌 · 처벌의 형평성 · 낮은 기소율 	
	대안	일반성매매 구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실한 검거 및 처벌 · 존스쿨 개선 · 미성년자 성매매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적극 활용 	
		인터넷 성매매 구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 기술적 측면의 보완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실한 검거 및 처벌 · 존스쿨 개선 · 미성년자 성매매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적극 활용 · 자율규제의 확립 · 그루밍(grooming)제도의 법제화
판매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식의 부재 · 청년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의 형평성 문제 · 사후관리의 미비 · 자활제도의 비효과성 	
	대안	성인판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가치관 및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 · 적법한 일자리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주 등에 의한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경우, 처벌의 확실성 제고 ·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자활지원의 확대
		미성년자 판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가치관의 확립 · 학교내 성교육 실효성 확보 · 가출청소년의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개선
알선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식의 부재 · 사이버포주 소재파악 어려움 · 포탈사이트 등의 소극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신원확인 어려움(해외서버 구축, 소규모 조직의 운용 등) · 범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수단 확보 	
	대안	일반알선자 및 사이버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가치관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자의 엄격한 처벌 · 해외 음란·유해정보 등급 DB구축 · 해외유해사이트 차단방안 마련
		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근절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개입 ·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필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강화 · 성인광고 게재 등에 대한 불이익 부과

단순히 순결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행위 특히, 성매매로 인해 심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경우 단지 용돈을 벌기 위해 키스 알바 등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과정에서 완전히 자신의 의사가 아님에도 성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선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금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키스알바에서부터 원조교제 등과 같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쪽으로 빠지기 쉽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 어떤 미성년자들보다 잠재적 성 판매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만남 유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결정 기준을 마련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개별로 하기보다는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결정해 고시함으로써 초기화면에서 정보제공 이전에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등에 대한 법적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청소년 접근이 이전보다 다소 효과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꾸준한 유해표시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쓰는 청소년의 경우 이에 대한 예방력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과는 별개로 일단 미성년자 성판매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향후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처분에 내실을 기하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호관찰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검찰은 일반적인 소년사건에 대해 해당 소년범죄자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밟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처분을 위하여 소년심판절차를 밟도록 할 것인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소년사건에 대해 어떤 처리절차를 선택하는가가 곧바로 처분의 결정과 직결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찰의 처분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귀가조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소년심판절차를 위해 소년부로 송치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단순한 귀가조치를 받게 되면 공식적인 사법기관 내에서 모든 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 청소년들이 형사처분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갈형 청소년 성매매 유형처럼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외에 청소년이 상대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성 매매를 미끼로 상대방을 유인하여 남자 친구들로 하여금 폭행하거나 협박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이외에 형법상 다른 죄명을 병합하여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분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이나 검찰이 성매매 청소년을 처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귀가조치인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직후까지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져 모든 청소년들이 적발 후 상대남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소환되었다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단순귀가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인계되었다. 이 경우 경찰이 이들 청소년을 인계할 수 있는 기관은 청소년쉼터나 선도보호시설인데, 해당 청소년들이 선도보호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쉼터에 비해 통제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쉼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을 청소년쉼터로 인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10월 서울지검 소년부는 원조교제 적발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던 기존방침을 바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청소년도 입건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일선 경찰들에게 시달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청소년 성매수자 처벌 중심으로 운영된 결과 대상 청소년의 재범사례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소년부 검사의 입건 여부 결정 하에 성매매 청소년을 처리하며, 검사는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상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2000. 10. 26. 청소년 성매매 사범 사건처리지침).¹¹⁾ 그리고 2000년 2월 20일에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따져 입건범위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01년 전반기에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 12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찰의 내부적인 사건처리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처리는 단순귀가조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11) 실제로 이 방침이 내려지기 이전까지는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경찰이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입건 송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0년 11월 16일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을 입건조치 하였다.

있다. 또한 경찰의 보호시설 인계조치는 단순귀가 조치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처분으로서 선도보호시설이나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 성매매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 종사자에 따르면(백승진·이미경, 2001: 39), 자발적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입소기간을 1일~6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길어야 1개월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인계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다시 집도 아니고 보호시설도 아닌 또래집단의 공간으로 재가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이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어렵게 마련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대상들의 유동성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이들 소년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위탁하기를 바라고 있다(문화관광부 장관주최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대책’ 간담회 내용).

현재 소년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반적인 경향이 사회내 처우를 지향함으로써 처분결정이 보호관찰(2, 3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성매매 청소년의 대다수가 비행경력이 없다는 점, 성매매라는 범죄가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주로 보호관찰처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일반소년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청소년이 귀가조치를 받은 후 한 달에 1~2회 정도 보호위원과의 면담이나 상담의 방식을 통해 처우 받는다면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은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관찰의 수를 늘리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화·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보호처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전담 보호관찰의 증

원과 더불어 소년조사제도에서 청소년 전문복지요원을 투입하여 전문적 조사에 의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선도보호시설이 양적확충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환경적 개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의 고용을 위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 같은 재활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귀가 조치 후에도 각종 치료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병행이 필요하다. 성매매 청소년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복귀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자신들에 대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며, 가장 먼저 그리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의 반응이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방법을 가족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미향·윤지영, 2003: 30).

10. 기타 일반론적인 정책대안의 논의 :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성매매의 예방대책 등과 관련하여서는 바로 앞서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에 집중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 12월에 발간한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연구책임: 전영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크게 아동성폭력 범죄자,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상습 성폭력범죄자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비록 동보고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래에서 정리된 내용은 모든 성범죄에 공통될 수 있는 사항이다.

가. 아동성폭력 범죄자

첫째,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중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성적인 동기에 의한 범죄가 다른 범죄자에 비해 많다고 제시된다(Prentky et al., 1997; Porter et al., 2000: 218).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지향이 강한 편이며(강은영, 2003),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이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있어서 성범죄 재범과 관련된다(Prentky et al., 1997).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통념 수용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아동에 대한 강간통념에서는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면,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특히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해 치료를 통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아동성폭력 범죄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에 비해 불안정한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Lyn and Burton, 2004).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다른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애착하위유형 중 의존성의 점수가 높아서 불안정 애착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을 고려하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타인과의 애착을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다른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성범죄 재범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fond, 2005; Rice and Harris, 1997). 따라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재범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최근의 흐름이었다. 2005년 뉴욕주에서는 상습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모든 학교시설, 주간탁아시설, 놀이터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같은 해 플로리다 주, 뉴저지주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해 아동보호지역 2km 이내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해서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이러한 조치들은 아동성폭력자의 아동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재범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에 대해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통과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자감시의 대상자 중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를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러한 법규정 역시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 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특히 이러한 감시 강화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²⁾

넷째, 현재의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제도가 실질적으로 재범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고지법은 재범위험성을 공개의 핵심기준으로 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범의 위험이 낮거나 중간정도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알리고, 신문지상에도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신상공개 대상자를 관보나 인터넷 등에서 공개하였다가 현재는 등록열람제도로 바뀌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재범위험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임)

첫째, 가족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노력이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다(민병근외, 1992; 신기숙, 2003, 신의진외, 2007; Marshall and Barbaree, 1990; Goodrow and Lim, 1998). 따라서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중재에 있어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보호단계에서 가족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히 청소년

12) 감시강화를 통한 재범방지는 상황적 범죄예방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적 범죄예방의 기술들은 4개의 기본 메카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4개의 메카니즘은 인지된 노력의 증가, 인지된 위험의 증가, 예기된 보상감소, 변명제거이다. 감시강화를 통한 범죄억제는 이 중에서 인지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될 것이다.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감시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Lab, 2004: 181-18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에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도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이 범죄통제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논의된다(Wright and Wright, 1994: 189).

둘째, 긍정적인 동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동료압력이 청소년 성폭력범죄와 관련되었다(Silverman et al., 2006). 즉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48.2%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7.6%). 또한 공범은 거의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성폭력에 있어서 동료영향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물론 동료압력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므로, 성폭력 범죄 예방프로그램들이 중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Abbey, 1998: 189).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해서도 동료관계를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강명령 등 주로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처우프로그램들이 더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즉 수강명령이나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서의 성폭력범죄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처우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¹³⁾

넷째,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내에서도 유형에 따라 다른 처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반사회적 행위 유형의 부분으로서 성폭력을 행하는 청소년과 일탈적인 성적 관심 속에서 성폭력을 행하는 청소년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적 범죄의 위험이 보다 높으므로, 일반적 비행 요인을 타겟으로 하는 처우가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후자집단의 경우에는 처우의 초점을 성범죄 위험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에 두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Coombes, 2003 :184). 즉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내에서도 범죄원인 및 재범위험을 고려하여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3) 소년법 개정안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주된 처분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수강명령 대상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다(원혜옥, 2007: 17). 이는 수강명령이 청소년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대상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다. 상습 성폭력범죄자

첫째,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처벌의 억제효과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시강화가 특별히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시행된 전자감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이전 성범죄 경력이 성범죄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하면(Hanson and Bussiere, 1998; Greenberg et al., 2000),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사람은 미래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감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감시강화와 더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치우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평생감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치료와 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모든 전자감시 대상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분류해서 전자감시를 하는 동안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데 관련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는 처벌의 억제효과가 미약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벌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재범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탈적인 성적 관심, 일탈적인 피해자 선택(예, 소년, 모르는 사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탈적인 성적 관심 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재범억제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재범관련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 중재요인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범죄 재범이상 범죄자들은 초범에 비해 성폭력 당시 폭행이나 협박, 손발로 구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며, 이는 재범이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히 폭력성향 및 행위를 교정하는 중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